

軍



Military History

광복 70주년 특집: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광복 70주년의 의의와 평가

2015. 9. 제96호

史

-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8.15
- 1945년 광복 전후 중국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과 한국
-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 및 평가
- 패전국 일본이 본 우리의 광복: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처리
-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 郭再祐 宜寧 倡義의 含意
- 丙子胡亂 金化 栢田戰鬪 考察
- 파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 한·러 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獨島)
-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 96 號
2015. 9.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5. 9. 제96호

광복 70주년 기획특집

1	▶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8.15	박태균
31	▶ 1945년 광복 전후 중국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과 한국	김지훈
71	▶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 및 평가	기광서
97	▶ 패전국 일본이 본 우리의 광복: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처리	최운도
135	▶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황보 경
173	▶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김명진
209	▶ 郭再祐 宜寧 倡義의 숨意	최재호



Contents | 2015. 9. 제96호

251	▶ 丙子胡亂 金化 栢田戰鬪 考察	권순진
283	▶ 파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이신재
323	▶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도미엔
363	▶ 한·러 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獨島)	박종효
395	▶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기석호

부 록

1. 연구소 동정	447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449
3. 신간 도서 소개	451
4. 『軍史』誌 投稿案内	452
5. 연구윤리예규	455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8.15

박 태 균*

1. 들어가며
2. 일본 패망의 준비: 카이로 선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3. 일반명령 1호에서 분할의 의미
4. 한국에 관한 SWNCC 시리즈와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의 특징
5. 글을 나가며

1. 들어가며

1945년 8월 15일이 한국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다.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이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었다. 한국 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게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경험을 했기 때문에 8.15는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국권 이 대한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정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19세기 말 이래로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형성된 ‘근대 민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다면, 8.15는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아울러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 역시 열강들이 한국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에게 있어서도 8.15는 한국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이완은 한국과 동일하지 않았다. 타이완은 ‘근대 민족’으로서의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지 못했다. 1897년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지화할 때 타이완은 독립된 왕조나 정부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미 그 이전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그리고 청나라에게 복속되어 있었던 타이완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부속 도서였지만, 타이완의 내지인들에게 중국은 같은 국가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1945년 8월 15일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에게는 승전의 날이었다. 유럽에서의 전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는 없었지만, 이는 아시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유럽 국가에게도 같은 의미였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유럽 국가들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에게 빼앗겼던 식민지로 복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이나 일본점령에 반대하는 투쟁을 했던 세력들 역시 8.15는 승리의 날이었다. 이들의 투쟁이 자신들의 민족이나 국가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활동이 연합국의 대일전에 적지 않게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투쟁으로 인해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를 지나 남아시아로 전선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투구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 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8.15는 재앙이었다. 일본 제국 내에 거주했던 비일본 계열의 대중들 중 일본의 전쟁에 협력했던 세력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 제국의 세력 확대에 의해서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세력 확장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이들은 전쟁범죄의 방조자들이 되었다. 일반명령 1호에는 일본으로부터의 항복뿐만 아니라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구금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아시아 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함으로써 일본의 점령을 피할 수 있었던 태국의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전쟁범죄 방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 8.15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압도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은 일본의 점령지와 식민지에서 일본군을 몰아냈기 때문에 전후 아시아 지역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아시아 제국들은 미국의 이러한 힘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8.15 이후 각 지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8.15의 의미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였다. 만약 특정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전략이 해당 지역의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미국의 편에 섰던 다른 연합군 국가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었다면, 해당 지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8.15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용욱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지만,¹⁾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후 점령계획

1)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일본에 대한 정책 구상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안소영의 최근 연구도 주목된다. 안소영,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전후 대일 대한정책 및 점령통치 구상: 이중적 대립축

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대아시아 정책 아래에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8.15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945년을 전후한 시기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결정-카이로 선언, 일반명령 1호,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이 갖는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하겠다.

2. 일본 패망의 준비: 카이로 선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1943년 12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카이로에 모였다. 그리고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전후 일본 처리 문제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유명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타이완 및 평후(澎湖)제도와 같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과 그 전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집 2호, 2010.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²⁾

한국에서 특히 이 선언에 유의하는 것은 이 선언에서 “위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즉, 강대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선언이기 때문이다.³⁾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왜 이 선언에 한국만이 포함되었는가의 문제는 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이 세계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고, 이러한 결정이 어떤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로 선언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관심이 한국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언이 갖는 미국의 전후 정책적 측면에서의 함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즉, 이 선언에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전후 아시아 정책의 전반적인 구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루즈벨트의 아시아에 대한 구상과 전략을 이해

2) http://ww2db.com/battle_spec.php?battle_id=68

3) 정병준은 카이로 선언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첫째로 전후 한국독립을 약속한 연합국의 최초의 공약이었다. 둘째로 전쟁 직후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독립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신탁통치 실시를 암시하고 있다. 셋째로 연합국 사이의 대한정책 차이가 외교적 언어로 표현된 것이었다.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문제 논의와 카이로 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107호, 2014, 308쪽. 정병준의 이 글에서 카이로 선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겠다.

할 때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패망하는 시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처리 계획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는 원래 대서양 헌장 제3조에 있는 민족자결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⁴⁾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달랐다. 처칠은 민족자결권 조항이 전범국가인 독일 점령하의 유럽국가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유럽국가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식민지 지역에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거나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은 유럽의 제국 질서를 와해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⁵⁾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 대안없이 반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3년 3월 27일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과 전후 만주, 한국, 타이완, 인도차이나에 관해 논의하면서 인도차이나에는 신탁통치를, 만주와 타이완은 중국에 반환하며, 한국은 미국·중국 외에 1~2개 나라가 더 참여하는 국제신탁통치하에 두자고 제안했다. 이든은 이 제안에 호의적으로 응답했다.⁶⁾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프랑스 역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유럽 제국의 입장은 얄타회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미국은 기존에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곳, 이전에 적의 영토였던 곳, 그리고 신탁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4) 물론 당시 모든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전후 구상 관련 논의를 보면 만주와 한국을 중국에 반환하거나 독립시키기보다는 일본의 주도권 하에 계속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후 중국과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한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전후 구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소영, 위의 글, 171쪽

5) 윤충로, <베트남의 1945년 8월혁명과 분단>,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발표논문, 2015년 7월 10일, 프레스센터, 2쪽

6) 정병준, 위의 글, 314쪽

있었다.⁷⁾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은 카이로 회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장제스의 입장은 한국을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전후 인도차이나의 독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고, 태국 역시 독립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제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주변국이 유럽제국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카이로 선언과 관련된 “미국의 대외관계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에 실려 있는 장제스와 루즈벨트 사이의 대화기록을 보면 루즈벨트가 이러한 장제스의 발언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FRUS*의 기록에는 장제스의 인도차이나 및 태국의 독립 제안에 대해서는 루즈벨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각주가 달려 있다. 즉, 루즈벨트는 이들 국가·지역의 ‘독립’이 아니라 ‘미래 지위’에 대한 연합국의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⁸⁾ 그렇다면 대화에서 루즈벨트가 동의를 표한 것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인도차이나의 독립에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당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유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을 카이로에 불러낸 것이 미국이었고,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영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⁹⁾

7) 윤충로, 위의 글, 2~3쪽

8) 정병준, 위의 글, 312~313쪽

9) 1943년 11월 22일에 있었던 미·영·중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p.329~334. 중국은 영국 해군의 참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었고, 영국은 이탈리아와 해전을 치른 영국 해군이 인도양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중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연합군 사령부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과 인도 및 서아프리카 부대

따라서 일본이 점령한 과거 중국의 영토였던 지역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독립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카이로 선언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만을 쓰고 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카이로 선언은 첫째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제국의 독립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창된 민족자결주의가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지역에는 대서양 헌장 3조의 ‘민족자결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선언문의 서두에서 이 선언에 참여한 강대국들이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라고 했지만,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¹⁰⁾

둘째로 유럽과는 다르게 전범국가를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전범 국가들을 분할점령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4개국 -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 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범국가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들에 의해 미래에 또 다른 무력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전범국의 제국(empire)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의 CFR에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권익에 중국이나 소련이 위협요인이 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군국주의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군대와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도 이와

의 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이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일본 점령 및 오키나와 점령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10) 윤충로에 따르면 프랑스는 식민지를 통해서 전후 부흥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윤충로, 앞의 글, 3쪽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¹⁾ 일본 제국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국을 분할하여 그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일본 제국의 분할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일본에서 배타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미국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데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전쟁 성격이 달랐던 점도 중요하게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영국 외에도 소련이 연합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서부유럽보다도 소련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으며, 유럽 동부 전선에서의 소련의 활약은 독일이 힘을 잃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에서의 전후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소련의 활약을 부인할 수 없었고, 소련은 전후 유럽 재편에서 중요한 하나의 행위자(actor)였다.

반면 아시아에서 소련은 1939년의 할힌골 전투 이후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1941년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소련은 서부전선에만 집중하고, 동부전선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가침 조약 이후 동부전선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국공산당 산하의 일부 게릴라 부대를 소련 영토 안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일본과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씨를 제거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호주가 미국과 공동 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주력은 미군이였다. 독일에게 점령당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의 폭격에 시달리고 있었던 영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11) 안소영, 위의 글, 172쪽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일본군이 진주한 1940년부터 1945년 3월까지 프랑스와 일본이 베트남 지배에 대해 공조했던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의 일본 패망이 곧바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경우 인도에게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시 독립을 약속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인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시켜 줄 수밖에 없었지만, 영연방의 틀 안에서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복귀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1945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1949년까지 네덜란드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여야 했다. 인도차이나 중 베트남도 1945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스가 복귀하면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독립전쟁을 치러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산둥반도에서 독일과의 전투를 통해 승전국이 됨으로써 독립의 지위를 얻지 못했던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회였지만,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카이로 선언을 통해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에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카이로 선언은 1945년 일본 패망을 앞두고 포츠담 선언 8항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1945년 8월 15일은 카이로 선언에 있는 말 그대로 “become free and independent”를 의미했다. 그것은 독립 그 자체가 아니라 ‘일본 제국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이라는 뜻이고 이는 곧 ‘제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장제스의 역할과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은 카이로

선언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미국의 전후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약속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적절한 시기’가 신탁통치안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지만,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후 처리방식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일반명령 1호에서 분할의 의미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1945년 8월 15일이 갖는 의미는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잘 표현되었다. 일본 패망 직후인 8월 17일에 승인된 일반명령 1호에는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분단을 규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1절(군대와 해군, Military and Naval) b항과 e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38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 사령관은 소련군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하며, 38선 이남지역의 일본제국 총사령부는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명령 1호에는 분할해서 항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분단을 규정한 내용은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편의상 분할을 통해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도록 규정된 지역은 한반도뿐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도차이나 지역의 경우 French Indo-China로 표현되어 있으며,¹²⁾ a항에서 북위 16도선 이북은 장제스 총통에게 항복해야 하고, c항에서 16도선 이남은 동남아시아 최고연합사령부 또는

12)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c항에서 Netherlands Indies로 표현하고 있다.

호주군 총사령부에 항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은 만주인데, 만주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면 중국의 영토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반명령 1호에서는 소련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하도록 규정했다.

일반명령 1호에서 분할해서 항복을 받도록 규정된 인도차이나 지역과 만주는 이후에 ‘분단선’ 또는 ‘분단’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결정한 베트남의 분단선은 17도선이었다. 만주는 중국혁명 이후 자동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카이로 선언에서 만주는 중국에게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지역의 분할을 통해 항복을 접수한 것은 군사적 편의에 의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반명령 1호는 곧 한반도 분단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으로서는 38선을 중심으로 한 분할 점령은 소련군이 더 이상 한반도의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련군은 태평양 전쟁에 개입한 직후 한반도의 북부로 내려왔다. 즉, 8월 12일에는 웅기, 나진 등에 소련군이 진주했고,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의 시점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의 주요 섬들(main islands)이 아니라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키나와는 미국이 신탁통치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이 1945년 9월 9일이었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한 것은 분단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포츠담 회담 도중 미국이 한반도의 분할을 구상했지만, 육상작전구획과 항복접수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둘째로 항복을 접수한다는 것이 곧 한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 패망 이후 ‘즉시’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점은 한국의 독립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이었다. 특히 임시정부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역시 중국의 임시정부 승인 정책에 대해 일면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식민지 지역들을 고려하여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었다.¹³⁾

이 점은 일반명령 1호 1절 f항에서는 항복을 받아야 할 행위자를 연합군 사령관들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유일한(only)’ 행위자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일본을 대상으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일본이 점령했거나 식민지화했던 아시아 국가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와 전쟁에 협조했던 사람들(collaborator)이 아니라 반일 투쟁을 전개했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던 점령지역에서의 사회적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현지인에 의한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항복을 받기 위해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으로 반환되는 영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본 점령 지역이 이전에 식민지였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구식민지 지역에는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연합군 군대가 진주하였고,

13) 구대열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이들 양국이 한국 임정의 승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 대일전 수행에서 한국의 기여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임정 내에서 분열상을 극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임정의 인물들이 한국 독립운동에서 진정 무게를 갖는 지도자들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등 갖가지 구실을 붙여가면서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열망에 동정한다는 것’ 이상의 어떠한 언질도 그리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 어떠한 공약(승인이나 독립에 대한 약속)도 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 연구 2》, 역사비평사, 4장 4절 참조

이는 구제국주의 국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에서 과거 중국의 영토였던 곳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 그리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것 외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던 사실의 연장선에서 일반명령 1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한반도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의 항복을 받는 지역을 구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 지역에 걸쳐 일본의 항복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분할하거나 다른 나라 사령관에게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명령 1호에 의하면 미군이 온전히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지역은 일본의 주요 4개 섬과 부속도서, 필리핀이었다. 이 지역 외에 미국이 항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은 38선 이남의 한반도였고,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군의 남진을 멈추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명령 1호에서 나타난 미국의 이러한 이해관계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1950년 1월의 애치슨 연설에서 재확인되었다. 미국은 스스로의 생명선(vital line)을 일본에서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상정함으로써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했다. 일반명령 1호에서도 일본과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은 미국이 직접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지역이었던데 반해 한반도의 반은 소련군이, 타이완은 중국 국민당이 항복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반도의 경우 더 이상 소련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후술할 신탁통치를 통해 어느 일방에 의한 주도권 장악을 막고자 한 것이었고, 타이완은 카이로 선언에 의거해서 중국에 되돌려줄 것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1945년 8월 17일의 일반명령 1호는 카이로 선언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곧

한반도에 대한 장기간의 분할 점령 또는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 행복을 받지 않았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4. 한국에 관한 SWNCC 시리즈와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의 특징

가. 한국에 관한 SWNCC의 내용과 그 특징

카이로 선언에서 일반명령 1호로 이어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삼성조정위원회(SWNCC) 문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삼성조정위원회는 1945년 10월 13일, SWNCC 176/3(1945년 9월 1일)과 SWNCC 176/6(1945년 9월 27일)을 수정한 176/8을 태평양 미 육군 사령관에게 보냈다. 이는 한국 점령에 대한 기본지침이었다.¹⁴⁾ 이 지침은 일본의 항복에서부터 신탁통치체제가 수립될 때까지의 한국에서의 민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근거하여 태평양 미 육군 사령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의 제2조는 군사정부의 기본적인 행동범위를 지시하였다. 카이로 선언에 기초하여 한국을 해방된 지역(country)¹⁵⁾으로

14) “Basic Initial Directive to the Commander in Chief, US Army Forces, Pacific, for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Those Areas of Korea Occupied by US Forc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The Far East*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1073~1091.(이하 ‘FRUS 1945 Vol. VI’로 약칭)

15) country를 지역으로 번역한 것은 SWNCC 문서에서 국가나 정부를 세운다

다루어야 하며,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와 유엔의 성원으로서 한국의 실질적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민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 그 전제가 되었고, 한국에 대한 군사점령의 기본적인 목적(Basic Objectives of Military Occupation of Korea)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이하 필자 요약)

- 한국이 미래에 책임질 수 있고 평화로운 국가연합체의 성원으로서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조건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미국의 목적이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한국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일본의 통제와 관련된 모든 잔재를 일소하는 것과 독립된 한국의 행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관들로 대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한국에서 일본의 항복조항을 받아내야 하고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령관의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한국인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 (1) 주한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것.
 - (2)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완전한 정치적 행정적 분리와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통제로부터 한국을 자유롭게 하는 것.
 - (3) 정치적 목적에 복무할 건전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 (4) 지역적인 자치 정부의 수립과 유엔헌장에 표현된 원칙들에 동의하는 자유롭고 독립된 정부를 회복하는 것.
- 러시아인들과의 연락선을 만들어서 한국 통제에 필요한 과정과 정책들을 최대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한다.

SWNCC 176/8은 미 군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온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독립된 정부를 세운다는 것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킨다는 것, 그리고 미군의 한국에 대한 통제는 일본의

고 할 때에는 country 대신 nation을 썼기 때문이다.

항복을 받고 신탁통치가 실시될 때까지 임시적인 것이라는 규정이었다.

이 문서의 내부 정치 관련 부분에서 일본을 상대로 싸운 독립운동 그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본에 협력한 세력들의 활동을 제한할 필요성과 함께 당시 존재했던 한국 내 정치조직들이 미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활동을 고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만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SWNCC 176/8의 내용은 곧 전술한 바와 같이 카이로 선언의 한국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SWNCC 176/8이 주한 미 군정에 전달된 지 일주일 후인 동년 10월 20일 SWNCC 79/1이 입안되었다.¹⁶⁾ 이 문서는 ‘한국에서 국제적인 신탁통치제도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미군 행정조직의 구조와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사적 점령은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at the earliest possible date)’에 한국을 위한 신탁통치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⁷⁾ 아울러 신탁통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논의는 즉각 시작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선, 즉 38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¹⁸⁾

SWNCC 79/1에 의하면 38선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한 ‘제한된 목적을 위한 긴급조치(an emergency measure for the limited purposes)’이기 때문에 분할 점령이 계속될 경우

16) *FRUS 1945 Vol. VI*, p.1093.

17)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미국 정부는 만약 한국에 대한 열강들의 합의와 신탁통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FRUS 1945 Vol. VI*, p.1099.

18) 아울러 신탁통치의 빠른 실시를 위해서 소련군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SWNCC 176/8과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이면서 중앙집권적인 신탁통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¹⁹⁾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만약 4개 정부 중 참여를 원하지 않는 정부가 있을 경우 나머지 국가로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⁰⁾

1945년 10월 24일 삼성조정위원회는 신탁통치 실시와 관련된 101/4 문서를 다시 승인했다. 이 문서에서는 일본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미 군정을 빨리 해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결론으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유엔 헌장 79조와 81조에 의해 ‘신탁통치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략적 지역으로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as trust territory, no part of this territory should be designated as a strategic area)’는 점이 명시되었다.²¹⁾ 이 점은

19) 당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서 38선은 제거될 것이며, 소련과 합의에 의해 미국과 소련의 군사정부가 통합되어야 할 가능성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20) 당시 영국은 한국의 신탁통치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연방국가들에게 한국의 신탁통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가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이때 호주가 신탁통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신탁통치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주는 한반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War Cabinet: Memoranda No.217~230 from 20 August, 1945 to 30 August, 1945 CAB 84/74, The National Archive.(국가기록원 소장문서) 호주는 이후 유엔임시조선위원단, 유엔한국위원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그리고 유엔군에 참여했다. 박태균, “Ugly Duckling”, 『비교한국학』 13권1호, 2005; 강성천, 「1947~1948년 UN 조선임시위원단과 통일정부 논쟁」, 『한국사론』 제35권.

21) 유엔 헌장에 의거한 신탁통치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선언과 함께 1947년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던 정책의 기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했는데, 신탁통치나 유엔을 통한 정부 수립 등이 모두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신탁통치에 의해 설립되는 행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의 진전 상황을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는데, (FRUS 1945 Vol. VI, p.1099) 이 역시 한국 정부가 유엔임시조선위원단(UNT-COK)의 감시하에서 수립되었고 유엔 총회에 의해 승인받은 직후 유엔한국위원단(UNCOK)이 조직되어 매년 유엔총회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 조직된 유엔

일반명령 1호와 같이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때까지 미군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로서는 전략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한반도에 군사정부를 유지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첫째로 한국과 같이 과거 식민지 지역에서 독립국가를 세울 때까지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정부를 수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로 미국 시민들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 상정된 기간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군사 점령이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SWNCC 문서들에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신탁통치의 실시는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나. 신탁통치안과 모스크바 3상 결정의 재해석

신탁통치안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었다. 커밍스나 개디스, 그리고 매트레이 등이 모두 동의하듯이 당시 미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신탁통치는 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한 정책이었다.²²⁾ 미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미 열강들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목도했기 때문에 일본 패망 직후 또 한 번의 패권 다툼이 일어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²³⁾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역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22) 구대열, 앞의 책, 6장 1절 참조

23) SWNCC 101/4에는 19세기 말 중국과 일본, 그리고 20세기 초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이 있었으며, 일본에 병합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매우 불안정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FRUS 1945 Vol.*

특히 일본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쟁패할 가능성이 컸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중국을 포함해서 강대국 중 한 국가의 주도권이 한반도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중동의 일부 지역과 그리스와 터키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에 대한 정책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래서 유엔 현장에도 신탁통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신탁통치 실시 문제는 또한 당시 미국의 현실적인 고려이기도 했다. 미국으로서는 1945년 이후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지역, 승전국의 식민지였지만 승전국이 더 이상 구식민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모두 관리할 수 없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등 미국의 가치관이 반영된 국제질서를 위해서는 구식민지 방식으로 세계를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탁통치 방식은 당시 미국의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신탁통치의 실시를 위해 이미 일본의 패망 이전에 소련, 중국, 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SWNCC 79/1에 의하면 스탈린에게는 1945년 5월, 중국의 송박사(Dr. Soong)로부터는 동년 6월 승인을 받았고, 국무부의 한 관리가 영국대사관에 1945년 9월 4개국 신탁통치안을 전달했다.²⁴⁾

이러한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초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신탁통치안은 한국문제에 대한 3상회의 결정안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3상회의 결정안에 대해서는 이 안이 신탁통치안이었는가, 아니면

VI, p.1099.

24) *FRUS 1945 Vol. VI*, p.1095. SWNCC 79/1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모스크바 3상회의 2달 전까지 영국 정부로부터는 신탁통치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바가 없었다.

한국을 빨리 독립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는데가에 대해서 논란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란을 거치면서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신탁통치를 주장한 반면, 소련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즉 5년 이내의 신탁통치를 거친 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독립된 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신탁통치를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한반도로부터 빨리 발을 빼기 위해 소련과의 합의를 거쳐 3상회의 결정안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전술한 SWNCC 79/1과 101/4 문서에서 나온 바로, 신탁통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38선을 제거하고, 통일된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내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렵지 않게 추측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미군정을 빨리 해체하고 한국으로부터 떠나고 싶었다. 물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을 보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로부터 빨리 발을 빼고자 하는 점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결정안은 총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4항을 제외하고 1~3항까지의 내용은 모두 ‘임시조선민주주의정부(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를 조직하고 원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기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해야 하며, 이 조직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 5년의 신탁통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신탁통치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한반도가 어느 일국에 의해 일방적인 주도권이 관철되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1945년 당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 모스크바 3상 결정과 신탁통치안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들 역시

결정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련 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반도에 들어가는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1947년에 나온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서 JCS 1769/1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1947년 4월 29일

(중략)

3. 이념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 원조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다.
4. 미국의 방어지역은 대략 태평양에서는 알래스카에서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이며, 대서양에서는 그린란드에서 브라질, 파타고니아 지역이다. 구세계(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위의 방어지역보다 더 높다. 그런데 군수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5. 이념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서양 지역이 가장 공격받기 쉽다. 프랑스와 영국을 독립된 상태로 유지와 미국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독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지원할 경제력의 유지가 전 서반구의 안전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에도 첫 번째로 중요하다.
6. 독일경제, 특히 석탄채굴은 프랑스의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다. 독일경제의 회복은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

(중략)

16. 태평양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방어지역이다.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지난 2년 동안 이념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전투에서 지는 것은 미국의 명예와 세계의 안전에 크게 해롭다. 이 전투를 포기한다면,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자원을 검토해 볼 때 모든 전선을 방어하기가 어렵고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에서의 원조를 위하여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를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이러한 의심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우리의 명예는 높아질 것이다.

17. 한국에 대한 원조는, 여타의 중요한 나라들에 원조가 주어진 후 자원이 남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중략)

19. 일본은 이념전쟁이 일어날 경우, 극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일본은 극동에서 이념적 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앞으로의 전쟁이 이념전쟁이라는 점에서 경제와 군사잠재력의 회복을 위한 미국의 원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21. 우리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따른 원조 순서

(1)영국 (2)프랑스 (3)독일 (4)벨기에 (5)네덜란드 (6)오스트리아 (7)이탈리아 (8)캐나다 (9)터키 (10)그리스 (11)라틴아메리카 (12)스페인 (13)일본 (14)중국 (15)한국 (16)필리핀

(중략)

31. 이 연구는 원조의 긴급성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국무부는 SWNCC를 위해 기초연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원조의 긴급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1)그리스 (2)터키 (3)이탈리아 (4)이란 (5)한국 (6)프랑스 (7)오스트리아 (8)헝가리 (9)영국 (10)벨기에 (11)룩셈부르크 (12)네덜란드 (13)필리핀 (14)포르투갈 (15)체코슬로바키아 (16)폴란드 (17)라틴아메리카 공화국들 (18)캐나다

32.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념전쟁이 발생할 경우 원조는 미국에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나라들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에 대한 그들의 중요성과 원조의 긴급성을 종합하여 순서를 매기면 다음과 같다.

(1)영국 (2)프랑스 (3)독일 (4)이탈리아 (5)그리스 (6)터키 (7)오스트리아 (8)일본 (9)벨기에 (10)네덜란드 (11)라틴아메리카 (12)스페인 (13)한국 (14)중국 (15)필리핀 (16)캐나다 (강조는 필자)²⁵⁾

이 문서는 당시 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원조의 필요성은 매우 긴급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25) JCS 1769/1,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p.71~84.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17항에 있는 “여타의 중요한 나라들에 원조가 주어진 후 자원이 남는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미국 안보와 원조의 긴급성을 종합한 순위에서도 전체 16개국 중 13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 점을 보여준다. 심지어 16항에서는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를 포기할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중국의 공산화 이후에 나온 NSC 8에 가서 그 내용이 변화되지만, 모스크바 3상 결정안과 신탁통치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3상 결정안에 대한 이상과 같은 새로운 이해와 함께 신탁통치안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SWNCC 101/4에는 신탁통치체제가 단지 강대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인들에 의해 신탁통치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체제에 대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탁통치 제도의 성공 여부는 그 제도가 한국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탁통치에 대해 한국인들의 예상되는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이하 필자가 요약 발췌)

- 한국의 독립은 신탁통치 기간 동안 연기될 것이라는 점이 각인되어야 한다.
- 한국이 독립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상황이 조성되자마자 한국에게 유엔의 성원이 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들을 이용한다.
- 독립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을 교육시킨다.
-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 한국인들의 의지가 자유롭게 반영되는 헌법에 의거한 대의기관을 조직한다.²⁶⁾

26) *FRUS 1945 Vol. VI*, pp.1100~1101.

아울러 신탁통치에 의해서 조직되는 행정기관은 4대국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 아니라 통일된 정치적, 경제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함께 해외에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국내의 한국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²⁷⁾

이렇게 이해한다면, 신탁통치안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빠른 시간 내에 독립된 국가를 수립되는 것과는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히려 신탁통치안을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인들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던, 그리고 미군과 소련군이 최대한 빨리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면서 그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한국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은 한반도의 미래를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결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정치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한국민주당의 송진우가 그 내용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3상회의 결정안이 발표된 지 이틀 후에 암살되었다.

5. 글을 나가며

이상에서 미국이 고려하고 있었던 1945년 8월 15일의 한반도에

27) 미군정이 1945년 9월 6일 조직된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동년 11월과 12월에 귀국하는 임시정부에 대해 정부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임을 강조했던 점, 그리고 미 국무부의 경우 이승만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해외에서 귀국하는 한국인 (Koreans returning from outside Korea)’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달려 있지 않지만, 소련에서 들어오는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미주에서 분열되어 있었던 인사들과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 1943년 12월의 카이로 선언에서부터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한국에 관한 결정문에 이르기까지 2년간 제출된 미국의 주요 문서들을 분석했다. 한국의 해방과 분할점령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주요 문서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글은 없었다. 특히 한반도 이외의 지역을 함께 고려하면서 미국의 대한정책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한국인들은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을 의미하며, 이는 독립국가를 곧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이 보는 관점은 달랐다. 미국은 한국을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이는 일본 제국을 분할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며, 더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느 일국에 의해서 배타적인 주도권이 한반도에 관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상황이 다시 동북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46년부터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지만, 1945년 말까지 미국의 모든 대한정책 문서들은 카이로 선언에 기초하여 입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1946년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을 전후한 시기 초기 대한정책의 기본 방침과의 연속성이 이후의 정책에서도 일정정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애치슨 선언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1945년 미군정이 수립된 직후에 있었던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군정의 임시 정치 자문관을 맡고 있었던 랭던(Langdon)은 SWNCC 79/1과 101/4가 규정한 신탁통치안이 미군정에 전달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35년간 일본의 지배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정서와 한국 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²⁸⁾ 아마도 현지에서 한국을 통제하고 있었던 미군정 관계자들의 인식은 랭던의 주장과 동일했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²⁹⁾ 그래서 랭던과 미군정 관계자는 행정위원회와 같은 남한만의 행정기관 수립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³⁰⁾

이 계획은 명백하게 SWNCC 101/4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었다.³¹⁾ 러시아와의 협조에 의한 통일된 기관이 아니라 분할된 지역에 행정위원회를 꾸리는 내용과 함께 해외로부터 들어온 특정 정치 세력들을 이 기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무부는 랭던과 미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SWNCC 결정사항으로부터 일탈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국무부장관은 신탁통치안이 한국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38선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³²⁾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련과 타협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의 내용을 2년이나 끌고 간 이유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즉, 미국으로서는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고, 소련과의 타협을

28)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20, 1945, *FRUS 1945 Vol. VI*, pp.1130~1131.

29) 맥아더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December 16, 1945, *FRUS 1945 Vol. VI*, pp.1144~11481.

30) 위의 문서, pp.1131~1133.

31) 커밍스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초기부터 미군정이 소련과의 합의보다는 단독정부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Cumings,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역사비평사, 2003 참조. 그러나 그의 주장은 미군정이 국무부의 지시를 벗어나서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실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본고에서 분석하고 있는 SWNCC 문서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32)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November 29, 1945, *FRUS 1945 Vol. VI*, pp.1137~1138.

통한 38선의 제거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3상회의 결정서의 내용을 쉽게 폐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반도 내부에서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보수세력들이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3상회의 결정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2년의 기간 동안 이 결정서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미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1945년 8월 15일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전후 대아시아 구상하에서 한국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분리시킨 날이었다. 그리고 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을 독립시킨 것이었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독립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아니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은 한국인이 갖고 있었던 8.15와 달랐던 것이다.

8.15를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인식은 그 이후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였다. 미국의 정책의 근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다양한 정책결정자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정책 결정자들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읽어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미국의 대한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1945년 8월 15일에 범했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5.7.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해방, 카이로 선언, 일반명령 1호, 삼성조정위원회, 모스크바3상협정

<ABSTRACT>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from the US Perspective.

Park Tae-gyun

Liberation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meant from the viewpoint of Koreans that it would provide pivotal opportunit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tate. However, US policy makers had different position. Although Korea should become independent as the Cairo Declaration mentioned, the basic and prior goal was to separate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Japanese Empire and to bother any one specific great power's exclusive initiativ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US did not want to revive the condition which had existed in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y.

Two facts are crucial to understand US policy at that time. First of all, all of US policy documents on Korea was based on the Cairo Declaration until the late, even though changes in the US policy emerged since 1946. At second, in spite of the change in 1946, the goal on Korea which the US had have around 1945 was not given up after 1946. This characteristics emerged very well in Acheson's Speech in early 1950.

Key Words : Korea's Independence, Cairo Declaration, General Order No.1, SWNCC, Moscow Agreement on Korea in 1945

1945년 광복 전후 중국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과 한국

김 지 훈*

1. 머리말
2. 중일전쟁시기 말기 중국국민당정부의 전후 한반도 구상
3. 광복 직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
4. 미·소군정기 국민당정부와 김구·이승만
5. 맺음말

1. 머리말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한국의 독립운동세력은 중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였고, 중국의 정치세력들과도 협력관계에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국민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다. 중국국민당은 여러 측면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독립을 희망하였다. 1943년 8월 중국의 지도자

* 성균관대 연구교수

장제스(蔣介石)는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전후 한국은 응당 독립지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중국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다”¹⁾라고 하였고, 외교부장 송즈원(宋子文)도 1943년 8월 “중국은 일본이 패전한 뒤 동북과 대만이 중국에 귀환(歸還)되기를 희망한다. 이올러 조선이 독립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전쟁에서 중국은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다”²⁾고 하였다.

20세기 전반의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물심 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중국국민당정부는 임시정부를 “사실상 정부로 승인”하였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고 한다.³⁾ 그러나 국민당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도 광복군을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는 등 통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다.⁴⁾ 또한 이 시기 국민정부의 한국정책은 전후 아시아의 맹주로서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화주의와 장개석의 개인적인 야망과 소련의 팽창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연구도 있다.⁵⁾ 중일전쟁시기 국민당과

1) 蔣中正, 「韓國獨立에 對한 中國의 基本政策」(1943. 8. 5),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第1卷』,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542~543쪽.

2) 宋子文, 「中國의 韓國獨立에 對한 主張」,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第1卷』,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542쪽.

3) 이들 연구는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胡春惠, 『韓國獨立運動在中國』, 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1976. 국내의 독립운동사 연구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한중간의 우호관계를 서술하였다.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 해안, 2001;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중국에서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중국이라는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6;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血史新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6; 石源華, 『韓國反日獨立運動史論』,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8.

4) 배경한, 「중일전쟁시기 장개석(蔣介石)·국민정부(國民政府)의 대한정책(對韓政策)」, 『역사학보』 208권, 2010, 271~298쪽.

5) 구대열, 「2차 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8, 1995. 5, 747~769쪽.

중국공산당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⁶⁾도 이루어졌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소군정기까지의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소군정기 해방과 좌우대립, 정부 수립 등 한반도의 상황을 『중앙일보(中央日報)』와 『신보(申報)』 등 중화민국의 언론매체⁷⁾와 『신화일보(新華日報)』 등 중국공산당의 언론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공보(大公報)』 보도를 통해서 중국이 1948년 8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검토하기도 하였다.⁹⁾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도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당시 중국국민당정부와 중국공산당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보도를 하고 있었고, 그 보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문보도만을 통해서 당시 중국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의도와 정책을 실행하려 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민당정부의 외교문서를 통해서 중화민국의 전후 한반도정책 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44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정책구상을 밝힐 수 있었다.¹⁰⁾

6) 김지훈, 「중일전쟁기 중국공산당의 한국인식」, 『역사학보』 194집, 2004; 김지훈, 「중일전쟁시기 해방일보의 한국인식」, 『사립』 25집, 2006; 이재령,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中央日報』『新華日報』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第56輯, 2007 등이 있다.

7) 이재령, 「냉전체제 형성기(1945~1948) 중화민국의 한국인식 - 국민당 언론의 한국 기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9호, 2010; 이재령, 「20세기 중반 한중관계의 이해 - 한국독립에 관한 중화외식의 이중성 -」, 『중국근현대사연구』 29, 2006, 91~116쪽.

8) 이재령, 「미·소군정기 중국공산당의 한국인식 - 1945~1946년 『新華日報』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6집, 2014.

9) 임상범, 「중국의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史叢』 第67輯, 2008. 9.

10) 배경환, 「중일전쟁시기 장개석(蔣介石), 국민정부(國民政府)의 대한정책(對韓

여기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¹¹⁾와 『장중정총통당안자료』¹²⁾ 등 국민당정부의 1945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1944년과 1945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살펴보고, 1945년 8월부터 1948년 초까지의 국민당정부와 김구·이승만의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

2. 중일전쟁시기 말기 중국국민당정부의 전후 한반도 구상

가. 임시정부 승인문제

중일전쟁시기 중국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였다. 이 시기 국민당정부는 대일 항전을 위해서 일본의 북진정책의 근거지인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혁명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¹³⁾ 그러나 중일전쟁시기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였지만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政策』, 『역사학보』 208권, 2010 271~298쪽.

- 11) 국사편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본책 45책과 별책 6책 등 모두 51책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을 간행하였다.
- 12) 장중정총통당안에 대해서는 김영신과 진진금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신 편역,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선인, 2012, 7~17쪽(이하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陳進金, 『檔案與民國政治史의研究 -以臺灣國史館典藏檔案爲例』, 『國際中國學研究』 8, 2005 참조.
- 13) 參政院 宋淵源 등 28명, 「대만과 한국의 혁명운동 후원 및 적의 조속한 붕괴 촉진방안(제안 제27호)」(1940. 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2008, 국사편찬위원회, 2008, 92~93쪽(이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국민당정부는 한반도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944년 9월 충칭(重慶)주재 미국대사와 영국대사의 공동요청으로 미국·영국·중국 세 나라가 한국문제를 연구 토론하며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韓國問題研究綱要草案)」을 작성하였다.¹⁴⁾

1944년 10월 13일 국민당 중앙당부 비서장 우티에청(吳鐵城)은 장제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법과 향후 한국 정세 변화에 대응할 방법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한국문제에 대해 미국·영국·소련과 행동을 통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미국·영국·소련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중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식으로 귀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임정 요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귀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 서울(漢城)에 인원을 파견하여 연락과 관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¹⁵⁾

국민당의 우티에청이 한국문제에 대해 장제스에게 보고를 한 다음날인 1944년 10월 14일 중국 외교부도 우귀전(吳國楨) 차장(次長)을 중심으로 외교관료 9명이 참석한 한국문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¹⁶⁾ 이 회의에서는 각국 대사관과 재외공관, 도서관과 연구기관

14)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韓國問題研究綱要草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배경한, 앞의 글, 287~288쪽.

15) 吳鐵城, 「임정 승인 문제에 관해 吳鐵城이 장개석 위원장에게 올린 보고」(1944. 10.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7쪽.

16) 국사편찬위원회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권에 수록된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 번역문에는 이 회의가 1941년 10월 14일에 개최

등을 통해서 한국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제출한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정치방면에서는 문자해독 능력이 있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독립 능력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둘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원을 통해 영도 능력을 갖춘 한인 지도자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전후 한반도에 국제감독기구를 둘 것인지, 즉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고문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국외교부는 한반도 문제 대처 방안을 검토하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각각의 방안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유불리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한국문제토론회에서는 3명의 외교부 관료에게 한국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 1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¹⁷⁾

또한 토론회에서는 중국정부가 한국의 독립을 숭선하여 국제적으로 보증할 것인가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외에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는 군령부와 경제부, 재정부, 양식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구하기로 하였다.¹⁸⁾

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의 원문에는 10월 14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자료집 원문 17쪽). 그러나 이 한국문제토론회 자료 원문에는 논의사항에 “適當時期” 문제에 관하여”라는 부분이 있다(19쪽). ‘적당한 시기’는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시기를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카이로회담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는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 문건이 제출된 1944년 9월 이후인 10월에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 10.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0~12쪽.

17)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 10.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0~12쪽.

18)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 10.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44년 10월 27일 장제스는 외교부에 미국과 영국대사관에서 보낸 한국문제 공동연구에 관한 강요초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외교부에 미국과 영국 당국과 의견을 교환할 때 한국의 조속한 독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기존정책을 쉽게 포기한다면 한국인들이 실망을 하여 다른 외국(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제스는 전후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하에 두는 문제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면 이후 동삼성(東三省)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¹⁹⁾

1944년 10월 31일 중국외교부는 다시 ‘한국문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²⁰⁾ 이 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양원쥬(楊雲竹)·쑨빙치엔(孫秉乾)·린딩핑(林定平) 등 외교부 관료가 국제감독기구 설치, 전후 즉각 한국독립, 고문제도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양원쥬(楊雲竹)는 「한국독립방안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하면서 한국 국토를 점령한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영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한국독립을 승인하는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연합군이 한국 영토를 점령한 순간부터 한국에 군정을 실시해야 하며 군정기간은 국제적 협조 아래 한국에 독립기구가 성립될 때까지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중국과 미국, 영국이 일본이 투항하면 즉시 새로운 국제기구 내에 ‘대한국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국은 1명 내지 3명의 동수 위원을 위원회에 파견하며 위원회 주석 1명은 미국측 위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한국제위원회는 한국민족위원회 설립에 협조하고 민족위원회에서 주석(혹은 총통)을 선출

25, 12쪽.

19) 蔣介石, 「미·영과의 한국문제 협의에서 기존정책을 견지할 것을 지시」(1944. 10. 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0쪽.

20)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5~126쪽.

하여 일본통치시기의 총독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양원주는 민족위원회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헌법을 기초하며 대표대회를 열어 정식 정부를 수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위원회의 존치기간은 3~5년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수립되면 즉시 해체하도록 하였다.

양원주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국이 단독으로 승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임시정부에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장래 한국민족위원회 혹은 시정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¹⁾

양원주는 중국과 미국, 영국이 대한국제위원회라는 국제감독기구를 두어 한반도를 통치하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준비하고 헌법을 기초하며 대표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시키자는 방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절하게 지원하여 전후 한반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친중국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쑨빙치엔(孫秉乾)은 「한국독립방안」에서 연합군의 한반도 진주와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전후 중국이 최소 20~30년 동안 국가건설을 위한 평화 시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이자 동북 장악을 기도하는 소련에게는 이 지역으로 통하는 복도와 같은 곳이며 중국의 입장에서 병풍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전후 중국의 국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한국문제에 참여하는 경우 소련과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를 침략하려는 야심을 가지지 않은 미국이 한국의 독립과 건국의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쑨빙치엔은 한국에 진주한 연합군이 행정사무를 대행할 군정부를 조직하고 한국독립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체하도록 계획

21) 楊雲竹, 「한국독립방안에 관하여」(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70~173쪽.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민족해방위원회로 개조한 후 한국 광복군을 인솔하고 연합군을 따라 한국에 들어가 군정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연합군은 한국 영토를 해방시킨 뒤 카이로선언에 근거하여 한국의 독립 승인을 선포하고, 한국민족해방위원회는 동맹국이 한국 독립을 선언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개칭하도록 하였다.

쑨빙치엔의 방안에 의하면 동맹국 군대의 주된 책임은 미군이 담당하며 중국군은 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도, 미군은 함경북도·함경남도·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 영국군은 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에 분할하여 주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군대 주둔은 주둔군 협정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²²⁾

그는 소련이 참전할 경우 동맹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및 영토주권과 행정의 완전성을 공동으로 보증하며 동맹국 군대를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방과 군사장비 확충은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였다.²³⁾

소련이 참전한 경우에는 각국이 한국의 독립과 영토주권 등을 공동으로 보증하고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철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의 방안은 한반도에서 가능하면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군사 부문에서도 미국이 주도하기를 기대하였다.

쑨빙치엔은 국력이 약한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소련과 충돌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반도에 중국과 미국, 영국이 나누어 주둔하면서 군정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해

22) 孫秉乾, 「한국독립방안」(소련이 참전하지 않은 경우), (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60~164쪽.

23) 孫秉乾, 「한국독립방안」(소련의 참전을 가정한 경우), (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64쪽.

방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맹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이후 한국 민족해방위원회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개칭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린딩핑(林定平)은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초안」에서 전후 한국에 고문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합군이 한국 영토로 진입을 개시하면 중국·미국·영국은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동작전단체로 승인하고 임시정부를 한국민족해방위원회로 개칭하여 광복군을 인솔하고 한국 영내로 진입하며, 연합군의 지휘 아래 각종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반도에 진주한 연합군은 군정부를 조직하여 군정통치를 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연합군에 투항할 때 한국독립 조항을 정전협정 조문에 포함시키고 중국·미국·영국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 군정을 마감하면 한국민족해방위원회를 기초로 한국 국내의 인사를 흡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린딩핑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중국과 미국, 영국에서 같은 수의 정치·경제·교육·교통·산업 등 각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고문위원회의 주임위원은 1명으로 하고, 가능하면 미국이 추천한 고문 가운데 선임하며, 부주임위원 2명은 중국과 영국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서 각 1명씩 선임하고, 소련이 고문위원회에 참가하면 부주임위원 3명을 두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고문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건국에 관련된 중요 조치에 대해 고문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린딩핑은 중국과 미국, 영국이 같은 수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군대가 한국의 북부(함경남도·함경북도·평안남도·평안북도), 미국군대가 한국 중부(황해도·강원도·

경상북도·충청북도), 영국군대가 한국 남부(경상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지역 방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²⁴⁾

이상 3인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외교부는 한국의 독립 문제는 카이로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신속한 독립은 한국인들의 오랜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소련의 대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인솔하여 연합군을 따라 한국에 귀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⁵⁾

외교부의 의견에 의하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뒤에는 즉시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중국과 미국, 영국, 혹은 소련이 새로운 한국정부를 승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에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국제기구에서 외국인 고문을 추천하여 한국정부의 사업에 참가하여 협조하는 것이 국제공동관리(신탁통치)라는 자극적인 형식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²⁶⁾

중국외교부는 린딩핑이 한국 경내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켜 영토 안전을 책임지자고 한 것에 대해서 1894년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1904년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과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결국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고려하여 외국군대 주둔을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외교부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육군을 파견하여 한국에 주둔시키고 미국이 해군과 공군을 파견하여 한국

24) 林定平,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초안」(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53~159쪽.

25)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73~174쪽.

26)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74쪽.

주변을 감시한다면 한국을 방위하기에 충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²⁷⁾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외교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기지로 변하여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변경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천연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한국이 독립자주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독립국가로 자리할 때 비로소 일본의 권토중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한국문제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²⁸⁾

10월 31일 회의에서는 앞서 보고에서 논의된 국제위원회와 민족위원회의 권한, 군정부의 조직과 권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독립과 국토의 완전성을 국제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미국·영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임시정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강화와 군사적 실력 증대, 임시정부가 세계 각지의 한국독립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²⁹⁾

1944년 11월 15일 장제스는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에 대한 논의 결과 중국이 체결할 방안 5개항과 협의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27)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5, 174~175쪽.

28)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5, 175쪽.

29)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10.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5~126쪽.

최후의 선에 관한 내정방침 6개항을 승인하였다.³⁰⁾

우리가 제출할 방안 :

- (一) 盟軍의 군사점령기간 한국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이 기간 민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한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한국 '임시정권'의 존재를 승인하여 한국독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중·미·영 삼국은 위에 언급한 '임시정권'의 승인문제에 관해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 만일 소련이 협의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가를 환영한다.
- (二) 대일군사작전이 종료된 뒤 한국의 치안유지를 위해 맹군이 한국 국내의 중요거점을 점령하도록 한다. 점령기간은 한국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할 때까지로 한다.
- (三) 한국정부를 정식승인한 뒤에는 중·미·영 삼국이 한국정부의 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중·미·영 삼국은 한국정부를 정식승인하기 전에 상호 충분한 협의를 갖고 보조를 일치시킨다. 만일 소련이 협의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가를 환영한다.
- (四) 장래 국제평화조직이 성립되면 즉각 한국이 이 조직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이 국제평화조직의 회원국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의 독립지위 또한 국제적 보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五) 국제평화조직에 가입한 뒤 한국의 독립문제는 진일보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평화조직은 한국의 독립을 보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선에 관한 내정방침 :

- (一) 위 방안의 제1항
- (二) 위 방안의 제2항
- (三) 한국정부를 정식승인한 뒤 마땅히 중·미·영 삼국이 동시에 임시국제협조제도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중·미·영 삼국은 한국정부 정식승인문제를 사전에 상호 협의하고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 만일 소련이 협의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가

30) 蔣介石,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관련한 국방최고위원회의 보고와 장개석의 의견」(1944. 11.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3쪽.

를 환영한다.

(四) 위 방안의 제4항

(五) 국제협조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미·영 삼국을 비롯한 관계국의 상의를 거쳐 집행을 책임진다(우리의 경우 우선 외교부에서 방법초안을 마련하여 결재를 받도록 한다).

(六) 국제협조제도는 참가국 다수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³¹⁾

1944년 하반기 중국국민당정부는 일본의 패전이 다가오면서 전후 한반도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동맹국과 상호 협의를 하여 일치된 행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승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정부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하여 한국에 친중정부를 구성하고 가능한 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하였다. 중국외교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초점은 한반도가 일본과 소련 등의 국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친중적인 독립정부가 구성되는 것이었다.

국민당정부의 외교관료들은 미국·영국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이를 기초로 독립정부를 구성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당정부는 미국·영국 등과 함께 한반도에 중국군을 파병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확대 개편하여 신생 정부의 기초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소련군이 참전하고 일본이 항복하기 전날인 8월 14일에 국민당정부와 소련이 중소조약을 체결하면서 전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현실화하였다.

31) 「국방최고위원회의 보고서」(1944. 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3쪽.

3. 광복 직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

1945년 8월 21일 주중미군 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Coady Wedemeyer)는 장제스에게 미군 제24군이 주한미군 총지휘부로 지명되었다는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웨드마이어는 장제스에게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받은 전문에 따르면 미군 제24군이 주한미군 총지휘부로 지명되어 북위 38도선 이남의 접수와 일본군의 투항 사무를 관장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³²⁾

1945년 9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중국 외교부의 린딩핑(林定平)을 만나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원들이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린딩핑(林定平)은 중국정부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임시정부를 돕도록 관계 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귀국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린딩핑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³⁾

1945년 9월 24일 장제스(蔣介石)는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고 싶어하였다. 장제스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협의한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공동으로 한국에 훈정정부(訓政政府)가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

장제스의 기본 입장은 충칭(重慶)에 있던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초로 조직을 확대하여 정식정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32) 웨드마이어, 「魏德邁上蔣中正美軍第二十四軍總指揮已被任爲駐朝鮮軍總指揮」(1945. 8. 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쪽.

33) 林定平, 「중국의교부를 방문한 조소앙 및 이정호와의 담화 요점」(1945. 9.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68쪽.

장제스는 기존의 정부를 제쳐두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경우 공산당에 의해 조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새로 구성될 한국정부의 기초로 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 장제스는 워싱턴 주재 주미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 1900~1978)에게 미국정부의 대한 정책을 조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³⁴⁾

중국민당 정부는 충칭(重慶)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미래에 조직될 한국 정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중화민국 주미대사였던 웨이다오밍(魏道明 1900~1978)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회담에서도 표명되었다. 웨이다오밍은 임시정부가 미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였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도 한국의 군사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인자격으로 행정사무에 참여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³⁵⁾

이 시기 국민당정부의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9월 26일 오전 9시 군사위원회는 국민정부의 관련 부처를 소집하여 한국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 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귀국을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한국 내에 친중국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광복군이 한국국방군의 모태로 성장시킬 대책을 논의하였다.³⁶⁾

이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문제 계획대강」은 다음과 같다.

34) 蔣介石, 「蔣中正電魏道明美國對朝鮮之政策究竟如何請杜魯門總統明示方針及四國協助組織訓正政府不如以其在重慶之原有政府為基礎而予以擴充為妥」(1945. 9. 24),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249~250쪽.

35) 魏道明, 「魏道明電蔣中正關於美對朝鮮方針今訪代理國務卿愛琴遜詳談美現時步驟擬先設中美英蘇四國託管制其原則前經與宋子文商談并經英蘇贊同現正草擬辦法」(1945. 9. 2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241~242쪽.

36) 軍事委員會, 「한국문제토론회에 출석을 요청」(1945. 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7쪽.

- 一. 대한정책을 새로 검토하고 방침을 정하여 공작계획을 확정한다.
- 二. 한국의 국방군 건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한국 국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현재의 한국광복군을 기본병력으로 삼고 일본군에서 복무하다 투항한 한국 국적 사병을 위주로 편성한다).
- 三. 고문단(혹은 군사·정치·경제 등 방면의 전문가를 포함한 군사대표단)을 조직하여 한국에 파견한다. 이에 앞서 군사위원회에서 특파원을 서울(漢城)에 파견하여 공작거점을 확보하도록 한다.
- 四. 한국과 조차(租借)법안을 성립하고, 반조차법안의 실시를 요구한다.
- 五. 한국이 장기적으로 軍·政 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아국의 중요 군·정 교육기관에 한인 학생의 특별입학을 허용한다.
- 六. 한국이 건군의 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베이핑(北平)·텐진(天津) 일대 혹은 한국 내지에 군관학교를 설립하는데 협조한다.
- 七.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 八. 기타³⁷⁾

군사위원회에서 개최한 이 회의는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문제를 논의하였다. 군사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진주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신속하게 대한(對韓)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상황을 파악하였다.

군사위원회는 한국국방군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국 정내에 3~5개 사단을 편성하여 소련군과 산시(陝西) 북부의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한인 병력에 필적할 만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부대는 중국에 파견된 일본군 내 한인 사병들을 1개월 정도 훈련시킨 후 일본군으로부터 몰수한 무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들 부대의 지휘관은 한국광복군 간부들을 기간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광복군을 개편하고 베이핑(北平), 텐진(天津), 난징(南京), 상하이(上海)와 연해 지역에 집중시켜 소련군 점령지역을 피해 해상으로 한국에 진입시키도록 하였다.

37) 軍事委員會, 「한국문제 계획대강」(1945. 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8쪽.

군사위원회는 한국의 우수한 청년유학생을 받아들여 한국 내 친 중국정권을 세우고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군사위원회는 한국이 건군을 위한 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베이핑(北平), 텐진(天津) 일대 혹은 한국에 군관학교를 설립 하는데 협조해야 하고 군관학교 설립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사위원회에서 특파원을 서울(漢城)에 파견하여 공작거점을 확보하고, 고문단 혹은 군사·정치·경제 등 방면의 전문가를 포함한 군사대표단을 조직하여 한국에 파견하자고 하였다.

경제부분에서는 한국과 조차법안을 체결하여 한국을 원조하고 이후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 상환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요구사항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인 교포를 위무할 수 있도록 각 수복구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하고, 투항한 한인 사병들을 판별하는데 한국광복군이 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광복군이 중국군의 수송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복군에 수송차량과 유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광복군이 요청한 권총과 실탄 지급 요구는 거절하였지만 광복군에 5천만 위안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교민위무를 위해 요청한 5백만 위안을 차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⁸⁾

그러나 이 군사위원회의 「한국문제 계획대강」은 너무 군사문제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차법안을 체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³⁹⁾ 이 군사위원회 회의는 각 기관에서 대강의

38) 군사위원회, 「한국문제 및 월남 당파 지도문제 협의 토론회 강목 및 군사위원회 의견」(1945. 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42~146쪽.

39) 于望德, 「한국문제토론회 참가 경과보고」(1945. 9. 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내용에 대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1945년 11월 7일 장제스는 행정원의 송즈원(宋子文)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각 당파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혁명 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시키고 중한의 우호관계를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⁴⁰⁾ 장개석은 한국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가 필요하고 광복군에 군대와 정부 인원으로 고문단을 파견하며, 서울에 군사연락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송즈원에게 지시하였다.⁴¹⁾

샤오위린(邵毓麟)은 장제스에게 한국과 중국이 순망치한의 관계이며 한국의 안위가 중국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이 중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한국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국문제의 처리원칙」을 제시하였다.

- (一) 미국과 소련의 세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남북한의 대립을 해소시키고 통일을 촉진한다.
- (二) 한국 내 친중국세력에 대한 지원은 일관되게 한국독립당을 중심대상으로 하며, 한국정치 세력의 단결과 합작을 촉진시킨다.
- (三)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고 국내외 한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법민주정부가 한국에 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발전을 촉진시킨다.
- (四) 장래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뒤 자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건군작업에 적극 협조한다.

25, 128쪽.

40) 蔣介石, 「한국문제 처리방안」,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4쪽.

41) 蔣介石, 「군사위원회, 군사위원회, 韓國문제의 방안 강구 電文」(1945. 11.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5쪽.

- (五) 장래 완전독립을 이루었을 때 행정인재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이 행정간부를 훈련시키는데 적극 협조한다.
- (六)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카이로선언의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한 기준이 확정될 수 있도록 미·소·영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장래 열릴 평화회의 혹은 연합국회의에서 한국독립의 명확한 시간표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향후 미군과 소련군을 한반도에서 철군시킬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⁴²⁾

샤오위린은 한국 내 친중국세력인 한국독립당을 지원하고 합법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한국의 건군과 행정간부를 훈련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카이로 선언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미국, 소련, 영국 등과 협의를 하여 유엔에서 한국독립의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군과 소련군을 한반도에서 철군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샤오위린은 중국정부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로 중국 외교부가 미·소 당국과 접촉하여 김구의 정치조직을 지지하거나 비공식적인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중국 내에 남아있는 광복군을 미국과 협의하여 한국으로 귀환시켜 지방보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물들과 한인 교포들을 귀국시켜 친중국세력을 증강시켜야 하고 한인 청년을 선발하여 중앙정치학교 등에 유학시켜 한국의 군대와 정부, 사회의 중견 인물로 양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에 파견하는 주한국대표단은 한국 내 친중국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에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³⁾

42) 邵毓麟, 「한국문제의 대책」(1945.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40쪽.

43) 邵毓麟, 「한국문제의 대책」(1945.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40쪽.

샤오위린은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없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군하고 한국이 신속하게 독립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친중국 정치세력으로 한독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의 군대건설과 행정을 담당할 인재를 중국에 유학시키려 하였다.

장제스는 샤오위린의 제안을 보고 1945년 12월 5일 한국문제에 대해 우티에청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미·소 두 나라 군대가 각기 한반도의 남과 북에 진주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국제정책은 웅당 미국과 긴밀한 합작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한국에 진주하고 있는 미·소 군사당국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외교적으로 초월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미·소 두 나라 관계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한국 내 친중국 세력을 육성하고, 한국 내 각 파벌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 가운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동북·화중·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3백만 한교들을 확실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후 한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한정책은 필히 내정과 외교를 통일적으로 운용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샤오위린(邵曉麟) 동지를 중장 계급의 군사위원회위원장 대표로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원 몇 명과 함께 漢城에 주재하게 될 소 대표는 주한 미·소군과 연계를 맺는 한편으로 한국 실정을 관찰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복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장래 우리의 대한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교 관리 부분은 이미 외교부를 통해 미·소 두 나라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소위린 동지가 한교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할 기구의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소 동지의 의견에 의하면 이 기구는 한교와 관련한 여러 사무를 담당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적성 한교의 재산을 처리해서 한국광복군을 확대하고 빈궁한 한교의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⁴⁴⁾

장제스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한 상황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진주하고 있는 마·소 군사당국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두 나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 내 친중국 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북과 화중 대만 지역의 3백만 한인들을 국민당정부쪽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샤오위린을 중장 계급의 군사위원회 대표로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중국내 한인 교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성(敵性) 한인 교포들의 재산을 처리해서 한국광복군을 확대하고 빈곤한 한인들의 귀국을 돕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유관 기관의 정기적인 모임은 중앙비서처에서 주관하기로 하였고, 장제스의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광복군에 고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하였다. 주한연락고문으로는 샤오위린(邵毓麟)이 지목되었지만⁴⁵⁾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부임하지는 못하였다.

4. 미·소군정기 국민당정부와 김구·이승만

가. 국민당정부와 임시정부

1945년 8월 광복후 한반도에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는 긴박한

44) 蔣介石,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국민정부의 전문」(1945.1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8~139쪽.

45) 軍事委員會, 「한국문제 처리방안 관련 公函」(1945. 12. 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6~137쪽.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는 귀국을 서두르고 있었다.⁴⁶⁾ 김구는 국민당 정부에 귀국을 위한 1~2대의 비행기 제공과 3억 위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장제스가 비준하지 않았다. 9월 21일에 김구는 국민당 비서장 우티에청(吳鐵城)에게 다시 5천만 위안의 차관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⁴⁷⁾

1945년 9월 21일 우티에청(吳鐵城)은 장제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가 5천만 위안의 차관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가 귀국을 준비하고 있고, 각지에 간부를 파견하여 투항한 한인 청년들을 조직하려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5천만 위안을 차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하였다. 우티에청은 김구 주석이 요청한 5천만 위안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⁴⁸⁾

1945년 9월 26일 김구는 장제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원과 한국인의 귀국에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위안의 차관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김구는 이 편지에서 한국 국내에 각종 당파와 단체가 난립하여 혼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신속하게 귀국하려 하며 이를 위해 항공편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김구는 중국이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임시정부를 비정식의 혁명적 과도정권으로 묵인하고 귀국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귀국 후에 임시정부가 동맹국의 협조 아래 각 분야의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과도정권을 확대 조직한 뒤 민선의 정식정부를 설립하려 한다고 하였다.

김구는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이 영구적으로 합작할 필요가 있고

46) 「韓臨時政府將返國金九發表當前政策」(1945. 9. 8), 『大公報』, 重慶.

47)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元」(1945. 9. 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324쪽.

48)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元」(1945. 9. 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324쪽.

항구적인 우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대표를 선정하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의 협력과 일본군으로 끌려온 한인 사병을 한국광복군에 넘겨주고, 충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귀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구는 임시정부의 업무 처리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므로 중국정부에서 3억 위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⁴⁹⁾

1945년 10월 15일 우티에청은 장제스에게 임시정부가 귀국하면서 대형수송기와 비용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주석이 우티에청에게 임시정부의 부장급 이상 인원과 비서, 경호원 등 29명과 중요 공문서를 담은 상자 10여 개와 휴대품 등을 운송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 1~2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의 귀국과 귀국 후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5천만 위안과 50만 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귀국 후 중국국민당과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송신기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0월 19일 장제스는 항공위원회를 통해 비행기 1대를 제공하고 5천만 위안과 2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비준하였다.⁵⁰⁾ 이외에 중국은 무전기와 기술자 3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⁵¹⁾ 10월 20일 장제스는 김구 주석에게 1억 위안을 제공하도록 하고 중앙은행 업무국을 통해서 우선 5,400만 위안(20만 달러)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⁵²⁾

49) 金九, 「金九函蔣中正請求徵得美國同義運在渝同人僑民返國及撥借三萬萬元」(1945. 9. 2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4~325쪽.

50)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請照准韓方所請撥派大運輸機運送人員公文核撥借款」(1945. 10. 15),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4~326쪽.

51) 金九, 「無電機支給과 技術者派遣通報에 對한 回信」(1945.11.03),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第1卷』,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469쪽.

52)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元」

중국은 미국에 임시정부 인사들의 귀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맥아더장군은 한국인사들의 한국입국을 허용하였고, 중국전구의 미군총사령부에서도 임시정부 인사들의 귀국에 협조하겠다고 통보하였다.⁵³⁾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 등 일행 29명은 11월 5일 충칭(重慶)을 출발하여 상하이를 거쳐서 귀국하였다.

임시정부는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정치자금을 수령하였다.⁵⁴⁾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할 당시 장제스가 김구에게 제공한 20만 달러는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상당한 거액이었다.

임시정부는 한국을 하면서 중국 국민당정부와 교섭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을 설립하였다. 1945년 11월 1일 박찬익(朴贊翊)⁵⁵⁾을 단장으로, 민필호(閔弼鎬), 이청천(李靑天)이 대표를 담당하였고, 비서처(비서처장 金恩忠), 교무처(교무처장 朴永堯), 군무처(군무처장 이청천), 총무처(총무처장 閔泳玖) 등의 조직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교무처와 군무처가 각각 교포 업무와 광복군 확군을 책임지고 있었다.⁵⁶⁾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은 임시정부의 잔무처리와 중국내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귀국 등 제반 문제를 중국정부와 협의

(1945. 9. 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324쪽.

53) 王世杰, 「金九電蔣中正感謝中國相助返國并請邵毓麟同行」(1945. 11. 8),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7쪽.

5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2월에 김연수로부터 5백만 원, 박홍식으로부터 2백만 원 그 외 현금 등으로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천일파였던 민대식(閔大植), 민규식(閔奎植), 민병도(閔丙燾) 3형제에게서 건국자금 3백만 원을 제공받았다. 12월 16일 김성수의 경성방직과 삼양사(三養社)는 각각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임시정부 재무부장 조완구에게 기증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 국내에서 임시정부에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정병준, 「대한경제보국회(大韓經濟輔國會)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현실』 33, 1999.9, 285쪽.

55) 중국에서 박찬익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성주현, 「남파 박찬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사학연구』 94, 2010. 3, 117~146쪽.

56) 김정인, 「해방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대미관계 임정_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4, 1997.6, 127쪽.

하여 처리하였다.⁵⁷⁾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은 중국 국민당정부를 상대하는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귀국한 이후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에 매달 5백만 위안의 보조비를 지급하였다. 국민당정부의 보조비는 참모본부에서 국민당 중앙당부 비서처를 통해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에 전달되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좌우연합의 틀을 유지하고 있던 임시정부세력은 노선 갈등 속에서 김원봉 등 탈퇴하면서 점차 김구의 한독당 계열로 축소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도 1947년 1월 한국 주화대표단으로 개칭되었다.⁵⁸⁾

그러나 국민당 비서처는 “한국의 정국이 지금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땅히 기정 방침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⁵⁹⁾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참모총장 천청(陳誠)은 장제스에게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보조비를 1천만 위안으로 증액할 것을 건의하여 증액을 허락받고 1947년 1월부터 매월 1천만 위안을 지급하였다. 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국내에 반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화대표단의 박찬익(濮純) 등을 통해서 김구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장제스가 임시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미화 20만 달러는 임시정부가 귀국한 후 여러 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었다.⁶⁰⁾ 김구는 이 돈을 휴대하고 귀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뉴욕의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하고

57) 「韓臨時政府將返國」(1945. 10. 20), 『大公報』, 重慶.

58) 김정인, 「해방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대미관계 임정_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4, 1997. 6, 147쪽.

59) 陳誠, 「眞性呈蔣中正可否將韓國臨時政府補助費每月增爲一千萬元」(1947. 2. 2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5~336쪽.

60)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美元仍暫存我大使館俟匯兌通後再匯交韓國臨時政府」(1946. 3. 1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1쪽.

있다가 한국으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미국과 한국 사이에 송금이 불가능하였다.⁶¹⁾ 당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송금이 불가능한데다가 미국 측에서 수령할 수 있는 외환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구는 미군정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었고⁶²⁾ 미군정의 협조없이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20만 달러를 반입할 수도 없었다.⁶³⁾

김구는 장제스가 제공한 자금 등 임시정부가 모금한 자금을 이승만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 1946년 1월 김구는 이승만에게 임시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였고 이승만이 경제보국회를 통해 1백만원을 앞선해 주었다고 한다.⁶⁴⁾

이 시기 미국의 중국대사관에 보관되어 있던 20만 달러를 김구가 이승만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⁶⁵⁾ 이후 이승만은 국민당정부에 이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1946년 2월 15일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편지를 보내 주미 중국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에게 지시하여 미화 20만 달러를 자신 명의로 미국안전신탁공사(American Security and Trust Company)에 예치하고 자신의 대리인 임병직(林炳稷) 대령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하지 장군이 서울에서 거행된

61) 吳鼎昌, 「中執委秘書處呈」(1947. 2. 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3쪽.

62) 정병준, 「1945~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李承晩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2000. 6, 196쪽.

63) 이승만은 미전계 학교와 선교사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였지만 미군정 당국에서 이승만에 대한 횡령혐의 조사와 체포시도를 중단시켰다. 브루스 커밍스 저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하, 청사, 서울, 1986, 52쪽.

64) 정병준, 「대한경제보국회(大韓經濟輔國會)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 현실』 33, 1999. 9, 285쪽.

65) 당시 장제스가 김구의 귀국시 제공한 자금을 이승만이 ‘대미 외교’와 독립운동에 필요하다며 가져갔다는 소문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정병준, 「1945~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李承晩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2000. 6, 215쪽.

장엄한 의식에서 남한민주동맹을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자신이 이 조직의 주석이고 김규식과 김구 두 사람이 부주석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⁶⁶⁾

미화 20만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이승만의 요청에 대해 국민당 중앙당부 비서장 우티에청은 임시정부 주화대표단과 상의한 결과 이 돈을 당분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외화 송금이 가능하게 되면 한국임시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⁶⁷⁾

1946년 연말에도 이승만은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의 천즈마이(陳之邁) 참사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 노력하였지만 미국 외교당국이 삼상회의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고집하여 진전이 없고, 파괴를 일삼는 적색분자들이 날뛰고 있으며 외국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편지에서 이승만은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 예치되어 있는 20만 달러를 즉시 자신이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⁶⁸⁾

김구는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의 박찬익(濮純)을 통해서 국민당정부와 교섭을 하여 이 돈을 잠시 중국은행(中國銀行)에 예치하도록 하였지만 최종적인 처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티에청은 장제스에게 애초에 이 돈이 김구주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구 본인의 수령인 변경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이승만이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였다.⁶⁹⁾

우티에청이 장제스에게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김구가

66) 李承晩, 「李承晩電蔣中正請以鄙人名義存入美元霍奇已承認南韓民主同盟」(1946. 2. 15),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0~331쪽.

67)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美元仍暫存我大使館俟匯兌通後再匯交韓國臨時政府」(1946. 3. 1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1쪽.

68) 陶希聖, 「陶希聖呈蔣中正轉呈李承晩致陳之邁參祀函」(1946. 12. 30),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3쪽.

69) 吳鼎昌, 「中執委秘書處呈」(1947. 2. 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3쪽.

국민당정부에 20만 달러를 이승만에게 지급하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구는 이승만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편지를 장제스에게 보냈지만 20만 달러를 이승만에게 지급해 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다.

1947년 6월 1일 김구는 한국주재 중국총영사 류위완(劉馭萬)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한국 주화대표단 박찬익(濮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달러를 중국은행에 예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우티에청은 1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⁷⁰⁾

나. 국민당정부와 이승만

이승만은 1946년 말 방미 이후 귀국 길에 직접 중국을 방문하려 하였다. 1947년 1월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귀국하는 길에 난징(南京)에 들러 만나고 싶다는 전보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장제스는 미국주재 중국대사 구웨이쥔(顧維鈞)을 통해 예방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⁷¹⁾ 이에 따라 구웨이쥔은 이승만과 장기영(張基永), 김동성(金東成), 미국인 프라이어(MRS. G. Frye) 등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였다.⁷²⁾

1947년 2월 22일 김구는 장제스에게 이승만이 난징을 방문하여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하니 협조를 제공해 달라는 전문을 보냈다.⁷³⁾

1947년 4월 7일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전문을 보내 노스웨스트

70) 吳鐵城, 「吳鐵城電蔣中正已函中國銀行撥付十萬美元給濮純餘十萬暫存」(1947. 6. 1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8~349쪽.

71) 李承晩, 「李承晩電蔣中正二月上旬將自美返朝鮮擬經南京晉謁商談」(1947. 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4~335쪽.

72) 顧維鈞, 「顧維鈞電外交早韓李承晩擬於本月下旬飛華擬發給來華簽證」(1947. 2. 1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4~335쪽.

73) 金九, 「金九電蔣中正李承晩將至南京商談朝鮮獨立問題」(1947. 2. 2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6쪽.

편으로 4월 11일 상하이(上海)에 도착하여 중국에 이틀간 머물다 도쿄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장제스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⁷⁴⁾

한편 이승만의 중국방문을 둘러싸고 중국정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1947년 3월 20일 국민정부 문관장 우딩창(吳鼎昌)은 미국에 주재할 때 이승만과 자주 접촉하였던 외교부 아동사(亞東司)의 양원주(楊雲竹) 사장(司長)이 작성한 이승만 관련 첨부 문건을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

양원주가 작성한 첨부 문건은 이승만이 미국과 한국에서 한 활동과 미국 조야의 여론, 임시정부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보고는 이승만에 대해 한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임시정부의 주미대표로 활동한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고 소련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의 한인단체 가운데 3개 단체는 이승만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승만을 반대하는 연합위원회의 회원이 천여 명으로 이승만이 창립한 동지회보다 세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미국 관방은 이승만이 고령(72~3세)인데다 종종 반미언동을 일삼는 관계로 이승만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미 국무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미국 관방은 이승만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며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는 이승만과 임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승만이 한국임시정부의 김구와 돈독한 관계였지만 미국에서 모금활동이 실통치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1945년 임시정부가 미주의 한인 조직인

74) 李承晩, 「李承晩電蔣中正將於四月十一日抵滬擬留華兩日屆時請賜延見」(1947. 4. 7), 『장충청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1쪽.

연합위위원회와의 연계를 맺고자 할 때 이승만이 임시정부가 작성한 명단에 불만을 품고 미주 한인 사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이승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탁통치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김성수(한국의 자산가, 친일파)가 주도하는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는 이승만이 각 당파와 연합하여 민주평의회를 조직하고 자신이 주석을 맡았다고 하였다.⁷⁵⁾

1947년 3월 31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군사참모위원회 중국정부대표 허잉친(何應欽)은 이승만이 고집이 세서 미국의 한인들에게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으므로 너무 융성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⁷⁶⁾

1947년 4월 2일 주미 중국대사 구웨이진(顧維鈞)도 미국정부와 주한 미군 당국이 모두 이승만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승만은 반미언론을 발표하는데다 한인들을 선동하여 미군철수와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권을 잡더라도 미국이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구웨이진은 미국의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승만에 대한 예우는 적절한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⁷⁷⁾

1947년 4월 7일 우딩창도 미국 관방이 이승만이 반미 발언을 하여 이승만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우딩창은 미국

75) 吳鼎昌, 「吳鼎昌呈蔣中正韓國新進黨請重開美蘇委員會及李承晚資料」(1947. 3. 20),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9~341쪽.

76) 兪濟時, 「兪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쪽.

77) 兪濟時, 「兪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쪽.

관방이 이승만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며 이씨가 충분한 호소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⁷⁸⁾

그러나 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대리소장이고 군사위원회 주한대표였던 샤오위린(邵毓麟)은 1947년 4월 3일 이승만과 김구는 한국독립운동계의 지도자로 돈독한 우의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승만이 중국을 방문하여 남한 임시 정부 수립에 앞서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승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샤오위린은 이승만이 중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⁷⁹⁾

1947년 4월 11일 샤오위린(邵毓麟)은 난징에서 이승만을 만나고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승만은 장제스가 아시아의 민족 영수로 모든 한국인이 존경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과 김구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7월에 임시정부가 조직되면 8월 경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승만은 남한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행정은 한인이 주관하고 군정의 실권은 미군이 비밀리에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6억 달러의 차관이 미국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샤오위린은 9일 미국 워싱턴발로 한국에 대한 차관 공여를 고려한 사실이 없다고 상하이의 언론들이 보도하였다는 점을 덧붙였다.⁸⁰⁾

1947년 4월 12일 외교부장 왕스제(王世杰)는 이승만이 연로하지만 최고의 영도력을 가진 유일한 원로이므로 중시해야 한다고 장제스

78)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쪽.

79)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343쪽.

80)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3쪽.

에게 건의하였다. 왕스제는 이승만이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 되어야만 남한정부가 독자적인 무력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북한공산당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이승만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새로운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이승만의 주장에 원칙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왕스제는 시기를 봐서 미국과 영국 등에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⁸¹⁾

1947년 4월 이승만 방중 당시 이승만에 대한 중국 국민당정부 인사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었다. 대체로 미국에서 이승만을 접하였거나 미국무부의 이승만에 대한 의견을 알고 있던 인사들은 이승만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이승만이 귀국하여 한국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승만을 접촉하였던 인사들은 한국에서 이승만이 가진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7년 2월 이승만은 영국이 한국에 주한사절을 파견하였다면 중국도 한국에 대표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국민당정부는 총영사로 류위완(劉馭萬)을 임명하였다.⁸²⁾

1947년 4월 24일 중국 국방부 보밀국(保密局)은 장제스에게 한국독립당의 김구와 이승만의 정치모략이 성공한 내막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김구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하고 이승만은 미국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정부가 이승만을 돕고 한국 부흥계획에 원조를 약속한 것은 1947년 봄에 김구가 독립

81) 王世杰, 「王世杰函蔣中正似可原則同意李承晚之主張望其力求與美保持協調」, (1947. 4. 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4~345쪽.

82) 王世杰, 「王世杰函蔣中正已遴派劉馭萬爲總領事駐漢城辦理保僑及維護權益」, (1947. 2. 27),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8쪽.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것에 미국이 자극받은 결과라고 보고하였다.⁸³⁾

1947년 4월 29일 보밀국은 장제스에게 이승만이 한국으로 귀국 하였을 때 약 이십만의 환영인파가 운집하였는데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 때문⁸⁴⁾이라고 두 사람의 협력 관계를 보고하였다.

보밀국의 이러한 보고는 당시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 밀접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정부도 한국의 정치세력 가운데 이승만을 점차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7년 9월 3일 왕스제는 국제연합 제2차 대회에 중국 측 수석 대표로 출국하기에 앞서 장제스에게 한국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왕스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남북한이 각기 선거를 통해 민선정부를 구성하고 두 민선정부가 통일정부 수립을 협의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련이 이 방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남북한이 민선정부 수립을 협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우선 남한에 민선정부를 수립하여 자위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원래 중국정부가 미국에 표시한 주장이라고 하였다. 왕스제는 미국주재 중국대사 구웨이원에게도 이 방안을 지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⁸⁵⁾

1947년 10월 10일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환대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승만은 이 편지에서 장제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편지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83) 保密局, 「保密局呈蔣中正韓國獨立黨領袖金九與李承晚政治謀略成功內情」(1947. 4. 24),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6~347쪽.

84) 保密局, 「保密局呈蔣中正中共在東北誘惑韓僑參加組織李承晚返漢城民衆歡迎」(1947. 4. 2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8쪽.

85) 王世杰, 「王世杰電蔣中正美主張南北韓各先成立民選政府再依義成立統一政府」(1947. 9. 3),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55쪽.

주장을 담은 비망록도 함께 보냈다. 이 비망록은 하지가 남한만의 선거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 친공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연합의 중국대표단에게 즉각 남한에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남한만이라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하고 만일 한국(朝鮮)이 미국의 위성국이 되어버린다면 이는 중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승만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제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승만은 장제스가 약속한 금액을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의 비서가 워싱턴의 미국안전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임병직 대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⁸⁶⁾

장제스는 이승만의 비망록에 대해서 중국의 주장과 의도하는 모든 것은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내용의 밀전을 주한성 총영사관에 보내 이를 이승만에게 구두로 전하도록 하였다.⁸⁷⁾ 이승만의 송금 요청에 대해서 국민당정부는 우티에청(吳鐵城) 비서장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하였고, 국제연합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던 중국의 주서울 총영사 류위완(劉馭萬)에게 전달하였다.⁸⁸⁾

86) 李承晩, 「李承晩函蔣中正感謝接待正於南漢推行選舉運動及急需經費」(1947. 10. 10),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56~359쪽.

87) 王世杰, 「王世杰呈蔣中正資助李承晩及對我在聯合國商討朝鮮問題經辦情形」(1947. 12. 1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62쪽.

88) 국민당정부는 이승만의 자금 요청을 받아들여 우티에청 비서장이 미국으로 송금하여 주한국 총영사인 류위완에게 은밀하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王世杰, 「王世杰呈蔣中正資助李承晩及對我在聯合國商討朝鮮問題經辦情形」(1947.12.19), 김영신 편역,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선인, 2012, 362쪽. 그런데 이승만에게 자금을 전달하라고 한 이 문서의 지시와는 다르게 이 돈이 김구에게 전달되었다는 인터뷰가 있다. 1996년 선우진(鮮于鎭)은 인터뷰에서 김구가 10만 달러를 이승만에게 제공하였고, 이승만은 프란체스카와 함께 류위완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그 후 10만 달러를 류위완을 통해 김신(金信)이 찾아왔고, 한미호텔과 경교장 등의 생활비와 『백범일지』 출간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정병준, 「1945~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李承晩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2000. 6, 217쪽.

결국 이승만이 1946년 초부터 장제스에게 요청하였던 정치자금
은 1947년 말에야 전달되었다. 이승만의 중국 방문 이후 국민당정
부는 그동안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과 다
른 선택을 하였다. 국민당정부 안에서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정계의 현실 속에서 이승만은 점차 힘을
강화하고 있었다. 국민당정부도 이러한 한국의 정세변화를 인정하
고 이승만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4월 중국외교부는 장제스에게 한국에서 김구가 남한 단
독선거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김구가 남한 단독으
로 조직한 정부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 이는 이승만의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고 남북이 통일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김규식·안재홍·장건상 등의 주장과 일치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외교부는 김구와 김규식이 단독선거를 반대
하는 이유로 북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할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되고,
점령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선거를 시행할 수 없으며, 선거에
앞서 남북의 영수회담이 우선 거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보고에 의하면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한국민주당의 세력이 워낙 강하여 선거에
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보고는 만일 김구 등이 선거 전에 한 당이 독식하지 않겠다는
이승만 등의 양해를 얻어낼 수 있다면,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주한성 총영사 류위완에게 김구와 이승
만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⁸⁹⁾

국민당정부는 1947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국민당정부는
김구가 남한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승만과 정반대의

89) 外交部, 「外交部呈蔣中正已飾劉馭萬極力流通調解金九反對南韓舉行選舉事」
(1948. 4. 1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64쪽.

노선을 가게 되자 한국주재 중국총영사에게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 중재를 지시하였다. 물론 국민당정부의 시도와는 상관없이 김구와 이승만은 다른 정치노선을 걸어갔다.

5. 맺음말

중국 국민당정부는 중일전쟁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으나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 승인문제에서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과 보조를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카이로회담 이후 1944년 9월 미국과 영국에서 전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국민당정부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 한반도를 국제적으로 공동관리하거나 고문관을 파견하여 통치하거나 즉각 독립시키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의 장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영국 등과 함께 중국군을 한반도에 파견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친중정부를 구성하려 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친중적인 독립국으로 성장하여 일본의 권토중래를 막고 소련이 한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장제스는 한국을 국제사회가 공동관리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1945년 8월 14일 국민당정부와 소련간에 중소조약이 체결되면서 중국이 세웠던 한반도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

1945년 광복 직후 중국국민당은 한국에 대한 구상은 미국이

추진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에 의한 공동관리였다. 광복 후에도 국민당정부의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하여 한국정부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광복 후에도 중국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이 지원 속에는 한국의 독립과 정부 수립에 대한 정치적 지원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경비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에도 역시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소군정기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중국이 기대하였던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저하되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중국국민당정부의 영향력도 갈수록 축소되었다. 1947년 4월 이승만의 중국 방문 이후 국민당정부는 이승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국민당정부의 태도변화는 한국 정계에서 이승만이 가진 영향력을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당정부는 1948년 4월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김구와 찬성하는 이승만 사이에서 한국주재 총영사를 통하여 중재를 시도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전후 한국에 친중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국민당정부의 계획은 미·소군정과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하여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전환하였다. 광복후 미·소 군정기 한국에서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의 입지가 약화되어 가던 그 시기에 중국국민당정부도 공산당과의 국공내전의 전황이 악화되면서 중국대륙에서 몰락하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5.7.15,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한중관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반도 구상, 중국국민당, 장제스(장개석), 김구, 이승만

<ABSTRACT>

The Chinese National Party Government's Scheme of Korean Peninsula and Korea Before and After 1945 Korea's Liberation

Kim Ji-hoon

In September 1944, the Chinese National Party (CNP) government, led by its Foreign Affairs Department, began the serious discussion of Korea's problems. They review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various measures, including the joint international management of Korean Peninsula, sending advisors to Korea to govern the country, and an immediate provision of independence to Korea. As a result, the CNP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U.S., U.K., etc., planned to send Chinese troops to Korean Peninsula to govern the country under military control, and to establish a pro-China government led by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operating in Chongqing.

China intended to let Korea become a pro-China independent nation so as to stop Japan's readiness to gather strength for the renewed attack, and to prevent Russia from getting involved in Korea. Chiang Kai-shek was passive about the joint international control of Korea, because he was worried that such joint control would hamper China's restoration of sovereignty of northeast region.

Right after 1945 Korea's liberation, CNP's plan for Korea was a joint control of the country by the four countries, the U.S., the U.K., China, and Russia, which scheme was endorsed by the U.S. After Korea's liberation as well, the CNP government, led by its military committee, began the discussion of Korea's problems. The CNP government intended to form the Korean government in supportive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and liberation troops.

After Korea's liberation as well, the CNP government continued to

support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and Kim Gu. This support program included political support for Korea's independence and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economic support.

But amid the political landscape in the U.S. and Russian military political period, the political power influence of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and Kim Gu, – which China expected to be strong – gradually declined. Alongside this development, the CNP government influence over Korean Peninsula declined over time. After April 1947 when Rhee Syngman visited the CNP government, the CNP government began economic aid to Rhee Syngman. Such attitude change is considered the result of China highly evaluating Rhee Syngman's influence in Korea's political circles.

Key Words : Korea-China relations,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Scheme of Korean Peninsula, Chinese National Party, Chiang Kai-shek, Kim Gu, Rhee Syngman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 및 평가*

기 광 서**

1. 머리말
2. 소련의 대일전 수행
 - 가. 소련의 참전 준비
 - 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3.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조치
4. 광복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평가
5. 맺음말

1. 머리말

1945년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해방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광복은 연합국의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승리 특히, 미국의 대일본 원폭 투하 후 일본의 항복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 의심을 품은 이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열망과 투쟁이 광복을 쟁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적잖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반향은 그리 크지 않다. 여기에 8.15 해방에 대한 항일유격대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 북한측의 공식 주장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8.15 해방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입장은 보편화된 통설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의 독립이 연합국의 대일전 승리의 결과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이 직접적으로 8.15 해방을 이끌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논리는 정작 한국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영향으로 인해 논의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웠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8.15 해방에 대한 각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특히 이 시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그 근거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수반해야 한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로도 해방에 대한 소련의 역할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본다면 연구의 의미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8.15 해방에 대한 소련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정과 일본의 항복을 이끈 요인이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 이래로 구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에 대해 수많은 문헌이 생산되었다.¹⁾ 이들 연구

1) 대표적으로 다음의 저술을 들 수 있다. Внотченко Л. Н. Побед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 1966;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 11, М., 1980; Александров А. Великая побед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으나²⁾ 여전히 8.15 해방에 대한 러시아 측 주장은 생소하기만 하다.

이 글은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진출 문제를 재검토하고,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평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가운데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전투는 기존 연구와 새로운 사료를 통해 한국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 문제와 해방에서 소련군의 역할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8.15 해방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시각을 시계열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고 그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소련의 대일전 수행

가. 소련의 참전 준비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싸우고 있던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소련을 끌어들이 전쟁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로 기약 없는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 역시 참전의 대가를 보장받길 원했다. 이것은 1945년 2월 미·영·소 정상회담이 모인 얄타회담에서 소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구체화되었다: 외몽고의 현상(現狀)유지, 사할린 남부 및 그 부속도서의 반환, 소련의 우선권 보장하에 다롄(大連)항의

е. Август 1945 года. М., 2004: от Забай калья до Коре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9 августа - 2 сентября 1945 г.). М., 2006.

2) 이를테면,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М., 1976)는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함성, 1989)로 번역 출간되었다.

국제화, 소련의 해군기지로써 뤼순(旅順)항 조차 부활, 중국과 공동으로 중동·남만철도 이용 재개, 쿠릴열도의 소련 할양.³⁾ 이들 참전 조건은 과거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잃어버린 기득권을 되찾고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었다.

소련은 대독전쟁 종전 2~3개월 후 대일전 참전을 약속하였다. 1945년 들어와 유럽 전선에서 연합국의 승리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4월 5일 소련외무상 몰로토프는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대일 중립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이 소련을 침공한 독일을 지원하고, 소련의 동맹국들인 미·영과 전쟁을 함으로써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⁴⁾ 본격적인 전쟁준비는 대독전이 끝나고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대규모 병력 및 군수물자의 이동이 개시되었다.⁵⁾ 과거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소련은 전체적으로 대일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6월 말 소련군 최고총사령부는 대일전 계획을 확정하였다. 처음 전투작전은 8월 20~25일 사이에 시작해서 1개월 반~2개월에 끝내도록 계획되었지만 포츠담회담(7월 17일~8월 2일) 이전 소련군 총참모부는 개전일자를 8월 11일로 정했다.⁶⁾ 포츠담 회담 기간인 7월 24일과 26일 양일간 미·소 참모총장 회의는 한반도 북부를 대일작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였다.⁷⁾ 하지만 이때는 한반도에서의 지상 작전이나 점령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만주를 포함하여 해·공군의 작전구획만을 획정하였다. 동해안쪽에서 작전을

3)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М., 1947, с.111~112. 단, 외몽고와 위의 항구들 및 철도에 대한 협정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4) История дипломатии. Т. 4, М., 1975, с.697.

5)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 11, М., 1980, с.191.

6)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9 августа - 2 сентября 1945 г.). М., 2006, с. 242~243.

7) 金基兆, 『38線 分割의 歴史』, 서울: 東山出版社, 1994, 150~158쪽.

담당한 소련 태평양함대의 임무 중 하나는 일본 함정의 북조선 항구 정박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북조선 항구의 장악 임무는 정작 전투작전 개시 후에 부여받았다. 지상군의 투입도 개전이 임박하면서 소련측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상황에 따라 투입 가능성은 열어놓았다.⁸⁾ 소련군 총참모부는 일본군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군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였는데, 그 가운데 조선이 우선 지역으로 꼽혔다.⁹⁾ 더욱이 조선인들이 일본을 극도로 증오했고 있는데다가 조선이 만주의 관동군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련 연해주로부터의 타격에 의해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약점으로 인식되었다.¹⁰⁾ 이로 보아 북한 북부지역으로의 군대 투입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월 26일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권고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였다. 7월 말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와 참모부가 시베리아 동부 도시 치타에 설치되었고, 8월 5일에는 연해주집단군이 제1극동전선군으로, 극동전선군이 제2극동전선군으로 개칭되어 개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개전일자는 최종적으로 이를 더 앞당긴 8월 9일로 결정되었다. 이때는 사실상 개전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날짜를 앞당긴 이유는 8월 6일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본이 조기에 미국에 항복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얄타협정에서 보장된 소련의 이권 보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8) 소련군의 한반도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광서 「해방 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구상과 조선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슬라브研究』 (제30권 4호, 2014) 참조.

9) Штеменко С. М.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в годы войны. М., 1975, с.413~414.

10) 위의 책, с.412.

8월 8일 소련 외무인민위원 V. M. 몰로토프는 일본 대사 사토를 초치하여 7월 26일 자 미·영·중 3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일본 정부가 거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9일 0시부터 소련은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게 될 것임을 알렸다. 대일전 선전 포고 후 극동 소련군 각급 부대에서는 “일본 침략자를 괴멸하고 동북 중국과 북조선 인민을 포함한 많은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전투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¹¹⁾ 표현하는 집회와 모임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는 자바이칼 전선군, 제1, 2 극동전선군, 태평양함대, 아무르강 적기 소함대로 이루어진 부대들을 지휘하였다. 독소전쟁에서 거의 모든 대단위 작전에 참여한 A. M. 바실리엠프스키 원수는 대일전쟁의 총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대 한반도 작전에 참여한 군대는 사령관 K. A. 메레츠크프 원수와 군사위원 T. F. 슈티코프 상장이 이끄는 제1극동전선군 소속 제25군과 태평양함대였다. 제25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I. M. 치스차코프 대장은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이 직위를 부여받았다.¹²⁾

제1 극동전선군 예하 군 가운데 만주와 한국에서 일본군을 축출할 작전의 주력은 제1군과 제5군이었으며, 제25군은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다. 제25군은 국경선을 굳건히 지키고 제1 극동전선군의 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하였으며, 인접군 진영에서 돌파작전이 이루어진 후에야 주력을 동원하여 남서 방면에서 공격을 지속하도록 했다.¹³⁾ 25군의 작전계획에서 직접적인

11)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1974, с.420.

12)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12. 치스차코프와 함께 제25군 부사령관으로 P. F. 라쿠친과 참모장 V. I. 펜콥스키가 임명되었다.

13)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Ц

한반도 진공임무는 부여받지 않았다. 다만 I. S. 유마셰프 해군대장이 이끄는 태평양함대의 예비전력은 조선 북부항구로 1개 보병군단 규모의 부대를 상륙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럴 경우 제25군은 이 상륙부대와 합동으로 훈춘(琿春), 회령, 청진 방면을 공격할 수 있게 하였다.¹⁴⁾ 다시 말해서, 태평양함대는 처음에는 북조선 항구에서 일본 선박의 정박을 저지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지만 전투 과정에서 항구도시를 점령하라는 추가 임무를 받았다. 이 모든 증거는 애초에 소련 지상군이 한반도 북부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작전을 제외하고 중심 깊숙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45년 8월 9일 0시를 기해 소련군은 만주와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에 대해 전면공격을 실시하였다. 일본군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기습 공격이었다. 공식적으로 소련이 내세운 참전 목적은 다음에서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소련은 제정러시아 시기에 빼앗긴 남사할린을 회복하고 대양으로의 자유로운 출구를 보장하며 동방에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일본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된 만주와 조선이 다시금 어떤 다른 국가에 종속되거나 대소련 공격을 위한 위험한 근원지 또는 군사기지로의 전변을 막는 것을 자신의 전쟁 목적으로 삼았다.¹⁵⁾

이 목적은 전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소련의 참전 동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어느 특정 강대국의 편에 서거나 그를 위한 군사적 기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가 타국에 종속

АМО, Ф. 379, оп. 11019. д. 8. л. 21.

14) 위의 문서.

15)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в Корее.” РГАСПИ, ф. 17, оп. 128, д. 1119, л. 128.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소련 역시 한반도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8월 9일과 10일 P. N. 레메스코 공군중장이 지휘하는 소련 태평양함대 소속 공군은 웅기, 나진, 청진 소재 일본 해군기지에 폭격을 가했다. 동시에 태평양함대 수뢰정들은 적 함선에 타격을 가해 10일 오전 제25군 예하 부대는 경흥을 점령하였다. 제25군의 보조적인 역할은 10일부터 새로이 변경되어 전선의 주요 타격 방향으로 나서게 되었다. 곧바로 11일 제25군의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제5군에서 제17 보병군단(제187, 366 보병사단, 제72 기계화여단, 제219 군단포병여단으로 구성)이, 제1 극동전선군 사령관 예비에서는 제88 보병군단(제258, 105 보병사단, 제209 기계화여단, 제220 군단포병여단)과 제10 기계화군단(제42, 72, 204기계화여단, 3개 자주포(CY)-100 연대, 제621 기계화연대, 제970 고사포연대, 2개 근위 박격포대대, 제55 독립모터사이클대대)이 각각 편입되었다.¹⁶⁾ 제25군에 맞서 일본군은 제3군이 직접 방어하였고, 북한 지역에는 나남과 함흥 지역을 중심으로 제34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소련군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제1 극동전선군의 좌익방면에 위치한 제25군은 남서방면으로 공격을 집중하면서 만주 왕청-연길-투먼 지역을 장악하고 북조선 항구에서 만주의 중·동부 지역으로 일본군의 이동을 차단할 과업이 부여받았다. 제25군은 또한 전투과정에서 태평양함대와 연합하여 청진과 나남의 점령을 명령받았다.

8월 11일 태평양 함대 소속 정찰대원들이 별다른 작전 없이 웅기 항에 상륙하였으며, 이튿날 제393 보병사단은 CY-76 기관총 중대와 함께 오전 5시경 경흥에서 나와 8시경 전투를 치르지 않고

16)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ЦАМО, Ф. 379, оп. 11019. д. 8, л. 3.

태평양함대 육전대와 연합하여 웅기를 장악하였다.¹⁷⁾ 제393 보병사단은 웅기에 수비 병력을 남겨 두고 나진시로 진출하여 일본군 보병대대와 교전을 벌였고, 13시에 도시 외곽의 건물에 있던 자동화기 부대를 괴멸시키고 이 도시를 점령하였다. 육전대와 합동작전에 의해 수행된 나진 점령은 일본 해군기지이자 대규모 산업 중심을 청진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소련군의 북한 내 전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청진 점령과정이었다. 일본군은 청진에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소련 해군 함대는 일본군대의 해양 탈출을 저지하고 항구를 탈취하며 연안을 따라 진격하는 제25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할 것을 명령 받았다.¹⁸⁾ 8월 13일 정오 해군 정찰대와 기관총 중대를 태운 6척의 수뢰정이 청진항에 돌입하여 전투를 개시하였다.¹⁹⁾ 곧이어 주력 부대들이 해상으로부터 투입되어 청진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한편으로 8월 14일 오후 제393 보병사단은 제505 보병연대와 함께 청진으로 진격을 위해 경흥, 웅기, 나진 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16일에 이르러 제393 보병사단은 동틀 무렵부터 일본군 나남 보병사단 보병대대와 청진 북쪽 12km 지점 언덕 접근로에서 전투를 벌여, 15시경에 이를 격퇴하고 청진시 외곽에서 소련군 육전대 부대 및 제335 보병사단 구분대와 합류하였다.²⁰⁾ 4일간에 걸쳐 청진 장악을 위한 격렬한 전투는 이렇게 종결되었다.

8월 17일 제393 보병사단은 나남 방면으로 진격하여 이 도시를 점령하고 부령 근교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일본군 나남사단 부대들을

17) 위의 문서, л. 43.

18) Чистяков И. М. Служим отчизне. М., 1985, с.276.

19)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126.

20)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ЦАМО, Ф. 379, оп. 11019. д. 8. л. 54.

남쪽과 북서쪽으로 퇴각시켰다. 소련군은 해로를 통한 일본군의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19일에 어대진(漁大津), 21일에 원산에 육전대를 상륙시켰다.

알려진 대로 일본은 8월 10일 소련 정부에 자신의 항복 결정을 통보하였고, 11일 일본 왕 히로히토(裕仁)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 수용에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때 소련지도부는 이미 개시된 작전에 대해 어떠한 중단이나 변경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작전 변경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도 소련군 전선부대에는 작전 중지나 변경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본의 항복 후 한반도에 유일하게 군대를 투입한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일본군의 항복 접수 선으로 38도선을 분할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의 한 연구는 일본의 역사학자 와다 하루끼(和田春樹)의 주장을 인용하여 모든 쿠릴열도의 소련군 점령에 대해 트루먼 대통령이 동의를 표시한 것이 스탈린이 한반도 남부의 점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인 것처럼 쓰고 있다.²¹⁾ 이는 당시의 정세 흐름 속에서 일견 타당한 분석처럼 보이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설령 스탈린이 한반도 남부의 점령을 요구했다하더라도 트루먼이 이에 반대했다면 소련이 이를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소련으로서는 아직 미·소간 협력을 중시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장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연합국의 공동 합의에 의해 내맡기려는 소련의 원칙적 입장이 작용하였다.²²⁾ 다만 처음부터 지상군의 투입을 확정짓지 않고

21)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9 августа - 2 сентября 1945 г.). М., 2006, с.254.

22) 해방 직전부터 소련은 연합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후견)에 자국의 참여

개전과 함께 전격 투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일본의 분할 점령에 대한 미국의 거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일 작전 지역에 한반도가 포함된 관계로 일본의 항복 후 군대 주둔이 불가피하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었다. 한반도 북부에 대한 점령은 처음에는 몇몇 항구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전면적인 점령은 일본의 항복 직후 미국의 일반명령 1호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즉시 무기를 내려놓은 것 같지는 않다. 8월 16일 소련군 총참모부는 일본군의 실질적인 항복은 아직 없고, 소련과 “장난치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작전을 계속할 것을 작전부대에 전달하였다.²³⁾ 일본군이 저항을 멈춘 것은 18일이었고, 심지어 원산에서는 22일에 소련군에 항복하였다. 전투가 벌어진 이외의 지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이루어졌다.

8월 25일경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완료되었고, 9월 초 25군 부대는 38도선까지 진출하였다. 소련군이 남쪽으로 진격을 멈춘 것은 일본군의 항복 접수선으로서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할 것을 규정한 미국의 ‘일반명령1호’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대일전에서 소련군은 모두 3만 5천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당했다.

를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다자 해결 방침을 유지했다. 그런데 스탈린이 역사적·지리적으로 경쟁과 대립을 해 온 일본의 점령을 기대하고 한반도에 대한 양보를 하였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6, 87쪽. 그러나 이 때는 미국이 이미 소련의 호카이드 점령을 거부한 상태였고, 일본에 대한 공동 점령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불확실한 것은 획득하기 위해 확실한 것을 양보했다는 논법은 어색해 보인다. 소련은 전쟁 전에 한반도 처리 방식으로 내세운 연합국에 의한 공동 해결 방침을 견지하였다. 만일 소련이 일본 점령을 관찰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한반도를 활용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장악해서 나중에 협상하는 방법이 더 유용했을 것이다.

23) Мерецков К. А. На службе народу. Страницы воспоминани. М. 1969, с.437~438.

그 중 북한 지역의 전투에서 입은 사상자 수는 전사자 691명을 포함한 1,963명에 달했다.²⁴⁾ 이것은 소련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린 군대라는 주장을 지속한 실체적 근거가 되었다.

3.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조치

8월 24일 제25군 낙하산 부대가 평양과 함흥에 투하되었고, 그 다음 날 북한에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는 완료되었다. 소련 정부 기관지 〈이즈베즈티야〉의 종군 기자였던 루닌은 소련군이 함흥에 진주할 때의 광경을 감성적 필치로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파도는 당도한 사람들에게 부닥치었다. 그 순간의 남은 것은 다만 충만된 환희의 소리와 아물거리는 알지 못할 얼굴뿐이다. 그들은 보전대 몹시 중대한 것을 통지하려고 애를 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농금과 무엇인지 보지 못하던 음식을 대접하였다.²⁵⁾

이 글은 한국의 해방에 직접 참가한 소련군이 현지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해방의 기쁨을 공유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의 각 도시마다 주민들이 붉은기를 흔들고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다.²⁶⁾ 소련 언론은 이러한 현지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해방군’으로서 소련군의 업적을 알리는데 힘썼다.

24) Гриф секретности снят.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в вой нах, боевых дей ствия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325; Людские потери СССР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Пб., 1995, с.80~81.

25) 『레닌기치』 1946년 6월 28일.

26)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119, 134, 138.

해방이 되자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각지에서는 자치기관들이 생겨났다. 초기에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정치위원회, 보안위원회, 자치위원회 등 지역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이들 자치기관은 소련군의 영향이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지역 명망가들이나 반일세력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확산되었다. 8월 16일 평양에서는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산주의자 현준혁(玄俊赫)을 부위원장으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면서 한글로 된 대민 방침인 「군정무관의 명령서」 제1호를 배포하였다. 그 요지는 일본의 항복에 의해 발생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잠정적이거나 일제 민간기관들을 존속시키도록 하였다.²⁷⁾ 또한 일본군대 및 군사당국의 소유물은 소련군 지휘관의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제 민간기관의 존속 방침은 각지에서 인민위원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되면서 곧바로 사문화되었다.

소련군의 북한 점령은 8월 25일에 완수되었다. 이튿날 제25 군사령관 I. M. 치스차코프 상장은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현준혁 등 북한 내 지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해방을 축원하면서 “해방된 조선의 자유로운 인민들에게 새 조선을 설립함에 전진과 가장 특수한 성과”²⁸⁾를 기대하였다. 소련군의 통치 체계 구축은 T. F. 슈티코프가 이끈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가 지휘하였다. 만주 점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질서 유지 및 주민 생활의 정상화와 더불어 지역 통치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도, 군, 대도시에는 경무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이 통제기관은 6개 도(강원도 포함), 85개 군 그리고 평양, 진남포, 청진, 함흥, 신의주, 해주, 원산 등 7개 시에

27) ЦАМО, ф. 32, оп. 11318, д. 196, л. 235.

28) 『레닌기치』 1946년 7월 10일.

두었고, 그 숫자는 최대 113개에 달하였다.²⁹⁾ 경무사령부의 주된 임무는 각지에 설치된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 통제하는 것이었다. 각 도 경무사령부는 각 병단 정치과 책임자급으로 고문관을 두어 경무사령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지방자치기관 및 각 사회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소련군대의 주둔 체계는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비되었다. 대일전 이전 소련군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점령지역에 대한 권력 접수와 질서 재편을 경험한 바 있었다. 초기 권력 접수의 주체로서 소련군 사령부와 경무사령부의 활동은 이들 지역에서 도입된 것을 대체로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후 대북한 정책과 정치 체계 등 많은 점에서 동유럽 국가들과 차별성이 드러났다.³⁰⁾

소련군이 개전과 함께 조선인에게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는 수많은 한글 전단을 배포했듯이 소련은 스스로 ‘해방자’의 위상을 각인시키고 진주 후 바로 주민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해방 초 일부 소련 군인들의 약탈 행위 등과 같은 범죄는 주민 사이에서 소련군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상황을 장악하고 있던 공산측에 의해 무마되었다.

초기 각 경무사령관은 붉은 군대와 소련에 대한 비방선전을 적발하는데 힘썼다.³¹⁾ 이몽(李蒙)이 지도하는 민족사회당은 130여 명의 당원과 평안남도 9개 군에 지부를 두는 등 상당한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³²⁾ 실제 이 조직은 반공 활동에 집중했다. 이 당은

29) Курбанов С. 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С Пб., 2009, с.398.

30) 북한과 동유럽 국가 간에는, 이를테면, 공산당의 당면 목표, 권력구조, 토지 개혁, 선거 방식 등 매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차이점이 있었다.

31) Краткий справочник для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нтов 1945 год., ЦАМО, ф. 32, оп. 11318, д. 196, л. 99.

32) “Донесение по пол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ЦАМО, ф. 234, оп. 3225, д. 47, л. 236; 洪聖俊『古堂 曹晩植』, 서울: 平

얼마 후 소련군에 의해 친파시스트적이란 혐의를 받고 강제로 해산되었다. 같은 시기 이용직(李容稷)이 지도한 태극협회(太極協會)도 불법단체로 탄압을 받았다. 이어서 정당·사회조직에 대한 등록이 실시되었으며, 친일 조직으로 의심받은 단체들은 강제해산을 면치 못했다. 이 단체들이 직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소련군이 가장 경계한 반소·반공적인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소련군 정치기관은 주민 가운데서 ‘해방자’로서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시켰다. 이를테면, 9월 18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한반도와 관련한 첫 번째 결정으로 북한 주민용 신문 『조선신문』을 발간하기로 하였다.³³⁾ 한글로 된 신문의 발간은 연해주군관구가 주관하였고 발행부수는 10만 부였다. 소련은 이 신문이 소련의 업적 선전과 소련-조선 관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주민 선전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의 친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하였다.

초기 제25군 사령부와 경무사령부는 북한 내 질서를 유지하고 각지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지도, 통제하였다. 특히 제25군 군사회의와 정치부가 이 사업을 주도했으나, 1945년 10월 초보다 체계적인 대민 업무 수행을 위해 25군 군사회의의 위원인 A. A. 로마넨코 소장을 수반으로 한 소련 민정기관(Советская гражда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이 설치되었다.³⁴⁾ 민정기관을 조직한 것은 소련군대가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북한에 주둔할 예정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각도 경무사령부 지휘기관으로서 민정기관은 경제, 교육, 문화, 사법 등 10개 부서를 설치하고 군

南民報社, 1966. 192~193쪽.

33) “Об издан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для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ГАСПИ, ф. 17, оп. 3, д. 1053, л. 73.

34) 당시 한국어 표기로는 ‘민정부’로 쓰였기 때문에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民政部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나 실제로는 제25군 산하 기관인 民政部가 정확한 표기이다.

전문가집단을 차출하여 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대주민사업, 출판, 교육·문화, 사법, 보건 부문은 해당 책임자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 지도는 민정기관 정치담당 부부장 A. M. 이그나티예프가 맡았다. 경제부문에서는 일본이 파괴한 공장과 기업소의 복구는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였는데, 산업부 책임자인 T. I. 코르쿠렌코 대좌의 지휘하에 1945년 11월 제1기 가동을 목표로 원조를 제공하였다.³⁵⁾ 이러한 소련군의 정책적 조치가 노리는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한반도에 소련에 우호적인(친소) 정부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주민의 지지 확보와 친소적 정치기반의 조성 사업에 모아졌다.

4. 광복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평가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원폭투하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소련군의 참전은 설상가상으로 일본에 남은 마지막 전의를 상실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방의 요인을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련·러시아도 자기 고유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작전은 일제 치하의 만주와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일본을 퇴패시키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었다. 물론 일본의 붕괴가 두 지역의 해방을 낳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소련의 참전은 엄연히 일본의 항복을 위한 것이었다. 다만 해방은 이 과정에서

35)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98.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효과를 위해 그 의미가 활용되었던 것이다.

8.15 해방을 평가한 대부분의 소련측 저술들은 한반도 진주 시 소련군이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다. 도처에서 자연발생적 집회와 시위가 조직되고 소련군에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³⁶⁾ 당시 주서울 소련영사관 관리들은 직접 해방된 서울의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를 기록으로 옮겼다. 다음은 그들이 작성한 기록의 일부이다.

첫날에 일본의 항복 소식은 주민들 사이에서 얼마간의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인들이 그토록 증오한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는 소식은 너무나 예기치 않게, 아주 단순하게 도래하였다. 더욱이 거리는 무장한 일본의 장교, 병사, 경찰들로 가득 찼다. 수도의 조선 주민들은 자신의 기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오랫동안 인민 자신이 대상이었던 일본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조선인 가운데서 서울에 붉은 군대가 진주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중략) 이른 아침부터 수도의 모든 주민들은 거리에 모였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붉은기와 조선국기가 도처에서 나부꼈다.³⁷⁾

8월 16일 시위는 조선 인민이 시위를 이끌고 조선에서 일본인들을 신속히 몰아낼 수 있는 지도자와 당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인민은 무기를 가지지 못했고, 이 무기를 일본인들에게서 빼앗아 획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 세력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시위는 조선인민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준데 대해 붉은 군대와 스탈린 동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붉은 군대에 대한 감사 슬로건은 바로 주요 슬로건이었고, 게다가 적지 않게 러시아어로 쓰였다.³⁸⁾

36)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с.131.

37) “Масло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В ПР, ф. 0102, оп. 7, п. 5, д. 24, лл. 15-16.

38) “Крат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доклад о положении в Корее”, РГАСП

소련영사관의 기록은 예기치 않은 해방을 맞이한 첫째 날의 서울 표정과 그 이튿날 광복의 기쁨이 가득한 거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위에서 소련에 감사하고 지지하는 슬로건과 플래카드가 등장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있다. 지하에서 나온 좌파 세력들이 소련 지지 활동을 이끈 것이기는 하지만 ‘해방자’로서 소련에 대한 인식의 등장은 해방과 동시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방 당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8.15 광복에 대해 소련의 역할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의 역할 또한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공산당 북부분국 기관지 『정로』는 창간사도 “위대한 붉은 군대, 그의 동맹자인 연합군의 힘으로 조선은 호전국가 일본침략자로부터 해방되었다”³⁹⁾라고 하였다. 미소의 협력을 기대하던 광복 초기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어디서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미·소 및 좌·우관계가 악화되면서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국의 역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에 따라 소련과 한국공산주의자들은 “붉은 군대는 일본제국주의 압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주장을 공식화하였다. 이 논리는 1960년대 주체사상이 지도사상으로 부각되기 이전까지 북한 내에서 고정된 사실로서 인식되었다. 소련의 관련 저술들은 한반도의 해방이 자국 군대의 승리에 의해 달성되었음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 논리는 소비에트 체제의 공식적 입장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필자든지 자신 있게 설파하는 주장이 되었다. 제25군 군사회의 위원 겸 주북 소련민정국장을 역임한 N. G. 레베데프는 소련의 ‘해방적 역할’에 대해 소련군이 6일밖에 참전하지 않았고 미미한 기여

II, ф. 17, оп. 128, д. 47, лл. 3-4.

39) 『正路』 1945년 11월 1일.

밖에 못했다는 서방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대일전쟁의 참전자인 우리는 이 전쟁이 쉽지 않았으며, 6일이 아닌 그 이상 지속된 것을 알고 있다. 일본군의 많은 부대들은 천황의 항복 선언 이후에도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를테면, 제1 극동전선 제25군의 공격지대에 있었던 동녕(東寧) 요새구역의 남부 거점 일본수비대는 8월 26일까지도 저항을 계속 하였으며, 포로로 잡힌 제3 일본군 사령관의 서면 명령이 있고서야 무기를 내려놓았다.⁴⁰⁾

레베데프의 언급은 대일전쟁이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과 이를 종결하기 위해 소련군이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소련의 문헌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후에도 전쟁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핵무기는 일본을 항복시킨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하였다.⁴¹⁾ 한편으로 해방 후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에 소련 외교관으로서 참여한 바 있는 역사학자 페투호프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의의에 대해 보다 더 현실감을 불어 넣었다. 그에 따르면, 소련군이 대일전에 가담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촉진시키지 않았다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선이 전장터로 전변되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⁴²⁾ 이 주장은 역사의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실시되자 소련의 역사 서술에는 이념성이

40)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62~63.

41)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 11, М., 1980, с.157.

42) Петухов В. И. СССР – освободитель Кореи и ее надежный союзник.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2, 1985, с.39.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참가자인 페투호프의 다음 저서는 당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규명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Петухов В.И. У истоков борьбы за единство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М., 1987.

일부 탈색되었고, 이에 따라 “붉은 군대는 일본제국주의 압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다”와 같은 단정적 표현보다는 구체성을 내포한 언어들이 구사되었다. 이를테면,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1945년 8월 소련군은 조선의 북부에서 일본군에 대항한 전투작전을 수행하였으나 그 승리적 결말은 나라 전체의 운명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소련군의 맹렬하고도 강력한 타격에 의해 도처에서 일본의 군·경찰기구가 붕괴하였고, 식민지 기구가 완전히 마비됨으로써 자유와 독립을 향한 조선의 도정에 주요 장애가 제거되었다.⁴³⁾

이 글은 소련군의 전투행동이 북한 지역에 한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영향은 한반도 전체의 해방을 이끌었다는 변함없는 논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역사 서술은 소비에트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응집력에서 지속적으로 탈피하였다. 그럼에도 8.15 해방에 관해서는 표현 방식에서 이념적 문구 표현만이 완화되었을 뿐 거의 동일한 논리가 통용되었다. 저명한 한국학자 유리 바닌은 “소련군은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전체 지배체계를 동요·정지시켰으며, 탄압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킴으로써 그 기관들이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감히 억압하지 못하도록(강조는 원저자)”⁴⁴⁾ 하였고, 결과적으로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해방시켰다고 하였다.

소련군에 의한 8.15 해방의 성취 논지는 대일전 공동 참가자인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저평가 내지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저술들은 여지없이 이 점을 지나치지 않았다. 조선인민에 해방을 가져다준 소련군 이외에 “다른 국가의 군대나

43)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с.131.

44) 유리 바닌, 「한국의 해방: 러시아의 시각」, 『현대북한연구』 제3권 제2호, 2000, pp.295~296.

어떠한 조선의 무장세력도 조선의 해방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대는 관동군이 항복한 지 25일이 지난 9월 9일에야 한반도의 남쪽에 상륙”했다는 것이다.⁴⁵⁾ 또한 극동문제 전문가인 B. N. 슬라빈스키는 일본이 소련의 참전을 자신의 종말로 간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최소한 얄타협정에서 약속된 소련에 대한 이권의 보장을 막고 소련군의 참전 이전에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단언하였다.⁴⁶⁾ 또 다른 역사가들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핵 위력 및 세계 인민에 대한 위협, 전후 문제 해결 시 소련에 대한 압력 등의 시위”라고 간주하였다.⁴⁷⁾

현재 8.15 해방에 대한 러시아 학계의 대표적인 입장은 역사학자 쿠르바노프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먼저 한국의 해방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즉, 남한 역사가들은 해방과 신국가 수립을 위한 조선정치가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 역사학은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에 주요 공헌을 하였다는 것이며, 소련역사학에서는 붉은 군대가, 미국 역사학에서는 미군이 각각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것이다.⁴⁸⁾ 하지만 그는 대일전 참전 과정을 서술하면서 소련군이 한국을 해방시켰다는 직접적인 논법을 쓰지 않고 있다. 대신에 소련군이 치른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희생 등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해방자로서 소련군을 묘사하고 있다.

45) История Кореи(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М., 2003, с.329~330.

46) Славинский Б.Н. Зачем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бросили атомные бомбы на Хиросиму и Нагасаки?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5, М., 1995, с.65~66.

47) Мунчаев Ш.М., Устинов В.М.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 2002, с.477.

48) Курбанов С. 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С Пб., 2009, с.396.

8월 15일은 코리아에서 해방일로 간주된다. 북한에서는 나라의 해방에 김일성의 업적을 각별히 언급하려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지체제로부터 벗어나는데 소련인민의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평양 모란봉에 있는 중앙공원에는 조선해방에 생명을 바친 소련 전사들의 기념탑이 서 있으며, 시민들은 21세기 초인 현재도 이것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이 탑은 ‘해방탑’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다.⁴⁹⁾

쿠르바노프는 북한에서 현재도 소련군에 대한 호의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는 미군이 조선의 해방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소련군의 전투작전 개시 후에 조선의 항구에 기뢰를 부설하여 작전 수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소비에트 저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항 상륙의 주된 과업이 ‘항복 접수’나 ‘해방’이 아니라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장악을 막는 것이었다고 강조하였다.⁵⁰⁾ 러시아 측 언급의 핵심은 소련군이 연합국 가운데 한반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통해 피를 흘린 유일한 군대라는 것이며, 소련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때 일본의 항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8.15 해방에 관한 소련·러시아 측의 견해는 일정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군이 전적으로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과도한 견해 내지는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본은 1941년 12월 이후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쟁을 통해 심각한 전력의 손실을 겪었고,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쟁수행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군의 참전은 일본의 저항 능력을 완전히 꺾고 항복을 이끌었다. 말하자면,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가져온 요인의

49) 위의 책, c.398.

50) 같은 책.

하나이지 유일한 요인이 아니었다. 일본은 미국 혹은 소련 단독의 힘에 굴복하여 항복했던 것이 아니라 두 세력의 유기적인 결합 때문에 항복했던 것이다.⁵¹⁾

앞서 언급했듯이, 해방 후 평양을 비롯한 북한 각지에는 대일전에서 희생된 소련군의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해방탑이 세워졌다. 이 탑은 오늘날 북·러관계의 상징처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국가 형성과 이후 전쟁 발발에서 소련이 수행한 역할은 다른 외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국민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반도를 해방시킨 ‘해방자’와 분단 책임의 일원으로서 러시아는 두 가지 모순된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5. 맺음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미·영 등 연합국과의 합의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진원지인 일본을 퇴패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8.15 해방은 일본의 항복 결과이며, 역으로 연합국이 승리한 덕분이었다. 일본의 항복 요인으로는 미국에 의한 원폭 투하와 장기전으로 인한 일본 국력의 약화를 들 수 있지만 소련군의 참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의 해방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해방 당시를 제외하고 한국민이 이에 기꺼이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해방과 동시에 연합국에 의해 분단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6.25전쟁과 분단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소로 대표되는 연합국은 한반도의 해방뿐 아니라 분단의 중요

51) 이완범, 「蘇聯의 對日戰 參戰과 38線 受諾, 1942~1945」,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6, 283쪽.

책임자이기 때문에 해방에서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기 어려운 것이다.

소련군의 참전이 8.15 해방 요인에 개입되어 있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에 머물러 있던 한국적 현실에서는 부각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싸운 유일한 군대라는 표현 등으로 소련군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러시아 측의 완고한 주장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반감으로 표출되기가 쉽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통해 일본의 항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8.15 해방과 소련이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 앞으로의 한·러 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소련의 역할에 대한 북한측 인식 역시 러시아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8.15 해방에 대한 러시아 측의 과도한 서술을 교정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양국이 공히 인정할 만한 ‘한반도의 해방’에 대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현재 한·러관계의 분위기에서 보면, 이러한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원고투고일: 2015.7.12,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8.15해방, 소련의 대일전 참전, 한반도, 소련, 러시아, 북한

<ABSTRACT>

Th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rmy in Anti-Japanese War and Russia's Views on the Liberation of Korea

Kee Kwang-seo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articipation of anti-Japanese war by the Soviet Armed Forces and its entr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larifies the assessment on the role of Soviet army about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view of Russia.

After the surrender of Japan, the Soviet Union abandoned to seize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it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cooperation between USA and USSR, and considered that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resolved by related powers, not a specific country. However, in contrast to early expectations, the entry of the ground forces of Soviet Un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due to the United States' denial of the separated occupation of Japanese territory.

The surrender of Japan resulted in the 8.15 National liberation, which was caused by America's dropping of atomic bombs, weakening of Japanese national power through a prolonged war and the anti-Japanese war participation of Soviet army. It is difficult to call the Allies including the Soviet Union 'liberators', because Allies were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Korea though they actually liberated Korea from Japanese rule. However, the Russian side maintained the logic of 8.15 liberation by the Soviet army. Even if there were difference of the tone of arguments divided into periods, the fundamental principle did not change. This view of Russia makes a difference with North Korea's assertion that emphasizes idea of 'Juche'(self-reli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and Russia to build a logic 'liberation of Korea' to agree with each other, revising Russia's excessive narratives fo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Liberation of Korea,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rmy in
anti-Japanese War, the Korean peninsula, Soviet Union,
Russia, North Korea

패전국 일본이 본 우리의 광복: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처리

최 윤 도*

1. 서론
2. 광복 전후 일본의 대조선 인식
3. 전후처리 1: 광복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 전후처리 2: 한일협정
5. 결론

1. 서론

2011년 8월 30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12년에는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때에 있었던 강제 동원 자체가 불법이고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어느 것도 제대로 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다. 위의 문제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에 발생하였다.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고 7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일본이 36년간 우리에게 입힌 피해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강점기 동안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 문제들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준 일본의 패전과 연합군의 승리에 따른 전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었으나 대한민국은 나중에 건국되었고, 2차대전의 뒷정리는 6.25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식민지배의 가해자였던 일본과 그 피해자였던 대한민국 사이의 뒷정리는 광복 이후 20년이 지난 1965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조약은 광복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까지 한일관계가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일협정에 관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70년 전 우리의 광복이 식민통치국이었던 일본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는지, 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은 어떠한 시각과 입장에서 우리의 광복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시각이 광복 70년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광복을 전후한 시기,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것이다.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인식 속에서

전후처리를 준비했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와 해방에 대한 인식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본다. 이는 전후체제라는 틀 속에서의 우리 광복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일본의 인식이 전후체제를 거쳐 어떠한 모습으로 한일협정에 투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근대초기부터 형성되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비하와 경멸 의식은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무시한 동화정책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면서 전시동원령에 있어서는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인식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패전직후의 어지러웠던 시기에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문제와 전후처리에 있어서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시민도 아니고 연합국 시민도 아닌 식민지 국민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과정뿐 아니라 패전 후 20년 뒤에야 마무리 된 한일협정의 체결과정에서도 지속되어 조약체제 속에 반영되었다. 오늘날 양국의 외교적인 관계를 현재의 국력을 반영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와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러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광복 전후 일본의 대조선 인식

가. 식민지 시기 일본의 대조선 인식

근대시기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경시와 멸시로 축약될 수

있다.¹⁾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직접적 계기는 식민지 지배로서 침략과 통치의 과정 속에서 정착된 것이다. 당시 대조선 인식은 주로 조선에 건너와 생활하던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의 강제병합이 실행에 옮겨지기 이전 준비단계에서 한반도와 동북지역을 조사한 지리학자 야즈 쇼에이(矢津昌永)는 그의 저서 『조선서백리기행(朝鮮西伯利紀行)』(1894)에서 조선인을 야만적이며 불결하며 게으르고 비진보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조선인에 대해 위생관념이 없고 불결하며 나태하다는 인식은 당시의 많은 기행문들이나 기록물들이 갖는 공통된 조선관이라 할 수 있다.²⁾ 최혜주(2008)는 야즈 쇼에이의 시각에 대해 같은 아시아 내에서 야만과 문명을 구분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평가한다.³⁾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 그 문화를 재구성하고 서양 우위의 권위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야즈 쇼에이가 본 조선의 모습은 식민지 대상으로서의 조선을 가정한 상황에서 받아들인 조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행문에서 조선을 인구밀도나 기후, 토양, 지하자원 등에서 최적의 식민 대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근대 조선관에는 식민지 지배기 동안 또 하나의 이미지가 덧씌워지게 된다. 바로 3.1운동의 영향이다. 일본인

1) 윤건차,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아공영권에서 이시하라 발언까지」, 『역사비평』 53호, 37~53쪽.

2) 金學俊, 『西洋人の見た朝鮮: 李朝末期の政治・社會・風俗』 金容權 譯, 山川出版社, 2014. 19세기 후반 일본의 지식인들은 조선에 대해 ‘반개화 국가’ 혹은 ‘야만국가’로 보고, 서양이 자신에게 했듯이 일본도 조선을 개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143쪽.

3) 최혜주, 「특집 : 여행기를 통해 본 한·일 양국의 표상; 『조선서백리기행(朝鮮西伯利紀行)』(1894)에 보이는 야즈 쇼에이(矢津昌永)의 조선 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44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57~93쪽. 야즈 쇼에이(矢津昌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반도의 모습을 토끼모양으로 비유한 주장의 장본인임.

들은 자신들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반대운동에 나선 열기에 놀랐으며, 그 조선인들이 가진 자신들에 대한 증오를 보면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⁴⁾ 조선인들의 크고 작은 저항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그러한 인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2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재일한국인들의 폭력적 일탈행위들로 이어지면서 일본인들 사이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갔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항운동만큼 골치 아프고 무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시기 일본인들은 조선에 대해 ‘불결’, ‘나태’, ‘위험’이라는 인식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아이덴티티 패러독스⁵⁾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느끼는 차별의식이나 구별의식과는 다른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은 심리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불일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의 정책들도 바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만들어지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본으로 건너가 식민지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많은 이들이 땅을 잃고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환경에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식민지인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일본인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직업은 막노동(‘노가다’), 함바집노동, 향만노동

4) 木村幹, 「『不潔』と『恐れ』文學者に見る日本人の韓国イメージ」 岡本幸治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観』 ミネルヴァ書房 1998, 8~11쪽.

5) 이승희,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치안당국의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44집, 한일관계사학회, 2013. 4, 161~191쪽.

및 고철회수와 같은 힘든 육체노동에 국한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중국인-피차별부락민-일본인 이라는 민족적 서열과 차별이 작용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다.

나. 일본의 식민지 통치정책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의 목적은 일본의 제국주의 경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수탈에 있었으나, 그 운영의 기본방침은 ‘동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강덕상(姜德相)은 일본의 수탈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910년도에는 땅 내놔, 20년대에는 쌀 내놔, 30년대 후반부터 45년까지는 사람 내놔, 목숨내놔.”⁶⁾ 이들 세 시기는 각각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의 시기와 일치한다. 수탈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총칼을 동원한 억압과 강탈이 진행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인들뿐 아니라 일본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⁷⁾

3.1운동 직후인 8월 19일 소화 천황의 조서(詔書)가 나왔다. “짐은 일찍이 조선의 강령을 생각하고, 그 민중을 애무(愛撫)하기를 일시동인(一視同仁), 짐의 신민으로서 추호도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각자는 생애 힘써서 골고루 휴명(休明)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판도로서 속방이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며, 바로 일본의 연장”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도 ‘조선은 바로 제국의 판도로서 그 속방이 아니고, 조선인은 바로 제국신민으로서 내지인과 하등 차별이

6)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 岩波書店, 1997, v쪽.

7) 水野邦彦, 「敗戦後日本社會の形成:朝鮮と向き合わない日本」, 『季刊北海學園大學經濟論集』, 2014, 95~108쪽.

있지 않으며... 조선의 통치 또한 동화의 방침에 기초하여 일시동인의 대의에 따라...'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왜 이렇게도 '동화'를 강조한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조선인으로서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흡수함으로써, 조선의 존재를 없앴으로써 조선과 일본의 대립이 없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일부분으로 흡수함으로써 조선인들로 하여금 조선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도 없고, 상하 관계도 없이 하나의 일본이 되는 것이라는 명분을 걸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문제는 이 정책이 조선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하타타 다카시(旗田巍)는 그 동화 정책의 결과가 “지배자 의식을 결여한 지배, 식민지 의식을 결여한 식민지 경영”이었다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그 지배 의식의 결여가 낳은 결과는 일본인이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인 조선의 땅을 빼앗고도, 그 땅이 일본이라고 인식하도록 된 것이다. 동화정책은 처음부터 조선인을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은 데는 출발하였으며,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경시의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동화정책의 결과는 책임감과 죄악감의 결핍과 함께, 열등한 존재를 일본인의 지위로 승격시켜주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멸시와 경시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더 큰 차별과 멸시로 끝나는 동화정책의 논리는 무엇일까? 무단통치기로부터 시작되는 조선통치정책의 기본적 사고는 '조선정체사관'과 '일선동조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둘이 바로 동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언설로

8)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1969. 한국어판 이기동 역. 『日本人의 韓國觀』 일조각, 1983. 6쪽.

이용되었다. ‘동화’란 한편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인종적, 지리적, 역사적 ‘가까움’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차이란 조선정체사관이 주장하듯이 주로 ‘문명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일본은 유교의 정신에다 서양신문물의 의복을 착용한데 대해, 조선은 빈들거리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여 일하기를 게을리 하고 근검저축의 정신이 부족하고, 위생정신이 뒤떨어짐을 강조한다. ‘가까움’에 대해서는 일선동조론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 동일인종일 뿐 아니라 고대에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한병합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다.⁹⁾

그러므로 동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나라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문명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조선인들을 문명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조선은 탈아입구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멀리해야 할 ‘악우(惡友)’가 되었다가 동화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조상(同祖)을 둔 지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다. 광복에 대한 일본의 인식

8월 14일 일본정부는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들에게 통보하고 15일 천황이 방송을 통해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포되었다. 갑자기 찾아온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우리의 광복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희박했다. 한반도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무사 귀환과 행정기구의 이양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대책 등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¹⁰⁾ 패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9) 小熊英二, 「同化言説の完成」, 『<日本人>の境界: 沖縄・アイヌ・台湾・朝鮮植民地支配から復歸運動まで』, 新曜社, 1998, p.161-66.

10) 李圭泰, 「植民地支配から分斷國家へ—朝鮮總督府の「八・一五」政策を中心

대처한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그나마 있었던 전시 유대감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은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지 아시아 국가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했다. 일본인들은 식민지 상실에서 오는 당혹감이나 책임의식을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해서는 무관심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조선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정대균(鄭大均)은 이러한 상황을 피관심(避關心)의 태도라 부른다.¹¹⁾

남홍각(楠弘閣)은 1939년과 1949년에 일본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제 민족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1939년에는 비교적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된 조선인(전체 15개 집단 중 5위)의 지위가 1949년에는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집단(15개 집단 중 15위)으로 집계되었다. 1939년에는 전시 강제동원 체제 하에서 ‘내선일체’, ‘내선융화’와 같은 슬로건이 나돌면서 학생들의 관심사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의 최하위 호감도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동경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민족에 대한 태도조사에는 인종거리지수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룹은 아메리카, 프랑스 등이었던 반면 가장 거리가 먼 그룹으로는 호주인, 러시아인, 니그로인 그리고 조선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사회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조선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후 비참한 일본의 경제 상황 속에서 암시장과 관련된 활동이나 민족학교 폐지를 둘러싼 공권력과의 충돌 등으로

に」(特集 日本の敗戦とアジア), 『戦争責任研究』 34号,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2001, 20~28쪽.

11) 鄭大均, 『韓國のイメージ: 戦後日本人の隣國觀』中公新書, 2010, 13~14쪽. 아끼즈키 노조미(秋月望)는 ‘망각원망(忘却願望)’이라 부른다. 秋月望, 「朝鮮植民地支配を戦後日本Iはどう見てきたか」, 『プライム』 31, 明治學院大學國際平和研究所, 2010,

인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몽골인들에 대한 호감도도 급강하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무관심과 함께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경멸과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¹²⁾ 이상의 논의로부터 패전 초기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조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며,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³⁾

그러나 1948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대일 전후처리에 있어서 소위 ‘역코스 (reverse course)’를 걷기 시작하자 일본사회는 또 한 번의 격변을 겪게 되었다. 공직추방자들이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고 재벌들은 다시 살아나는 반면 노동조합들은 활동에 제약과 억압을 받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또 다시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본은 경제재건의 기회를 맞았으며, 연합국들과의 강화조약 체결에 온통 관심을 쏟을 뿐이었다.

일본 민중들이 한반도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조선의 광복을 미국과의 전후복구와 전후처리라는 두 개의 주요 정책 목표의 수행의 테두리 내에서 인식하였다. 연합국들에 대한 배상금의 최소화 속에서 조선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에 남겨 둔 자본과 사유재산의 회수를 통해 경제개발에 활용하거나 조선문제 처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른 영토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 조선이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요미우리과 아사히 신문에서는 1면 톱기사로 다루어졌으나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12) 秋月望, 2010, 74쪽.

13) 정용욱, 「일본인의 ‘전후’와 재일조선인관: 미군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일본 사회의 여론」, 『일본비평』 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64~301쪽.

그렇지 않았으며, 9월 북한의 건국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다고 작게 보도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가해의식은 없었다.

3. 전후처리 1: 광복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우리의 광복에 대한 위와 같은 일본인들의 인식상의 한계 속에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전후처리가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과정과 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우리의 광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가. 전후처리를 위한 일본의 준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최대 특징 중 하나는 애초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의도한 징벌적 전후처리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관대한 전후처리로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 강화조약의 체결 업무를 담당한 딜레스 국무성 특별고문의 개인적 신념과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¹⁴⁾ 2)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노력의 결과,¹⁵⁾ 3)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삼도록 강요한 냉전의 국제환경¹⁶⁾ 등 다양한 설명이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의 노력이 강화조약에 영향을

14) 정성화,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과 韓國·美國·日本의 外交政策의 考察」, 『인문과학연구논총』 7, 1990. 2, 143~157쪽.

15)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22, 2008. 12, 37~71쪽.

16) 박진희, 「戰後 韓日관계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한국사연구』 131, 2005. 12, 3~34쪽. 金民樹, 「對日講話條約と韓國參加問題」, 『國際政治』 131号, 日本國際政治學會, 2002. 10. 133~147쪽.

미쳤다면 대한민국 문제의 처리를 어떠한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했으며 미국과 협상을 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광복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10월 22일 이미 일본외무성 조약국은 강화체결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있었다. 그 체결방식에 있어서는 연합국 개별국가와의 강화조약 체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면서도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아 소련이나 중국과는 별도의 조약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일본이 조약안 작성에 참가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약안 작성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항복 선언 이전의 연합국 측 선언들에서 상당부분 언급된 만큼 일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정도의 긴급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전 조차지 안에 남아있는 구 일본 제국 재산의 귀속 문제는 강화조약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외무성은 서명참가국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⁷⁾

1945년 11월 13일, 폴리(Pauley) 배상조사단이 일본에 도착,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6년 4월에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폴리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일본의 공업에는 군사시설이 압도적인 만큼 이러한 과잉설비를 침략 받은 나라들에 넘겨주는 것이 무장해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본의 전후배상은 일본의 생활수준을 침략 받은 나라들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⁸⁾ 이 같은 배상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의 공업생산력은 1920년대

17) 남기정, 2008, 47~48쪽.

18) Edwin W. Pauley, "Report on Japanese Reparations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vember 1945 to April 1946", Dept. of State, Publication 3174 Far Eastern Series 25. Division of Publications, Office of Public Affairs, 1946.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한국관련 내용이다. 한국은 우호국으로 취급되어야 하나 배상 받아야 할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대일전 승리에 기여한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⁹⁾

1945년 11월이 되자 외무성내에 ‘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를 구성하여 실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폴리보고서가 나온 다음 달인 1946년 5월에는 1차 보고서를 내고 폴리 사절단의 조치가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외국 공관은 몰수될 것이나, 개인재산에 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46년 12월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의 총무부장 아사카이 고이치로(朝海浩一朗)가 대일이사회 미국대표 애치슨을 만나, 폴리 사절단의 방침은 전체적으로 너무 가혹하며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애치슨은 미국은 기본방침은 일본의 전쟁능력의 박탈에 있는 만큼 일정한 경제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 측의 문제 제기에 이해를 표명하였다. 아사카이는 이어서 영국 측 대표 맥마흔 볼을 만나 배상협상에 대한 영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맥마흔 볼은 일본의 경제적 곤경은 지역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징벌적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표명하였다. 이 사례는 1947년 초까지 ‘관대한’ 강화조약을 위한 일본의 사전 조율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국과 영국의 인사들 사이에는 이미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었다.²⁰⁾

당시 일본은 예상되는 전후처리와 배상문제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외무성의 담당자들과 정치가들은 미군 수뇌부와 민간

19)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0쪽.

20) 남기정, 2008. 49~51쪽.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요시다 수상은 1957년 그의 회고록에서 일대일 설득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외무성은 1946년 가을부터 영문 자료를 작성하여, 영토의 45%를 상실했으며, 인구는 증가하고, 공업시설의 태반 파괴되는 등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만큼 관대한 전후처리를 호소하였다.²¹⁾ 일본이 그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영토문제였다. 미국이 7권에 달하는 영토관련 자료집의 접수를 거부하자 일본은 GHQ의 외교국장이었던 시볼드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외교국에 제출하였고, 이는 이후 미 국무성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코스 정책’에 따라, 중단되었던 강화조약 준비가 다시 재개되자 일본 외무성은 1949년 12월 3일 ‘할양지의 경제,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기술’이라는 문건을 준비하였다. 할양지란 조선, 대만, 가라후토(사할린), 관동주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지역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착취설은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일본은 자본을 투자하여 이들 지역의 근대화에 공헌하였다, 2)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사유재산마저 박탈된 것과 같이 이들 지역에서의 가혹한 조치는 ‘국제관계상 이례적인 일’로 시정되어야 한다, 3) 이들 지역은 모두가 당시로서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상 보통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취득되어, 세계 각국이 일본령으로 승인한 바 있다. 여기서 일본은 적산과 사유재산의 물수를 청구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방대한 청구권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²²⁾

21) 박진희, 2005, 17쪽.

22) 남기정, 2008, 53쪽.

나. 연합국 일원으로서의 서명국 참가 여부

강화조약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49년 11월, 미 국무성은 1947년 1월 최초로 작성한 초안 이후 다시 작성한 초안을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1947년 초안 작성 때부터 한국의 서명국 참가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초(Mucchio) 대사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참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무초대사는 한국이 유엔의 지지를 받아 정부수립을 이루었으며, 소련이 지지하는 북한과 달리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위신과 대한국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서명국 참가는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원래 이승만 정부는 한국의 서명국 참가는 당연한 것으로 믿어 왔다. 우선 한국은 카이로 선언이 표현한 노예상태에서 식민지 통치 전 기간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 왔으며, 둘째, 중국 각지에서 중국군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 싸웠고, 셋째, 1941년 12월에는 대일선전포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든 것이다.²³⁾

1949년 12월, 미 국무성은 ‘대일강화조약에 있어서의 한국의 참가’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한국의 서명국 참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승인한 적 없는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근거로 연합국의 일원임을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식민지 통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배상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과 동시에 서명국으로서의 참가 허용이 한국의 과도한 배상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²⁴⁾ 미국은 1943년 전시에 열린 영토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23) 金民樹, 「對日講話條約と韓國參加問題」, 『國際問題』日本國際政治學會 131号 2002, 133~147쪽.

24) 金民樹, 2002, 134쪽.

중국 측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촉구를 두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즉,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한국의 항일운동에 있어서 특정세력 편들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 독립 후 중국의 입장만 강화 하는 결과를 낳아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의 중국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²⁵⁾ 광복 직후 임시정부 세력들이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미국의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1950년 4월 텔레스가 강화조약 담당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강화조약 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텔레스는 1950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한국이 강화조약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예비회담 구성국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것은 텔레스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쵸 대사의 의견과 같이 냉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의 한국의 위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1차대전의 전후처리 협상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했던 경험으로부터 징벌적 전후처리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텔레스의 등장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꾀대한 전후처리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별도의 강화조약안을 작성하고 있던 영국은 한국의 서명국 참가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안 작성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은 한국이 일본의 영토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그때까지도 완전한 국가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영국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서 연합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과거 수많은 식민지 경영의 경험이 있는 영국이

25) 장박진, 「미국의 전후처리와 한반도 독립 문제: ‘근거 없는 독립’과 전후 한일관계의 기원」, 『아세아연구』 153호, 2013. 9, 23~64쪽.

미국과는 입장이 다름을 보여주는 점이다. 또한 영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승전국의 구식민지는 연합국의 지위로 평화회의에 참가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패전국의 구식민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영국이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이었던 대신 대만의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상태였다.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배제한 단독강화를 구상하는 이상 한국의 참가는 중국을 자극할 뿐 아니라, 중국과 소련의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1951년 3월에 열린 텔레스-요시다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정부의 강화조약 서명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전달하였다. 거기서 일본은 공산주의자가 대부분인 재일한국인들이 연합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그들의 권리 요구가 일본사회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의 서명국 참가를 반대하였다. 텔레스의 계속된 설득에 일본은 재일한국인이 연합국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서명국 참가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표하였다. 왜 요시다 수상은 미국의 요구에 동의를 해 주었을까? 텔레스와 요시다가 회담을 한 바로 그날 일본은 서명국으로 참가하는 필리핀과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서명국 참가로 인해 일본의 배상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 요시다는 강화조약 협상에 있어서 최대의 후원국이 될 미국과의 대립은 가능한 한 피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²⁶⁾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재일한국인들이 연합국인의 지위를 얻지

26) 정성화, 1990. 147~150쪽.

못하면 서명국 참가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 타결은 한국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단순한 서명국의 지위는 오히려 불리한 조약 내용들에게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²⁷⁾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일본의 대한국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반도 내부 및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과 일본 사이의 교전을 전쟁이 아닌 ‘반란’의 수준으로”²⁸⁾ 보고 있었던 것이다.

3월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서명국 참가와 관련하여 일본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5월 이후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미영양국이 최종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중국, 대만 모두를 강화회의에 초대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국도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서명국 참가 대신 조약상에서 전후재산처리나 어업협정, 일반통상협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그 결과가 6월 14일 처음으로 한국의 참가가 배제된 초안으로 나왔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명국 리스트에서 배제되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델레스는 한국과 함께 국제적십자사를 참관인으로서 초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9월 8일 강화조약회의에 한국정부는 참가하지 않았다.²⁹⁾

다. 전후배상 문제

모든 강화조약이 그렇듯이 이전의 전쟁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27) 남기정, 2008, 442쪽.

28) 박태균,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 2005, 40쪽.

29) 정성화, 1990, 11쪽.

가장 중요한 것이 청구권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대한민국 인식과 한국의 서명국 참가의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화조약을 통해 철저한 책임규명과 배상을 통한 과거사 청산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으며, 이승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일을 기조로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타협을 하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침략근성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일본의 이러한 근성은 군사적인 형태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형태로도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³⁰⁾

1945년 8월 15일 오전, 천황의 항복 선언에 이어 미국은 일반명령 1호를 발표하였다. 지역을 구분하여 미국과 소련, 중국이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담당할 것을 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일본과 무력투쟁을 벌여온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좌익세력과 국내의 한국건국동맹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연합국의 대일본전에서의 주도 세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미 육군 총사령부는 1945년 9월 7일 포고 1호를 공표하였다. 이 명령은 미군이 진주하기도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남에 대한 미군의 점령을 위한 준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청구권과 관련된 첫 번째 명령이었다. 그 4조에서 주민의 소유권은 존중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 육군이 진주하고 미군정이 수립된 이후인 1945년 9월 25일에는 법령 2호가 발표되었는데, 한국 내의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해 8월 9일 이후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사흘 뒤인 1945년 9월 28일에는 군정법령 4호가 발표되었다. 이는 일본 육해군의 각종 재산에 대한 매매와 취득, 양도를 금지하고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은 모두

30) 박진희, 2005, 5쪽.

미국의 소유가 됨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그 실행 절차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총독부 재산은 미군정청 재산으로 귀속되지만 일본인 개인의 사유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4일 발표된 아놀드 군정장관의 지시사항들을 보면 불명확하고 모순되는 항목들이 들어 있었다. 군정청은 10월 30일까지 보충적인 ‘일본인 재산 처리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인 재산의 매매에 대한 허가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군정청 법령에는 일본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방침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었으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박태균은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로 발표된 명령문구들은 미군정청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³¹⁾ 미국은 미군정을 유지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인들의 사유재산도 몰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헤이그 육전조약은 비록 적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법 규정에 의하면 사유재산의 몰수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법령 33호를 발표함으로써 일본 소유의 모든 재산의 처분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국공유 재산과 사유재산은 모두 군정청이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그 2조에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한국군정청이 취득하고 한국군정청이 모든 재산 전부를 소유함”이라고 되어 있다. 미국이 육전조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사유재산을 몰수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945년 10월 SWNCC176/88에 나타난 미국의 대한정책에 기인한다.³²⁾ 이

31) 박태균, 2005, 44쪽.

32) “Basic Initial Directive to the Commander in Chief, U.S. Army Forces, Pacific, for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those Areas of Korea Occupied by U.S. Forces.” October, 1945. FRUS 1945, Vol. VI, 1074쪽.

문서에 나타난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2항에서는 한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킨 후 한국을 일본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3항에서는 나아가 한국이 건전한 경제발전 통해 자주독립국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박태균은 이에 대해 일본이 중심이 되었던 동아시아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한다.³³⁾ 점령초기의 미국의 대일본 정책이 징벌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는 점은 1945년 말에 구성되어 조사를 시작한 폴리 조사단의 보고서의 제안에서도 볼 수 있다. 폴리 보고서는 또한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의 재산은 한국 재산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이 재산은 한국이 독립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정법령 33호는 그 이후로도 한국내에 남은 일본의 재산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 여겨졌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8년 11월에는 미군정이 소유해 온 일본정부 및 일본인들의 재산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의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날 짜	미국 법령	주요 내용
1945. 8. 18	일반명령1호	
1945. 9. 7	미 육군총사령부 군정법령1호	일본인 주민소유권 존중
1945. 9. 25	미 육군 군정법령2호	8월 9일 이후의 일본재산 처분 금지
1945. 9. 28	미 육군 군정법령4호	일본의 육해군 소유재산 몰수
1945. 10. 23	양도절차 관련 발표	사유재산은 법적 보호, 매매함
1945. 10	SWNCC176/8	미국의 대한국기본정책 목표 발표
1945. 12. 6	미 육군 군정법령33호	모두 몰수

33) 박태균, 2005, 46쪽.

1947년부터 냉전의 분위기가 국제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일본에 파견된 대일평가위원회의 스트라이크 보고서와 1948년의 존스톤 보고서 이후 미국의 대일 배상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다. 냉전의 심화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³⁴⁾ 그 당시 이미 징벌적 전후처리의 계획은 어느새 ‘관대한’ 전후처리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거기다 1950년 초반 강화조약의 협상을 맡기 시작한 덜레스는 중무장하고 불만스러운 동맹국 일본보다는 경제적으로 변창하고 친미적인 일본이 미국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1951년 1월 일본을 방문한 덜레스가 미국의 대일강화원칙 전달했을 때, 그는 이 조약을 우방간의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했다. 미국내 국방성과 국무성 사이의 의견 대립이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의 동시체결이라는 구상으로 타협점을 찾은 만큼, 이미 덜레스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안보조약 체결에 대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관대한 조약구상에 놀라면서 미국에 최대한 양보함으로써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³⁵⁾

그러나 강화조약 초안이 마무리 되어 가던 1951년 3월 6일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본이 한국 내에서 미군정이 몰수한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바로 헤이그 육전조약의 적지사유재산불가침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정부는 미군정이 제정한 법령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해결책은 바로 작성 중에 있던 초안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즉, 미 육군 법령 33호를 인정하고 일본의

34) 이에 대해 남기정(2008)은 그 변화를 냉전보다는 일본의 로비와 협상준비,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우리 측의 상대적 준비 부족으로 그 원인을 돌린다. 1947년 초까지 이미 일본의 사전 조율작업이 결과, 미국 영국 인사들 사이에는 관대한 전후처리에 동조하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35) 박진희, 2005, 17쪽.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4조 b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대일배상 요구를 해 올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4조 a항을 수정하여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듦과 동시에 양국의 ‘특별한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평화협정 체결이 이미 끝난 1951년 12월, 4조의 해석을 놓고 일본은 GHQ에, 한국은 미국무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GHQ는 국무성에 견해 표명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그 이후 미국은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기대하였다. 즉, 조약발효 다음날인 1952년 4월 29일 미국은 문서를 통해 4조 b항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귀속재산은 군정청이 한국에 이양한 것은 정당하나 청구권 문제는 한일간 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⁶⁾

10년을 끌어 온 한일회담은 케네디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정상화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현실적 요구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실익을, 일본은 명분을 갖는 해결책을 찾았다. 미국은 3억5천~4억5천 달러에 달하는 협상금액을 생각하고 있었다.³⁷⁾

4. 전후처리 2: 한일협정

가. 한일회담을 위한 미국의 중재노력

우리나라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과 영토 및 청구권에 관한 요구

36) 박태균, 2005, 47~54쪽.

37) 박태균, 2005, 54쪽.

들을 관철하려 하였으나 서명국으로서의 참가에 실패하자 일본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나 전후 한일의 양국 직접접촉은 양국 주재 미국외교관들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영국의 한국에 대한 서명국 참가 반대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한일 직접 협상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14일 한국의 참가 배제가 결정된 최초의 미영 합의안이 작성되었다. 그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 무초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꾸짖해 주었다. 이에 이승만은 한국이 배제된 강화조약이 미국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러므로 비준 이전에 일본과의 협상이 그나마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일회담의 가능성을 미국 측에 문의하였다.³⁸⁾

7월 3일 그 초안이 공개되자 일본은 재일교포들의 송환 작업을 위해 한국과의 직접대화 통로를 모색하고자 시볼드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 외교처에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의뢰하였다. 패전 후 재일교포 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어로수역 협상이나 청구권 문제는 논의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의제를 재일교포 국적문제에 국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였다. 미국은 양쪽으로부터 서로 상이한 의뢰는 받았으나, 일본이 강력하게 한국 측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일본 측 요구를 반영한 한일회담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8월 15일 이를 양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동경에서 최초의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³⁹⁾ 이를 예비회담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2년 2월 15일 시작된 회의를 1차 회담이라 부르며 '65년 6월 22일에 한일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많은

38) 정성화, 1990. 153~154쪽.

39) 정성화, 1990, 155~156쪽.

의제들이 다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 식민지 지배 인식의 문제와 청구권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두 문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한일회담: 식민지 지배 인식

1차 회담부터 조약의 성격을 둘러싸고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로 오늘날 한일관계의 현안 대부분이 이와 관련이 있다. 1차 회담에서 일본은 “일한우호 조약초안”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조약체결의 목적을 “강화조약이 규정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양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며 양국의 우호와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것”⁴⁰⁾이라고 적고 있다.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 우리 측은 “한일 간의 기본조약안”이라는 제목의 조약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⁴¹⁾ 일본의 ‘우호조약’안이 향후 양국이 외교관계를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우리 측의 ‘기본조약’은 양국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양국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립과 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통상과 항해에 대한 조약에 가까운 조약안을 제시한 데 반해, 우리 측은 강화조약에 가까운 제안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조약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애초의 제목을 ‘한일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

40)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219~227쪽

41)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242~244쪽.

으로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인식의 차이는 우리 측 안의 제3조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된다. 1차 회담 당시 우리 측 제안의 3조는 다음과 같았다.

제3조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0일 이전에 구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⁴²⁾

이는 우리 측이 위의 ‘기본조약’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즉,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정안의 전문에 새로운 문장을 삽입하였다. 즉 ‘일본국과 구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측이 의도하는 합방조약의 무효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은 담겨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었다. 1차 한일회담의 결렬은 일본 측의 역청구권 주장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바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 문제는 사실상 1961년 박정희 정부하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추구할 때까지 회담 결렬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인식 문제의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보타 발언’이다. 1953년 10월 6일, 3차 회담이 개최되자마자 본격적 논의도 진행되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일회담은 이후 4년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였을 정도로 그 파장이 컸다. 당시 한국 측의 흥진기 대표는 한국이 일본의 역청구권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 그것을 포기하고

42)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250쪽.

순순한 법률적 청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1949년 9월 우리 정부는 대일배상요구조서에서 (1) 문화재, 선박 등 현물반환, (2) 확정채권, (3)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 물적 피해, (4) 일본 정부의 저가수탈 등 4개 항목에 걸친 요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2년 2월 20일의 2차 회담 때 제시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소위 대일청구 8항목)’에서는 강제공출이나 전시의 물적 피해 등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피해를 나머지 분야에 대한 청구권만을 요구하고 있었다.⁴³⁾

홍진기 대표와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타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공방이 오고 갔으며 우리 측 대표단은 며칠 뒤에 열린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걸쳐 구보타 대표의 해명과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 1) 36년간의 일본의 한국강제 점령은 한민족에게 유리했다.
- 2) 한국민족의 노예화에 관하여 언급한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이 전시 히스테리의 표현이다
- 3) 일본의 구 재한 일본인 재산을 미군점령 제33호에 의해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 4) 대일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 5) 연합국이 일본 국민을 한국에서 송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구보타는 4)와 5)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1)~3)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려서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주장의 문제점은 바로 미국이 취한 정책에 기초한 한국의 청구권 요구는 불법이지만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43) 요시자와 후미토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식민지책임’론 - 기본관계 및 청구권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I.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179~200쪽.

44) 이원덕,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 『韓國史研究』 제131호, 2005. 12, 110~111쪽.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1)과 2)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카이로 선언이 한국에 대해 규정한 것은 불법적이지만 미군정이나 카이로선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의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처분은 불법이었으나 그렇다고 미국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당시의 외상이었던 오키자키도 구 보타 발언은 ‘당연한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지지 발언을 내놓았다.⁴⁵⁾

이렇게 중단된 한일회담은 4년 6개월 뒤 4차 회담에서 일본 측이 발언철회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재개되지 시작하여, 1960년의 5차 회의부터는 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을 시작되었다. 그리고 6차 회의에서는 김-오히라 메모를 통해 청구권에 대한 타결이 있었으며, 한일회담의 최종마무리를 위한 7차 회담에서는 또다시 식민지 지배 인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측은 한일합방 조약과 그 이전의 조약 모두가 원천적으로 무효(null and void)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는 합법적이었으며 패전으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have become null and void)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 결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 사이의 타협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바로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통해 쌍방이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 조약체결에는 성공하였으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인식의 차이를 방치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게 되었다.⁴⁶⁾

45) 이원덕, 2005, 99~131쪽.

46) 高崎宗司 檢証日韓會談 岩波新書 1996. 文京洙 “戰後日韓關係と市民社會の課題” 藤田和子ほか編 新自由主義に揺れるグローバル・サウス ミネルヴァ書房 2012.

다.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

4차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구보타 발언을 철회함으로써 청구권에 대한 예비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보타 발언의 철회는 그 때까지 일본 측이 주장해 온 역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우리 측의 청구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은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요구와 상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57년 12월 31일, 4차 회담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일공동선언을 통해 일본 측은 역청구권을 철회하였다.

1960년 장면 정권하에서 재개된 5차 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일반청구권 8개 항목과 선박, 문화재 반환에 대한 토의가 32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 구보타 발언을 철회했다고 해서 인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청구권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5차 회담은 양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청구권의 세부 금액 책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 주는 회의였다.⁴⁷⁾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장군은 경제발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1961년 6월의 케네디-이케다 회담, 그리고 11월의 박정희-이케다 회담을 거치면서 한·미·일 3국은 한일협정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한국의 제3공화국이 경제개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파악한 이케다 수상은 그 때까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배상방식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협력 방식을 따를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지원 자금으로 일본의 공산품과 기술을 수입

47) 이원덕, 2005, 116쪽.

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1962년 11월의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이르는 양국의 협상은 청구권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떠나 청구권 자금의 총액 설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이 자금의 규모에 합의를 했을 때에도 그 자금의 명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1962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그 금액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은 7억달러, 일본은 7천만 달러였다. 이는 얼마나 양국이 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김-오히라 회담의 결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금액의 규모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김-오히라 메모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메모에는 자금제공의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 금액을 ‘청구권 자금’ 또는 ‘사실상의 배상’으로 설명하였으나, 일본 측은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으로 해석하였다.⁴⁸⁾ 또한 1965년 최종 협정 2조에는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을 결여한 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앞으로 계속될 양 정부 간 공방의 미래를 남겨놓고 있었다.

라.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 문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청구권 문제는 이후에도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의 문제, 국적에 따른 상이군인과 군속의 보상 문제, 식민지

48) 최종 청구권협정의 전문에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라고 적고 있다.

출신자의 군인 복지 혜택의 문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국가 간, 국민 간에 많은 쟁점들을 만들어 내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인식없이 이루어진 청구권 문제 해결은 향후 다음과 같은 일본의 무리한 행태를 낳게 된다. 첫째는 식민지 시기 법률을 전후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둘째, 배상과 보상으로부터 식민지 피해자들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셋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일전쟁 다음해인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한국, 대만 및 가라후토에 시행하는 건’을 발표하였다. 모집 형태로 집단연행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총독부는 1942년 ‘선인 내지이입 알선요강’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동원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사람사냥’이라 불릴 정도로 강제적인 모집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1943년 8월부터는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11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군에 편입되었으며, 군속으로 12만 명이 동원되었다.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출신들은 ‘천황의 군대’에 입대해 일본군으로 활동해야 했다. 국가총동원령 이후 연행된 조선인 72만 4천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쟁이 끝났을 때는 200만 넘는 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이들 중 일본군으로 복무한 조선인과 대만인들은 강화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국적에서 이탈되었고, 그 때부터 ‘군인은급법’이나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1923년 4월 운영되어 온 군인은급법은 국적을 잃으면 수급자격을 잃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군력 12년이면 일본국적의 조선인도 대만인도 은급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패전 후 GHQ는 군인은급의 지급중지를 명령함으로써 군인은급이 폐지되어 버렸다. 1951년 4월 28일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정부는 주권회복과 동시에 옛 군관계자

원호에 착수하여 조약발효 2일 후인 4월 30일 ‘원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단, 이 법률은 4월 1일로 소급적용되며 호적법 적용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민사국장은 식민지 출신자들에게 일본국적의 상실을 통고하였는데 그 기준일을 강화조약이 발효된 4월 28일로 하였다. 이 경우 조선이나 대만 출신의 군인들도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호법은 1947년 발효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호적법에 따르면 일본 식민통치하에서 일본인은 ‘내지호적’과 ‘조선호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7년 호적법은 내지호적만을 인정하였고, 조선호적은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되었다. 1953년 일본은 군인은급을 부활시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도 원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일본은 출발부터 전쟁에 동원한 식민지 출신자들을 배제하는 원호체제를 만든 것이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징집되어 전장으로 동원되었다가 원호법에서 배제되었던 대만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92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같이 인내해야만 했던 시기’의 것으로 별도의 입법이 없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식민지 지배하에서 가졌던 국적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옛 국민으로서 그 피해에 대한 인내는 일본인들과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 판결은 이후 많은 보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국가총동원령 하에서 징집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린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전쟁이 끝난 1946년 10월 일본정부는 기업들에게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미지불금의 공탁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정확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10년 지나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에 귀속시켜 버렸다. 근거는 한일협정 2조3항에 기초하여 일본이 제정한 국내법(법률 144호: 1965.12.17 제정, 일본이 한국 및 한국국민에게 걸려있는 재단, 권리 및 이익에 대해 처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국내법에 의해 한국 국민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우즈미 아이코는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조선인의 미불금을 ‘몰수’하였다고 비판받아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⁴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모든 청구권에 대해 한일협정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⁵⁰⁾ 한일협정은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시키지 않았고 외교보호권만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⁵¹⁾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협정은 외교보호권의 상호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1992년 3월 27일에는 무토 마사토시 동아시아과 과장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같은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법원은 여전히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에게는 민사상의 손해에

49) 内海愛子,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2002. 김정남 옮김.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2010, 92쪽.

50) 개인보상의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창록,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 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서울민족문제연구소소단행자료(국립 도서관 소장).

51) 외교보호권이란 국제법에서 적용되는 원리로, 국민이 외국에 있을 때,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대우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데 근거한다. 외교적 보호는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로서 국제협약에 기초하는 개념이다. 국가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경우에도 발동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발동에 있어서 피해자의 요청도 필요하지 않다. 배상이 지불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것은 국가에 대한 것이고 피청구국에 대한 청구권이 피해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内海愛子, 김정남 옮김, 2010, 83쪽.

책임질 의무가 없다(‘정부무답책’)는 주장과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함께 인내해야 한다(‘전쟁손해수인론’)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⁵²⁾ 이는 결국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여전히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으며, ‘통절한 반성’은 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⁵³⁾

5. 결론

2015년 7월 중 일본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포로로 강제노동에 동원된 미국인과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피해자들 3765명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1인당 10만 위안(약 1870만원)의 기본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 강제 노동을 시킨 일본 회사들에게 개인보상을 해 줄 것을 명령했다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를 해 두고 있는 상태다. 미쓰비시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당시 외국인 신분 이 아니라 식민지배하에 있던 일본 국민들이었으며, 다른 일본인들과 같이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징용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각종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일본이 우리의 광복 70년에 대한 시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52) 홍성필, 「일본의 전후책임인식과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法學研究』 23권 1호, 2012. 6, 389~431쪽.

53) 남상구,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집, 2010. 8, 291~315쪽.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대 초기부터 일본인들 사이에 유포 되어 온 한국인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적 시각이 식민지 지배기를 거치면서 확대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과 일본의 패전을 넘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추궁과 반성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동경재판에서 피고석에는 미나미 지로와 고이소 구니아키, 이다가키 세이지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의 둘은 조선에서 전쟁동원 체제를 확립한 인물들이며, 세 번째는 조선군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증인석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두 사람도 앉아있었다. 그러나 기소된 삼인의 죄목은 침략전쟁의 공동모의 및 계획준비와 수행, 거기다 통례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였다. 즉 A급, B급, C급 죄목 전부에 해당하는 범죄 명목으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정은 연합국의 식민지들과 중국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재판하였으나 조선과 대만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추궁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 - 이것도 전후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크게 왜곡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 없이 전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가해 온 것이다.”⁵⁴⁾ 한국민들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시각과 국제사회의 환경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견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과거사와 관련된 많은 사과가 이루어졌으나, 도의적, 윤리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2015년 7월 중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도 야당 정치인이 영국의 저명 토론단체에서 영국은 200년에 걸친 인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인도 국내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모디 총리는 그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54) 内海愛子, 김경남 옮김. 2010, 14쪽.

주장을 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 보상을 요구했다. 유럽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 수년간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는 역사정의 레짐이 정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사회가 이에 대해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더 이상 70년 전 일본이 우리를 바라볼 때와는 같지 않다. 물론 절대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국력이 일본만 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중견국 그룹에는 속하는 정도다. 중국의 경제도 규모에 있어서만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이러한 세력의 변화가 일본을 더욱 도발적으로 만드는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독일이 주변국들과 화해를 했던 이유가 프랑스, 폴란드와의 협력과 협조가 꼭 필요했던 것과 같다.

“앞으로 역사문제는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나 국제관계의 핵심변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일본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조언은 바로 이 근본적인 현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세계의 경향이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책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그 성공여부는 화해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웃들이 그 노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⁵⁵⁾

[원고투고일: 2015.7.15,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광복 70년, 일본인의 조선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회담, 식민지 지배, 전후처리, 한일국교정상화, 청구권, 한일병합조약, 카이로선언

55) Thomas Berger. “Different Beds, Same Nightmare: The Politics of History in Germany and Japan, an American Institute of German Studies Issues Brief #39, Johns Hopkins University, 2009, 42쪽.

<ABSTRACT>

Korean Independence and 70 Years Thereaft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Post-War Settlement

Choi Woon-do

What did the Korean liberation of 1945 mean to Japan? Why is it important to Korea of today? Japanese perception of disparagement and degradation on Koreans, which began to be formed since early modern period had been expanded and reproduced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Koreans were discriminated as an inferior being but they were mobilized during the war on an equal basis as one of Emperor's soldiers and as one of Empire's subjects. Japanese has been perceiving Koreans based on double standards. When the war was over and Japan had to embrace its own defeat, Japanese society went through with apathy toward Koreans. When its own interest is at stake, as was in war reparations and the treatment of Koreans in Japan, they viewed Koreans only as the subject of its own colonial rule but neither as Japanese citizens nor as the citizens of Allied powers. This perception is reflected into the legal framework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Korea-Japan Treaty of 1965.

Excluded from the list of signature countries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 had to face the negotiation table for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Even though Korea's limited claims on war-time damages excluding the reparations on Japan's colonial rule was not considered in the peace treaty and had to be dealt in the separate bilateral negotiation. The illegality and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was not confirmed in the Korea-Japan Treaty and the issue was stitched up without final decision. The economic aid, which was the main topic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as interpreted as the fund for the claims against Japan

by Koreans and as the congratulatory donation for independence. Because of this ambivalence, Japan has kept avoiding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 reparations and compensation during the last 70 years. Korean liberation, as long a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concerned, will be completed only when Japan changes its perception on Koreans and accepts the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Key Words : Korean Liberation, Japanese perception on Joseon,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Japan Treaty, Colonial rule, War settlement,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War reparation, Annexation Treaty, Cairo Declaration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황보 경*

1. 머리말
2. 당항성 전투 이전 삼국의 정세
3.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4. 당항성 전투의 양상과 의의
5. 맺음말

1. 머리말

당항성은 신라 眞興王이 553년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부터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대중국 외교를 추진하고자 했던 거점이었다. 문헌에 전하는 ‘党項城’은 지금의 唐城(사적 제217호) 즉 九奉山에 축성된 복합식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행정적인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일원에 해당된다. 당성에 대한 조사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성벽과

* 세종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북문지, 건물지, 외성지 등이 발굴되었으며,¹⁾ 이를 정리하고 주변 유적까지 살펴본 자료도 간행되었다.²⁾ 그러나 당항성이나 당항성 전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개설적이거나 역사지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정도이다.³⁾

당항성은 6세기 중반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10세기까지 약 400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무역항이었는데,⁴⁾ 진흥왕이 정복하기 이전에도 백제가 고구려가 화성지역을 점령하면서 항구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당항성이 포함된 이 일대는 고구려 점령기때 唐城郡으로 불렸다고 전해지고, 신라가 점령한 이후景德王 16년(757)에 唐恩郡으로 변경하였으며,⁶⁾ 憲德王 14년(882)에 縣으로 격하되어 883년에는 水城郡에 병합되었다. 그러다가 흥덕왕 4년(829)에 수성군에서 당성진으로 개편되었고, 사찬극정을 보내서 지키게 하였다고 전해진다.⁷⁾

신라는 6세기 이전까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대중국 외교 횡수가 훨씬 적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인 불리함과 국력의 열세로 대부분 고구려와 백제 사신을 따라 사신을 파견했었다.⁸⁾ 그러다가

1) 漢陽大學校博物館, 『唐城-1次發掘調查報告書』, 1998; 『唐城-2次發掘調查報告書』, 2001.

2) 경기문화재단, 『당성』, 2009.

3)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의 考察」, 『關大論文集』8-1, 관동대학교, 1980.

4)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23쪽.

5) 고구려가 당항성 즉 남양만을 점령한 때가 475년부터라고 본다면, 당성이 이미 축조되어 있거나 이전부터 존재하던 즉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필자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이기봉, 「전통시대 남양도호부의 중심지와 역사적 변화」, 『地理學論叢』45,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2005, 419쪽).

6) 『三國史記』卷35, 雜志4 地理2條 “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4年條 “春二月 以唐恩郡爲唐城鎮 以沙湊極正往守之”.

8) 신라는 527년 백제 사신을 따라 梁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梁書』新羅傳에는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여 6세기 초반 해도 신라는 독자적인 외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

신라는 6세기 이후 국가 성장에 따라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隋·唐을 상대로한 삼국의 대중외교는 경쟁관계로 발전되었다.⁹⁾ 특히 삼국은 대당 조공이 시작된 619년 이후 660년까지 41년간 고구려는 25회, 백제는 22회의 입조사를 보냈으나, 신라는 35회를 파견한 바 있어 신라가 점차 적극적으로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당항성은 신라 입장에서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던 만큼 국운을 걸고 사수해야만 했던 곳이었다. 반면, 백제나 고구려는 매번 신라를 공격하는데 있어 수나 당의 간섭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당항성을 봉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육상에서의 국경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남양만 일대 섬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했던 만큼 당항성 공략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마침내 642년 백제 義慈王은 武王대에 이루지 못한 신라 정벌을 위해 40여 성과 대야성 함락을 일거에 이루게 되며, 동시에 당항성을 고구려와 함께 공격하였다.¹¹⁾ 물론 이 전투는 비록 실패했지만,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는 전술을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전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642~643년에 벌어진 전쟁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제까지는 대개 대야성 전투를 중심으로 김춘추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다루어져 왔기

있다고 여겨진다(鄭載潤, 「5~6세기 백제의 南朝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4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참조).

9) 신형식, 2009,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이해』, 주류성출판사, 219쪽.

10) 신형식, 1997,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215쪽.

11) 이 글에서는 당항성 전투가 발발한 시기를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642)條의 기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기사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高句麗本紀의 보장왕 즉위년(642)에 김춘추가 방문했던 일과 『舊唐書』東夷列傳 百濟條에 기록된 貞觀十六年(642)의 기사와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고구려본기 보장왕 2년(643) 9월조에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40여 성을 점령한 일과 고구려와 함께 입조의 길을 막으려고 하여 구원을 청한다는 기사로 볼 때 당항성 전투는 642년에 벌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百濟本紀에는 643년 11월에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어서 위의 기사와 시간적 차이가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항성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당항성 전투가 발발하게 된 배경 즉, 삼국의 정세가 어땠는지와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하게 된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마련하였다. 그 이유는 당항성 전투가 대야성 전투만큼 전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백제 단독이 아닌 고구려가 참전했다는 점과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을 했으나 감금을 당한 뒤 겨우 풀려나 당과 더욱 긴밀한 외교관계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항성 전투로 인해 당이 고구려·백제의 동맹을 우려했다는 점이다.

2. 당항성 전투 이전 삼국의 정세

신라는 632년에 제27대 善德(女)王이 즉위하였는데, 이 시기는 삼국간의 전쟁이 거의 매년 일어났던 시기였고 수와 당나라도 고구려를 침략하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던 때이다. 삼국 간의 전쟁은 6세기에 비해 7세기대 절정을 이루었는데, 특히 602년 백제가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한 일을 시작으로 백제와 신라, 고구려와 신라, 수·당과 고구려가 死活을 건 전쟁을 벌였다. 특히 선덕왕 이전인 眞平王代에는 관제정비와 대중국 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남산성 축조 등 왕경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여 백제나 고구려, 倭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642년은 신라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해였다. 백제 의자왕은 실 새 없이 신라를 몰아 붙였으며,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집권한 직후부터 신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한 배경을 알기 위해 그 이전의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백제의 정세

의자왕은 무왕 33년(632)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왕으로 즉위한 직후부터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무왕도 재위 42년(600~641) 동안 적지 않은 전투를 일으켰는데, 신라와 13회, 고구려와는 1회를 벌여 주로 신라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왕이 공격한 신라 성은 아막성과 가잠(봉)성, 서곡성, 독산성 등으로 공격루트가 다양했는데, 재위 하반기에는 신라의 下州지역에 집중되었다. 무왕대의 전투양상은 하주와 新州를 번갈아서 공격하여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신라측의 방어선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¹²⁾ 또한, 전투의 대부분은 백제가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전에 치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어가 취약한 곳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627년 무왕은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려 했으나, 신라가 당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전투를 중지한 일도 있었지만,¹³⁾ 신라에 대한 공격은 63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수에 4회, 당에 12회 등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도 견고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왕도인 泗泚에 대한 役事を 진행하였고, 益山에 미륵사(사적 제150호)와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을 건설하였으며, 634년에 왕흥사를 낙성하고,¹⁴⁾ 같은 해에 宮南池(사적

12) 金昌錫,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百濟·新羅의 전쟁과 大耶城」, 『新羅文化』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87~88쪽.

13)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28年條 “秋七月 王命將軍沙乞拔新羅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羅王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乃止”.

14) 왕흥사에 대한 조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목탑터 심초석 사리공에서 사리용기인 청동함, 은제병, 금제병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제사리함에는 29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丁酉年二月十五日

제135호)도 조성하는 등 재위 내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37년부터 641년까지는 신라와의 전쟁을 그치고 마침내 무왕이昇遐하게 되는데, 638년 어느 시점부터 무왕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왕의 재위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고,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그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재위 41년(640) 정월에 혜성이 나타났다고¹⁵⁾ 한 것으로 보아 641년 3월까지 병세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39년 정월에 사택왕후가 미륵사 서탑에 봉안했다는 ‘금제사리봉영기’의 내용 중에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¹⁶⁾라는 내용으로 보아 무왕의 장수를 비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무왕의 건강 이상과 병세의 악화, 장례 등의 기간 동안 백제 정부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의자왕이 즉위한 직후부터 백제는 다시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¹⁷⁾ 당항성과 대야성 전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자왕은 즉위초부터 아버지인 무왕이 추진했던 대신라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당과의 외교관계도 유지했다. 의자왕은 재위 2년

百濟昌王 爲亡王子 入刹 本舍利二枚葬時 神化爲三』이라 하여 백제왕 창 [위덕왕]이 577년에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혹은 찰주)를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百濟王興寺』, 2008).

15)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41年條 “春正月 星孛于西北”.

『三國史記』에 기록된 혜성이나 일식, 용의 출현 등은 왕의 운명이나 국운과 결부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별이나 해, 달의 움직임이 왕의 죽음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16) 금제사리봉영기의 내용 중 “…願使世世供養劫劫無 盡用此善根仰資 大王陛下 年壽與山岳齊固 寶曆共天地同久…”(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2011, 36~37쪽).

17) 무왕과 의자왕이 대신라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신라에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성왕이 전사한 이후 屍身을 신라로부터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 의도도 있었다고 추측된다(『日本書紀』卷19 欽命天皇 15年 12月條에는 진흥왕이 성왕의 두개골을 北廳의 계단에 묻고, 나머지 시신만 백제로 보냈다고 전한다).

(642)¹⁸⁾ 2월에 주군을 순무하고, 죄인을 풀어주는 등 국민들을 두루 보살폈으며, 같은 해 7월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미후 등 40여 성을 함락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¹⁹⁾ 이때 백제가 함락한 신라 성들은 대야성과 인접해 있는 성들로 무왕이 장악한 거창·함양·산청과 대야성이 위치한 합천을 제외한 진주·사천·고성·마산·함안·의령을 포함한 경남 서남부지역과 고령·성주·선상을 비롯한 경북 내륙의 일부지역으로 추정된다.²⁰⁾ 이 전투의 의미는 의자왕이 재위 초기에 많은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점과 직접 참전했다는 점으로 보아 귀족 세력을 규합하고, 군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왕이 다하지 못한 신라 併呑의 대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는데 있다.

또한 8월에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하였고, 한편으로 윤충으로 하여금 군사 1만을 동원하여 대야성을 함락하게 하였다. 대야성 전투 결과, 백제가 성을 함락하고, 성주인 김품석과 그의 처 즉 김춘추의 딸을 죽였으며, 포로 1천여 명을 잡아 돌아왔다.²¹⁾ 대야성 전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백제로서는 대야성이 하주의 치소성인 동시에 경주와 근접한 요충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주로 진공

18) 『日本書紀』에 의하면, 이 해 정월에 의자왕의 모친이 돌아가고, 또한 弟王子인 翹岐 및 그의 同母妹 4명, 內佐平 岐味, 고명한 사람 40여 인이 섬으로 쫓겨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하다. 이는 의자왕이 즉위 후 國母가 돌아가자 곧바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元年 二月條 “今年 正月 國主母薨 又弟王子兒 翹岐及其母妹女子四人 內佐平岐味 有高名之人柵餘 被放於嶋”).

19)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年條 “二月 王巡撫州郡 慮因除死罪皆原之 秋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彌猴等 四十餘城”.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秋七月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20)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慶州史學』 23, 慶州史學會, 2004, 8쪽.

21)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年條 “八月 遣將軍允忠領兵一萬 攻新羅大耶城 城主品釋與妻子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傳之王都 生獲男女一千餘人 分居國西州縣 留兵守其城…”.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데 있다. 반면 신라 입장에서는 김춘추의 사위에게 맡겼던 성이 백제군에게 함락당하자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었을 것이고, 다시 수복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나. 고구려의 정세

고구려는 嬰陽王代(590~618) 수와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에 대하여 침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구려는 수가 건국하자 정세를 관망하면서,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594년 수가 신라 진평왕의 책봉을 고구려와 동등하게 해줌으로써 외교관계에 변화가 생겼다.²²⁾ 이에 영양왕은 598년 遼西를 공격하였고, 수는 30만명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하기도 하였다.²³⁾ 그리고 603년에는 신라가 점령하고 있던 北漢山城을 공격하여²⁴⁾ 수와 밀착되어가는 외교관계를 차단하고,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지배를 무력화 시키고자 했다.²⁵⁾ 또한, 재위 18년(607)에는 백제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하였고, 19년(608)에 신라의 북쪽 국경을 습격했으며, 우명산성도 함락하였다. 영양왕은 수와의 3차에 걸친 전쟁을 치른 이후 내적인 안정을 추구하다가 재위 29년(618)에 사망하였다. 그 해에 수나라도 멸망하여 두 나라의 전쟁이 동북아시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2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16年條 “隋帝詔拜王爲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隋書』卷81, 列傳46 東夷 新羅條 “傳祚至金眞平 開皇十四年 遣使貢方物 古祖拜眞平爲上開府樂浪郡公 新羅王”.

23)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年條.

2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5年條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 以拒之”.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4年條 “王遣將軍高勝 功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 噪相應 勝以彼衆我寡 恐不克而退”.

25) 황보 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韓國史學報』A58, 高麗史學會, 2015, 58쪽.

영양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榮留王(재위 618~642)은 즉위 초부터 새로 건국한 당나라에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재위 2년(619)부터 12년(629)까지 9회에 걸쳐 사신을 보낸 사실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당 고조는 고구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해 나가는데, 우선 622년 수와의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 간 포로 1만여 명을 돌려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²⁶⁾ 그리고 631년에는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京觀을 헐어버리기도 했다.²⁷⁾ 이렇게 당 고조와 태종은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이용하여 高·隋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戰後 마무리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당에서는 624년에 道士를 시켜 천존상 및 도법을 가지고 와 老子를 강론하도록 하였고,²⁸⁾ 625년에는 당으로 사람을 보내 불교와 노자의 敎法을 배우고자 하는²⁹⁾ 등 종교를 매개로 한 외교관계가 지속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양국의 외교관계는 돌궐에 대한 견제와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서로 사신을 교환하면서 교류를 이어가게 되었다.³⁰⁾ 그러던 중 628년 고구려는 당 태종이 돌궐의 頡利可汗을 사로잡은 것을 치하하면서 봉역도를 보냈다.³¹⁾ 고구려가 봉역도를 당에게 보낸 것은 돌궐이 평정된 이후의 판세변화를 대비하면서 자국의 영토를 당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631년 고구려는 당이 경관을 허문 것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동안 수와의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

26)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5年條.

27)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4年條 “唐遣廣州司馬長孫師 臨塞隋戰士骸骨 祭之 毀當時所立京觀”.

28)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7年條.

29)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8年條.

30) 정원주, 「營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研究』40, 高句麗渤海學會, 2011, 21쪽.

31)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1年條 “秋九月 遣使入唐 賀太宗擒突厥頡利可汗 兼上封域圖”.

으로 부여성에서 발해만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착공한 것이다.³²⁾

한편, 고구려는 637년까지 백제와 신라에 대하여 먼저 침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629년 신라군이 고구려의 낭비성을 함락했고,³³⁾ 고구려는 신라의北上을 막기 위해 638년에 신라의 칠중성을 공략하였으나 패배하였다.³⁴⁾ 낭비성 전투는 고구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에 고구려는 당과의 외교관계가 비교적 원만했지만 한편으론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라의 침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곧바로 반격을 하지 못한 채 638년에 이르러서야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칠중성은 임진강 이남지역의 거점성으로 두 나라는 무열왕과 문무왕 때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요충지이다.³⁵⁾ 이렇게 영류왕은 당과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하는 편이었고, 신라 공략은 한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영류왕 23년(640)에는 세자를 당에 보내어 조공함으로써 고구려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³⁶⁾ 이듬해 陳大德이 방문했을 때에도 후하게 대우했다고 한다.³⁷⁾ 이러한 고구려의 대당 정책은 다소 守勢的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영류왕뿐 아니라 大對盧를 비롯한 당시 고구려 집권세력 상당 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32)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4年條 “春二月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33)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2年條 “秋八月 新羅將軍金庾信 來侵東邊 破娘臂城”.

34)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1年條 “冬十月 侵新羅北邊七重城 新羅將軍關川逆之 戰於七重城外 我兵敗衄”.

35) 『三國史記』에 의하면, 무열왕 7년(660)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여 군주 필부가 전사하고 성이 함락되었으며, 문무왕 7년(667)에는 신라가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36)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3年條 “春二月 遣世子桓權入唐朝貢 太宗勞慰賜賚之特厚”.

37)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4年條.

있다.³⁸⁾ 반대로 일부 귀족세력은 영류왕의 외교노선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결국, 642년 10월 영류왕과 대신 백여 명은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해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³⁹⁾ 그런데, 당항성을 백제와 함께 공격한 것은 『三國史記』新羅本紀를 참고할 때, 동년 8월에 벌어진 일이므로 영류왕이 시해당하기 전에 고구려는 백제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류왕의 뒤를 이은 보장왕은 연개소문에 의해 즉위했지만, 실권은 모두 연개소문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642년에 김춘추는 당항성과 대야성을 빼앗긴 뒤 백제를 치고자 보장왕을 만났으나 그 청을 거절당하고 감금되었는데,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출병하자 그를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⁴⁰⁾ 이로써 고구려와 신라는 화친의 기회가 멀어지고, 더욱 거센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다. 신라의 정세

신라는 진평왕 재위 전반기부터 진행한 내적 정비가 마무리되어 갔지만, 재위 중반기부터는 고구려, 백제와의 전투가 국경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진평왕 54년 동안 치른 전쟁은 모두 13회인데 고구려와 3회, 백제와 10회로 대부분의 전쟁을 백제와 치렀다고 해도

38) 방용철,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大邱史學』102, 大邱史學會, 2011, 21쪽.

39) 임기환은 연개소문이 아버지인 대조와 더불어 대당 강경세력을 이루었고, 정변은 국내계와 평양계 귀족세력이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립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林起煥,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5, 韓國古代史學會, 1992, 41~43쪽 참조).

정원주는 “연개소문은 영류왕이 왕권강화를 위해 귀족세력들을 제거하고 계부 왕실 주도의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한 반발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영류왕을 살해하였다”고 보았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1, 35쪽).

40)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元年條 “...新羅謀伐百濟 遣金春秋乞師不從”.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 왕이 직접 출정하거나 동원된 군사 수를 알 수 있는 전투는 北漢山城 전투가 유일하다. 진평왕대 발발한 전쟁의 시작은 602년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해 왔고,⁴¹⁾ 603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략한 일이었다.⁴²⁾ 그리고 재위 33년부터 54년까지 9회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중 고구려와는 낭비성 전투가 유일하다. 따라서, 진평왕대 전투는 백제와 주로 벌어졌고, 고구려와는 북한산성과 우명산성, 낭비성 전투뿐이었다. 백제와의 전투양상은 주로 신라가 수세적이었는데, 花郎을 대표로 하는 젊은 장수들을 내세워 힘겹게 막아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신라는 당나라에 꾸준히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으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알리곤 하였다.⁴³⁾

진평왕이 재위 54년 만에 승하하자 그의 맏딸인 선덕왕이 즉위하여 왕위를 이었다. 선덕왕 재위 7년(638)까지는 백제가 2회, 고구려가 1회 침략해 왔는데 모두 선방하면서, 내적으로 백성을 위문하거나 분향사와 영묘사를 낙성하는 등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636년 3월에는 선덕왕이 병에 걸리자 진평왕 35년(613)에 이어 두 번째로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베푸는 등 큰 법회를 열기도 했는데, 5월에 백제 무왕이 장군 우소 등 갑사 5백 명을 보내 독산성을 습격하려고 한 일이 벌어졌다. 물론 알천이 이끄는 신라군이 엄습하여 잘 막아 내었으나, 무왕은 선덕왕의 와병소식을 듣고 기습작전을 전개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638년 칠중성에 쳐들어 온 고구려군을 격퇴시키는데 대장군 알천이 출전하여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켜

41) 아막성은 전북 남원군 성리에 위치해 있는 성리산성으로 포곡식에 둘레가 약 633m이다. 아막성이 위치한 운봉고원은 전북↔경남 간 육로교통의 중추이면서, 방어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2011, 801쪽;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4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4·25年條.

4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7·48年條.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⁴⁴⁾ 그리고 637년에는 우수주를 설치하고,⁴⁵⁾ 639년에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바꾸어 진주를 시켜 지키도록 하는⁴⁶⁾ 등 고구려와 접하고 있는 임진강 유역과 강원지방인 우수주, 하슬라주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방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630년대 벌어진 삼국 간의 전투는 그 이전에 비해 규모도 크지 않고, 교전 횟수도 적어 소강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왕이 내적으로 대규모 役事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630년대 후반기엔 병세가 악화되어 전투를 지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구려도 수와의 전쟁 여파와 영류왕의 친당정책으로 전쟁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즉위하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신라에 대한 공세가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40여 성이 함락된 일과 당항성, 대야성에서 벌어진 전투가 그것이다. 신라로서는 백제와 접하고 있는 서쪽 국경과 당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가 백제와 고구려에게 공격당함으로써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에 선덕왕은 그 해 겨울에 김춘추를 고구려로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청병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왔다.⁴⁷⁾

44)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7年條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 入山谷 王命大將軍闕川 安集之 十一月 闕川與高句麗兵 戰於七重城外 克之 殺虜甚衆”.

45) 『三國史記』卷35, 雜志4 朔州條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置軍主 景德王改爲朔州 今春川 領縣三”.

46)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8年條 “春二月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沙浪眞珠鎮之”.

47)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3.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당성이 입지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대는 서해안의 주요 항구 중에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차례대로 점령했고, 백제나 신라는 주요 항구로 활용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줄곧 이용되었다. 여기에서는 당항성이 왜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항성은 신라 진흥왕대인 553년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신주를 설치한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는 551년 백제와 함께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공격하여 16개 군을 점령하였지만, 2년 뒤인 553년에 백제가 회복한 한강 유역을 기습하여 점령하였다. 그리고 신라는 지배의 강화를 위하여 557년 신주를 북한산주로 옮기고, 568년 북한산주에서 남천주로 치소의 거점을 옮겼다.

이 시기 신라는 대중국 외교의 출항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화성에 있는 지금의 당성을 거점성으로 삼았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자주적인 대중국 외교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출항지는 바로 당항성이었다.⁴⁸⁾ 신라가 당항성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백제가 개발해 놓은 항구라는 점과 중국으로 건너가기에 적합한 출항지라는 점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신라 입장에서는 인천이나 강화지역의 경우 개성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임진강의 하류여서 황해도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침공이 우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인천보다 남쪽이면서 백제의 태안반도보다 북쪽 지역인 남양만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라는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48) 皇甫慶, 「新州 位置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53, 白山學會, 1999, 228~229쪽 참조.

고구려나 백제의 사신을 따라 동행했어야 했고, 독자적으로 경주에서부터 바닷길로 중국을 가기에는 너무 멀리 돌아가야만 했다. 따라서, 신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육상교통로를 따라 서해안으로 접근한 뒤, 바닷길을 이용하여야 짧은 시간 안에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경주에서 당항성으로 가기 위한 교통로를 먼저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지는데, 하나는 충주↔여주↔이천↔수원↔남양만이고, 둘째는 상주↔보은↔청주↔진천↔직산↔남양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길이 거리가 훨씬 짧고 지세도 평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⁴⁹⁾ 아래의 기록을 통해서 8세기대에 자주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사료-1〉본국 경계 내에 3주를 두니, 왕성 동북쪽 당은포 방면을 상주라 하고, 왕성 남쪽을 양주, 서쪽을 강주라 하였다.⁵⁰⁾

그러나 7세기대의 기록을 보면 남천주를 거쳐 당항성으로 가는 길도 자주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열왕 7년(660) 6월에는 왕을 비롯한 김유신 등이 이끈 신라군이 南川停에 도착한 후 蘇定方이 이끄는 당나라군을 맞이하기 위해 태자 법민과 병선 1백척을 德物島로 보낸 일이 있었다.⁵¹⁾ 문무왕 3년(663)에는 당에서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기 위해 孫仁師에게 군사 7천명을 덕물도를 거쳐

49)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28쪽.

50)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條 “本國界內置三州 王城東北當恩浦路曰尙州 王城南曰良州 西曰康州”.

5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年條.

660년 당이 백제를 침략할 때 당 고종은 김인문에게 백제의 도로 사정과 당에서 백제까지 오고 가는 편의를 묻자 일일이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이로 보아 신라는 서해안의 주요 항구와 성곽, 도로 등 육상 및 해상의 교통로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三國史記』卷44, 列傳4 金仁問傳).

웅진부성으로 나가게 한 일도 있었다.⁵²⁾ 또한, 문무왕 8년(668) 6월 12일에 劉仁軌가 당항진에 도착하자 왕이 김인문을 보내어 환영한 일이 있었다.⁵³⁾ 이 두 예로 보아 신라군은 경주에서 남천주를 거쳐 남양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항진을 대당 외교의 거점 항구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항성은 진흥왕 이래로 출공 신라의 대중국 외교 출항지이자 입항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덕적도에 당 수군이 주둔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신라 수군이 덕적도에 대규모 기지는 물론 碇泊施設을 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항성의 서해 외곽 전초기지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⁵⁴⁾

다음으로 당항성을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航路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당성이 위치한 남양만에서는 서해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연안항로가 있고, 山東半島로 직접 항해하는 항로와 당항성에서 백령도까지 북상하였다가 산동반도로 향하는 항로 등 여러 바닷길이 있었다. 그 중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직단항로는 덕적도를 지나 산동반도의 登州나 靑島로 들어가는 항로이다.⁵⁵⁾ 이때 당항성이 주요한 출발지가 되었는데,

52)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年(663) 5月條에 유인케는 유인원과 함께 해 무장을 풀고 군사를 쉬게 하면서 군사의 증원을 요청하여 황제가 손인사를 보내 군사 40만 명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러서 웅진부성으로 나가게 하였다고 전한다.

『舊唐書』東夷列傳 百濟 龍朔 2年條(662)에는 유인원이 증병을 요청하여 군사 7천 명을 징발하여 손인사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웅진으로 가서 도와주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53)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8年條.

54) 德積島는 德勿島, 得物島라고도 불리며, ‘큰물섬’이라는 우리말을 한자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덕적도 國壽峰은 소정방이 이 섬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제천단을 쌓고 이곳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덕적도 동남쪽 약 500m 거리의 蘇爺島 이름도 소정방의 주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소야리 大村에서 古瓦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수습된 바 있어 관련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金光鉉, 『德積島史』, 德積島史編纂委員會, 198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덕적군도종합학술조사』, 2002).

55) 날씨가 좋을 때에는 경기만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영흥도 서쪽 항로 즉 섬

지금의 마산포나 화랑포를 사용했을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다.⁵⁶⁾

한편, 당시의 신라 선박은 어떠 했을까? 이제까지 신라 선박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안압지선’이 유일한데, 최근 영흥도 서쪽 3km 정도 떨어진 섬업벌에서 발굴된 ‘靈興島船’이 주목된다. 영흥도선은 3단으로 결구된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6m, 폭 1.4m, 선심 0.3m 가량이고, 선체는 서쪽으로 30° 가량 기울어졌으며, 중앙을 기준으로 한 장축은 거의 남-북에 가깝다. 배에서 출수된 유물은 철제술 12점 등 금속류 17점, 도기병 2점 등 도기류 6점, 사슴뿔 등 골각류 3점, 닻돌 등이고, 선체편인 외판과 저판의 수종이 소나무류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신라 선박은 9세기 일본에서도 ‘新羅船’을 건조하여 그들의 국가 공무인 遣唐使船, 貢物運搬船에 투입시켰다. 그러한 이유는 ‘신라선’이 구조와 성능에 있어서 중국형 선박보다 더 우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⁵⁷⁾ 이러한 점을 참고로 영흥도선의 제작시기는 8~9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안압지에서 출토된 ‘안압지선’과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⁵⁸⁾ 비록 발굴된 배가 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지만, 660년 신라군이 덕적도에 병선 1백 척을 투입

업벌 주변 항로를 이용하였고, 대부도와 선재도, 영흥도 등 섬사이를 지나는 항로는 경기만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항로로 사용되었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천 웅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4, 400쪽). 그리고 권덕영에 의하면, 일본 건당사의 경우를 신라 건당사에 적용시켜 당은 포-등주간 약 600km는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등주에서 장안까지 약 60일 정도가 걸리므로 경주에서 장안까지는 총 3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보았다(權惠永, 『三國史記』新羅本紀 遣唐使 記事의 몇가지 問題,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82~83쪽).

56)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22쪽.

화랑은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경기 수군 중에서 가장 큰 부대로 함선 26척과 1,666명의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고려 공민왕 때 화랑이 왜구의 침공을 받았다는 기록과 왜구가 들어온 지점이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41쪽).

57) 최근식, 『신라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17쪽.

58)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4.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선박 제조기술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겠다.

7세기 당시에 당항진을 개발하고 연안 해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성, 안산, 인천, 강화 일대를 아우르는 경기 해안지대를 차지해야 했다. 그러나 고구려 수군은 서해 연안항로 일대를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중국으로 往來하기에는 쉽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사료-2〉 춘추는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났는데, 춘추의 종자 온군해가 존귀한 관모와 의복 옷차림으로 배 위에 앉아 있었더니, 고구려 순라병들은 그를 춘추로 여기고 잡아죽였다. 춘추는 작은 배를 타고 본국에 이르니, 왕이 이 일을 듣고 애통해 하였으며, 온군해에게 대아찬의 관위를 추증하고 그 자손들에게 넉넉히 포상하였다.⁵⁹⁾

위의 기록으로 보아서도 648년 고구려 수군은 신라의 주요 항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따라서, 신라로서는 고구려의 항로장악을 풀기 위해서 한강 유역을 완전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신주를 중심으로 북한산성 방어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북한산성을 603년과 661년에

59)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 2年條 “(春秋還至海上) 遇高句麗邏兵 春秋從者溫君解 高冠大衣 坐於船上 邏兵見以爲春秋 捉殺之 春秋乘小船 至國 王聞之 嗟痛 追贈君解爲大阿湌 優賞其子孫”.

60) 이 사건은 고구려가 신라의 대당 항로 즉 그의 歸唐之路를 차단하여 나·당간의 연결을 저지하는 동시에 당의 신라 원조에 대한 외교문서를 略取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申澄植, 『韓國古代의 서해 교섭사』, 『국사관논총』 2, 1989, 258쪽). 백제도 문주왕 2년(476)과 동성왕 6년(484), 무왕 27년(626) 중국으로 보낸 사신이 고구려 수군에 의해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백제의 사신선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황해도 남쪽 연해를 따라 서쪽으로 항해하여 백령도나 대청도에 이르렀다가, 여기서 바람을 기다린 후 큰 바다를 건너 산둥반도로 항해야 하는데, 고구려가 황해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혹 방해를 받았던 것이다(정진술, 『한국해양사』, 京仁文化社, 2009, 165쪽).

공격하였는데, 특히 661년에는 말갈병과 함께 수륙군을 동원하기도 했다.⁶¹⁾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고구려와 신라는 6세기 중반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까지 한강 유역과 서해안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이 때문에 신라로서는 고구려 수군의 감시로 인해 백령도나 강화도 일대의 항로 이용이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동반도로 직행하는 항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특히 6세기 말 이후에는 신라가 백제에 의해서 개척된 서해 직통항로를 빼앗아 어느 정도 이 항로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83년에 船府署를 설치한 점은 신라의 적극적인 해상진출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⁶²⁾

이와 같이 당항성이 신라 주요 항구였다면, 주변 지역에도 많은 수의 성곽이 분포해 있어야 한다. 당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지만, 화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과 인천과 강화 일대까지도 확보하여야만 海路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당항성 주변 특히 평택 일대에 분포한 비봉산성과 자미산성, 무성산성 등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당성과 그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면, 성이 축조된 구봉산은 북동-남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발 150m 정도의 산이고, 남서쪽으로 烽火山과 이어져 있어서 두 산의 길이가 총 4.2km 정도이다. 따라서 두 산은 사선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서쪽이나 남서쪽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구봉산의 남동쪽 약 1.25km 거리에 백곡리토성이 있고, 약 2.5km 거리에 淸明山이 마주해 있으며, 그 사이에도 낮은 산이 있어서 실제로는 구봉산과 청명산 사이가 막혀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동쪽 화성시내로부터 접근하여 산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지형

61) 『三國史記』卷42, 列傳2 金庾信中條 “高句麗靺鞨謂 新羅銳兵皆在百濟 內虛可擣 發兵水陸並進 圍北漢山城 高句麗營其西 靺鞨屯其東 攻擊浹旬 城中危懼…”.

62) 申滢植, 앞의 논문, 1989, 259쪽.

이다. 현재는 지방도 305호선이 터널을 통해 지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굴고개’라고 하는 산길을 넘어 다녀야 했을 정도로 남서쪽 바닷가를 제외한 나머지 방면은 자연적인 방어능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간척지로 현상이 변경되기 전에는 밀물과 썰물로 인해 구봉산 일대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섬으로 변하기도 했다. 즉 당성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동쪽은 육지와 갯 강으로 분리되어 있어 육지와 가깝고 썰물 때면 육지와 소통도 원활하다. 특히 당성은 섬의 방어력과 최고의 해자, 산성의 접근성을 모두 지닌 천혜의 요새였다고⁶³⁾ 할 수 있다.



〈지도 1〉 당성 주변 유적 분포도(경기문화재단, 『당성』, 2009 인용)

63)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39쪽.

당성은 축조시기가 다른 3중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쌓은 성벽은 구봉산의 정상부에서 봉화산으로 뻗은 테피식 성이다. 둘레는 363m, 외벽 높이는 4~5m이고, 성벽 위에는 2~3.5m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다. 포곡식 성벽은 테피식 성벽의 중간부를 관통하며 구봉산 능선을 감싸 안은 산성이다. 이 성벽은 통일신라 말기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며, 당성진 설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벽 둘레는 1,148m이며, 판축기법을 이용한 토축성벽으로서 일부 구간은 석심을 채워 쌓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외벽 높이는 3~4.5m이고, 남문지와 북문지가 있고, 동문지와 수구지는 계곡 쪽에 있다. 이외에도 산능선을 따라 작은 외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서남쪽 외성에서는 남양장성이라 불리는 토루가 연결되고 있다.⁶⁴⁾



이외에도 당성 주변에는 삼국시대 유적이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백곡리토성과 백곡리 고분군, 백곡리사지, 상안리 유적 등이 있다. 백곡리토성은 마도면 백곡리 산135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산 정상부를 둘러싼 테피식 토축산성으로 평면이 타원형에 가깝고

64) 경기문화재단, 위의 책, 2009, 12~14쪽.

둘레가 320m이다.⁶⁵⁾ 백곡리 고분군은 1~3지점까지 지표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⁶⁶⁾ 그 중에서 확인된 12기 중에 6기 정도가 발굴되기도 했다. 고분군은 1.2km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 4~5세기대 백제 석곽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된 고분에서는 원저단경호와 승문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을 비롯한 철제무기, 마구류, 농공구,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 석곽묘에서는 철제대도와 단갑, 재갈 등이 출토되어 피장자가 武將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곡리사지는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건물지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 높고, ‘白寺’가 시문된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절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선조문과 집사선문, 수지문 등이 시문된 기와류와 백제~통일신라기 토기도 많이 산포되어 있다.⁶⁷⁾ 그리고 주변 구릉지대에서 백곡리유적과 백곡리 유물산포지 등이 분포해 있다.⁶⁸⁾ 또한 백곡리사지로부터 서남쪽 약 350m 거리에 상안리유적이 위치해 있는데, 이 유적에서는 I 구역에서 도로유구와 수혈유구 5기, II 구역에서 온돌과 배수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이 유구들은 대체로 6~9세기대에 편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당성과 관련 있는 임시주거지나 교통로, 숙박이 가능한 건물지로 추정되고, 시기는 7~9세기로 보고되었다.⁶⁹⁾ 따라서, 당성의 동쪽과 남쪽 주변에 성곽과 고분군, 절터,

65) 이 성은 서·북·남벽이 협축식, 동벽 일부 구간이 편축식으로 축조되었고, 외벽 높이는 3~6m, 상면폭은 0.8~1.8m이다. 성의 문지는 동·서문지가 있는데, 상단폭이 5~8m이고, 서문지 남측벽이 웅성형태로 돌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수습된 기와류는 선문과 어골문 등으로 주로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편이 수습되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280~281쪽).

66) 金元龍, 「華城郡 麻道面 白谷里 百濟古墳과 土器類」, 『百濟研究』2,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三國時代遺蹟의 調査研究(II) 華城白谷里古墳』, 199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위의 책, 2006, 277~279쪽.

6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앞의 책, 2006, 281~283쪽.

6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앞의 책, 2006 참조.

6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7, 『華城 尙安里遺蹟II』.

주거지 등 많은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당성 일대에는 삼국시대부터 줄곧 남양만에서 중요한 항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4. 당항성 전투의 양상과 의의

여기에서는 642년 당항성에서 벌어진 전투의 원인과 전개양상 그리고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당항성 전투는 아래 사료를 통해 정리해 보면, 백제가 먼저 신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당항성도 고구려와 함께 공격한 내용이다.

- 〈사료-3〉선덕왕 11년(642) 가을 7월에 백제 왕 의자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나라 서쪽의 40여 성을 쳐서 빼앗았다.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해 당항성을 빼앗아 당으로 가는 길을 끊으려 하니, 왕이 당 태종에게 사신을 보내 위급한 사정을 알렸다. 이 달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쳐서 함락시켰는데, 도둑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 용석 등이 이 싸움에서 죽었다.⁷⁰⁾
- 〈사료-4〉보장왕 2년(643) 9월에 신라가 사신을 당에 보내어 말하되 “백제가 우리의 40여 성을 공취하고, 또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막으려 한다”하고 구원을 청하였다.⁷¹⁾
- 〈사료-5〉정관 16년(642)에 의자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고 군대를 보내어 지키는 한편, 고려와 화친을 맺어 통호하고, 당항성을 탈취하여 신라의 입조길을 끊고자 하였다.⁷²⁾

70)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秋七月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 攻拔大耶城 都督伊浪品釋·舍知竹竹·龍石等死之”.

71)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年條 “秋九月 新羅遣使唐言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乞兵救援”.

72) 『舊唐書』東夷列傳 百濟條 “貞觀十六年 義慈興兵伐新羅四十餘城 又發兵以守

위의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당시의 戰況은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대중국 외교의 거점항을 점령하려는 것이었다.⁷³⁾ 그렇다면, 두 나라는 왜 당항성을 공격하게 된 것일까?

642년 이전의 정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와 고구려가 내적으로 왕위 교체가 일어나 권력 안정화를 위한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사상 최초 여왕의 卽位와 臥病으로 인한 내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먼저 신라를 압박한 것은 의자왕이었다. 의자왕은 즉위초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 <사료-3>에서 보듯이 642년 7월과 8월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신라 40여 성을 빼앗고, 당항성을 공격하였으며, 대야성마저 함락하기에 이른다.

특히 당항성 전투를 벌이게 된 목적은 중국으로 가는 유일한 거점항을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줄곧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전후에 신라가 수나 당에 병력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중국의 경고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627년 무왕이 웅진으로 나아가 大兵을 일으켰을 때도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감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던 일도 감안했을 것이다. 따라서, 의자왕은 무왕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라의 서변을 同時多發的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당으로 가는 출항지를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신라를 완전하게 압박해야만 항복을 받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전투양상은 백제 의자왕이 먼저 고구려에 화친을 청하고, 당항성을 공격하기로 동맹을 맺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고구려와 손을 잡은 것일까? 그 이유는 백제군은

之 與高麗和親通好 謀欲取黨項城以絕新羅入朝之路”.

73) 『三國史記』百濟本紀에서는 의자왕 3년(643) 11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黨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이미 40여 성을 함락하고 난 뒤여서 추가 병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백제 단독으로 당항성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자왕은 고구려와 공동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남·북 양 방면에서 당항성을 함락하여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⁷⁴⁾ 반대로 고구려는 왜 백제와 손을 잡은 것일까? 고구려는 당시 영류왕이 시해되기 2개월 전이었으므로 영류왕이 이 전투를 승인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전투는 638년에 있었던 고구려의 칠중성 전투의 패배에 따른 반격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영류왕은 재위기간 동안 신라에 대하여 先攻을 하지 않았지만, 신라가 629년 낭비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먼저 자극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638년에 신라의 북상을 막기 위한 칠중성 공략에 나서지만, 초반의 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 그 이후 고구려로서는 신라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백제가 동맹을 요청하자 대군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라 여겨 당항성 공격에 참전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⁷⁵⁾

한편, 이 전투는 백제와 고구려가 공동작전을 구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백제와 고구려는 육군보다 수군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고구려는 신라가 553년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 교통로를 통해 신라의 국경지역 성을 공격하였는데, 642년경에는 육로를 통해 당항성을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629년에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⁷⁶⁾ 쳐서

74) 문안식, 앞의 글, 2004 16쪽.

75) 그런데 이 전투가 연개소문의 주장에 의하여 전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 같은 이유는 연개소문이 그 해 김춘추가 방문했을 때 신라의 청병을 거절하고 그를 억류했으며, 644년에 相里玄獎이 방문했을 때에도 신라의 두 성을 공격하고 있었다(『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3年條). 따라서, 연개소문은 당뿐 아니라 신라에 대하여도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백제의 당항성 공격 제의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영류왕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다.

76) 낭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으나, 지금의 포천 반월산성으로

함락했다거나 638년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해 오자 알천이 이끄는 신라군이 대승을 거뒀다는 내용으로 보아 두 나라의 北境은 임진강과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고구려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육군이 당항성까지 남하하기 위해서는 퇴로의 확보는 물론 물자보급이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았으며, 만약 육로로 공격했다면 611년과 655년, 661년 전투기사에서 보듯이 말갈군을 동원했을 것이다. 611년에는 고구려와 백제, 말갈이 침범하였고,⁷⁷⁾ 655년 고구려는 백제와 말갈을 동원하여 신라의 북쪽 국경을 침범하여 33개 성을 취하였으며,⁷⁸⁾ 661년에도 보장왕이 장군 뇌음신과 말갈을 동원하여 술천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방향을 바꿔 공격한 일도 있었다.⁷⁹⁾ 이외에도 고구려는 영양왕 9년(598)에 수의 요서를 말갈병 1만여 명을 동원한 바 있고,⁸⁰⁾ 보장왕 4년(645)에도 당과의 전투에서 말갈병이 적지 않게 동원된 일이 있었다.⁸¹⁾ 따라서, 고구려가 당항성을 육로로 공격했다면 전투는 물론 퇴로확보와 물자보급을 위해 분명 말갈병의 도움이 필요하여 동원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기록이 없고 신라의 임진강~한강 유역 방어체계가 비교적 견고한 상태에서 육군

비정되고 있다(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28, 檀國大史學會, 1995;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77) 『三國史記』卷41, 列傳1 金庾信 上傳

78)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14年條 “春正月 先是 我與百濟靺鞨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 遣使於唐求援”.
『舊唐書』東夷列傳 百濟條 “永徽六年 新羅王金春秋又表稱百濟與高麗·靺鞨侵其北界 已沒三十餘城”.

79)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8年條 “五月九日 高句麗將軍惱音信與靺鞨將軍生偕 合軍來攻述川城不克 移攻北漢山城…”.

80)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年條.

81)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條.

보다는 수군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⁸²⁾

백제도 지금의 평택·안성 남쪽지역인 천안과 아산지역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⁸³⁾ 육군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신라가 당항성을 확보한 이후에 남천주가 있던 지금의 이천이나 평택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로에 자미산성⁸⁴⁾ 등의 성곽이 운영되고 있었고, 안성천 등의 하천을 넘어 몇 군데 성을 함락하며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항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신라 40여 성을 빼앗고 군사를 주둔시켰다는 기사로 보아 이미 많은 수의 육군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나라의 군대가 약속한 날짜에 합류하여 공격하기에는 육군보다 수군이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군은 적은 수의 함선과 병력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요격하고자 하는 목표물만 타격 후 철군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군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백제가 주도하고 고구려가 약조하여 당항성을 기습하였지만,

82) 『三國史記』에 따르면, 661년 고구려와 말갈이 술천성 공격에 실패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와 공격했을 때, 수륙으로 왔다고 전해진다(『三國史記』卷42 列傳2 金庾信中條). 이로 보아 고구려군이 수로를 통해 배를 타고 이동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83) 김영관은 『三國史記』地理志 ‘白城郡’과 ‘湯井郡’條 및 같은 책 列傳 素那條를 바탕으로 660년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안성천의 북쪽과 남쪽 평야지대는 신라가, 백제는 곡교천과 안성천 입구의 하천과 아산의 영인산 등 차령산맥 줄기를 따라 안성과 진천까지 신라와 경계를 이루었다고 보았다(金榮官,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20, 新羅史學會, 2010, 104~106쪽).

또한, 『三國史記』卷47 列傳 素那傳에도 白城郡 일대에서 신라와 백제군이 仁平中(634~647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고 전한다.

84) 자미산성은 안성천과 진위천, 발안천 사이에 위치한 둘레 582m의 테회식 석축산성이다. 조사결과, 문지 3개소, 치성 3개소, 건물지 8개소, 저장시설,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었고, 수막새와 고배, ‘上’, ‘下’, ‘十’ 등의 명문이 새겨진 토기, 명문기와, 평기와 등이 출토되어 6세기 후반~7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 조사 보고서』, 2004).

신라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당항성은 신라가 처음 점령한 6세기 중반 이후에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육로나 해로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당항성이 7세기 중반까지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흥왕대 이루어 놓은 교통로상의 성곽 분포가 한 몫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진흥왕은 553년 백제로부터 한강 본류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고, 564년에 北齊에 조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566년에 陳에 사신을 보내는 등 서해를 통한 중국과의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진흥왕은 568년에 북한산주를 남천주로 옮겨 백제를 견제하는 한편, 당항성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천주에는 설봉산성이 그 치소성이었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용인-수원을 지나 당항성에 이르렀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성 주변의 지세와 섬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라는 점이 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

麗濟 수군은 당항성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덕적도도 포괄적인 공격범위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덕적도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형 선박으로 갈아타던 곳이었고, 신라 수군의 함대도 이곳에 정박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제 수군은 덕적도를 공격하여 신라 선박이 당으로 항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자 했을 것인데,⁸⁵⁾ 신라 수군은 덕적도와 영흥도, 대부도, 제부도 등 많은 섬과 빠른 해류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도 활용하여 당항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태세를 갖추었을 것이며,

85) 백제와 고구려군이 당항성을 공격한 시기가 8월인데, 덕적도 주변 수심은 약 30m 내외로 낮은 편이고, 가을철에 덕적도 주변 풍속은 여름철 약 12%보다 약간 빠르고, 풍향은 북서풍이 우세하며, 풍향이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편이다(고희중 외, 「한반도 주변 해역 5개 정점에서 파랑과 바람의 관계」, 『韓國地球科學會誌』 26-3, 한국지구과학회, 2005, 244쪽).

화성과 수원 등의 주변 성에 지원도 요청했을 것이다. 이는 여제 수군이 당항성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신라군은 당항성이 봉화산과 구봉산이 총 4.2km의 긴 능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성 주위가 밀물 때 바다로 채워져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십분 활용했을 것이다. 결국 백제와 고구려군은 당항성 주변의 많은 섬들과 조수간만의 차이, 육지 상륙 후 신라 육군과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여 당항성을 함락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642년 겨울에 선덕왕은 백제의 猛攻을 받고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어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⁸⁶⁾ 보장왕은 김춘추에게 죽령 이북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그럴만한 권한이 없다고 하자 감금하였고, 신라에선 얼마 뒤에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이 출병하자 보장왕은 김춘추를 돌려보냈다. 이 일로 인하여 김춘추는 고구려의 힘을 빌어 백제를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으며, 당항성 전투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 이후 선덕왕은 이듬해 9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어 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⁸⁷⁾ 아래 <사료-6>은 신라에서 당으로 파견된 사신이 당 태종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당에서는 고구려로 사신을 보낸 일을 기록한 내용이다.

- <사료-6> 정관 17년(643)에 사신을 보내어, “고려와 백제가 여러 차례 번갈아 공습을 하여 수십 성을 잃었는데, 두 나라 군대가 연합하여 신의 사직을 없애려 합니다. 삼가 배신을 보내어 대국에 보고를 하오니, 약간의 군사로나마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상언하였다.

8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元年條.

8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2年條.

태종은 상리현장을 보내어 고려에, “신라는 나의 명령에 따르는 나라로서 조현을 빼놓지 않았고, 그대 나라와 백제는 함께 마땅히 무기를 거두어 들어야 할 것이오. 만약 다시 공격을 한다면 내년에 군사를 내어 그대 나라를 칠 것이오”.라는 새서를 내렸다. 태종은 친히 고려를 치려고 신라에 조서를 내려, 군사와 말을 모집하여 대군에 응접하라고 하였다. 신라는 대신을 파견하여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고려의 남계로 들어가 수구성을 쳐서 항복받았다.⁸⁸⁾

위의 기사는 642년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백제가 40여 성을 빼앗은 것과 당항성을 두 나라가 협공한 것을 가르키는데, 신라는 약간의 군사만 내어준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구원하였다.⁸⁹⁾ 이에 당 태종은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 그리고 신라는 군사 5만명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수구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 전투는 김춘추가 고구려와의 협상결렬과 자신을 감금한 일에 따른 보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라와 고구려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백제와 고구려는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이유는 645년 급기야 당이 고구려를 침략해 왔기 때문이며, 648년까지 3차에 걸쳐大戰이 벌어져 신라를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제는 645년부터 649년까지 신라의 여러 성을 거의 매년 공격하였다. 그리고 655년

88) 『舊唐書』東夷列傳 新羅條 “貞觀十七年 遣使上言「高麗·百濟 累相攻襲 亡失數十城 兩國連兵 意在滅臣社稷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救助」/太宗遣相里玄獎齋璽書賜高麗曰「新羅委命國家 不闕朝獻 爾與百濟 宜即戡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擊爾國矣」/太宗將親伐高麗 詔新羅募集土馬 應接大軍 新羅遣大臣領兵五萬人 入高麗南界 攻水口城 降之”.

이 기록은 『三國史記』에 선덕왕 12년(643)과 13년(644)의 일로 되어 있다(『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3年條).

89) 신라는 선덕왕 12년(643) 9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예부의 관직을 지낸 善品公이 왕명을 받들어 당에 사신으로 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와서 죽었다고 하여 이때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을 짐작케 한다(김대문 저, 이종욱 역, 『대역 화랑세기』, 소나무, 2005, 290~291쪽).

백제와 고구려, 말갈이 신라의 33개 성을 함락한 일로 연결되었다. 이렇듯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관계는 642년 당항성 전투부터 계기가 되어 655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항성이 있는 남양만 일대는 처음 백제가 점령한 당시부터 주요 항구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백곡리 고분군으로 석곽묘에서는 철제 대도와 단갑, 재갈 등 무장의 갖춤새 등이 출토되어 이 지역을 수비 하던 백제 무장의 고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덕적군도에서도 백제 유물들이 확인되기도 했다.⁹⁰⁾ 이로 보아 백제인들도 당항진을 주요 항구로 활용했음을 짐작해 주고 있다.⁹¹⁾ 또한 신라는 당항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했는데, 당성의 확장 축조가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며, 또한 소정방이 덕적도 국사봉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신라인들도 이미 제사의식을 지냈던 장소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겠다.⁹²⁾ 국사봉은 덕적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당시에 신성한 제사장소였으며, 소정방이 이끈 당군도 백제와의大戰을 앞두고 제사의식을 통해 승전과 무사귀환을 기원했을 것이다. 특히 신라인들이 덕적도를 대중국 향로의 거점으로 활용했을 곳이었단만큼 원거리 항해의 안전을 염원했던 祭場을 마련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항성 일대에는 많은 수의 성곽과 고분군, 절터 등이 분포해 있다는 점과 덕적도에도 수군기지를 건설하여 沿近海를 방어하는데 활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여제 수군은 이러한 덕적도를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90) 서울大學校博物館, 『德積群島의 考古學的 調査研究』, 1999, 58쪽.

91) 당성 주변에 위치한 백제 성으로는 우정면에 있는 한각리성(둘레 551m, 편축식 토축성)과 운평리성(둘레 1,185m, 편축식 토축성)이 있으나 아직 정밀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京畿道博物館, 앞의 책, 1999).

92) 소야도에 당군의 진지였다고 하는 ‘담안’이라는 유적이 남아 있어 100여 평의 넓이의 땅 주위에 초석을 둘러쌓은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한다(金光鉉, 앞의 책, 1985, 74쪽).

5. 맺음말

신라 입장에서의 당항성은 진흥왕대 처음 서해안 뱃길을 열었던 대중국 외교의 거점성으로 삼국통일을 이루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로서는 이 당항성을 반드시 봉쇄하거나 재탈환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신라는 국운을 걸 정도로 결사적으로 사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백제 입장에서는 당항성을 봉쇄하여 신라가 당과 교섭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지만, 당항성을 둘러싼 신라의 방어체계가 녹록치 않아 독자적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했던 것이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항성 전투에 대하여 전후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제 의자왕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된 전투였다. 즉 642년 7월에 신라의 40여 성을 대거 함락하고, 8월에 당항성과 대야성을 동시에 공격하는 파상공세를 펼쳤다.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주 목표로 삼아 윤충 장군을 비롯한 1만명의 대군을 보내어 공격케 한다. 그 사이 백제는 수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수군과 함께 당항성을 공격함으로써 신라의 도성으로 통하는 거점성과 대당 외교의 거점항구를 동시에 타격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영류왕 재위기간동안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게 낭비성을 함락당하는가 하면, 임진강 유역의 칠중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북상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패전하고 만다. 이 시기 백제로부터 당항성 공격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를 승인하게 됨으로써 여제동맹이 성사되었다. 결국 여제는 당항성과 덕적도를 기습하였지만, 남양만 일대의 많은 섬과 방어에 유리한 지형,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제한적 공격 등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신라는 당항성 전투 직후 당으로 사신을 보내는 한편, 김춘추가 그해 겨울에 고구

려를 방문하여 백제를 치고자 청병을 요청했다. 이렇게 김춘추가 직접 방문했던 것은 표면상으로 볼 때, 지난날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왕대에 대규모의 지원군을 얻어 倭 등을 물리친 일과 553년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했을 때에도 고구려와의 밀약을 맺었던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제에 대한 대야성 전투의 보복을 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당항성을 고구려, 백제가 연합하여 공격해 온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고구려까지 방문한 숨겨진 목적은 고구려가 정말 백제와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백제의 파상적인 공세가 있었고, 9월에 이미 당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한 사신을 보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를 방문한 것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고구려가 신라에게 지원군을 내어 주었거나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면 신라로서는 백제만을 상대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당항성에 대한 연합공격은 일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청병을 거절하거나 자신을 인질로 잡는다면 결국 두 나라를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춘추는 당에 사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고, 한편으론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보다 신중히 고려했던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로 가기 전에 선덕왕과 김유신에게 사전에 방책을 알려두고 방문했던 것이며, 막상 보장왕이 억류하자 先道解의 도움과 김유신이 군대를 동원하여 출병함으로써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다.⁹³⁾ 이 상황에서 보장왕은 죽령 이복의 땅을 운운했고, 김춘추는 자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 답변은 곧 고구려의

93) 『三國史記』卷41, 列傳1 金庾信 上傳條.

지원에 따른 보상책을 준비하지 않고 방문한 것으로 만약, 그러한 준비를 했다면 김춘추를 억류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김춘추가 당항성 전투 이후 고구려를 방문한 것은 당에 이미 구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으며, 이는 곧 신라가 대당 외교에 있어 명분을 쌓아 가는 포석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당에서도 643년 고구려로 相里玄獎을 보내어 신라와의 전쟁을 그만두도록 권고한 것은 642년 9월에 신라 사신이 당에 와서 여제의 동맹소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 당은 두 나라의 동맹을 확인하였고,⁹⁴⁾ 신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고구려 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당항성 전투는 백제가 신라의 허를 찌른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거기에 고구려와의 동맹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삼국간의 균형이 깨지고 당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전쟁에 휩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신라 입장에선 백제와의 국경지대에 분포한 40여 성이 함락당한 상황에서 당항성까지 기습받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백제가 이렇게 치밀한 전술을 구사한 것은 무왕대부터 신라와 접한 요충지를 두루 공략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당항성을 목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대야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왕도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94) 『文館詞林』의 내용 중에 당은 645년 2월경 의자왕이 보낸 扶餘康信에게 교서를 내렸다. 거기에는 당태종이 백제와 고구려가 協契를 맺었다고 의심했는데, 의자왕이 보낸 표를 보고 강신에게 물어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의자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관군과 함께 凶惡을 정벌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조서를 통하여 당이 백제에 대해 의도하였던 것은 당을 위해 신라가 파병하고 있는 동안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朱甫墩, 1992,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慶北史學』 15, 慶北史學會, 164~166쪽).

동시에 당으로 사신을 보내지 못하도록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백제는 단독으로 당항성을 공격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청병을 하게 되고, 고구려는 낭비성과 칠중성 전투의 보복 차원에서 전투에 응하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당항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군을 동원한 전술을 펼치게 되지만, 신라 수군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이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한 것을 탐지하였고, 이를 당에 알려 청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당항성 전투는 이제까지 대야성 전투에 가려져 백제와 고구려, 신라사이에 벌어진 일회성 局地戰으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지만, 백제의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진 전투였다. 비록 이 전투에서 백제와 고구려군이 당항성을 봉쇄하지 못하였지만, 신라와 당 사이의 외교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시도했던 목적이 뚜렷한 전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2015.7.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당항성, 당성, 백제, 고구려, 신라, 의자왕, 김춘추

<ABSTRAC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ree kingdoms and the significance of Danghang-fortress battle in the early 7th C

Hwangbo Kyung

As Danghang-fortress was the key position of diplomacy to China after the occupation of Han-river basin during the period of King Jinheung of Shilla, it was the place which must defend staking the national destiny.

Whereas, Backje and Gogurye had to block up the point because they bore the burden of Su or Dang's Dynasty interference when they attacked Shilla. Finally in 642, Backje's King Uija captured approximately the 40 castles and Daeya-fortress. At the same time it attacked the Danghang-fortress with Gogurye. The reason why Danghang-fortress became a target was to obtain the bridehead for attacking the royal road through attacking Daeya-fortress. it also meant that they couldn't send a envoy to Dang.

But Backje hadn't been enough strong if for attacking Danghang-fortress lonely. So it asked Gogurye to send the troops. As for the request of military support from Backje, Gogurye accepted that because it retaliated against Shilla for the defeat of Nangby-fortress and Chiljung-fortress battle in the past. In oder to attack Danghang-fortress quickly Gogurye and Backje might use the naval forces than the army. There supposed to be intensive battle between Deuckjeck-island and Danghang-fortress.

As the result of the battle, Backje and Gogurye failed to gain secure Danghang-fortress because they could not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se and fall of the tide and the geographical conditions. Through this battle, Shilla came to know(identified) the reality of Gogurye and Backje' s alliance and Shilla could inform the fact to Dan and it developed their favorable relations with Dang. So they requested Dang to send out the military forces.

Even though Danghang-fortress battle had been considered a kind of one-time regional war thus far, in fact, it occurred under Baekje's deliberate plan. Although this battle couldn't be blocked Danghang-fortress by Baekje and Gogurye, this it is significant that the aim of conducting of the battle was to break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hilla and Dang. Also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Baekje used different tactics when he attacked Shilla compared to the battle in the past.

Key Words : Danghang-fortress, Dang-fortress, Baekje, Gogurye, Shilla,
King Uija, Kim chun chu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김 명 진*

1. 머리글
2. 운주의 역사·지리적 검토
3. 공준(兢俊)의 고려 귀부와 운주성
4. 운주전투의 전개과정
5. 맺음글

1. 머리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여러 전투 중에서 충청지역의 판세는 물론이고, 전체 전장의 판세까지도 결정지은 전투가 운주전투(運州戰鬪)였다. 운주성(運州城)은 운주(運州)(홍주, 충남 홍성) 일대의 주요 거점성인데, 고려 통일전쟁 중에 이 성(城)과 주변에서 고려와 후백제(당시 명칭은 백제)가 2차례나 전투를 치렀다.¹⁾ 고려 통일전쟁의 주요한 전투로는 왕건이 즉위 전에 수행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1) 이 전투는 운주성이 중심이었기에 그 이름을 운주성전투라고 쓸 수도 있다.

덕진포전투(전남 영암)와 즉위 후에 수행한 조물성전투·공산동수전투(대구)·고창군전투(경북 안동)·일모산성전투(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운주전투·일리천전투(경북 구미) 등 여러 전투가 있었다. 이는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다툼이었다.

이상의 전투 중에서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양국의 판세를 결정지은 전투가 934년의 제2차 운주전투였다. 그런데 이미 927년에 제1차 운주전투가 발생하였다. 운주성은 양국의 접경지였으며 고려 측에서는 국왕인 왕건이 2차례 모두 친정(親征)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곳에서 발생한 중요한 전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운주성에는 지역세력으로서 궁준(兢俊)이라는 인물이 양국 판세의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운주전투에 대해서는 운주(홍주)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세력인 궁준과 이곳에서 행해진 전투를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다.²⁾ 그런가하면 당시 주변 전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아산만 공략과정³⁾과 일모산성전투⁴⁾ 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로 인하여 운주전투의 실상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지만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 판세를 결정지은 운주전투를 전쟁사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전투가

하지만 실제 전투현장은 운주성보다는 그 가까운 바깥이었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그 이름을 ‘운주전투’로 쓰고자 한다.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에서 두 차례에 걸친 운주전투를 ‘제1차 운주전투’, ‘제2차 운주전투’라 이름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따른다.

2)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운주, 홍주, 홍성」, 『홍주문화』 13, 홍성문화원, 1997;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한국사학회, 2004.

3)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4)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고려 통일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고려 통일전쟁 이전 및 당시의 운주지역 역사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이 곳의 유력한 지역세력이었던 공준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작업 후에 운주전투의 제1차 전투와 제2차 전투의 실상을 그려보는 게 논지 전개의 자연스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 글의 완성을 위해서 기본사서 및 선행연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투 현장을 답사하여 해결하고자 한다.⁵⁾ 이 글이 고려 통일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 운주의 역사·지리적 검토

운주(運州, 홍주, 충남 홍성)는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사료가 별반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실상에 접근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충남 홍성군은 동쪽에 예산군, 남동쪽에 청양군, 남서쪽에 보령시가 접하고, 서쪽으로 서해 천수만(淺水灣)이 있으며, 북쪽에는 서산시가 자리잡고 있다.

홍성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인 1914년 이후의 제도 개편에 의하여 이웃하고 있었던 홍주군과 결성군이 통합되면서 양군의 지명을 한자씩 조합하여 새 이름으로 탄생한 것이다.⁶⁾ 대체로 홍주는 동쪽의 내륙쪽에 위치해 있고 결성은 서쪽의 바다에 인접해 있었는데, 이 둘을 더하고 보령군(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일부를 합한 것이

5) 지역에 대한 용어는 이 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려 통일전쟁 이후의 명칭도 섞어서 사용하려 한다(충청, 경상, 홍성 등).

6) 윤용혁, 앞의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 운주, 홍주, 홍성」, 1997, 30~31쪽.

오늘날의 홍성군이다.⁷⁾ 운주(홍주)의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의 모습은 현 홍성군 관내에 있었던 군현의 옛 흔적을 통해서 지나온 이력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고고학 자료를 덧붙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주지역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보이고 있다.⁸⁾ 이어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고인돌도 다수 자리하고 있으므로⁹⁾ 이 지역은 일찍부터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었다. 운주의 중심지였을 홍성읍은 홍성천이 삽교천에 합류하면서 북으로 흐르고 그 주변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 물줄기는 아산만으로 유입한다. 그리고 홍성군 서남쪽의 여러 포구들은 서해의 천수만으로 열려져 있다. 이처럼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운주는 당연히 백제시대에도 쓸모 있는 곳이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의 흔적은 홍성읍보다는 홍성군 관내 면 단위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군데를 살펴보면, 결성(홍성군 결성면)은 백제 때 결기군(結己郡)이었는데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경덕왕대에 결성군(潔城郡)으로 고쳤다.¹⁰⁾ 백제의 사시량현(沙尸良縣)은 신라 경덕왕대에 신량현(新良縣)으로 이름이 바뀌고 고려시대에는 여양현(黎陽縣)이라 하였다. 그런데 장곡산성(여양산성, 석성산성,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에서 사시(沙尸)라는 명문이 찍힌 기와편이 발견되어¹¹⁾ 백제의 사시량현은 현 홍성군 장곡면 일대라고 단정된다.

그러면 운주의 중심이었을 홍성읍에는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에

7) 『地方行政區域發展史』, 내무부, 1979, 105쪽.

8) 『洪城邑誌』, 홍성읍지편찬위원회, 2008, 122~123쪽.

9)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290~291쪽.

10)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결성군.

11) 장곡산성(여양산성, 석성산성)에 대해서는, 『文化遺蹟總覽』(城廓 官衙 篇), 충청남도, 1991, 219~220쪽; 『洪城郡 長谷面 一帶 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상명여자대학교 박물관·홍성군청, 1995;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192~193쪽 참고.

어떤 군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삼국시대의 지명만 있고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지역’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해풍향(海豊鄕)이라는 곳이 있다.¹²⁾ 그런데 운주가 어느 때에 해풍(海豊)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주목의 군명(郡名)이 5개 나열되어 있다. 운주(運州)·안평(安平)·해풍(海豊)·해흥(海興)·홍양(洪陽)이 그것이다.¹³⁾ 이 중에서 해풍이 『삼국사기』의 해풍향이라고 지적인 견해가 있는데 참고된다.¹⁴⁾ 그런가하면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안평과 해풍을 모두 고려 성종대에 정한 별호(別號)라고 하였다.¹⁵⁾ 또한 『충청도읍지』의 홍주목 고적조에는 “해풍현의 옛터가 지금의 홍주목 주치(州治)”라고 하였다.¹⁶⁾

아마도 운주의 주치는 대략 10세기 이전의 어느 때에 있었던 해풍향 또는 해풍현의 치소가 그 뿌리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려 성종대에 별호로서 해풍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해풍(海豊)이라는 이름은 그 뜻으로 보아 바다와 친연성이 높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실제로 이곳은 앞에서 기술했듯이 금마천이 아산만으로 연결되고, 옛 결성군 방향 그리고 남서쪽(현 홍성군 광천읍) 등을 통해 서해 천수만과 접해있는 곳이다.

해풍현(해풍향)은 각종 지리지에 그 흔적이 없거나 미미했는데 이는 이곳이 일대에서 비중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¹⁷⁾ 그랬던 곳이 고려 통일전쟁기에 운주(運州)라는 전혀 새로우면서

12)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三國有名未詳地分 海豊鄕.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홍주목, 군명.

14) 조원찬, 「제4장 신라시대」, 『洪州大觀』상권, 홍주대관편찬위원회, 2002, 243~245쪽.

1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홍주.

16) 운주 이전의 해풍현에 대해서는, 윤용혁,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전통문화논총』7, 한국전통문화학회, 2009, 220~223쪽 참고.

17) 윤용혁, 위의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2009, 220쪽.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났다. 관련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918년 8월) 웅주(熊州, 충남 공주)·운주(運州) 등 10여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로 가 붙었다.¹⁸⁾

위의 사료에서 비로소 운주가 등장하고 있다. 주(州)라는 것은 잘 알려졌듯이 원래 중국 고대에 천하를 아홉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에 그 하나였다. 신라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전국을 9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신문왕 5년(685)에 완성하였다.¹⁹⁾ 이 같은 신라의 행동은 어쩌면 황제국 체제를 모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만큼 주는 지역단위로서 무게감이 있었다. 신라의 9주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상주(尙州)·양주(良州)·강주(康州)·한주(漢州)·삭주(朔州)·명주(溟州)·웅주(熊州)·전주(全州)·무주(武州) 등이 있었다. 9주 중에서 현 충청지역의 대부분은 웅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사료 가)에서는 태조 원년인 918년 8월에 웅주와 대등한 관계로 보이는 또 하나의 주인 운주가 보이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하면서 새롭게 원년을 칭한 것이 918년 6월인데²⁰⁾ 불과 2달 후에 운주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운주를 주로 정해 준 국왕이 왕건이라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 존재가 미약했던 해풍현(해풍향) 지역이 주로서 보다는 큰 이름으로 재탄생한 것은 왕건이 즉위하기 이전일 것이다.

이제 기존의 9주 이외의 주로서 왜 운주가 탄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9주 이외의 주로서 죽주(竹州, 경기 안성시 죽산면)가

18)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以熊運等十餘州縣 叛附百濟”.

19) 『삼국사기』권8, 신라본기8, 신문왕 5년.

20)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6월.

891년에 나타나고 있다.²¹⁾ 많은 지역들이 889년(진성여왕 3)에 발생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의 반란을 기점으로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²²⁾ 따라서 죽주의 출현을 통해서 이전에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특정 지역세력이 주동하여 9주와 대등한 주를 표방한 것이 아닐까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어서 궁예의 통치 시기 및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기에 주가 다수 나타난다. 『고려사』 태조세가에 의하면, 왕건이 개국하기 전인 900년에 궁예가 왕건에게 명하여 광주(경기 광주)·충주(충북 충주)·청주(靑州, 충북 청주)·당성군(경기 화성)·괴양군(충북 괴산) 등의 군현을 토벌하게 했는데, 왕건이 이를 다 평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³⁾ 여기서 광주(한주)는 9주의 하나이고²⁴⁾, 충주와 청주가 새로운 주로서 등장하였다. 충주는 태조 23년(940)에 그 이름이 지어졌다하고²⁵⁾, 청주 또한 같은 해에 이름이 지어졌다 한다.²⁶⁾ 하지만 청주는 한자 표기의 변화가 있어서 940년에 청주(靑州)이지만 그 이전인 900년에는 청주(靑州)라고 표기하였다.²⁷⁾ 이는 청주가 이미 900년 즈음부터 주로서 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충주도 900년경에 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²⁸⁾

21)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대순 2년 신해.

22) 『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3년;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32~33쪽.

23)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광화 3년 경신.

24) 『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한주.

25)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충주목.

26)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청주목.

27) 청주의 한자표기가 청주(靑州)에서 청주(淸州)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41쪽, 주15;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59~61쪽 참고.

28) 한편, 태조 23년(940)에 전국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의 명칭을 처음으로 고쳤다고 했는데(『고려사』권56, 지10, 지리1, 글머리), 이는 그 명칭을 전국적으로 처음 확정했다는 것이지, 모든 지역이 그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은

이상의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나주(羅州, 전남 나주)의 생성 때문이다. 903년, 왕건에 의해서 금성군이 궁예의 영역이 되면서 그 명칭이 나주로 바뀌었다.²⁹⁾ 또한 이즈음에 정주(貞州)도 보인다.³⁰⁾ 918년 3월에는 동주(東州, 강원 철원)라는 지명도 나타난다.³¹⁾ 그리고 왕건이 즉위한 후에는 보다 더 많은 다수의 주들이 발견된다. 이는 궁예가 자신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지역들을 주로 승격하여 해당 지역을 우대하며 생겨난 현상이었다. 또한 특정 지역이 스스로 지역세력의 주도 아래 자신들의 거주지를 주로 승격해서 자칭했던 것을 궁예가 인정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궁예는 주라는 이름의 무게감으로 해당 민들에게 인심을 쓴 것이다. 이를 왕건이 즉위한 후에도 그대로 이어받아 주가 양산되었다고 판단된다.³²⁾ 그리고 견훤의 후백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탄생된 주 중의 하나가 바로 운주였다.

요컨대 사료 가)는 918년 8월의 일이므로, 운주가 탄생된 때는 889년 이후부터 918년 8월 이전의 어느 시기였다. 물론 해평현(해평향) 치소 자리에 들어선 운주를 궁예가 승인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예 궁예가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다.³³⁾ 또한 지역세력이 자신의

아니다. 예를 들면 공주(충남 공주)라는 명칭을 태조 23년에 고쳤다고 했는데(『고려사』권56, 지10, 지리1, 공주), 이미 견훤이 892년에 공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全武公等州軍事~의 公州). 따라서 태조 23년의 전국 주부군현 명칭은 기존의 사용하던 것과 새로운 것들을 다 포함하여 확정을 지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9)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천복 3년 계해.

30)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31)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정명 4년 3월.

32) 고려 초의 州는 궁예→태조의 경략 과정에서 그들에게 귀부 내지 협조한 지역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김갑동, 「高麗初의 州에 대한 考察」,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6, 279쪽).

33) 궁예 통치기에 그 남방기지로써 운주가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흥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35쪽).

통치지역을 운주라고 자칭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운주는 그 명칭이 주로 개칭되어 이전에 비해 한껏 격상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궁예정권에게 귀부한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주는 당시 궁예정권과 견훤정권의 최일선 접경지였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는데 그는 공준(虢俊)이었다.

3. 공준(虢俊)의 고려 귀부와 운주성

신라는 진성여왕 3년(889)부터 급속히 멸망의 길로 내달리게 되었으며 지방은 해체되어 갔다.³⁴⁾ 급기야 900년에 전주에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³⁵⁾ 901년에는 궁예가 송악(개성)에서 고려(마진, 태봉)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³⁶⁾ 충청지역은 두 국가의 접경지역이면서 전장의 최일선이 되었다. 운주는 그 접경지역의 주요 거점 중에 하나였다. 앞에 기술한 사료 가)는 그 근거가 된다. 공주와 운주가 접경지역이었기에 소속 국가를 바꾸는 게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만약 운주가 고려의 내륙에 위치해 있었다면 후백제로 귀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당시 특정지역이 소속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해상을 통해서 연결 가능한 지역이거나, 접경 지역이거나였다. 나주가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운주는 해상으로도 연결이 가능했지만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이었기에

34) 『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3년;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32~33쪽.

35)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36)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삼국유사』권1, 왕력1, 후고려;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소속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측면이 강했다.

한편, 운주의 남쪽인 공주에 공주장군 홍기(弘奇)라는 인물이 있었다. 홍기는 904년에 궁예에게 귀부하였다.³⁷⁾ 따라서 공주의 북서쪽에 있는 운주도 이즈음에 궁예에게 귀부하였을 것이다.³⁸⁾ 이러한 운주를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세력은 공준(兢俊)이었다. 다음 사료는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 공준의 모습이다.

나) (927년 3월 신유) 왕(왕건)이 운주로 쳐들어가 그 성주(城主) 공준(兢俊)을 성 아래에서 깨뜨렸다.³⁹⁾

앞에서 제시한 사료 가)와 위의 사료 나)를 아울러 살펴보면, 먼저 918년에 운주라는 이전에 비해 보다 큰 의미로 작명된 지역명이 등장한다. 이는 889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운주가 탄생한 것인데 그 중심은 운주 지역 내에 있는 어느 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 즉 성주는 공준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운주의 중심인 치소성은 운주성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그곳이 현재 어디쯤일지 궁금하다.

사료 나)에서 전투의 승리 현장은 운주성 아래였다. 공준은 적군인 고려군이 공격해왔는데 그것도 고려 국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온 상태에서 성 밖에서 맞아 싸웠다. 고려 태조 왕건은 최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최상의 장비를 갖추어 운주성을 공격했을 것이다.

37)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38) 김갑동, 「고려초기 흥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74, 한국사학회, 2004, 139쪽 참고.

39)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王入運州 敗其城主兢俊於城下”.

40) 사료 나)의 “王入運州 敗其城主兢俊於城下”에서 ‘운주성’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내용상 공준의 성은 운주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군현명+성’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시 읍호(군현명)를 포함한 성은 대부분 치소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최종석,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5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4, 101~102쪽), 운주의 치소성은 운주성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공준은 과감히 성 밖에서 전투를 벌였다. 공준의 이러한 전투자세는 매우 무모한 것이었다. 아마도 공준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한다. 공준의 입장에서 적의 최고 정예부대가 공격해 왔으니 이를 막아낼 방법을 생각해 내는 건 병법상 당연한 것이다. 공준은 운주성에서 농성하며 적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운주성이 평지성이었기에 오히려 성 밖으로 나아가 정면 승부하는 방법이 최상이었다고 추정된다.

앞에서 “해풍현의 옛터가 지금의 홍주목 주치”라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해풍현과 홍주목의 중간에 자리한 운주의 치소 역시 홍주목의 치소라고 여겨진다.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에서도 927년(태조 10) 3월의 운주가 홍주라고 하였다.⁴¹⁾ 이를 통해서도 홍주의 주치가 운주의 주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한 ‘홍주성 의병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시굴 및 발굴 조사에서 신라 말·고려 초로 추정되는 토성벽과 구상유구(溝狀遺構)가 발굴되어⁴²⁾ 홍주의 치소인 홍주읍성의 모태가 운주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재 홍성읍내 중심지에 홍주읍성(홍주성, 사적 231호)이 평지성으로서 자리하고 있다.⁴³⁾ 석축성인 홍주읍성의 둘레는 약 1,460m

41)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42) 『홍주성내 의병공원 조성부지 1차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홍성군·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이 발굴에서 신라 말·고려 초에 해당하는 토기편과 고려 초에 제작된 햇무리굽 청자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당말오대(唐末五代)~북송대(北宋代)에 제작된 청자편도 출토되었다. 한편, 윤용혁,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전통문화논총』 7, 한국전통문화학교, 2009, 237쪽에서 이 토성 유구를 공준과 연결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의 확인이라 하였는데 필자도 동의한다.

43) 이 성의 입지는 완벽한 평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작은 언덕처럼 솟은 곳도 있다. 하지만 대략 평지성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 해자(壕字)는 월계천과 홍성천이 홍주읍성을 감싸며 자연해자 역할을 하는데 그 수많은 비가 오지

이다.⁴⁴⁾ 따라서 현재까지 발굴된 성과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토성(土城)⁴⁵⁾인 운주성(또는 해풍현성)을 모태로 하여 고려시대 또는 늦어도 조선 초에 석성(石城)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세종장헌대왕실록』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에 읍석성(邑石城)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이미 조선 초인 세종 이전에 홍주읍성을 석성으로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홍주읍성 자리에 있었던 평지성이 운주성이었다.

이번에는 운주성의 성주 공준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자. 당시 신라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많은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분리되어 갔다. 각각의 지방은 특정 지역세력의 보호아래 자위권을 행사하였다. 이때의 지역세력을 학계에서는 흔히 호족이라고 이름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료에 호족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세력은 주로 성주(城主) 및 장군(將軍),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 등의 명칭으로 자칭 또는 불리어졌다.⁴⁶⁾

먼저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는 앞선 연구에서 이를 국가로부터 임명 혹은 적어도 승인을 얻은 관직명이라 했는데 참고된다.⁴⁷⁾ 하지만 지주제군사가 모두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견훤의 경우에는 달랐다. 892년에 견훤은 신라서면도통(新羅西面都統)·지휘병마(指揮兵馬)·제치지절도독(制置持節都督)·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

않을 때는 크지 않다. 2015년 6월 29일 답사.

44) 『홍성 홍주성 남문지』, 홍성군·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1쪽. 이 성의 정식 명칭은 ‘홍성 홍주읍성’이고 그 둘레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세종장헌대왕실록』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에서는 읍석성의 둘레가 5백 33보 2척이라 하였다.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104쪽에는 1,460m로 되어 있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약 1,772m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성벽은 일부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둘레는 모르는 실정이다.

45) 만약 전체적으로 발굴이 진행된다면 초창기에 축조된 성 전체가 토성이었는지, 아니면 일부구간은 석성(石城)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6) 그밖에 수(帥) 또는 대모달(大毛達) 등의 칭호도 사용하였다.

47) 전기웅,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경남사학』4, 경남사학회, 1987, 7~8쪽.

軍事)·행전주자사(行全州刺史)·겸어사중승(兼御史中丞)·상주국(上柱國)·한남군개국공(漢南郡開國公)·식읍이천호(食邑二千戶)라고 자서(自署)하였다.⁴⁸⁾ 이 관직도 ‘00주군사’ 즉 지주제군사 유형의 것이었다. 이것은 신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자칭한 것이다. 이때는 견훤이 후백제를 정식으로 건국하기 이전의 일이었다.⁴⁹⁾

지주제군사를 견훤처럼 자칭한 경우가 있고 국가로부터 임명받은 경우가 있는데 김행도(金行濤)는 중앙으로부터 임명받아 지방으로 임무수행을 위해 내려온 대표적인 경우이다. 사료 가)에서 918년 8월에 웅주와 운주를 비롯한 10여 개의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로 붙었다고 하였다. 고려는 그 후속조치로 전시중(前侍中)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로 임명하였다.⁵⁰⁾ 여기서 아주는 현 충남 아산시 중에서 주로 아산만과 접해 있던 곳이었다. 김행도는 이곳의 지역세력이 아니라 국왕 왕건의 명에 의해 아산만 일대까지 후백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 임무를 부여 받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였다.⁵¹⁾ 이처럼 지주제군사는 자칭과 임명직이 있었는데 궁준은 이러한 지주제군사는 아니었다.

궁준은 사료 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주로 대접받는 인물이었다. 당시 지역세력이 가장 많이 표방한 명칭은 성주 및 장군이었다. 혼돈스러운 전쟁의 시기에 일정 지역의 민들이 거점 성(城)을 중심으로 무장하여 자위권을 행사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했기에 그 우두

48)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49)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1999; 「예산지역」,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171쪽;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무경역사연구소, 2012, 14쪽.

50)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5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11~15쪽.

머리는 성주를 자칭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군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지배하였다.⁵²⁾ 또한 성주는 곧 장군을 칭하였다.⁵³⁾ 당시 장군은 임명직장군과 자칭장군이 있었는데 성주를 칭한 자는 거의 다 장군을 칭했다. 자칭장군은 일정한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⁵⁴⁾ 대표적인 자칭장군으로는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와 궁예를 들 수 있다.

상주 가은현(경북 문경시 가은읍) 출신인 아자개는 본래 농사를 지어 자력으로 살았으나 뒤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⁵⁵⁾ 아자개는 혼란한 시기에 힘을 길러 자칭장군이 되었던 것이다. 궁예도 894년에 명주(강원 강릉)에서 자립의 기반을 잡게 되기에 이르자 민들의 추대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⁵⁶⁾ 이는 궁예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자칭장군이라 하겠다. 이들 이 외에도 자칭 장군들은 다수가 나타났다. 가히 ‘장군의 시대’라 할 정도였다. 그런데 00주군사(지주제군사)인 견훤과 장군인 궁예는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칭장군들은 특정 지역의 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궁예·왕건 또는 견훤에게 귀부하였다.

충청지역의 지역세력 중에서 성주·장군을 함께 칭했던 공직(龔直)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공직을 통해서 궁준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매곡산성(매곡성, 충북 보은군 회인면)을 거점으로 매곡현 일대를 관장하였던 성주 공직은 장군을 자칭하였다.⁵⁷⁾

52) 최종석, 앞의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2004, 77~78쪽.

53) 신라 진성여왕 3년 이후에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가 성주·장군의 등장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윤희면,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將軍 善弼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39, 한국사연구회, 1982, 58쪽) 필자도 동의한다.

54) 이재범, 『後三國時代 弓裔政權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53쪽.

5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5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건녕 원년.

따라서 운주성의 성주 공준도 장군을 자칭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이들은 각자 옹거하였던 성을 중심으로 해당 군현을 관장했을 것인데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소속 국가가 여러 번 바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매곡현과 운주의 민(民)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성주·장군이 소속 국가를 바꾸면 같이 따라갔다. 아마도 이 지역의 민들은 난세에 자신들의 안위만 보장된다면 국가를 바꾸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운주의 성주 겸 장군이었던 공준의 관할구역은 적어도 현 홍성군 관내는 모두 해당되었다.⁵⁹⁾ 당시 홍성군 관내에 있었던 결기군이 나 여양현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준은 출신 성분이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무적 능력이 뛰어나 운주의 성주가 되었다고 추정해 본다. 일단 그의 이름으로 보아 원래 성씨가 없었다고 생각되기에 집안은 한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료 나)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왕건의 군대와 직접 맞부딪쳤기에 무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그는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 당시에 고려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군에 소속되어 대광 왕순식 다음의 지위를 가진 대상(大相)으로서 참여하였다. 대상 공준은 일리천전투에서 몇 명의 지휘관과 함께 마군(馬軍) 2만 명을 지휘하였다.⁶⁰⁾ 이러한 점도 그가 무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후백제 견훤왕 아래에 있었던 공준이 어느 시기에 고려

57) 『고려사』권92, 열전5, 공직, “龔直 燕山昧谷人 自幼有勇略 新羅末爲本邑將軍” ; 『고려사』권127, 열전40, 반역1, 환선길 부(附) 임춘길, “…… 景琮姊乃昧谷城主龔直妻也”.

58) 공주장군 홍기도 비슷한 경우였다.

59) 성주와 장군은 대부분 군현명+성주, 군현명+장군 등으로 기록되어 이들이 해당 군현의 지배자였음을 알 수 있다(최종석, 앞의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2004, 83쪽). 따라서 운주성주 공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공준의 관할구역이 운주일대(홍성)라고 이해할 수 있다.

60)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9년 9월.

태조 왕건의 아래로 들어와 일리천전투에서 고려군 장수로 참여하였다. 그가 언제 주군(主君)을 바꾸었는지 궁금하다. 한편, 같은 시기에 운주의 지역세력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바로 홍규(洪規)였다.

- 다)-① 홍복원부인 홍씨는 홍주(운주)사람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홍)규의 딸이다. 태자 직(稷)과 공주 하나(이름은 모름)를 낳았다.⁶¹⁾
 다)-② 홍규(洪規), 태조를 섬겨 벼슬이 삼중대광에 이르렀다.⁶²⁾

사료 다)에 의하면, 고려 태조대에 운주에서 궁준 이 외의 지역세력으로 홍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홍규는 태조 왕건을 섬겨서 삼중대광이라는 높은 관계(官階)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딸이 태조의 부인이었다. 다)-①의 홍복원부인은 『고려사』 후비전에 그 순서가 12번째 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⁶³⁾ 홍규는 상당히 비중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궁준과 홍규를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⁶⁴⁾ 한 지역에 지역세력이 복수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하나의 군현에 중심 성을 거점으로 한 명의 지역세력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또한 궁준의 일리천전투 참전 공로로 보아 홍규의 지위는 궁준의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당시 운주에서 딸을 태조의 부인으로 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지역세력은 궁준밖에 없었다. 따라서 궁준과 홍규는 동일인물로 볼 수 있다.⁶⁵⁾

61) 『고려사』권88, 열전1, 후비1, 태조 홍복원부인 홍씨, “興福院夫人洪氏 洪州人 三重太匡規之女 生太子稷公主—”.

62) 『신증동국여지승람』권19, 홍주목, 인물 고려, “洪規 事太祖 官至三重大匡”.

63) 『고려사』권88, 열전1, 후비1, 태조.

64) 윤용희,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운주, 홍주, 홍성」, 『홍주문화』13, 홍성문화원, 1997, 25~26쪽; 『洪州大觀』상권, 홍주대관편찬위원회, 2002, 260~262쪽.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52쪽.

65) 한편, 궁준과 홍규의 동일인물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도 있다. 신호철은 태조 10년 3월의 운주 궁준과 태조 19년 9월의 일리천전투 시 궁준은 동일

성씨가 없던 공준이 왕건에게 귀부하고 홍규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고 딸을 왕의 부인으로 들였다고 판단된다.⁶⁶⁾ 그의 관계는 일리천전투 당시 대상이었지만 이후 삼중대광에 이르렀다. 그는 무적능력이 뛰어나 운주성의 성주 및 장군이 되었지만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힘의 향배에 따라 소속 국가를 여러 번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준(홍규)은 사료 나)에 의하면, 왕건이 운주성 아래에서 그를 깨뜨렸다고 하였다. 아마 이때 공준은 운주성과 그 휘하 민들의 생존을 보장받는 대신에 주군(主君)을 견훤에서 왕건으로 바꾸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918년 8월에 운주가 모반하여 후백제로 붙었다는 것을 알았다. 왕건이 918년 6월에 즉위한 것을 감안하면 운주성의 공준은 궁예에게 복속되었다가 왕건의 즉위에 불만을 품고 후백제 견훤에게 귀부하였던 것이다. 이는 왕건의 새 국가 창설과 즉위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후백제의 접경지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기에 그리했을 것이다. 또한 공준의 궁예에 대한 밀접성도 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요컨대 운주성 성주 공준은 신라 말의 혼란기에 자립하고 있다가 궁예 휘하로 들어갔으며, 그 후 왕건이 집권함에 약 2달은 그 휘하였으나, 모반하여 후백제의 견훤에게 귀부하였다가, 다시 왕건에게 귀부하였다는 것이 추정 가능한 그의 행적이 되겠다. 즉, 공준은 제1차 운주전투 이후에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견훤에서 왕건으로

인물인데, 홍규는 다른 인물로 보았다(『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99~100쪽). 장동익은 운주의 공준과 일리천전투의 공준을 별개의 인물로 추정하였다(『고려사세가초기편 보유』1, 경인문화사, 2014, 212쪽과 342쪽).

66) 공준의 생몰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왕건의 12비가 되었기 때문에 927년 당시에 최소한 삼십대 후반은 되었으리라 추정해본다. 혼인할 딸을 가질 정도면 그의 나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인데, 그는 공주장군 홍기가 나타난 904년에도 활동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나이가 삼십대 후반 이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바꾸었던 것이다.⁶⁷⁾

그러면 이렇게 주군을 여러 번 바꾸는 공준을 왕건은 어떤 믿음 속에서 다시 받아들였을까 수수께끼이다. 공준이 또다시 왕건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왕건은 공준의 용맹을 아까워했을 것이다. 공준의 용맹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기술하려고 한다. 그리고 왕건은 운주성이 접경지로서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성주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왕건이 꺼낸 묘책은 공준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었다. 공준의 입장에서 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운주성을 보전하면서 왕건의 장인이 되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으리라 생각된다. 공준은 자신의 딸을 왕건에게 납비한 상태에서 다시 견훤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마도 흥복원부인의 납비 시기는 공준이 왕건에게 패배한 927년 3월 이후의 가까운 시기가 아닐까 한다.

이상 살펴본 바를 토대로 공준의 향배를 <표 1>로 작성해 보았다.

<표 1> 공준의 향배

시 기	공준의 소속 국가	전 거
889년 이후의 어느 때 ~ 904년 전후	독자세력	공주장군 홍기의 행동으로 보아 추정됨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904년 전후~918년 8월	태봉, 고려	공주장군 홍기의 행동으로 보아 추정됨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918년 8월~927년 3월	후백제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927년 3월 이후	고려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67)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9쪽.

4. 운주전투의 전개과정

고려 태조 왕건이 918년 6월에 고려를 건국하고 난 직후에 모두 6차례의 모반이 발생하였다. 그 모반은 주로 충청지역 특히 청주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 모반의 주 무대인 충청지역이 모두 후백제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운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918년 8월에 후백제로 넘어갔다. 왕건은 이를 바로 수습하면서 아산만을 중심으로 대후백제 방어망을 다시 재편성하였다. 아산만은 간만의 차이가 큰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해상로를 가지고 있었다. 왕건은 고려군의 주요한 보급로 역할을 하는 해상로 확보 때문에 아산만을 매우 중시하였다.⁶⁸⁾ 고려군의 아산만 확보 정점에 운주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918년 8월에 웅주와 운주 일대가 후백제로 넘어가자 고려는 같은 달에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로 파견하여 아주(충남 아산)를 안정화시켰다.⁶⁹⁾ 다음해인 919년 8월에는 오산성을 고쳐 예산현(충남 예산)이라 하고 대상 애선과 홍유를 보내어 유민(流民)을 모아 편안히 살게 하였다.⁷⁰⁾ 당진지역, 특히 혜성군(충남 당진시 면천면)은 왕건의 충복인 복지겸과 박술희의 연고지였다. 두 사람 중에서 복지겸이 혜성군에 대한 재지적 연고가 강하였다. 이곳은 복지겸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고려의 안정지대였을 것이다.⁷¹⁾ 이처럼 왕건은 아산만의 남쪽지대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아산만의 북쪽은 이미 공예정권 때에 왕건의 활약으로 태봉의 수중에 있었으며, 왕건이 즉위한 이후에도 민이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다.⁷²⁾

68) 왕건의 즉위 초에 발생한 모반과 아산만의 해상로에 대해서는,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참고.

69)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70)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2년 추8월.

7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5~26쪽.

72)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10~11쪽.

이제 태조 왕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아산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불어 남쪽으로 후백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는 925년(태조 8) 10월에 정서대장군 유금필을 보내어 후백제의 임존군(임존성, 충남 예산군 대흥면)을 공격해서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⁷³⁾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 정상에 오르면 서쪽으로 홍성은 물론이고 서해바다까지 잘 보인다하므로,⁷⁴⁾ 운주를 공략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위해서 왕건에게 임존성 확보는 필요한 것이었다. 이윽고 1년 5개월이 흐른 뒤에 고려군은 임존성에서 가까운 운주성을 공격하였다. 사료 나)에 기술되어 있듯이 927년 3월에 왕건은 직접 운주로 쳐 들어가 성주 궁준을 깨뜨렸던 것이다. 이 전투가 바로 제1차 운주전투였다.

운주성(홍주읍성의 모태)은 평지성이었다. 그보다 훨씬 험준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임존성은 운주성 동쪽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두 성의 지도상⁷⁵⁾ 직선거리는 불과 약 10km 정도이다.⁷⁶⁾ 고려가 험준한 임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군사의 숫자가 얼마 정도였을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고려군의 총수는 적어도 적의 2배 이상인 최소 6천에서 최대 1만 명은 되어야 임존성 함락이 가능했을 것이다.⁷⁷⁾ 이러한 고려군을 상대로 궁준은 운주성 아래에서

73)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8년 동10월. 임존성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과 광시면, 홍성군 금마면의 경계가 이루어진 곳에 위치한 봉수산 정상부에 있는 테괴식 석축성이다. 산세가 험한 곳에 자리한 이 성은 7세기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곳이다(『문화유적분포지도 - 예산군』,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212~213쪽 참고);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2쪽 주49.

74) 제보자 : 박상구(남 66세,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토박이, 2015년 6월 29일 마사리 마을에서 구술).

75) 『1/10만 도로지도』, (주)성지문화사, 2007, 94쪽.

76) 임존성 서벽부터 홍주읍성 조양문까지 자동차로 금마로와 21번국도를 경유하는 최단거리를 말이 달리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면 거리는 약 15km이고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이다(2015년 6월 29일).

77)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2~23쪽.

왕건의 고려군을 맞받아 부딪쳤다. 궁준은 평지성인 운주성에서 농성하는 것보다 과감히 성 밖으로 나와서 고려군에 대항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리하였을 것이다.

운주성은 비록 부분적인 발굴조사였지만 현재 가장 잘 남아 있는 성벽의 높이는 150cm이고 너비는 400cm 내외인데, 실제로는 높이가 380~400cm이고 너비는 약 14m 내외까지 추정되고 있다.⁷⁸⁾ 궁준은 운주성의 실상이 이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험준한 임존성이 고려군에 함락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일찍이 신라는 성을 공격할 때 썼던 구름다리인 운제(雲梯)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라의 운제당(雲梯幢)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⁷⁹⁾ 고려도 당연히 운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고려군이 험준한 임존성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평지성의 성주인 궁준이 공격해오는 왕건의 고려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뿐이었다. 성을 버리고 도주할 것인가, 아니면 성 밖으로 나가서 고려군에 당당히 맞부딪힐 것인가였다. 궁준은 용감히 성 밖 평지전투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당시 전투가 운주성 아래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⁸⁰⁾

상황을 보건대 이 전투에서 궁준은 패배하고 왕건에게 사로잡혔다. 하지만 왕건은 비록 적장이지만 궁준의 행동을 용맹한 선택으로 좋게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인 운주성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여 궁준을 회유했으리라 여겨진다. 왕건이 제시한 회유책은 앞에서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사료 다)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과

78) 『홍주성내 의병공원 조성부지 1차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홍성군·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18쪽과 22쪽.

79) 『삼국사기』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四設幢 雲梯幢.

80) 운주성을 감싸고 있는 두 하천(월계천, 홍성천)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대군이 공격해 올 때는 해자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운주성 주변에는 너른 평지가 일정정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전투가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2015년 6월 29일 답사.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운주성과 그 민(民)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준에게는 홍규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다. 또한 관계(官階)를 수여했는데 앞에서 기술했듯이 일리천전투에서 공준의 관계는 대상이었다. 그의 관계는 후에 삼중대광까지 상승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준의 딸을 왕건의 제12비인 홍복원부인으로 맞아들인 점이다. 이는 모두 왕건의 포용정책의 일환이었다. 왕건은 공준에게 후한 대접과 함께 다시 배반하지 못하도록 안전책으로서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성주의 잘못된 판단은 성에 복속된 민의 허망한 몰살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공준도 왕건에게 기꺼이 자신의 딸을 납비(納妃)하였을 것이다.⁸¹⁾

왕건은 즉위 초에 모반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수습하고 충남지역에서는 아산만일대를 중시하면서 차츰 후백제를 압박하였다. 충남 아산지역·예산지역 등을 점수하였고, 당진쪽은 복지점 등의 재지기반으로 인하여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홍성지역인 운주를 고려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차츰 후백제에 대하여 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전환은 위축된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이 필요하였다. 그는

81) 왕건의 비는 기록상 나타나는 사람만 모두 29명인데, 그 기록의 순서는 주로 비의 아버지가 통일전쟁에서 거두었던 공로의 크고 작음이 작용하였다(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50쪽;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56~63쪽). 따라서 홍복원부인이 12비인 것은 그만큼 아버지인 공준(홍규)의 고려 통일전쟁에서의 공이 크다할 것이다. 또한 왕건과 아들인 혜종(무)은 충청지역에 연고성이 강하게 있는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왕건은 제3비 신명순성왕태후(충북 충주: 유궁달의 딸)·제10비 숙목부인(충북 진천: 임명필의 딸)·제11비 천안부원부인(충남 천안: 경주 임언林彦의 딸)·제12비 홍복원부인(충남 홍성: 홍규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그리고 혜종의 비(妃)인 의화왕후는 진주(鎭州, 충북 진천) 임희(林曦)의 딸이었다. 이 같은 혼인 사례들은 왕건에게 충청지역에서 지역적 기반을 다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69~70쪽). 한편, 고려 국왕 후비의 기록 순서는 대체로 결혼한 순서와 비례함이 원칙이라는 견해도 있다(정용숙, 『고려시대의 后妃』, 민음사, 1992, 42쪽 주22).

927년 9월에 신라 도성인 금성(경주)을 공격하고, 이를 구원하러 온 왕건의 부대마저 공산동수전투(대구 팔공산)에서 대패시켰다.⁸²⁾ 견훤의 신라 도성 공격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제공한 것이 제1차 운주전투였다. 견훤은 운주지역 상실에 대한 만회를 위해서 신라 도성 공격이라는 군사행동을 감행한 측면이 있었다. 제1차 전투가 끝나고 불과 6개월 만에 견훤이 신라 도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을 그럴 수 있다.

그동안 상승세를 탔던 고려군의 전세가 공산동수전투에서 후백제군에게 대패함으로써 크게 추락하게 되었다. 특히 경상지역에서 고려군의 전세가 밀리고 있었다. 왕건은 충청지역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하여 성을 축조하면서 견훤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라)-① (태조 11년, 928년 4월에 왕이) 탕정군에 행차하였다.⁸³⁾

라)-② (928년 4월) 운주의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국경을 지키는 군사(戍卒)를 두었다.⁸⁴⁾

라)-③ (928년 7월) …… 그때 유금필이 (왕의) 명을 받들고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있었는데, ……⁸⁵⁾

라)-④ 산수] 월산(月山), 옛말에 이르기를 옥산(玉山)이라 하고 서쪽 3리에 있다. …… [성지] 월산고성(月山古城), 고려 태조 11년에 운주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국경을 지키는 군사를 두었으며 둘레는 9천 7백 척이고 우물은 하나이다.⁸⁶⁾

928년(태조 11) 4월에 왕건은 탕정군(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일대)에 행차하여 성을 쌓도록 하였다. 더불어 운주의 옥산에도 성을

8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8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하4월, “幸湯井郡”.

84)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1년 하4월, “城運州玉山 置戍軍”.

85)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1년 추7월, “…… 時庾黔弼 受命城湯井郡 ……”.

86) 『대동지지』 권5, 충청도 홍주, [山水] “月山 古云 玉山 西三里”, [城池] “月山 古城 高麗太祖十一年 城運州玉山 置戍卒 周九千七百尺 井一”.

쌓도록 하였는데 정황상 4월에 두 개의 성을 쌓도록 명했으며, 유금필은 같은 해 7월에 이르도록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있었다고 이해된다.⁸⁷⁾ 그런데 19세기 지리지인 『대동지지』에 기록된 라)-④를 통해 운주의 월산은 예전에 옥산이라고 했으며 그곳에 쌓은 성을 월산고성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읍치의 서쪽 3리라고 되어 있다. 현재 홍주(운주)의 읍치였던 홍주읍성의 서쪽 가까운 곳에 홍성의 진산인 백월산(白月山, 또는 일월산日月山, 394m)이 홍성읍 월산리(月山里)에 있다. 그곳에 허물어진 옛 성곽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백월산성(白月山城, 월산성)이라고 한다.⁸⁸⁾ 즉 운주 옥산에 쌓은 월산고성은 지금의 백월산성인 것이다.⁸⁹⁾

여기에 왕건이 성을 쌓도록 한 것은 평지성인 운주성이 방어하는데 불리하므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운주성에 가까운 옥산에 성을 쌓아서 대 후백제 방어망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그 성을 지키는 군사를 따로 두었다는 것은 공준을 견제할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때까지 운주일대가 고려의 영역이면서 양국의

87)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16쪽.

88) 『한국지명총람』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414쪽; 『文化遺蹟總覽』(城廓官衙篇), 충청남도, 1991, 210~211쪽;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111~112쪽.

89)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 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44쪽에서는 운주 옥산에 쌓은 성을 여양산성이나 월산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21~24쪽에서는 고려군이 축성한 성을 용봉산성으로 보았다.

현지답사를 해보니 토박이들은 이 산을 보통 월산(정식명칭은 백월산)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월산의 정상에서 동쪽으로 보면 홍성을 시내는 물론이고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이 보인다. 날씨가 맑으면 서쪽으로 천수만을 비롯하여 안면도와 서해도 잘 보인다고 한다. 월산 동쪽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이고, 서쪽은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이다. 그리고 유태섭의 구술에 의하면, 이 산의 중턱 가파른 곳 위에 성이 있으며 성 위쪽으로 조금 오르면 식수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도랑이 몇 개 있다고 한다.

제보자 : 2015년 6월 29일. 원성노(남 79세, 월산1리 토박이, 월산1리 마을에서 구술), 유태섭(월산1리 이상, 남 68세, 월산1리 토박이, 월산1리 마을회관과 백월산 정상에서 구술).

접경지역이었던 것은 확실하였다. 수졸(戍卒), 즉 국경을 지키는 군사를 두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의 어느 때에 운주는 후백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 근거는 뒤에 기술할 제2차 운주전투가 934년에 벌어졌으므로 그리 판단하게 된다. 934년 이전에 운주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한편, 경상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왕건은 929년 12월부터 930년 정월사이에 벌어진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승리를 거두며 대반전을 이루었다.⁹⁰⁾ 그러나 바로 이어서 견훤은 나주(전남 나주)를 고려로부터 탈환하면서 역시 반전을 꾀하였다.⁹¹⁾ 왕건은 경상지역을 공고히 하였지만 나주 서남해와 서해의 제해권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와중에 충청지역에서 대 후백제 전선을 우위에 두고자 하였다. 먼저 930년(태조 13) 8월에 천안도독부(충남 천안)를 설치하고 대 후백제 전초기지의 중심으로 삼았다.⁹²⁾

이후 고려가 충청지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충청지역의 대표적 지역세력 중의 한 사람인 매곡산성(매곡성, 충북 보은군 회인면) 성주 공직이 고려로 귀부하였는데 이때가 932년(태조 15) 6월이었다.⁹³⁾ 왕건은 이를 기회로 같은 해 7월과 11월 즈음에 매곡산성의 바로 서편 가까이에 있는 일모산성(양성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을 연거푸 공격하여 마침내 성을 공략하였다.⁹⁴⁾ 후백제를 남쪽으로 좀 더 밀어 붙인 형국이 되었으니 이제 충청의 충북지역에서도 고려는 유리한 전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음 전선은 충남지역이었다.

9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12월과 13년 정월.

9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140쪽.

9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3년 8월.

9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6월.

94)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77~84쪽.

이때 후백제도 반격 작전을 전개하였다. 932년 9월에 견훤은 후백제 수군을 동원하여 예성강 일대인 염주·백주·정주에서 선박 1백척을 불사르고, 저산도에서 기르던 말 3백 필을 취하여 돌아갔다.⁹⁵⁾ 계속해서 후백제는 다음 달인 10월에 대우도를 공략하였다.⁹⁶⁾ 이 상황은 고려 도성인 개경과 가까운 지역들이 후백제 수군에 의해 타격당한 것이었다. 이는 아산만 입구 및 충남 서해안의 제해권을 후백제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운주가 다시 후백제 영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⁹⁷⁾ 하지만 운주가 후백제로 넘어갔어도 궁준은 왕건의 휘하에 남았다고 판단된다. 4년 뒤인 936년 9월의 일리천전투에 궁준은 고려군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전하였다. 따라서 비록 운주가 다시 후백제의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궁준은 고려군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왕건은 아산만일대를 공고히 하고 충남지역에서도 유리한 전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수순을 밟았다. 이는 서해 제해권 확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작전이었다. 934년(태조 17) 5월에 예산진(충남 예산)에 행차하여 자애로운 내용의 조서를 반포하였다.⁹⁸⁾ 왕건의 이런 행동은 곧 닥칠 9월 전투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의 하나였다.⁹⁹⁾ 예산진은 개경에서 예성강과 서해, 그리고 아산만을 거쳐 빠르게 군사와 군수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왕건은 이때 예산진에서 지역민들에게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려 했을 것이다. 드디어 제2차 운주전투가 발발하였다.

95)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5년 9월.

96)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5년 동10월.

97)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48쪽.

98)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7년 하5월. 예산진에서 왕건이 내린 장문(長文)의 조서는 한마디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편안히 살게 하라”이다(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3~25쪽).

99) 윤용혁, 앞의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漕州城主 兢俊」, 2007, 16쪽.

마) (934년 가을 9월)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려 하니, 전횡이 이 소식을 듣고 갑사(甲士) 5천 명을 선발하여 (운주에) 이르러 말하기를, “양편의 군사가 서로 싸우면 형세를 보전하지 못하겠소. 무지한 병졸이 살상을 많이 당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기 국경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왕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의논하니 우장군(右將軍) 유금필(庾黔弼)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들이 적을 쳐부수는 것만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저 편에서 진을 치기 전에 군세고 날랜 기병(勁騎) 수천 명으로 돌격하여 3천여 명을 목 베거나 사로잡고, 술사(術士) 종훈(宗訓)과 의사(醫師) 훈겸(訓謙)과 용맹한 장수 상달(尙達)·최필(崔弼)을 사로잡으니, 웅진(熊津) 이북의 30여 성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¹⁰⁰⁾

이상의 내용은 제2차 운주전투의 실상이다. 왕건은 934년(태조 17) 9월 제2차 운주전투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서경(평양)에는 가뭄이 들고 누리(메뚜기)의 피해가 있었다.¹⁰¹⁾ 고려는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왕건은 그나마 농사 수확기에 전투를 해야 군량미 수급이 원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9월에 전투를 단행했다고 여겨진다. 지리적인 면을 염두에 둘 때, 고려군은 예산진에서 운주로 바로 진격했거나, 예산진에서 임존성을 경유하여 진격했거나, 아니면 예산진과 임존성 두 곳에서 동시에 전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고려군의 진군로는 1차와 2차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고려군은 왕이 참여하는 정벌이면서 충남지역의 중요 접경지역인 운주를 재탈환하기 위한 작전이었기에 최정예부대였다. 군세고 날랜 기병으로 임혀지는 경기(勁騎) 수천 명이 포함된 병력이었다.

10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추9월, “王自將征運州 甄萱聞之 簡甲士五千至曰 兩軍相鬪 勢不俱全 恐無知之卒 多被殺傷 宜結和親 各保封境 王會諸將議之 右將軍庾黔弼曰 今日之勢 不容不戰 願王 觀臣等破敵 勿憂也 及彼未陣 以勁騎數千 突擊之 斬獲三千餘級 擒術士宗訓 醫師訓謙 勇將尙達 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10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글꼬리.

고려군은 우장군 유금필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적어도 좌군·우군·중군의 3군 체제를 갖추었을 것이다. 경기가 수천 명이므로 운주에 온 고려군 총 숫자는 최소 5천 명 이상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견훤이 직접 이끌고 있는 후백제군도 만만치 않았다. 비록 견훤이 먼저 화친을 제의했지만 왕건도 여러 장수들과 회의를 하면서 근심하는 모양새였다. 사료 마)에 나타나는 후백제의 갑사(甲士) 5천 명은 갑졸(甲卒) 5천 명과 같은 의미이다. 갑졸(갑사)은 갑옷을 입은 사졸(士卒), 곧 보병을 지칭한다.¹⁰²⁾ 이와 관련하여 5년 전에 의성부에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 견훤이 929년(태조 12) 7월에 의성부를 공격하여 그 성주·장군 홍술을 전사시켰는데 이때 동원된 후백제군이 갑졸 5천 명이었다. 홍술의 전사 소식을 들은 왕건은 “나의 양팔을 잃었다”하며 통곡하였다.¹⁰³⁾ 이는 후백제군 갑졸 5천 명이 정예부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홍술은 923년 11월에 갑옷(鎧) 30벌을 왕건에게 헌상하였다.¹⁰⁴⁾ 따라서 홍술도 나름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갖추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런데도 후백제 갑졸부대에 목숨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만큼 후백제군 갑졸의 전력이 뛰어났었다.

의성부전투 당시의 갑졸이나 운주전투 시 갑사나 단어의 뜻이 같고 병사의 숫자도 같으므로 동일한 전투부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운주전투의 후백제군은 심리전에 관여했을 술사와 군의관인 의사를 대동했으므로 잘 준비된 부대였다. 그 주요 지휘관 중에는 용장(勇將)이라 일컫는 상달과 최필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이 부대가 견훤의 최정예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갑졸(갑사)은 보병인데 고려군의 경기와 맞먹고 있었다. 상식적

102) 갑졸에 대해서는 『淮南子』의 내용을 인용 소개한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 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253쪽 참고.

10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7월.

10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6년 11월.

으로 보병은 기병 그것도 정예기병인 경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왕건은 후백제의 ‘갑사부대(甲士部隊)’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갑사부대는 경기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일찍이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기 전에 신라군으로 종군하며 자면서도 창을 베고(枕戈) 적을 대비했다고 하였다.¹⁰⁵⁾ 또한 신라는 긴 창을 다루는 부대인 비금서당(緋衿誓幢, 장창당長槍幢)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⁰⁶⁾ 아마도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후에 신라의 장창부대를 자기화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갑옷으로 무장한 보병 중에서 장창(長槍)을 소지한 인원을 일정 정도 포함시켜 적 기병을 무력화하는 전술에 능하지 않았나싶다.

긴 창을 질러대는 후백제 갑사부대를 향해 고려군 경기의 말들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경기 수천 명을 대동한 왕건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해된다. 후백제도 비록 갑옷으로 무장하고 장창을 소지했지만 고려군의 경기가 너무 많고 강해 보여서 머뭇거렸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군은 유금필의 주도아래 후백제의 갑사부대는가 진을 치기 전에 먼저 타격을 가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보병인 후백제 갑사부대는 진을 치기 전에 고려군의 타격을 받으면 그 진용이 흐트러졌을 것이고, 그런 후에 연이은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이런 전투가 가능하려면 지형조건이 평지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주성 일대의 평지에서 양측이 격돌했는데 선제공격을 감행한 고려군의 경기가 승리했다고 전투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제2차 운주전투에서 당연히 궁준은 왕건에게 여러 도움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운주에서 가까운 예산진에서 왕건이 자애로운

105)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106) 『삼국사기』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九誓幢. 신라의 장창당에 대해서는, 서영교,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17, 경주사학회, 1998 참고.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은 일대 지역민들의 협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운주의 지역세력이었던 공준의 태도는 지역 민심확보를 위해 중요하였다. 또한 유금필이 앞장섰던 경기에 공준과 그 휘하도 포함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공준이 936년 9월의 일리천전투에서 유금필과 함께 중군의 마군(馬軍)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¹⁰⁷⁾ 아마도 제2차 운주전투 때부터 유금필과 공준은 말을 부리는 전투부대를 함께 했으리라 여겨진다. 비록 운주가 공준의 고려 귀부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시 후백제의 소유로 바뀌었지만 운주를 재탈환하려는 고려의 작전에 공준은 여러모로 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운주전투에서 도움을 주었을 사람으로 운주와 인접한 몽웅역(夢熊驛)¹⁰⁸⁾의 한씨(韓氏)를 들 수 있다. 서산과 태안 쪽에서 고려 통일전쟁기에 가장 주목받은 곳은 정해현(貞海縣,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었다. (정해현은) “세간에 전하기를 태조 때에 몽웅역의 역리였던 한씨 성을 가진 자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大匡)의 호를 내리고, 고구현(高丘縣)의 땅을 나누어 이 현을 설치하여 그의 관향으로 삼게 하였다”¹⁰⁹⁾고 한다. 이처럼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채 성씨와 업적만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씨가 세운 큰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원래 지위가 높지 않고 특별히 지역세력이라고 내세울만한 인물도 아닌 사람이 한씨였다. 그에게 수여된 대광이라는 관계는 당시 지역민에게 주어진 것으로서는 최고의 대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왕건이

107)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9년 9월.

108)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한국지명총람』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85쪽). 현지답사를 해보니 토박이들은 동암리의 원래 이름을 역말(역마을)이라고 구술해 주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예전에 몽웅역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보자 : 오관복(남 78세, 해주오씨, 동암리 토박이, 2015년 8월 18일 동암리 마을에서 구술) 외 4인.

109)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洪州 貞海縣, “世傳 太祖時 夢熊驛吏韓姓者 有大功 賜號太匡 割高丘縣地 置縣 爲其鄉貫”.

명주(강원도 강릉)의 실력자로 잘 알려진 왕순식에게 내린 관계가 바로 대광이었기 때문이다.¹¹⁰⁾ 서산지역에서 대광이라는 관계를 받을 정도로 큰 공을 세웠다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운주전투이다. 그가 세웠을 큰 공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군이 운주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적의 정보를 알아보았거나 진군로에 대한 안내, 군 보급품에 대한 협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¹¹⁾

이러한 한씨의 역할은 궁준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제2차 운주전투에서 왕건에게 도움을 주었을 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궁준과 한씨가 있었다. 특히 궁준의 공이 컸다. 전투의 현장이 원래 궁준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운주(홍주)는 호서(湖西, 충청도)의 거읍(巨邑)¹¹²⁾으로 발전하였다. 운주가 일대의 큰 고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궁준(홍규)은 가히 운주의 개조(開祖)라 하겠다.¹¹³⁾

사료 마)에 의하면, 고려군에 의해 후백제의 정예부대인 감사부대 5천 명 중에서 3천여 명이 목 베이거나 사로잡히니, 그 소문을 듣고 웅진(熊津, 충남 공주) 이북의 30여 성이 스스로 항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고려군의 압승이었던 것이다. 제2차 전투의 승리로 인한 파장은 1차에 비해 대단히 컸다. 918년 8월에 웅주·운주 등 10여 개의 주현이 모반을 일으켜 후백제로 넘어 갔었다. 16년이 지난 후에 정반대로 웅진 이북 30여 성이 고려로 귀부하였던 것이다. 918년보다 더 넓은 지역이 고려의 영역으로 바뀐 상황이 되었다.¹¹⁴⁾ 이러한 양국 영역의 접경선 변화에 대해서 약도를

110) 『고려사』권92, 열전5, 왕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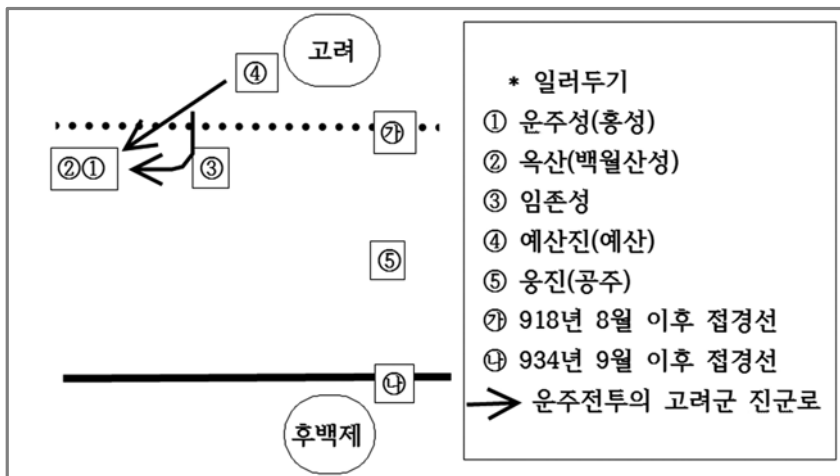
11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6~27쪽.

112) 『신증동국여지승람』권19, 홍주목, 신증 궁실 객관, 曹偉 記.

113) 윤용혁, 「제5장 고려시대」, 『洪州大觀』상권, 홍주대관편찬위원회, 2002, 256쪽;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전통문화논총』7, 한국전통문화학회, 2009, 221쪽.

114)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8쪽.

그러보았다.



〈약도 1〉 운주성 일대의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선 변화

〈약도 1〉에 나타나 있듯이 후백제의 영역은 제2차 운주전투 이후에 공주 이남으로 후퇴하였다. 견훤은 이미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대패하여 경상지역의 주도권을 왕건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견훤은 제2차 운주전투에서 패배하여 충남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제2차 운주전투가 고려 통일전쟁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한 것이었다. 세력이 급격히 축소된 후백제는 제2차 운주전투가 끝나고 불과 6개월 만에 급변사태가 발발하였다. 935년 3월에 부자간의 내분으로 견훤이 큰 아들 신검에게 내쫓겨 금산사(전북 김제)에 감금되고 말았다.¹¹⁵⁾ 신검은 후백제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견훤은 같은 해 6월에

이때의 웅진 이북 30여 성을 후일 공주와 홍주의 속군현이 된 지역과 서산 일대라는 견해가 있는데 참고된다(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흥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49쪽).

11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춘3월.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왕건에게 귀부하였다.¹¹⁶⁾ 마침내 고려는 태조 19년(936) 9월에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에서 후백제의 신검군을 대패시켰다. 왕건은 마성(전북 완주군 용계산성)에서 신검의 항복을 받았으며, 후백제는 국가의 문을 닫고 말았다.¹¹⁷⁾ 이처럼 제2차 운주전투는 고려 통일전쟁사에 큰 획을 그었다.

5. 맺음글

이상과 같이 고려 태조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인 운주전투(충남 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략 10세기 이전의 어느 때에 충남 홍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해풍향 또는 해풍현이 있었는데, 이 곳이 고려 통일전쟁기에 운주(運州)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났다. 해풍향(해풍현)은 그 명칭이 주(州)로 개칭되었고, 일대를 관할하며 이전에 비해 한껏 격상된 대접을 받았다. 여기에는 해당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궁예정권에게 귀부한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주는 당시 궁예정권과 견훤정권의 최일선 접경지였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는데 그는 궁준(龔俊)이었다.

둘째, 운주성의 성주(城主)이자 장군(將軍)인 궁준은 신라 말의

11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하6월.

11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9쪽.

혼란기에 자립하고 있다가 궁예 휘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918년 6월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자, 2달 후인 8월에 후백제로 귀부하였다. 하지만 공준은 927년 3월의 제1차 운주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 패배하자, 다시 소속 국가를 바꾸어 왕건에게 귀부하고 말았다. 그런데 공준은 왕건의 제12비인 흥복원부인의 아버지 홍규(洪規)와 동일 인물이었다. 그리고 운주성(해풍현성)은 현 흥성읍내에 있는 평지성인 흥주읍성의 모태였다.

셋째, 왕건은 928년 4월에 운주 옥산(玉山)에 성(백월산성)을 쌓게 하였다. 그러나 932년 9월을 전후하여 운주는 후백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준은 계속 고려에 잔류하였다. 이후 왕건은 932년 11월 즈음에 일모산성(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공략에 성공하며 유리한 전선을 갖추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공준의 협조 속에서 934년 9월에 운주를 친정(親征)하였다. 왕건은 고려군 경기(勁騎)를 유금필에게 맡기어 견훤의 후백제 갑사부대(甲士部隊)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이 제2차 운주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자, 웅진(충남 공주) 이북의 30여 성이 고려로 투항하였다. 패배한 견훤은 충남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처럼 제2차 운주전투는 고려 통일전쟁사에 큰 획을 그었다.

[원고투고일: 2015.7.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왕건, 견훤, 공준(홍규), 운주전투, 경기(勁騎), 갑사부대(甲士部隊), 운주성

<ABSTRACT>

The Battle of Unju led by King Wang Geon of Koryo
dynasty and Geungjun's Role

Kim Myeong-jin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fore the tenth century, there had been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o called "Haepoong Hyang" which was located in Hongseong-eup, Chungnam as its center. It emerged as the remarkable name of Unju during the war for unification waged by Wang Geon. Unju could gain held such an important place as a border region due thanks to Geungjun, a man of influence there.

Second, Geungjun, as a general and castellan of Unju, had been independent during the turmoil toward the end of the Kingdom of Shilla before coming under the supervision of Gung Ye. But he subjugated himself to Hubaekjei in August 918 as Wang Geon had toppled Gung Ye and come to the throne in the June of 918. After defeated by Wang Geon's Goryeo forces at the first Battle of Unju in March 927, however, Geungjun subjugated himself to Wang Geon. To our surprise, he was the same person as Honggyu, who was the father of queen of Heungbokwon, Wang Geon's twelfth wife. And the Castle of Unju was the origin of Hongju Eup-Sung located in what is now Hongseong-eup.

Third, in April 928, Wang Geon ordered to build up a the castle called Baekwol Fortress in Oksan, Unju. But sometime later, Unju became under Hubaekje's control. Wang Geon embarked on a conquest into Unju in September 934. His cavalry, supported by Geungjun, won a great victory in the second Battle of Unju over Hubaekje's armor-clad forces under Gyeon Hwon. Wang Geon's victory here led to over 30

castles north of Woongjin surrendering to Goryeo. The defeat of Gyeon Hwon led to the downfall of Hubaekje.

Key Words : Wang Geon(王建), Gyeon Hwon, Geungjun(Honggyu), the Battle of Unju(運州戰鬥), cavalry(勁騎), armor-clad forces(甲士部隊), the Castle of Unju(運州城)

郭再祐 宜寧 倡義의 含意

최 재 호*

1. 서론
2. 宜寧 倡義의 배경과 意義
 - 가. 義兵將 郭再祐와 宜寧 義陣의 성격
 - 나. 최초 倡義가 지니는 意義 분석
3.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와 郭재우의 전술
 - 가.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
 - 나. 전투에 활용된 郭재우의 전술
4. 결론

1. 서론

건국 이후 200년 간 평화로웠던 조선은 임진왜란(1592~1598)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명의 국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임진왜란의 실패로 새로운 막부가 들어섰으며, 명은 막대한 군비 지출로 인해 여진족에 의해 멸망하였다.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조선의 경우 국토

* 육군3사관학교 국어 조교수, gilwubin@hanmail.net.

전역이 피폐해지고 기존 질서가 동요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만큼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의병활동을 국난극복의 추동(推動)으로 보는 연구 성과이다. 임진왜란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의병의 성격을 구명하는 논의와 특정 의병장의 의병활동을 분석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의병의 성격을 구명하는 논의는 의병과 관군과의 관계, 창의를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특정 의병장의 의병활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 의병장인 곽재우에 대한 논의가 질적, 양적으로 돋보인다.

초기 선학들의 연구 중에서 창의를 배경과 목적을 국난극복사에서 찾으려는 감상주의적 접근법과, 특정 의병장 연구과정에서 선양(宣揚) 위주의 논지 전개가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¹⁾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인 곽재우의 창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곽재우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도 밝혔듯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었기에 사실상 더 이상의 논의거리가 없는 상태이다.²⁾ 하지만

1) 정해은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조광 「임진의병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의 필요성」 등의 연구에서 초기 선학들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2) 김강식,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 활동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제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1.

———, 「16세기 남명학파의 의리 인식과 곽재우의 의병운동」, 『부산사학 40·41』,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1.

김운곤, 「곽재우의 의병활동」, 『역사학보』33, 역사학회, 1967.

———, 「곽재우의 의병활동」, 『민족문화연구총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김혜영, 「곽재우의 의병활동 사적에 대한 일고찰」, 『경남문화연구』17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5.

이남희, 「경상우도의 의병활동과 실록기사」, 『남명학연구』제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이수건, 「남명학과 의병 활동의 역사적 의의」, 『남명학연구』제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기존의 연구가 혹시나 감상주의적 접근법에 의해 의병장에 대한 지나친 선양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와 반대로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둔 전공위주의 연구로 인해 창의 활동 속에 감춰진 함의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하는 우려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새로운 시각에서 광재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구명하기 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찾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의령 창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시 임진왜란의 전개양상을 경상우도 중심으로 확인하고, 의병장으로서의 광재우와 의령 의진(義陣)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최초 창의가 지니고 있는 숨겨진 의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둘째, 의령 창의가 지니는 전략적 효과와 광재우가 실제 전투에 활용한 전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임진왜란 당시 의령이라는 지역이 지닌 전략적인 중요성과 이 당시 광재우가 의령을 지켜내기 위해 활용한 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진의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 기존 연구 성과들에 대한 재고(再考)가 한번쯤 있어야 할 시기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연구가

———, 「망우당 광재우 의병활동의 사회·경제적 기반」, 『남명학연구』 제5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5.

이창희, 『광재우 연구』, 양영각, 1993.

———, 『(개정판) 광재우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 「망우당 광재우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 제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최효식, 「임란기 망우당 광재우의 의병항전」, 『신라문화』 제2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이 밖에도 경상우도 의병을 논의할 때 광재우가 논의되는 등 광재우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다시금 조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약하지만, 용기를 내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宜寧 倡義의 배경과 意義

가. 義兵將 郭再祐와 宜寧 義陣의 성격

본 절에서는 의병장 곽재우의 인물론과 의령 의진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임진왜란 초기 패전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시 경상우도의 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 조선의 일방적인 패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각도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일본의 침략에 대한 동·서인의 분열, 군정의 문란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와 국방력의 약화, 지방관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조총의 미확보 등에서 찾았다. 하지만 위의 논의들은 사실상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초기 일본의 침략 판단에 대한 동·서인의 분열이 있긴 하였지만, 왜침을 기정사실화한 이후에는 하삼도(下三道)를 중심으로 한 축성 및 병기 점검이 시작되었고, 군정의 문란으로 인한 양인(良人)과 보족(補足)의 감소는 오히려 재지사족의 잠재력으로 창의(倡義)의 원동력이 되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³⁾ 또한 지방관의 학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또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지방관의 학정으로 보기보다는 병기 점검과 축성 등 군비강화책 과잉에 의한 백성들의 불만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⁴⁾ 즉 초기

3) 허태구,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南冥學研究』 제4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p.39.

패전을 어느 하나의 요인에서 찾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위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조총의 미확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조총의 미확보’는 단순히 ‘조총’이라는 선진 무기의 미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간의 내전을 통해 축적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의 군제(軍制), 군수체계, 무기체계, 전술, 관방(關防), 정보력의 경쟁에서 조선이 패배하였다는 의미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 침략 전 전쟁선언문을 통해 중국과 조선이 일본을 여러 차례 침입하였으나 일본은 삼한(三韓)을 정벌한 이래 천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에 명과 조선을 침공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정벌론’을 펼쳐 다이묘(大名)를 설득하는 한편, 조선 침공의 전초기지인 나고야성(名護屋城)을 축성하였다. 나고야성은 1591년 착공해 1592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그 규모는 도요토미가 거주하던 오사카성(大坂城) 다음 가는 규모였다. 나고야성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에는 150~160명에 이르는 다이묘와 무장들이 대략 25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채 주둔하였다.⁵⁾ 또한 조선 침략을 위해 대규모의 선단을 구축하는 한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었던 포르투갈 군함 2척을 일본에 와있던 선교사를 통해 협조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등 조선침략을 꾸준히 준비하였다.⁶⁾ 당시 조선의 국방력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즉 임진왜란 개전 초기 일방적인 조선의 패인을 조선 내의 내부 요인에서도 찾을 수도 있지만 강력한 일본의 군사력과 일본의 완벽한 전쟁준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서도 찾아야

4) 위의 논문, p.34.

5)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pp.25~46.

6)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서 일본의 조선침략 준비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하겠다.

여기서 광재우가 창의할 당시 경상도 지역의 전황과 지방 수령들의 대응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 직후 6월까지 경상도 지역에서 침입을 받은 지역은 경상좌도는 37개 지역 중 26개 지역, 경상우도 30개 지역 중 20개 지역이 침입을 받았다. 경상좌도의 전황은 경상우도에 비해 좋지 않았으며, 동래를 비롯하여 영산, 청도, 대구 등 주요지역이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기존 의병 관련 연구 대부분이 의병의 공적을 선양하기 위하여 관군(수령)들의 무능함을 부각시켰는데, 경상도 수령 67인의 동향을 살펴보면, 경상좌도는 수령 37명 중 10명만이 도망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상우도는 수령 30명 중 15명이 도망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적에 대적하였다. 그 중 패전의 책임으로 효시되거나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임진왜란 초기 대부분의 수령들이 임지를 벗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⁷⁾

재미있는 사실은 왜침의 강도가 더 심했던 경상좌도 지역보다 경상우도 수령들의 피직률(避職率)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상좌도보다 경상우도가 의병에 의한 국난극복이 더 절실히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 광재우의 창의지역인 의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 전황을 살펴보겠다.

이로(李魯) 『용사일기(龍蛇日記)』는 당시 경상우도의 전황을 언급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데, 『용사일기』에 기록된 경상우도 수령들의 임란 초기 대응을 살펴보면, 광재우가 창의한 의령지역은 縣監 吳應昌이 관직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비롯하여 경상우병사 조대곤⁸⁾, 창원군수 장의국, 우후 이협, 창령군수 이철용, 현풍군수

7)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 『朝鮮時代史學報』70, 朝鮮時代史學會, 2014, p.138~147.

8) 1. 右兵使曹大坤 領大軍 屯于海望原 不往求金海之屠 公至 則錯愕迎揖 便欲棄

윤택신⁹⁾, 陝川郡守 전견룡, 함안군수 유송인, 초계군수 이유검 등 관군의 무능함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경상감사 김수는 처음 진주에서 왜적이 침입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동래로 달아났다가 중로에서 적병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경상우도로 되돌아와서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인민에게 피난하도록 권유하여 도내가 텅 비게 하였으며, 이후 근왕에 실패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이로 인해 김성일에게 질책당하는 장면까지 세세히 기술되어 있다.¹⁰⁾

이로 『용사일기』가 의병장의 시각으로 기술되어 관군의 무능함이 실제 이상으로 부각되기도 하였지만¹¹⁾ 사실상 경상우도의 관군은 이미 궤멸에 가까운 상태였기에, 이로 인해 경상우도에서 최초의 창 의가 일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재우의 인물론에 대하여 논의 하겠다.

去 公峻 辭責之曰 將軍以闔帥 屯兵不進 使金海見陷 罪當行形 況以世臣宿將 當此劇變 義不可遁 大坤色絕; 李魯, 『龍蛇日記』, 二.

2. 巡察使軍官金敬老 遣來覲賊 未半途 望見哨掠軍來 躍馬回馳 揮劍大聲 呼曰 賊至我後 於是一軍崩駭 大坤與公 對踞胡床 起將跨馬 公呼而止之者三 未乃 攀馬不能騎 其裨扶上之 卽先馳去; 李魯, 『龍蛇日記』, 二.

9) 昌原郡守 張義國은 城을 비우고 달아났으며, 虞侯 李俠은 병기를 못에 던지고 군량창고를 불사랐으며, 宜寧 郡守 吳應昌이 지휘를 잘못하여 精兵 백여인을 익사케 하였으며, 昌寧郡守 李哲容과 玄風郡守 柳德新은 巡察 使의 전령으로서 모두 邑을 버리고 달아났다.

10) 晬自居昌 諉以勤王 指雲峰 與公忽值 愕暗無以爲辭 公以義責之曰 封疆之臣 當死封疆 何爲棄之至此乎 全失一道 而不能救 單騎遠投 其能有濟乎 願令公亟回 晬乘馬班如 不得已強顏回旅 嶺之人 初以棄去爲幸 聞至 無不嘖頰而相弔; 李魯, 『龍蛇日記』, 四.

11) 실제 관군들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의령현감 오옹창은 김해성 수성을 위해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김해로 이동 중 선박의 전복으로 인해 병력을 잃었으며, 초계군수 이유검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김해성 수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수성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김수는 오옹창과 이유검을 김해성 수성 실패를 물어 처형하였다. 즉 관군들이 임란 초기 패전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용사일기』에 기술된 것처럼 무능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拙稿,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남명학』19, 남명학연구원, 2013.

곽재우의 인물론에 대한 연구는 크게 창 의라는 영웅적 구국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곽재우를 초인에 가깝게 묘사하거나, 반대로 관군과의 갈등을 부각시켜 의욕만 앞세운 단순한 무부(武夫)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양 극단의 인물론이 동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선행 연구 중 곽재우를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가 이장희의 연구인데¹²⁾, 이장희는 이덕형의 곽재우에 대한 인물평과 사관의 평 등 선조실록을 인용하여 곽재우의 인물됨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¹³⁾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지닌 맹점을 경계하며 곽재우를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처럼 곽재우를 전쟁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곽재우를 의욕만 앞선 단순한 무부(武夫)로 보는 극단적 인물론으로는 곽재우의 행적을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차 진주성전투에서의 외곽지원, 2차 진주성전투의 불참, 종전 이후 일본과의 강화론 제시 등의 행적은 곽재우를 구국의 의지가 충만한 전쟁영웅으로만 보는 시각이나, 또는 전술·전략이 부족한 단순한 무부로 보는 시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곽재우의 인물론 논의를 위해 우선 곽재우와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곽재우의性情(性情)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곽재우의 임란 간 행적을 통하여 곽재우의 장수로서의 자질에 대해 고구하겠다. 먼저 창 의시 곽재우와 연관된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12) 이장희, 『곽재우연구』, 養英閣, 1983, pp.224~225.

13) 1. 德馨曰 往在嶺南時 聞再祐之爲人 人物朴野 有如木杙 經情直行 堅執不撓 同事之人 或多厭之 但慶尙右道得 之保全者 米必非此人之力也 以此右道之人 多有服之者矣; 『宣祖實錄』 卷158, 宣祖 36年 癸卯 正月 辛未.
2. 史臣曰 郭再祐 桢卓不羈之士也 養素丘園 不求聞達 及其國歌危急之秋 奮義率衆 誓心討賊 以興復王室爲 己任 慷慨忠勇 有足稱者 至於朝家之是非 時政之得失 雖非閫帥之所與知 而見國事之日非 痛賢相之播棄 瀝血陳章 盡言不諱; 『宣祖實錄』 卷122, 宣祖 33年 庚子 2月 甲午.

곽재우의 성정에 대하여 확인하겠다.

곽재우의 초기 창 의 시 도움을 주었던 김성일, 곽재우와 동문으로 영남 3대 의병장 중 한 사람인 김면, 임란 초기 경상도의 실질적인 군권을 가지고 있던 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먼저 김성일과 곽재우의 관계이다. 김성일은 곽재우의 창 의에 지대한 공헌은 한 점은 인정하지만 초기에 곽재우를 보는 시선은 사실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¹⁴⁾

김성일은 곽재우의 활약상과 전공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곽재우의 성정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김성일의 평가는 곽재우와의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 많이 희석되어 간다. 반면 곽재우가 바라보는 김성일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곽재우가 창 의 당시 합천군수 전견룡의 무함(誣陷)으로 인해 의병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단성에서 김성일의 도움으로 다시 기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곽재우는 김성일을 인격적으로 존경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존중하고 그의 지시에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김성일이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곽재우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곽재우의 답신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찾을 수 있다.¹⁵⁾

답신의 앞부분은 곽재우의 김성일에 대한 존경이 드러나 있으나,

14) 其人雖有膽勇 無深謀遠慮 且大言無當 開奔潰守令邊將 則必欲斬頭 至向監兵使 多發不遜之語 謗言沸騰 以爲狂賊 而當此危急之時 如此之人 駕御用之 不無其益 卽送于同縣 突擊將稱號 使之擊倭 (中略) 故宜寧一縣之民 賴而少安 臣雖疑其狂率 而策勵獎諭 俾效其力 徐觀其所爲; 『宣祖實錄』 27, 宣祖 25年 6월 丙辰.

15) 今見開諭之帖 不勝感激隕淚之實 懇懇之教 諄諄之諭 無非欲使再祐免將來之禍 成莫之功 豈但閣下仁愛之至 視再祐猶子而然也(中略) 嗚呼 閣下之爲巡使謀可謂忠矣 只恐巡使之爲閣下謀不如也 巡使亦人也 豈不自知其罪 巡使之言 閣下可使之改也 巡使之事 閣下可使之改也 未知巡使之心 閣下其能改之乎(中略) 再祐知殞身滅族之禍必至 而猶且不已者 出天之性不卒改 憤鬱之心 未能遽回故也 然而閣下 君父之所遣 則閣下之教 則同王言也 何敢執一己之見 而違閣下之教乎; 郭再祐, 『忘憂堂集』 卷1, 「答招諭使書」.

중간 이후부터는 자신보다는 김수를 신뢰하는 김성일에 대한 원망과 함께 김성일이 선조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을 따른다는 불만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김성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음은 곽재우의 김면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곽재우와 김면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김수는 곽재우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남명학과 선배이자 의병장인 김면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며, 김면은 김수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곽재우에게 설득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곽재우의 의기가 높음을 선양하고, 순리만을 생각하면 만고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¹⁶⁾

이 서신을 받은 이후 곽재우의 김수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곽재우가 김면을 만난 후에 “내가 김대장을 보니 기도가 엄연하고 거지가 안한하여 흉적을 소멸하고 영남을 보전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다.”¹⁷⁾라며 존경을 표하게 된다. 하지만 김면은 곽재우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는 달리 김수와 갈등을 빚는 곽재우의 반관적인 태도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곽재우는 원래 유식하지 않으므로 그의 하는 일을 깊이 책할 바는 못 된다”고 평하는 등 곽재우를 폄하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즉 곽재우의 김면에 대한 인식이 일면이라면 김면의 곽재우에 대한 인식은 多面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곽재우의 창 의 초기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킨 당시 경상순찰사 김수와의 관계를 논의하겠다.

곽재우와 김수의 갈등은 의병장과 관군장 간의 갈등으로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16) 李魯, 『龍蛇日記』, pp.31~32.

17) 吾觀金大將 氣度嚴毅 舉止安閑 消滅凶賊 保全嶺南者 必此人也 ; 李魯, 『龍蛇日記』, p.33.

그 첫 번째가 곽재우와 김수 간의 개인적인 갈등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곽재우의 장인인 이로의 삼촌 문덕수와 김수와의 갈등이 그것이다. 둘 사이의 갈등은 문덕수의 조카인 이로뿐 아니라 이로의 사위인 곽재우로까지 투사되어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수의 부하인 김정눌과 이로간의 구원까지 혼탁되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김정눌은 곽재우와 김수가 갈등이 있음을 이용하여 곽재우와 이로를 함께 제거하고자 하였다. 즉 표면에는 관군을 대표하는 김수와 의병을 대표하는 곽재우의 갈등만이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김수와 이로 간의 갈등과 김정눌과 이로 간의 갈등이 숨겨져 있다.¹⁸⁾

두 번째는 두 사람간의 갈등은 여러 번 논의되었듯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왕권 즉 관군으로 대변되는 봉건세력과 의병으로 대변되는 반봉건세력 간의 갈등으로 해석 할 수도 있으며, 조신인 관료 진출 사림과 지역 사림 간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관군끼리의 대립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임란 초기 김성일과 김수와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김수와 곽재우가 표면에 드러나자 김성일이 곽재우를 옹호하게 되고 이것은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을 더욱

-
- 18) 1. 辛卯夏 陝川人前縣監文德粹 年近八十 目睹時事 不在憂憤 上書于監司金晬 極陳邊將守令嚴刑剝害 先拔邦本云云 晬大怒 與兵使申砮 以豪強狀啓 時陝川守全見龍 蛇蝎之毒 谿壑之愆 民不堪命 邑將空虛 亦甚疾之 必欲陷于大罪 替而成之 盖與晬同年也 移囚三嘉 禍將不測 甥姪李魯 欲告寃于朝 戾京未還; 李魯, 『龍蛇日記』, 五.
2. 再祐卽前直長李魯之女壻 魯卽前縣監文德粹之三寸姪也 德粹獻書於臣 歷詆道主闔帥守令邊將 臣與兵使申砮 狀啓請罪 故臣爲德粹所怨 再祐聽人所囑 爲此不軌; 李魯, 『龍蛇日記』, 二十八.
3. 傳檄於郭 欲逞私憾者 金景訥與李魯有隙久矣 窺魯多年 未乘其隙 適逢此時 喜行胸臆 忽見前檄 心語口曰 郭妾 李女也 殺魯者其在此乎 以魯爲陰嗾之魁 以郭爲見嗾之人; 李魯, 『龍蛇日記』, 三十三.
- 拙稿, 「松巖『龍蛇日記』의 문학적 특성 논의」, 『退溪學과 儒敎文化』 4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심화시켰을 수도 있다.

전쟁은 모든 갈등 중 가장 큰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기에, 전쟁 안에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순위격식(順位格式)’에 맞추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겨났지만,¹⁹⁾ 오히려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광재우와 김수의 갈등도 의병 창 의라는 현실과 관군 주도의 전쟁 수습이라는 이상이 서로 부딪힌 결과라고 하겠다.

두 사람의 갈등은 여러 사료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광재우의 입장에서 김수와 의 갈등을 기술한 사료는 이로의 『용사일기』이고, 반대로 김수의 입장에서 광재우와의 갈등을 다룬 사료는 이탁영(李擢英)의 『정만록(征蠻錄)』이다. 『정만록』에서도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잘 드러나 있다.²⁰⁾ 하지만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김수의 태도는 『정만록』의 기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김수는 전현룡이 광재우를 토적으로 무함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았다”는 선조실록 25년 임진 6월 병진조의 기록과 선조가 김수에게 광재우가 어떤 인물인지 묻자, “4월 20일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으며, 처음에 의병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였지만 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적을 잡으면 머리를 베어 바치지 않고 그 심장을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의령·삼가 등지의 성이 온전한 것도 재우의 공입니다.”²¹⁾라고 하며 광재우에 대한 사감을 전혀 드러

19) 拙稿, 「전쟁실기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 『退溪學과 韓國文化』 46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p.257.

20) 『정만록』은 乾, 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만록』 乾 중 임진년 7월 초3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宜寧에 사는 郭再祐가 자칭 義兵將이라면서 檄文을 지어 使相게 보내왔는데, 글 속에 和協을 잃은 글귀가 있기 때문에 使은 여기서 방비한다.’라는 내용으로 광재우와의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았으나, 坤에서는 장계의 형태로 광재우에 대한 김수의 評이 실려있다. 坤에서는 乾과는 달리 장계를 통해 광재우가 김수를 꾸짖는 데에 대한 불쾌감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으며, 광재우를 匪賊의 수준으로 격하하여 평하고 있다.; 拙稿,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남명학』 18, 남명학연구원, 2013.

내지 않고 있다.

전란 이후 1605년 3월에 곽재우는 한성부 우윤으로 김수는 한성부 좌윤으로 함께 근무하는데, 이때 두 사람 사이의 구원은 모두 풀리게 되며 이 때 먼저 화해를 신청한 사람도 바로 김수이다.²²⁾

여기서 정치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과연 김수가 과연 기존 곽재우 중심의 연구 성과에 나오는 것처럼 무능한 관군 장수였나 하는 문제이다. 『정만록』에 기술되어 있는 김수를 살펴보면 『용사일기』와는 달리 비록 임란 초기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관군장으로서의 행적과 결단력은 매우 시의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²³⁾ 즉 조심스러운 논의이기는 하지만 『용사일기』에 기술되어

21) 『宣祖實錄』 卷32, 宣祖 25年 壬辰 11月 辛巳.

22) 이장희, 앞의 책, p.18.

23) 『정만록』에서 김수가 임란 초기 행한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년 4월 22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까닭으로 秋風嶺에서 크게 적을 방비할 작정으로 知禮로 달려 3일을 머물면서 東西에 策應하고자 밤낮을 달려도 사태가 악화될까 두려우며 비록 정성을 다하여 報國하고자 하니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4월 26일의 실기에서 ‘使相은 陣을 居昌으로 옮기고 8일을 머물면서 東西로 대응하였다. 金海戰鬪에서 패한 草溪郡守 李惟儉을 목베어 軍中에 梟示하였다.’라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

5월 7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수가 초유사 김성일의 권고로 道內的 적을 없애고 다시 勤王兵을 일으키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똑같은 행위를 이로 『용사일기』에서는 ‘김수가 초유사를 만나 경상도를 벗어나는데 대해 질책 당하자 무안하여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相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만록』 5월 14일 김수가 勤王을 행하는 장면, 5월 16일 김수가 적을 잡을 계책을 세우는 장면, 6월 6일 김수가 호남진중의 2명의 장수가 戰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장면, 적을 보고 전라순찰사는 도망갔으나 의연히 자리를 지키는 김수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밖에도 작자인 이탁영은 5월 25일 김수가 작자에게 포상하는 내용, 6월 4일 작자가 복통이 있자 김수가 燒酒를 내리는 장면, 7월 11일 서리에 불과한 작자의 전략을 무시하지 않고 칭찬하는 장면, 8월 20일 작자에게 소금과 쌀을 나누어 주면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기술함으로써 김수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경험이었지만 이로 『용사일기』와 이탁영 『정만록』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拙稿, 앞의 논문,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있는 김수를 비롯한 관군들의 무능함은 의병의 입장에서 관군을 보는 歪曲된 시선에서도 기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시선은 임란 이전 김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과도한 축성 사업으로 인해 경상우도의 민심이 김수에게 멀어진 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은 김수의 매우 꼼꼼한 일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은 지역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²⁴⁾

곽재우와 김수의 갈등은 심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서로의 시각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는 김성일과 김면의 중재 이후 곽재우에 대한 사감이 전혀 없음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곽재우와 김수 둘 다 사감이 아닌 ‘순위격식’에 의한 주도권 쟁탈로 인해 갈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성정 또한 다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많이 닮았기에 서로 대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갈등의 깊이가 더 깊다고 생각하는 곽재우가 김수보다 그 격한 감정을 더 많이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위에서 임란초기 당시 곽재우의 창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고받은 김성일, 김면, 김수와 곽재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곽재우는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대할 때 好不好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일의 답신에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드러낼 때의 감정은 자신의 사혐(私嫌)에 의한 것 보다는 구국과

24) 허태구, 앞의 논문, p.35.

25)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문제는 전란 이후 金麟煥에 의해 이로 『용사일기』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의 『龍蛇日記論考』가 집필되었으며, 그 이후 李經에 의해 김인환의 저술에 대응하는 『龍蛇日記應辯』이 다시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논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연관된 공분(公憤)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광재우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광인으로까지 매도당하기도 했지만, 간명직절(簡明直節)한 인물이기에 대의를 실천하기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정은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 시기에 권도(權道)에 따른 결단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도에 따른 결단력으로 인해 1, 2차 진주성 전투, 종전 시 일본과의 강화 제안과 같은 파격적인 행적이 가능하였다.

다음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0여 일만에 창의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그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장재(將才)에서 찾고자 한다.

광재우의 장재는 크게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던 자질과 함께 후천적인 환경에서 기인한다. 선천적인 자질은 어려서부터 춘추와 병서에 통달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했다는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후천적 영향으로는 우선 스승인 남명(南冥) 조식(曹植)과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식은 제자이자 외손서인 광재우에게 직접 병서를 가르치며 읽기를 권했다는 기록 등에서 광재우의 장재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후에 창의로 이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²⁶⁾

26) 광재우를 비롯한 남명학파의 창의를 남명의 사상적 기반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敬義’를 중시하고, ‘下學’과 ‘人事’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남명학파의 사상적 기저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남명은 ‘義’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義를 방해하는 것은 ‘邪’이며, 邪를 막는 것은 義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명이 직접 군사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武’와 병법을 강조한 것은 義의 실천으로, 이는 尙武精神으로 이어져 창의에 자연스런 자양분이 되었다. 셋째, 남명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본에 대한 배타적이고 강경한 對日의식도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남명의 대일 인식은 문인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전란에 대비하고 항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남명은 직접 「乙卯辭職疏」에서 조정의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왜구의 침략을 대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왜란을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그 강구책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남명의 敬義에 바탕을 둔 實踐力, 義를 바탕으로 한 尙武精神,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

이외에도 부친인 곽월(郭越)이 북쪽 국경방어의 요충지인 의주목사로 부임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부친이 의주목사로 부임한 3년 동안의 기간은 부친의 직책과 지역적인 영향으로 인해 곽재우가 자연스레 병서와 궁마를 익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또한 장인인 김행(金行)이 만호를 지낸 무인이라는 사실 또한 곽재우가 병가의 이론과 실기를 두루 갖추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²⁷⁾

곽재우의 장재는 뒤에 지휘관이 되었을 때 큰 성과를 발휘한다. 병가의 이론적 배경은 정기(正奇)를 잘 혼합한 전술 운용과 진퇴를 정확히 아는 전장에서의 판단력으로 나타났고, 궁마의 기예는 직접 진두에서 지휘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나타나 그의 부대가 상승(常勝)²⁸⁾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상승은 결국 승수효과를 발휘해 임진왜란 전국(全局)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

곽재우는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전략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하는데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입성 거부와 패전 예견, 거제도 공격의 패전을 예견하거나, 강화기간 간 산성 복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의 제시, 구퇴소(救退疎)에서 수군 위주의 군편성을 우려, 종전 이후 일본과의 강화를 제안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곽재우의 장재는 임진왜란의 주요 국면마다 조정에서 활용하고자 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2년 12월 비변사에서 곽재우의 부대를 근왕병으로 운용하려 했다는 기록을 통해 곽재우의 부대가

명이 남명학과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발현된 것이 바로 倡義이고, 남명학과 직전제자 30여명, 재전제자 44명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서 활약하였다.; 拙稿, 「南冥學派의 壬辰倭亂 戰爭實記 研究」,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pp.18~49.

27)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pp.426~427.

28) 곽재우의 임진왜란 간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은 창의 초기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遊擊戰을 기본 전술로 채택하여 정암진 전투(1592년 6월), 현풍·영산 전투(1592년 7월), 제1차 진주성 전투(1592년 10월)의 승리를 이끈데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큰 부대가 아니었지만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593년 5월 경상감사 김특으로 후임으로, 1594년 12월 경상우수사 원균의 후임으로, 1595년 2월 경상우도방어사 김응서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등 경상우도뿐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장수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지금까지 광재우의 성장과 장재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인간관계를 통해 확인한 광재우의 성정은 어찌 보면 단순질박해 보이지만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는 ‘간명직절’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에 있어 사협은 없었으며 그 관계가 매우 담백하였다. 또한 광재우의 선천적인 장재는 스승 조식, 부친 광월, 장인 김행의 영향으로 인해 뛰어난 지휘관, 전략가로서 발현된다. 광재우는 남명학과 특유의 현실인식이 매우 뛰어나며, 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행동을 과감히 행하는 권도를 따르는 장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단성으로 인해 단순한 무부로 오인받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령 의진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광재우는 난이 발발한 지 10여 일만에 가동 10여 명을 거느리고 최초로 창의하였으나, 이후 50여 명, 수백 명으로 의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의진의 구성원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 광재우의 의진 또한 다른 의진과 마찬가지로 지휘계급은 재지사족이었으며, 병사들은 양인, 농민, 노비층이 차지하였다. 또한 관군이라 할 수 있는 포장(捕將), 산졸(散卒) 등도 상당수가 참여하였고 산척(山尺), 공장(工匠), 노군(櫓軍)들도 전투요원으로 참여하였다.³⁰⁾

의령 의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진에 참여하는

29) 강문식, 「實錄을 통해 본 南冥學派의 義兵 活動」, 『남명학과 의병활동 조사·연구』(1), 南冥學研究院, 2009, pp.23~26.

30)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 연구』, 국학자료원, 2003, p.486.

동기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

의진을 이끈 곽재우는 “임진년 4월 왜란이 일어나 여러 고을이 와해되자 22일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고 왜적을 토벌할 뜻을 가묘에 통곡하며 고하였다.”³¹⁾라고 하여 사국지의(死國之義)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³²⁾ 하지만 의진의 지휘부를 포함한 상당수가 곽재우와는 다른 동기에 의해 의진에 참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보향리(自保鄉里)’라는 현실적인 동기였다.³³⁾ 곽재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을 의진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때는 근왕과 같은 명분보다는 “적은 이미 눈앞에 왔다. 우리 부모처자들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을에 싸울 수 있는 소년들이 수백 명은 될 것이니 마음을 한 가지로 먹고 정진(鼎津)에 둔치고 지키기만 한다면 가히 향곡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³⁴⁾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창의를 동기를 제시하게 된다. 이에 주로 동조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한 재지사족과 양인 집단이었다.

이 외에도 각자 현실적인 동기에 의해 의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는데, 노비 등 천민 집단과 전재민들은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군공을 세워 신분해방을 이루고자 의진에 참여

31) 壬辰夏四月 倭賊入寇 列邑瓦解 二十二日 以討賊報國 告家廟痛哭曰;『忘憂堂集』卷4, 附錄 傳.

32) ‘나라를 위해 죽는 의리’라는 뜻의 死國之義는 남명 조식 <神明畬圖> 중 ‘國君死社稷’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국군사사직’은 군주는 사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남명과 남명학과 문인들은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 박병련, 「忘憂堂郭再祐의 정치사회적 기반과 의병활동」, 『남명학과 의병활동 조사·연구』(I), 南冥學研究院, 2009, p.62.

33) 경상우도민들의 기질도 창의를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貴보다는 富를 仁보다는 義를 존중하고, 적극적이고, 직선적이며 현실적인 성향, 강한 기상과 豪武하는 습성이 최초의 창의로 이어지는데 기여하였다.

34) 賊已迫 吾父母妻子 將爲賊得矣 吾里中少年可戰者 不下數百 若齊心據鼎津以爲守 可保鄉曲 惡可束水而待死;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16, 宣祖朝 壬辰義兵 郭再祐

하였다.

관군 출신 구성원들 또한 초기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의진에 참여하게 된다. 임란 초기 제승방략의 체제의 실패로 많은 관군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곽재우는 이들 포장, 산줄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전력화하고³⁵⁾ 이들이 실제로 전투 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국의지 등 자발적 동기이외에도 관군 출신 장수들의 경우, 붕괴된 관군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의진에서 활동하는 것이 승패의 부담도 적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적기이기에 적극 참여하였고,³⁶⁾ 관병들은 군공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 취득을 위해 의진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즉 의령 의진은 이질적 집단이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집되었다. 즉 곽재우의 창 의 목적의 이익 바탕으로 한 명분이라면, 의령 의진의 피 지배층은 ‘자보향리’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익에 의해서 의진에 참여한 것이다.

곽재우 의령 의진이 다른 의진과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점이다. 선조의 소모명령에 의해 창 의한 경상우도의 김면, 정인홍의 의진, 호서의 조현,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의진 등 대다수 의진의 창 의가 주로 구국 또는 근왕이라는 큰 목적에 맞추어진 데 비해 의령 의진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각기 다른 창 의의 목적을 가지고 곽재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융합하고 결집하였다.

곽재우 의진이 다른 의진과 대별되는 점 중 다른 하나는 창 의시 대부분의 의진이 재지사족들을 중심으로 의진이 구성된 후 지역의 명망 있는 의병장을 추대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반해, 의령 의진은 곽재우라는 개인이 주동이 되어 의병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곽재우는

35) 이수진,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p.466.

36) 見大敵則鳥散 遇零賊則狙擊 敗不有罪 勝得大賞; 『宣祖實錄』, 卷32, 宣祖 25年 11월 丁巳.

관리 출신이지도 않았으며 그 지역 사족들로부터 외복할 위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재우의 포용력과 의령 의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³⁷⁾

이렇듯 지역적 지명도가 낮은 광재우가 거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심을 얻고 이를 묶어내는 인망과 더불어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과적인 용병을 할 줄 아는 능력도 한 몫을 하였다. 의령 의진의 초기 인적 구성을 보면 17명의 의병장 중 오운, 윤탁과 같은 전직 문관 관리를 비롯하여 사족들이 15명이지만, 심대승, 권란, 장문장, 박필 같은 인물들은 무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광재우는 이들을 성향에 맞는 직책을 주어 부대조직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광재우 특유의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도 이질적인 집단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³⁸⁾ 이러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광재우 의진이 연승을 거두게 되니 광재우 의진의 규모는 2,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나. 최초 倡義가 지니는 意義 분석

광재우의 의령 의진이 최초의 창의이기에 무조건 의미가 있다는 식의 연구는 이제 지양하여야 한다.³⁹⁾ 또한 호남지역은 왜적의

37) 의병장이 주동이 되어 창의한 의진은 광재우, 유종개, 홍계남, 우성전의 의진 정도이고, 의병장이 없는 상태에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의진을 구성한 지역은 흥원, 함흥, 영흥 지역이 있으나 광재우 의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전공을 쌓은 의진은 없었다.

38) 광재우 의진의 지휘부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오운 같은 이는 광재우의 남명학과 선배이기도 했는데, 오운이 광재우의 의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김성일의 조언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남명학과 특유의 현실인식과 진취성에서도 그 참여 연유를 찾을 수 있다. 군관 출신 또는 武才를 지닌 인물들은 광재우가 창 의로부터 포섭한 집단이었다. 실제 전투원인 양인 및 천민 계층은 광재우가 사재를 털어 衣食을 해결해주면서 고하를 따지지 않자 결속력이 강한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39) 최근 들어 비록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부산성 전투시 관군과 함께 守戍戰에 참여한 지역민들을 최초의 의병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초

침략이 없었기에 창의를 영남지역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과 경상좌도는 왜적의 주된 침입경로였기에 경상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의를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⁴⁰⁾ 또한 의령 의진 창의를 지니는 의의를 희석시킬 수 있기에 이 역시 경계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의령 의진이 최초 창의를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곽재우의 최초 창의를 지니는 의의를 우선 창의를 여건이 매우 불비한 상태에서 창의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찾고자 한다.

곽재우의 창 의 당시 지역민들의 비협조와 관군과의 갈등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여기서는 곽재우의 창의를 바라보는 선조(宣祖)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의령 의진은 선조의 소모 명령 이전에 창의한 유일한 의진이다. 이것은 자발성과 순수성을 가진 유일한 의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임란 초기 관군의 연패로 인해 선조는 초유사, 소모사, 안집사 등을 통해 관군을 대신할 민병을 모집하고자 했다.⁴¹⁾ 여기서 초유는 ‘초병유민(招兵諭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과 싸울 병력을 모집하는 역할과 함께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자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⁴²⁾ 여기서 ‘초병’과 ‘유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조의 입장에서는 ‘초병’의 목적은 근왕에

이기에 의미가 있다는 연구는 한계에 봉착한다.

40)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경상우도 수령의 避職律이 경상좌도보다 높았기에, 경상우도 역시 왜적의 침입에 대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경상좌도 창 의 시 왜군의 보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창의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막았고 이로 인해 경상좌도의 창의를 경상우도에 비해 늦었다는 시각 또한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논의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41) 선조는 의병이라는 지방 세력의 자의적 무장이 관군과 의병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하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조의 입장에서는 봉건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관군과 의병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허태구, 앞의 논문, pp.37~38.

42) 이장희, 앞의 책, 『임진왜란사 연구』, p.203.

있었다. 다음은 ‘유민’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선조의 입장에서 ‘유민’은 단순히 민심을 안심시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叛民이 생길 수 있는 토대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초병’과 ‘유민’은 봉건왕조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선조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의령 의진의 경우 관재우를 비롯한 일부 지휘부는 구국의지를 바탕으로 한 근왕을 실천하고자 하였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근왕보다는 자보향리를 위한 소구(掃寇)에 그 목적을 두었다. 실제 의령 의진의 활동 범위가 100여 리를 벗어나지를 앓았으며 의령 의진이 근왕병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이렇듯 의령 의진은 통제권 밖에서 활동하였기에 선조가 생각한 ‘유민’의 효과 역시 반감되었다. 즉 관재우와 선조는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던 것이다.

초기 관군의 패전으로 선조는 봉건체제를 유지할 근왕병이 필요했으며 관재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창의를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재우의 시의적절한 창의를 선조는 반기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반봉건적 행동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관재우의 창의를 매우 적절했지만 군인징발, 전투수행, 군기 및 군량미 확보 등의 행위는 국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채 진행하였기에 국가권력에 반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도 있다.⁴³⁾ 더욱이 관재우와 관군과의 대립, 정대성과 같이 의병장을 빙자한 토적들의 발호, 경상도를 역도들의 토굴로 보는 선조의 편견, 창의 초기 관재우를 통제하기 위해 제수한 유곡찰방, 형조정랑에 취임하지 않는 행적들은 관재우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선조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기간 내내 일본군의 침입에 의한 외란만큼 봉건체제를 위협하는 내란을 걱정하였기에 의병의 창의를

43)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p.338.

외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통치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선조의 사고는 극단적인 의명(依明)의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명나라의 참전이 봉건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하여 명이 조선에 들어온 후 의병의 관군화를 서둘러 진행하여 의병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였다.⁴⁴⁾

당시 광재우뿐 아니라 많은 의병장들이 창의 과정 간 관군과의 갈등을 겪지만⁴⁵⁾ 광재우는 소모 명령 이전에 창의하였다는 사실, 군량과 무기 획득에 있어서의 파격적인 행보 등으로 인해 선조 및 관의 견제가 더욱 심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광재우의 창의를 진행되었던 것이다.

광재우 창의를 두 번째 함의는 창의를 초기 민중들의 동요를 진정시켰으며 이들을 의진의 한 구성원으로 활약하도록 유도했다는

44) 선조는 김수와 광재우의 갈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김수에게 광재우의 인물됨을 묻기도 하였다. 의병의 관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병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어 결국 金德齡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선조의 정권유지에 대한 의지는 임진왜란 이후 공신책봉에 잘 드러난다. 선조는 임진왜란 간 공적을 세운 이를 대상으로 扈從功臣 86명, 宣武功臣 18명, 清難功臣 5명을 선정하는데, 선조는 실제 전투에서 공을 세운 선무공신보다는 자신을 호종하거나 명에 원군을 요청한 朝臣들의 공적을 더 인정하였으며,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5명을 청난공신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선무공신 중에서 의병장은 1명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광재우나 정문부 같은 뛰어난 전공을 가진 의병장들은 배제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임진왜란의 극복은 명나라의 원조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의병들의 활약을 축소함으로써 임란 초기 자신의 失政을 은폐하고 의병장 출신들의 중앙정계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이다. 둘째는 청난공신을 5명씩 선정함으로써, 정권유지가 외란 극복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선조의 봉건체제 유지의 적극적인 의지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선조는 임란초기 分朝로 인해 세자인 光海君의 입지가 커지자 이를 경계하였으며, 명나라에 의한 자신과 광해의 易置를 불안해하는 등 외란극복보다는 정권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45) 충청도의 趙憲 역시 관군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황해도의 李廷龜, 함경도의 鄭文學 또한 관군과의 갈등이 있었다. 정문부는 현직 관료로 창의했음에도 창의과정이 쉽지 않았다.

점이다.

임진왜란 초기 사족으로 대변되는 지배층의 대응양상과 피지배층의 대응양상은 완전히 달랐다. 지배층의 경우 적의 침입에 대항하던지 또는 피란을 택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⁴⁶⁾ 반면에 피지배층의 대응양상은 지배층에 비해 피동적이었으며 충격적이었다. 임란 초기 피지배층이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양상은 첫째는 왜적을 피해 피란민이 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피지배층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둘째는 드물기는 하지만 봉건체제에 반기를 드는 반민(叛民)이 되는 경우였다. 셋째 역시 드물기는 하지만 왜적의 세력에 빌붙는 부왜민(附倭民)이 되는 경우였다.

피지배층이 이렇듯 왜란의 침입에 대하여 반민 또는 부왜민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지배층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수집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배층의 경우 개전 소식을 듣고 향후 대책을 세우거나 피란을 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피지배층은 이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력으로 인해 피란을 가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기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반란과 왜적에 동조를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지배층에 대한 반감도 한 몫 했으리라 본다.

둘째, 명종 이후 계속된 실정과 지방관들의 폭정으로 반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반란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기아를 벗어나기 위한 토적의 성격이 강하였다.

셋째, 일본군의 집요한 선무공작에 의해 부왜민이 되는 경우이다. 기존 지배층에 대한 반감이 극에 이른 상태에서 관곡의 분급, 조세의 경감, 생활의 안전 보장 등을 제시한 일본군은 착시효과로 인해

46) ‘文官附賊者는 前 工曹參議 成世寧 뿐이다’라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을 통해 당시 사족들의 대응양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장희, 앞의 책, 『임진왜란사 연구』, p.60.

대체된 지배세력으로 떠올랐다. 일본군이 선무공작을 펼친 이유는 장기전을 대비하여 점령지역을 병참기지화 하려는 의도에서였다.⁴⁷⁾

『서경』 채중지명편(蔡仲之命篇)에 나오는 ‘민심무상(民心無常)’이라는 말처럼 임란 초기의 백성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또한 피지배층은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구국의식이 있을 리 없었으며, 민족의식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기이기에 피지배층의 행동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⁴⁸⁾

이러한 시기에 광재우의 창의를 피지배층의 의식전환에 있어서 지남이 되었다. 광재우는 창 의 당시 양인과 천민까지 아우르는 의진을 편성함으로써 피지배층이 왜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일조하였다.⁴⁹⁾ 즉 피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반봉건적 의식을 반침략적 의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하동육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⁵⁰⁾ 또한 광재우는 임란 초기 패전의 원인을 ‘왜적이 침입함에 무부건장(武夫健將)들이 망풍궤주(望風潰走)한 것은 병혁(兵革)이 견리(堅利)

47) 일본은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선무공작으로 조선백성을 위무, 농사를 통해 군량을 확보하려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농민이 군역을 면 정군 또는 보인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농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즉 조선 농민들은 관군이 나 의병으로 참여하여 農時를 잃어 흉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군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48) 당시 피지배층은 관군장이 지휘를 하면, 관군이 되었으며, 도적의 괴수가 지휘하면 반민이 되었으며, 왜장이 지휘하면 부왜민이 되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실제로 호남의병장인 유팽로는 叛民을 설득하여 의병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49) ‘경상우도 의병장 김면은 경상좌도의 창 의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 유생들로 부대가 편성되었으므로 이것이야 말로 참된 의병이라고 하였다.’라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이 당시 광재우를 제외한 다른 의진 지휘부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李肯翺, 『練藜室記述』, 卷16, 宣祖朝 嶺南義兵 참조.

50) 1. 當此之時 少回民志 知有我國者 南方義兵之功也;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壬辰 12월.

2. 嶺南 郭再祐 金沔 湖南 金千鑑 高敬命 湖西 趙憲等 倡起義兵 傳檄遠近 自是民始有向國之心; 李睟光, 『芝峯類說』 卷 3, 「君道部」賞功 - 이상희, 앞의 책, 『임진왜란사 연구』, pp.190~191. 재인용.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성지(城池)가 높고 깊지 않아서가 아니며 단지 인심의 이산(離散)으로 말미암아 토붕지환(土崩之患)이 있게 된 것이다'⁵¹⁾ 라고 정확히 진단하여 민심의 이산을 막고자 공위겸(孔僞謙)과 같은 부왜자의 처단에 특히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광재우의 행동들은 임란 초기 피지배층의 동요를 막아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의진에 합류시킴으로써 경상우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경상우도를 지켜냄으로써 기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 다른 반민과 부왜민의 양산을 막는 계기가 되는 등 선순환이 되었다.

광재우의 창의를 지니는 또 하나의 의의는 다른 지역의 창의를 촉발한데서 찾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광재우는 선조의 소모 명령 이전에 유일하게 창의를하였으며 창의 시기 또한 다른 지역의 창의보다 많이 앞섰다. 특히 광재우의 의진이 정암진(鼎巖津)에서 거둔 육전 최초의 승전보는 다른 의진들의 창의를 촉발하였다.

경상좌도의 의병장인 검간(黔澗) 조정(趙靖)의 『임란일기(壬亂日記)』 기록을 살펴보면, 광재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25년 8월 25일의 '용병함이 신과 같다(用兵頗神)', 28일의 '곽공은 용병술이 자못 신과 같아 도적 무리들의 간담을 떨게 했다고들 한다. (郭公用兵頗神 賊徒膽慄云)', 10월 23일 '꿈속에서 광재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夢拜京居從祖 且與郭再祐接談)'의 내용을 통해 광재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이 밖에도 이어빈은 7월 이후에 광재우의 창의를 듣고서야 경상좌도가 창의를 할 수 있었다는 기록을 『용사록』에 남기고 있다.⁵³⁾ 실제 경상좌도의 창의를 7월

51) 倭賊之來 武夫建將 莫不望 風奔潰 非兵革之 不堅利也 非城池之不高深也 只由於人心離散 而有土崩之患也 ; 趙慶男, 『亂中雜錄』 第1, 宣祖 壬辰 6월 19日.

52) 박병권, 앞의 논문, pp.45~46.

53) 정해은, 앞의 논문,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 p.140.

이후부터 이루어졌으며 9월 이후가 되어서야 전국에 걸쳐 창 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광재우를 비롯한 경상우도의 창 의에 자극을 받은 바가 크다. 여기에는 각 지역 사람들의 경쟁의식 또한 작용하였다. 광재우의 창 의로부터 촉발된 전국적인 규모의 창 의는 결과적으로 선조가 명으로 내부(內附)하는 것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3.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와 광재우의 전술

본 장에서는 의령 창 의가 전란사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끼쳤는지와 당시 광재우의 전술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가.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

임진왜란의 승리의 요인을 선행 연구자들은 명군의 개입, 이순신의 해전에서의 승리, 의병 활동에서 찾았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전쟁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는 일본군이 직면한 조선에서의 두 가지 어려움은 의병과 조선수군의 활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⁵⁴⁾ 여기서 명나라 군대의 개입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명나라 군대의 개입 이후 두 번의 전투를 제외하고는 일본군이 대부분 승리하였으며, 명나라와 일본은 전쟁 중 상당기간 동안 강화를 진행 중인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토쿠구미 이이치로(徳富猪一郎)는 『근세일본국민사』에서 조선

54) 루이스 프로이스, 정성화·양윤선 옮김, 『임진난의 기록(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살림, 2008, p.85.

침략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조선의 의병 봉기’, ‘조선 수군의 우세’, ‘명군의 지원’이라 열거하였다. 특히 개전 초부터 조선 각지 의병들이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일본군의 작전을 교란시키고 병참선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의 의병을 ‘폭민(暴民)’이라고 표현하였다.⁵⁵⁾

본 절에서는 당시 일본군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의령 창의를 지니고 있는 전략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군은 수륙병진을 통해 막강한 육군이 부산으로 상륙하여 북상하고, 수군이 증원군과 보급물자를 가지고 서해를 통해 북상하면서 육군을 지원하는 전략을 계획하였다. 일본 수군이 서해로 진입하게 되면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경기, 강원도 일대가 대동강, 청천강을 통해 평안도 일대가 압록강을 통해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가 위협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았다.⁵⁶⁾ 이에 따라 육군은 낙동강 수로를 장악하여 후방으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하며, 아울러 북상한 아군의 배후를 경계하려 하였다.

이렇듯 일본군의 침략 전략을 살펴보면 광재우가 방어한 의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령지역은 낙동강이 분화되는 지역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기강(岐江)⁵⁷⁾이 의령을 거쳐 진주 남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즉 의령은 진주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일본군의 입장에서 의령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호남 방면으로 서진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의령 의진의 주요 활동에 있어 중심이 된 곳은 기강이었고, 가장

55) 조원래,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2,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290.

56) 한명기, 「壬辰亂 七周甲의 역사적 의미」,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1,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40.

57) 岐江의 위치에 관해서는 『邑誌』에서 ‘의령현 동쪽 사십리 낙동강과 남강의 양수가 교합하는 곳’라고 밝히고 있다. 또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東國輿地勝覽』등 지리지의 영산현조에서는 모두 ‘岐音江’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전투는 정암진 전투였다. 기강은 곽재우의 첫 전장임과 동시에 왜적의 전방 전선 활동은 둔화시키는 작전이 크게 성공한 곳이기도 하였다. 곽재우는 자신의 세거지인 세간리를 중심으로 익숙한 지형지물들을 활용하여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이로 『용사일기』, 김성일 『학봉전집』, 조정남 『난중잡록』에서 상세히 기술될 정도로 임진왜란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투이다.



〈그림 2〉 의령 지역의 전적지 및 그 일대의 위성사진(주: 검은 선은 강줄기를 나타냄)

곽재우는 정암진 전투를 통해 의령지역을 지켜내고 이후 현풍, 영산 등지를 확보하였다. 이 일대를 지켜냄으로써 일본군의 전방으로 가는 통로는 중로인 밀양·대구·인동·선산을 연하는 길밖에 없게 되었다. 현풍·창녕·영산 등지에 적이 웅거할 수 없다는 것은 낙동강을 통한 왕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적이 낙동강을 통해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기에 의령 의병의

활약은 대단한 것이었다.⁵⁸⁾ 이로 인해 일본군이 진주를 함락시키
고자 하는 의도 역시 꺾이게 된다. 지리적으로 진주와 의령은 상보
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진주는 오래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
지였기 때문에 관군은 진주성을 바탕으로 수성전을 펼치면서 후방
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진주성을 바탕으로 한 관군의 활동은 수세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병참선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없었다. 관재
우는 의령을 지나는 적의 병참선을 효과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관군
의 수성전을 도와주었다. 이처럼 의령 방어는 단순한 향촌의 방어
활동을 넘어서서 일본군의 초기 전략에 큰 혼란을 주었다. 즉 의령
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당시 판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면적으로 의령 의진의 전략적 효과는 자신의 향촌에 대한 방어
와 진주성으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의 서진을 늦추는 정도의 의미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속에는 많은 전략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의령 의진의 정암진 전투의 승리는 아군의 입장에서는 일
본군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관
군들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의 창
의를 촉발하였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정규군의 작전범위에서 조선
의병의 활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의병의 승리는 일본군의 예
봉을 꺾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의령 의진은 일본군의 서진을 막아 호남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호남의 곡창
지대를 지켜냄으로써 조선군이 반격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
고, 적군은 반대로 중요한 병참기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당
시 호남지역의 관군은 선조를 근왕할 목적으로 한양으로 이동 간
궐멸되었기에 사실 호남지역은 일본군의 침입을 막아낼 여력이 전
혀 없었는데 의령 의진이 일본군의 서진을 막아냈다는 것은 이러한

58)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 앞의 책, pp.237~253.

사실로 인해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호남에 주둔한 조선 수군 기지를 육지로부터 접근하는 일본군으로부터 보호하였기에 전라좌수영을 중심으로 조선수군이 활약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호남이 지켜짐으로써 일본군의 침입을 관망하던 명군의 개입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⁵⁹⁾

셋째, 의령 의진은 낙동강 수로를 포함한 일본군의 내륙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육로를 통한 보급과 함께 선무공작을 통한 군량미의 확보, 해상보급로를 통한 보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중 선무공작에 의한 군량미의 확보와 해상보급로를 통한 보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유일한 군량미의 확보 방법은 내륙 보급로를 통한 수송밖에 없었다. 임란 초기 일본군의 연승으로 병참선이 과다하게 확장되었고 의령 의진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러한 적의 약점을 공략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군은 보급로의 확보를 위해 전투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⁶⁰⁾ 이뿐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입국을 위한 숙소 공사와 도로정비로 인해 일본군의 전투력은 더욱 분산되는데, 각처의

59) 명나라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중원진출의 전제로 인식하였기에, 일본군의 진출 경로를 수로, 육로 둘 다 의식하였는데, 명나라는 해상방어의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수로로 명나라 수도에 진출할 수 있는 호남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호남이 지켜지자 戰場을 조선으로 한정하기 위해 명군을 서둘러 파견하였다.; 최소자,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一)」,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326.

60) 일본군은 후방 병참선 확보에만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하였고, 이동 시에도 최소 300~500명 단위로 이동하는 등 병참선의 확대에 의한 전력의 분산이 심각하였다. 특히 7번째 毛利輝元의 부대가 경상도를 담당하였는데, 이 부대의 주요임무는 낙동강 水路를 장악,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경상좌도에 1만 1천 명, 경상우도에는 2만 8천 5백 명이 보급로를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일본군의 침략 당시 고려 대상에 없었던 의병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2,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26.

의병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적 전투병 1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주된 사망원인이 전투보다는 기아와 추위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병들에 의한 보급로 차단은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듯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도 보급로 차단은 적의 사기저하와 적의 분열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군량미 보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도요토미는 호남진출을 강하게 지시하게 되고, 조선에 있던 왜장들은 이에 대한 불가론을 개진하는데, 도요토미는 이에 대하여 이들의 녹(祿)과 저택들을 몰수하는 등 지도층 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⁶¹⁾ 또한 조선에 원정을 간 병사들이 기아와 추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였는데, 생존한 병사뿐만 아니라 죽은 시신마저도 본토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도요토미가 지시를 내리자 일본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진다.⁶²⁾ 이렇듯 보급로의 미확보로 인한 군량미의 부족은 일본 군내 지도층의 분열과 병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항왜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의령 의진의 창의를 지니는 전략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광재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의령 지역의 鄕保는 경상우도 지역의 보존 및 일본군으로부터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던 호남지역으로의 진출을 저지하는 효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이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적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나. 전투에 활용된 광재우의 전술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군과 일본군의 장단점을 가장 잘 파악한

61) 루이스 프로이스, 앞의 책, pp.137~138.

62) 위의 책, pp.63~64.

인물인 류성룡은 “우리나라는 자고로 수성전에 장점을 보이고 야전에 취약점이 있다.”거나 “왜병은 철환(鳥銃), 용검(用劍), 돌진의 세 가지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장기라곤 궁시(弓矢)밖에 없다”⁶³⁾라고 언급하면서 피아의 장단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일본군의 세 가지 장기를 광재우가 어떠한 방법으로 파해하였는지 확인하고 광재우가 전투에서 활용한 전술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먼저 일본군의 세 가지 장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일본군이 지닌 조총은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신무기에 해당하였으나 그 제원⁶⁴⁾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기에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뺨을 대고 방아쇠를 당겨 사격하는 방법을 통해 명중률을 높였으며, 3개의 조로 나누어 사격하는 연사로 사격의 속도 또한 향상시키는 등 실전을 통해 조총의 활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있었다. 또한 장병기인 조총과 함께 장검, 창과 같은 단병기를 효과적으로 혼합 운용함으로써⁶⁵⁾ 기마전술과 궁시라는 장병기로 맞선 조선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

조총의 위력이 특히 발휘된 전투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신립이 대립한 탄금대 전투에서이다. 당시 조선의 최고 명장이었던

63) 1. 我國自古 長於守城 而短於野戰; 『懲毖錄』, 卷12, 請修葺山城以爲戰守之計 且慎擇守令以收人心狀, 癸巳 6月 13日

2. 我國與倭交戰 較其長短 倭奴之長拔三 鐵丸也 用劍也 突進也 我國之長拔일 弓矢而已; 『懲毖錄』, 卷8, 條陳 討賊機務狀, 壬辰 10월.

64) 조총은 총신이 1m 전후로 총열이 6~8角(15~18mm)으로 되어 있으며, 유효 사정거리 100~200m, 최대 사정거리 500m 이상이다. 실제명중이 정확한 거리 50m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1분에 4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이왕무, 「임진왜란기 조총의 전래와 제조」,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511.

65) 일본군은 旗幟, 鳥銃兵, 短兵의 3隊로 나누어 1隊의 旗幟를 든 병사가 포위하는 형세를 이루면 2隊의 조총병이 일제 사격을 통해 조선군을 와해시킨 후, 3隊의 槍劍을 가진 短兵이 추격하는 전술을 활용하였다. ; 박재광, 「임진왜란기 朝·明·日 삼국의 무기체계와 교류」,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534.

신립은 자신의 장기인 기마전술을 과신하였고 조충의 명중률을 과소평가 하였기에 분사하였다. 소서행장의 부대가 입었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일본군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통해 기마전법을 이겨낼 수 있는 조충의 사격전법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에 신립의 부대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

조충의 약점⁶⁶⁾이 없진 않았지만 임란 초기 원거리에서 조충 사격 후 근거리전투에서 창과 칼을 활용한 적극적 백병전을 시도하는 일본군을 처음 대적하는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 조선은 임진왜란 내내 조충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명에서 들어온 ‘기효신서’와 남병(南兵)의 활약으로 인해 조충의 파해법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여전히 조충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도 함께 내재되어 있었다.⁶⁷⁾

66) 조충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폭발 위험이 있어 취급이 쉽지 않았다. 둘째, 발사된 탄환의 탄도가 안정적이지 못했다. 셋째, 총에 연환을 장전하는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넷째,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면 화약의 불이 꺼지는 등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 다섯째, 조충을 사용하기 위해 화약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병참능력이 요구되었다.; 이왕무, 앞의 논문, p.502.

67) 1. 李薦은 生牛皮로 防牌를 만들면 鐵丸을 피할 수 있다; 『宣祖實錄』 卷26, 宣祖 25年 5月 甲子.
 2. 南將 全世楨은 “왜적의 총탄은 단지 100여 보밖에 나가지 못하고 중국의 탄환은 200보까지 나가고, 大將軍箭은 6里까지 나갈 수 있다. 遠近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까닭이 없다.”; 『宣祖實錄』 卷33, 宣祖 25年 12月 乙亥.
 3. 적이 조충을 쏠 때 火箭 1~2천을 쏘아 연기가 적진에서 흩어지면 적이 놀라 어지러워질 것이니 이 때에 많은 사람이 돌입하여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연기가 걷히고 적이 돌입해오면 질 것이다.; 『宣祖實錄』 卷45, 宣祖 26年 11月 壬午.
 4. 왜총의 소리는 사방에서 일시에 발사하더라도 소리마다 따로 들린다. 명군의 화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산과 돌이 진동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명군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宣祖實錄』 卷33, 宣祖 25年 2月 乙巳.
 5. 나는 세도 맞출 수 있기에 조충이라고 한다.; 『宣祖實錄』 卷 71, 宣祖 29年 1月 丁酉.

다음은 일본군의 다른 장기인 용검과 돌진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일본군에 조총이 보급되기 이전에 일본군의 주무기는 창과 장검이었다. 특히 전국시대 동안 전공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머리베기(首級り)’관습이 있었기에 백병전이 적극적으로 행하여졌다.⁶⁸⁾ 임진왜란 간 용검과 돌진은 전국시대의 ‘머리베기’ 관습이 그대로 이어진 전술이라 하겠다. 즉 조총사격에 의해 조선군의 전열이 무너지면, 돌진과 함께 백병전을 실시하여 장검을 사용하는 것이 임진왜란 동안의 일본군의 일반적인 전술이었다. 실제 전국시대 당시 일본군은 공격 시 창을 주로 사용하고, 칼은 방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임진왜란 시에는 조총사격으로 인해 조선군의 전열이 초기에 괴멸되어 패주하자 공격용으로 사용하던 무거운 창보다는 방어용으로 활용하던 가벼운 칼만 휴대한 채 추격적을 벌여 조선군의 수급을 베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러다 보니 조선군의 입장에서선 일본군의 창보다는 칼이 더 무서운 무기로 부상하게 되었다.⁶⁹⁾

곽재우는 접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일본군의 3대 장기를 패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곽재우는 유격전을 전개할 때 적의 조총사정거리 밖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등 적의 장검과 조총에 대한

6. 조총은 명중률뿐 아니라 조선의 총포에 비해 2~3배나 빠른 우수한 무기였다.; 『星湖僊說』4, 萬物門, 陸若漢.

7. 조총은 궁시보다 5배나 성능이 뛰어났다.; 『宣祖實錄』卷68, 宣祖 28年 10月 丁未.

68) 久保田正志, 「임진란 시기 동양 삼국의 무기체계」,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1,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424.

69) 柳成龍 외에도 鄭琢, 李象靖 등도 일본군의 長劍(刀)의 위력을 기술하였다. 명군의 입장에서든 척계광의 『기효신서』에도 일본군의 뛰어난 창과 칼솜씨를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양성 전투와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의 장검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등 조선군 못지않게 장검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p.559~561.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파해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왜적이 믿는 것은 단지 장검과 철향뿐이다. 화약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저렇게 쏘아대는데 철향의 보급이 오지 않으면 적의 정실은 이미 가히 알 수 있다. 장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어 걸음 앞에서 맞붙어야 휘두를 수 있는 것이라면 강궁경노는 어찌 반드시 두어 걸음을 기다려서 쏘야 하겠는가? 이러한 이치로 헤아려보면 우리 군사 한 명이 저들 백 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군사 백 명이면 저들 1천 명은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⁷⁰⁾

곽재우는 강과 산세 등 지리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유격전을 펼쳐 적의 강점인 조총사격이나 용검을 활용한 여지를 주지 않았다. 더욱이 창 의 초기 산줄을 적극적으로 유입함으로써 궁시에 능한 병사들이 많았다는 점도 적의 조총, 용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였다.

곽재우는 적의 장기 중 하나인 돌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단기로 직접 왜진에 돌진함으로써 ‘왜군의 돌진’을 압도하여 오히려 적을 위축하게 만들었다.⁷¹⁾ 이렇듯 무모한 전술이 일본군에 통하였던 것은 곽재우가 기존에 일본군에 심어준 이미지에 의한 위압감 때문이었다. 곽재우는 연승을 하는 동안 피아에게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홍의(紅衣)는 아군에게는 의진을 통솔하는 권위의 상징물로, 민중에게 있어서는 역전을 위해 하늘의 힘을 빌리는 천장(天將)의 물품으로 각인되었다.⁷²⁾ 반대로 적군에게

70) 倭之所恃者 只長劍與鐵丸而已 火藥必盡 故常常放砲 而鐵丸不來 賊之情實 已可知也 長劍則 必相接數步之內然後 方可用也 則強弓勁弩 何必待數步之內而射也 以此料之 則以我軍之一 當彼之百也 以我軍之百 當彼之千也; 吳希文, 鎖尾錄, 卷1, 慶尙道儒生 郭再祐書: 이장희, 앞의 책, 『郭再祐研究』, p.165.

71) 이장희, 위의 책, p.156.

72) 민중들 사이에 여성의 月經血로 만든 紅衣는 적의 총알이 뚫지 못한다는 설화, 곽재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설화 등이 전파된 것으로 보아 곽재우의 天將 이미지화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불리한 전세를 역전

있어서는 홍의는 광재우의 정과 기를 혼합한 전술 및 예측할 수 없는 의병술(疑兵術) 등으로 이미지화되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⁷³⁾ 즉 왜진으로의 돌진은 광재우이기에 운용할 수 있는 전술 중 하나였고 이를 통해 적의 3대 장기 중 하나인 돌진을 파해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중 강화기간인 1594년 12월 류성룡은 일본군과의 전투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그 대책인 군국기무(軍國機務) 10조를 작성한다.⁷⁴⁾ 기무 10조 중 수탄(水灘)은 얇은 여울을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란 초기 일본군이 복진할 때, 산을 넘는 것을 쉽게 여기고 물을 건너는 것은 어렵게 여겨 물이 말의 배까지만 차도 경솔히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만든 계책으로 일본군이 도강 또는 도섭하지 못하도록 차안에서 피안의 적을 방어하는 것이다. 즉 적과 접전 시 힘의 우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적을 막아내는 것이다.

류성룡은 수탄의 효용성을 “한강, 임진강, 낙동강, 백마강 등의 건널 수 있을 만한 얇은 여울에 능철(菱鐵), 거시(拒柴)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는 여울 어귀에 계단식으로 돌담을 쌓아 몸을 숨기고서 발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인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⁷⁵⁾ 라고 정확한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진과 민중들에게 심어주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 역시 태평양 전쟁시 神風이라는 이름의 부대 창설과 回天, 震洋이라는 무기를 제작함으로써 하늘의 힘을 빌어 전세를 역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3) 再祐不問賊之多寡 直前無畏戰 時着紅綃帖裏 具堂上笠飾 自稱天降紅衣大將軍 馳馬掠陣 隱見無常 賊莫測其端 然後盤馬回旋 擊鼓徐行 賊不知其多少 不敢近逼 連設候望 賊到百里之外 陣中先知 故常逸而不勞 於賊所望山上 令人持五枝炬 終夜舉之 喊聲相應 有若千萬 賊徒望輒遁去 又選精銳 潛伏要害處 賊至輒射殺之 賊亦紅衣將軍 不敢登岸; 李肯翊, 『練藜室記述』卷16, 宣祖朝 壬辰義兵 郭再祐

74) 機務十條는 1. 斥候, 2. 長短, 3. 束伍, 4. 命令嚴守, 5. 重壕, 6. 設柵, 7. 守灘, 8. 守成, 9. 迭射, 10. 統論形勢로 구성되어 있다.

75) 如於漢江 臨津洛東白馬等江 其淺灘可渡處 或設菱鐵 拒柴 灘口砌築石牆 以爲隱身發射之所 則不廣費人力 而猶可守之; 『宣祖實錄』卷 40, 宣祖 26年 7월 乙卯.

류성룡이 수탄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곽재우가 정암진 일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방어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곽재우는 낙동강 일대에 목장(木杖)을 설치하여 적의 보급로를 막았으며, 복병을 대기시켰다가 적선을 포획 또는 격침시켰다.

목장은 의령 지방의 각처 산야에서 많이 생장해 있었던 상수리나무 등을 베어다가 강안 아래 깊은 물속에 말뚝을 박아 놓거나 나무 막대를 가로질러 걸쳐놓은 장치였다. 이것을 여늬나무, 아근나무, 박진나무 등지에 설치해 놓고, 적선을 격침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전술은 현풍에서 영산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며 이로써 경상우도가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류성룡은 곽재우가 실제 낙동강 지역을 방어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하여 수탄이라는 전술적 개념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곽재우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복초를 멀리까지 보낸다든지 청음초를 활용하여 경계에 치중하거나(斥候), 피아의 강약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비대칭적 전력인 유격병을 활용하는 전술(長短), 의진의 기강을 확립(命令嚴守), 형세를 총체적으로 통괄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험준한 요충지를 택해 진을 치는 전술(統論形勢) 등은 실전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전술 등은 수탄과 함께 류성룡이 기무 10조에 차용하여 기술할 정도로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았다.

4. 결론

임진왜란 연구사에서 있어서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는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나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그 중 의병장 개인에 대한 연구 성과에 있어서 광재우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독보적이다. 본고는 기존의 광재우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이 혹시나 간과한 부분은 없을까하는 우려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학들의 연구 성과가 매우 정치하기에 이를 넘어서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령 창의를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임란 초기의 조선의 연속적인 패배를 기존 연구에서는 군정의 문란, 국방 태세의 해이 등 내부 요인에서 찾았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인 일본의 국방력 같은 외부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의병장으로서의 광재우는 현실적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중도를 지키는 장수임과 그의 장재는 선천적이 재질과 함께 스승, 부친, 장인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인해 전란 시 뛰어난 지휘관, 전략가로 발현되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령 의진은 선조의 소모명령에 의해 창의한 다른 의진과는 달리 근왕이라는 목표보다는 각기 다른 창의를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광재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그 결집력은 더 뛰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의령 창위가 최초 창위로서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재우의 의령 창위는 단순히 최초의 창위라는 의미 이상으로, 모든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창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의령 창위가 초기 민중들의 동요를 진정시킨 점과 민중들의 반봉건적인 성격을 반외세적 성격으로 전환시켰으며, 다른 지역의 창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의령 창위가 지닌 전략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의령 창위는 광재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경상우도 지역의 보존 및 일본군의 호남지역으로의 진출을 저지하는 효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관군의 정비, 조선 수군의 보호, 명군 원병의 계기, 일본군 지도층의 분열, 일본군의 사기 저하와 이에 따른 抗倭의 증가 등 임진왜란 전체 전황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넷째, 곽재우가 일본군의 3대 장기인 조총, 용검, 돌진을 파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암진 전투 등 강안전투의 경험 이후에 류성룡의 군국기무 10조의 ‘수탄’의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들어 임진왜란 연구사 연구 중 의병에 대한 연구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 성과들의 연구업적이 매우 뛰어나 더 이상 새로운 논제를 찾기 힘든 탓도 있겠으나, 선양차원에서의 연구나 아니면 반대로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통한 전공위주의 연구가 연구자들을 피로하게 한 것도 한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 대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원고투고일: 2015.6.28,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임진왜란(壬辰倭亂) 곽재우(郭再祐), 의령(宜寧), 의병(義兵), 의병장(義兵將), 의진(義陣), 창의(倡義), 전략(戰略), 전술(戰術), 수탄(守灘)

<ABSTRACT>

The implication of general of the Righteous Armies,
Kwak Jae-Woo's Raising Righteous Army in *Ui-Ryeong*

Choi Jae-ho

Kwak Jae-Woo(郭再祐) was the first person to raise Righteous Army during *Im-Jin-Wae-Ran*(壬辰倭亂), and in this paper I intend to analyze and research into the significance and background of his raising righteous army in *Ui-Ryeong*(宜寧).

Firstly, I have given insight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aising in *Ui-Ryeong*. as discussed in previous researches, the reasons why the continuous defeats of *Cho-Seon* in the early stages of *Im-Jin-Wae-Ran* were due to disorder in military administration and slackened discipline in national defence; however this paper puts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looking into the exterior influential factor of the Japan, the world's strongest military powerhouse at that time. In addition, I have discussed how his competence as a commander of the Righteous Army was possible to be formed, since *Kwak* was also a general who has outstanding realistic judgment and a sense of neutrality; and also the solidarity of the *Ui-Ryeong* troops.

Secondly, I argued that *Kwak's* raising of the Righteous Army in *Ui-Ryeong* contains more significance than just being the first, since he was able to raise the Army albeit the deficient conditions, especially centered around his relationship with *Seon-Jo*(宣祖). Moreover, I have examined the fact that *Kwak's* raising gave peace to the unstable public at that time, and served as a catalyst for other raising of righteous armies to occur.

Thirdly, I have confirmed that the strategic effects of the raising army in *Ui-Ryeong* is not just limited to local defence of

Kyeong-Sang-Woo-Do(慶尙右道) beyond that it provides a turning point to the Choseon government to protect *Ho-Nam*(湖南) and the naval forces bases, restrain the exile of *Seon-Jo* and lead the participation of *Myung*(明) troops into war. In the thesis I have examined the defense strategies that *Kwak* adopted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troops three major skills, *bird-rifle*(鳥銃), sword-wielding, charging at enemies and defense strategies adopted when positioned in a river.

Among recent researches on the history of *Im-Jin-Wae-Ran* Righteous Army are at standstill. I proudly present this paper, as I wish this paper serves as a catalyst of more academic endeavors on the *Im-Jin-Wae-Ran Righteous Army*.

Key Words : Im-Jin-Wae-Ran(壬辰倭亂), Kwak Jae-Woo(郭再祐),
Ui-Ryeong(宜寧), Righteous Army(義兵), Commander of the
Righteous Army(義兵將), Righteous Army troops(義陣),
Raising of the Righteous Army(倡義), Strategy(戰略),
Tactic(戰術), Defense strategies adopted when positioned in
a river(守灘)

丙子胡亂 金化 栢田戰鬪 考察*

권 순 진**

1. 머리말
2. 金化 栢田 戰鬪址의 位置
3. 金化 栢田 戰鬪의 戰鬪樣相과 意義
4. 맺음말

1. 머리말

丙子胡亂은 조선과 후금 사이 ‘兄弟의 盟約’으로 끝난 丁卯胡亂(1627) 이후 세력이 강성해지며 국호를 바꾼 청나라가 1636년(인조14) 12월 8일 13만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하여 1637년(인조15) 1월 30일 군신관계인 ‘丁丑和約’을 체결하며 종식된 전쟁이다.¹⁾

開戰 初부터 다수의 기병을 보유한 청군의 빠른 진격 속도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조선은 결국 남한산성으로 入保하여 농성하며

* 이 글은 2012년 병자호란 김화 백전대첩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丙子胡亂史』, 1986.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게 된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강화도의 함락, 主和主戰派의 대립, 장기전으로 인한 군량부족 등으로 인해 결국 三田渡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국가위란의 기간 중에 위기에 처한 宗廟社稷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도에서 모집된 勤王軍이 남한산성으로 모여들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평안도 관찰사 洪命壽와 평안도 병마절도사 柳琳에 의해 치러진 철원 “金化 栢田戰鬪”²⁾는 병자호란의 중반부인 1637년 1월 28일 남한산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안도지역 근왕군이 남하하면서 김화의 백전일원에서 벌인 대규모 전투로 龍仁 光教山戰鬪³⁾와 함께 병자호란 2대 승전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전투가 병자호란 당시 승전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전투지역의 위치비정과 전투양상을 파악하는데 다소 제한적이었다.⁴⁾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성과도 대부분 기존에 연구된 백전전투지의 위치를 현재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탐동/탐곡으로 비정한 내용을 답습하여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⁵⁾ 백전전투지의 정확한 위치와

2) 이 전투에 대해서는 ‘백동’전투/‘탐동’전투 또는 ‘金化戰鬪’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김화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김화지구전투’와 동일 명칭이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고자 본고에서는 ‘김화 백전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기존에 보고된 백동/탐동전투지는 圖上에 표시된 지명을 가지고 위치를 비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실제 戰場과는 차이가 있다.

3) 1637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라병사 김준룡이 광교산에서 청나라 장수 양굴리[楊古利]가 이끄는 청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丙子胡亂史』, 1986) 참조.

4) 전투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장인 관계로 곳곳에 미확인 지뢰지대와 불발탄 등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또한 민통선 안쪽에 위치하고 일부는 비무장지대내에 속해 있다.

5) 지금까지의 김화 백전전투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丙子胡亂史』, 198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海東名將傳』, 1987.

柳承宙,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史叢』 55, 2002.

柳承宙, 『忠壯公 柳琳將軍 實錄』, 한돌출판사, 2006.

전투양상에 대한 연구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과 유재춘⁶⁾을 제외하면 아직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 고증, 둘째, 어떻게 조선군이 당대 최고의 기병인 청군을 맞아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당시의 전투양상을 軍事史的 觀點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연구된 자료와 문헌기록 및 금석문 자료를 심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에 등장하는 ‘백전’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헌기록과 전투지역의 실제 일치여부를 파악하였다. 특히 실제 현장에 대한 지표조사는 당시 전투전적지 및 전투양상 파악에 제한이 많은 금석문자료와 문헌기록의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 이 전투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향후 이 전투전적지에 대한 戰蹟地化 작업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金化 栢田 戰鬪址의 位置

가. 김화 백전의 지리적 위치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해당되며,

柳根永, 『忠壯公 柳琳將軍 評傳-병자호란의 잊혀진 영웅-』, 한들출판사, 2006.

6) 육군사관학교와 유재춘은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백전전투지를 후술할 김화현의 남쪽일원으로 각각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백전전투지의 대략적인 위치비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陸軍士官學校・鐵原郡, 『鐵原 城山城 - 地表調査報告書-』, 2000; 柳在春, 「丙子胡亂時 金化戰鬪와 戰骨塚考」, 『史學研究』 제63집, 2001).

수리좌표로 북위 38° 17' 29", 동경 127° 27' 06" 일원에 해당된다. 철원군에 위치한 김화⁷⁾는 고구려의 夫如郡에 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곳에서 고구려 관련 유적이 확인된 바 없다.⁸⁾ 이후 6세기 중반 신라가 이곳을 경유하여 함경도까지 진출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김화현의 북쪽에 자리한 성산성이며,⁹⁾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 漢州의 富平郡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1018년(현종 9)에 김화로 개칭되면서 朔方道에 편입되어 東州에 속해 있었고, 1143년(인종 21)에 다시 金化縣이 되었다. 김화는 경기북부는 물론 회양·안변, 화천·춘천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인 관계로 1217년(고종4) 거란 침입때 격전지가 되었으며, 1253년 몽고군의 제4차 침입 때에는 그들에게 함락되기도 하였다. 壬辰倭亂時에는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근·현대 들어서 김화 주변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이곳의 전략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즉, 43번 국도와 47번 국도가 김화를 관통하며, 56번 국도는 화천을 거쳐 춘천, 홍천 방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5번 국도는 김화를 거쳐 평강·개성, 서북 쪽으로는 평강에서 철령을 넘어 안변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국전쟁 당시는 철의 삼각지대에 포함된 전략적 요충지였고, 북동쪽으로는 유명한 ‘저격능선전투’와

7) 현재의 김화읍이 아닌 일제 강점기까지의 김화 즉, 구 김화현을 가리킨다.

8) 다만 이곳 철원일원의 지리적 위치를 통해 볼 때 당시 고구려 세력의 남하루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많다. 이러한 고고학적 물질자료로는 춘천 일원의 고구려계석실분과 원주 일원의 고구려유적 발굴에서 보여진다.

9) 성산성 외에 철원군 관내에서 조사된 동주산성, 할미산성에서도 6세기대 신라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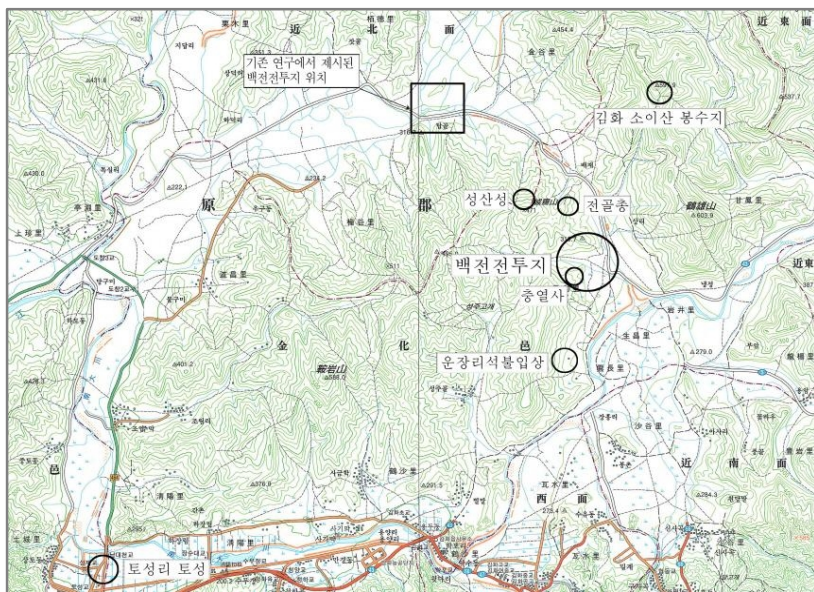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6.

陸軍士官學校 · 鐵原郡 『鐵原 城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이재·강성문·권순진, 『철원의 성곽과 봉수』, 2006.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軍史研究』 第135輯, 陸軍軍史研究所, 2013.

‘금성전투’가 치러진 곳이기도 하다.¹⁰⁾



〈지도 1〉 백전전투지의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철원 김화 지도)

한편, 본고의 주 대상인 홍명구군과 유림군이 방어진지를 편성한 백전일대의 지형을 살펴보면 먼저 전투지역은 서쪽의 안암산에서 동쪽으로 불규칙하게 뻗어내린 능선이 북동쪽으로 이어지다 전투지 부근에서 좌우로 능선이 다시 이어지고 이 능선의 안쪽은 넓은 곡간부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북동-남서방향의 43번도로와 북서-남동방향의 5번도로가 교차하는 곳의 서쪽에 해당되며, 학사리에서 김화읍내로 들어오는 성주고개 접근로가 남서쪽에 위치한다. 남쪽에는 천연 자연장애물로 이용이 가능한 남대천이 북동-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백전전투지 주변에는 초기국가 단계에 조성된

1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전투사 - 7 백마고지전투』, 198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전투사 - 13 금성전투』, 198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전투사 - 14 저격능선 전투』, 1988.

것으로 추정되는 갈말읍 토성리토성,¹¹⁾ 삼국시대에 初築된 성산성, 백전전투의 지휘관이었던 홍명구와 유림장군을 모신 충렬사와 당시 전투의 희생자를 매장한 전골총 등 다수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¹²⁾(지도 1)

이와 같이 김화 백전전투가 치러진 구김화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해 항상 전장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던 곳이다.

나. 문헌기록과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백전전투지의 위치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와 관련된 주된 사료¹³⁾는 당시 전투를 지휘한 홍명구 신도비문¹⁴⁾과 유림의 신도비문¹⁵⁾을 포함한 각종 문헌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약간씩 상이함으로 인해 당시의 전투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¹⁶⁾

11) 후술하겠지만 토성리토성은 기록에 의하면 청군의 집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12) 江原大學校博物館, 『鐵原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6.

13) 병자호란 당시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를 참고해야 하나 당시의 기록이 극도로 소략하여 이들 사료만으로 당시의 제대로 된 전투양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홍명구 신도비문, 유림 신도비문을 포함하여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宋時烈的 『宋子大全』 卷 136, 雜著 「記金化戰場事實」; 朴泰輔의 『定齋集』 卷 4, 「記金化栢田之戰」; 李景奭의 『白軒集』 卷45, 「精忠碑銘」; 尹鑄의 『白湖全書』 卷34, 雜著 「楓岳錄」; 『練藜室記述』; 『金化縣邑誌』 등이며, 국외자료로는 『太宗文皇帝實錄』을 참고하였다. 이외에 조선후기 지리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송시열과 박태보는 김화 백전전투를 직접 지근거리에서 목격한 당시 김화현의 官奴 유계홍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는데, 이 기록이 유림 신도비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당시의 전투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4) 金尙憲,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15)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16) 일반적으로 신도비의 내용은 대부분 주인공이 사망한 이후에 기록된다. 따라서 당시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윤색되고 각색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논할 홍명구와 유림의 신도비에서는 전투지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며, 구체적으로 적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실제 지표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비교하여 백전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편찬된 기록을 제외하고 백전전투에 대해 최초로 위치비정 및 전투양상을 파악한 기록은 國防部戰事編纂研究所에서 발간한 『丙子胡亂史』¹⁷⁾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김화 백전전투의 위치를 현재 비무장지대내의 철원군 근북면 백덕리 소재의 栢洞과 塔洞으로 비정하고 있다(지도 2, 사진 1, 도면 1). 그러나 이는 제한된 문헌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단순히 지도상에 “백동”과 “탑동”이라는 지명이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내린 결론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결과는 백전전투지가 앞서 언급한 비무장지대 일원이 아닌 구김화읍의 남쪽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⁸⁾ 즉, 홍명구와 유림의 神道碑文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김화현의 남쪽 즉, 김화 관아가 있는 곳의 남쪽 塔谷¹⁹⁾에 진을 쳤다고 기록²⁰⁾하고 있으며, 18세기 중반에 발간된 『輿地圖書』의 기록을

1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5~201쪽,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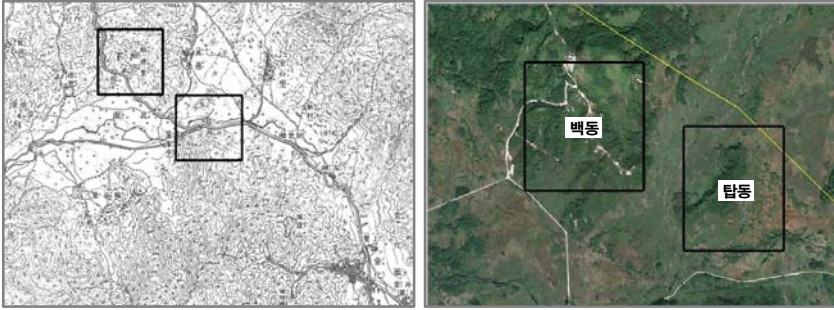
18) 柳在春, 앞의 논문, 2001.

19) 지도상에 표시된 허다한 지명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표시된 지명을 가지고 전적으로 비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고증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柳在春, 앞의 논문, 2001, 79쪽).

한편 기록상에 홍명구와 유림은 김화현의 남쪽 “塔谷”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진을 쳤다고 나온다. 보통 “塔谷”이라는 지명은 이곳에 과거 사찰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부속물로 탑이 존재하여 후대에 전세되어진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현재 충렬사에서 남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서 운장리석불입상이 있는데 그부근에 “삼신사지”라는 절터가 있다.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 사찰의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운장리석불입상이 고려양식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이 사지는 창건연대가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볼 때 백전전투지의 “탑곡”이라 불리는 곳은 이 삼신사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광범위하게 이 일대가 탑곡으로 불리었을 가능성도 있다.

20)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公計欲同入據縣北山城洪公不可又曰賊衆我寡必合兩軍庶可當也洪公又不可引其兵先陣于縣南塔谷公曰地勢夷下易於受敵不若移高洪公又不可但憂其陣後行踈公(중략)自陣于其左栢田之阜阜三面陡

근거로 백수봉²¹⁾ 일대를 전투지로 언급하고 있다.



〈지도 2〉 백동/탐동의 위치(일제시대 지형도) 〈사진 1〉 백동/탐동 위성사진(출처: 구글어스)

필자 또한 구김화현의 남쪽 백수봉 일원으로 보는데 이의가 없다. 그 근거로는 앞서 언급한 자료외에 『宋子大全』,²²⁾ 『淸陰集』²³⁾에서도 동일하게 백전전투지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宋子大全』에 수록된 「記金化戰場事實」의 기록을 보면 송시열이 김화에 들러 홍명구의 祠宇을 배알하고 이어 戰場에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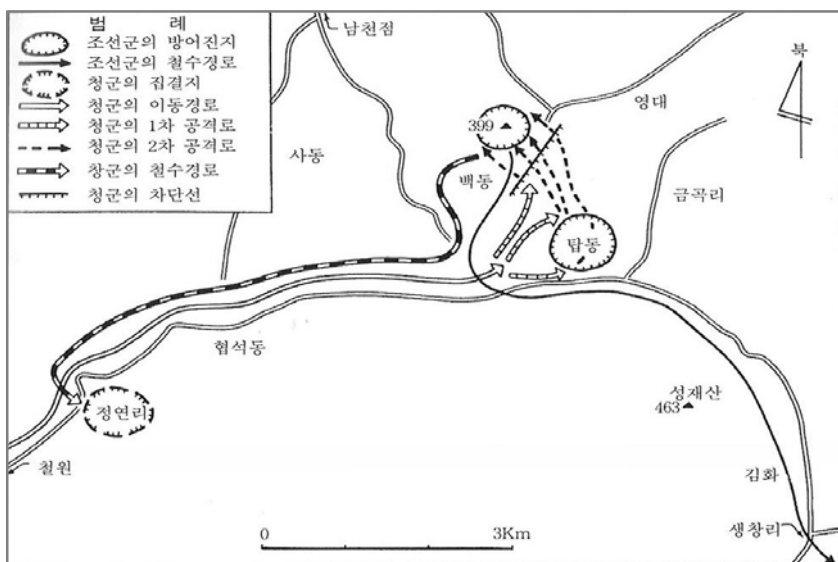
絶一面連山亦中斷如蜂腰…”(홍공과 계획하기를 현북의 산성에 함께 들어가 웅거하자고 하니 홍공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공은 또,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반드시 양 군을 합하여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 홍공이 또 옳지 않다고 하고 자기의 병사를 끌고 현남의 탐곡에 먼저 진지를 구축하였다. 공은 “지세가 낮아서 적의 공격을 받기가 쉬우니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홍공은 또 옳지 않다고 하며 단지 진지의 후면이 영성한 것만 걱정하므로 공이 휘하 이백 명을 나누어 주며 모자라는 곳을 보충하라고 하고 자신은 좌편 백전의 언덕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중략)스스로 그 왼쪽 栢田의 언덕에 진을 쳤다. 이 언덕은 삼면이 두절되고 한 면만 산과 연결되었으며 또한 가운데가 끊겨 벌의 허리와 같았다).

21) 『輿地圖書』, 江原道 金化 山川 栢樹峯. “在縣南一里 三中山落脈 邑人前府使張思俊好種樹嘗植栢數千株於縣南山 茂爲栢林 故名焉”.

22)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 송시열(1607~1689)의 시문집으로, 1787년(정조 11)에 간행되었다. 『송자대전』은 윤관본 『우암집』의 본집과 별집, 『경례문답』 부록, 연보 등과 황강본을 대본으로 하여 이를 교정, 첨삭하고 『주자대전』의 편차방식에 따라 엮은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상헌(1570년~1652)의 시문집으로 40권 14책. 목판본. 1671년(현종 12)경 저자가 직접 編定한 초고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1861년(철종 12) 그의 종10세손 世均에 의해 刊板이 보관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때의 일을 당시의 官奴였던 劉戒弘²⁴⁾에게 물었는데, 답하기를 “丁丑年(1637, 인조15) 정월 어느 날 平安道の 監司와 兵使 두 군대가 읍내에 와서 묵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가 客舍의 서남쪽 산기슭에 陣을 쳤는데 양진이 나란히 진을 치면서도 서로 連하지는 않았습니다.”²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도면 1〉 백동/탐동 전투 요도(『丙子胡亂史』, 200쪽, 1986에서 전제)

또한 『淸陰集』에는 “(중략)이에 곧바로 군사를 고을 남쪽 栢田山으로 옮기면서(중략)”²⁶⁾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외에 전투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자료는 아니나 尹鑑의 『白湖全書』²⁷⁾에는

24)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에는 “繼弘”으로 기록되어 있다.

25) 『宋子大全』 卷136, 雜著 「記金化戰場事實」 “…丁丑正月日. 平安監司兵使兩軍來宿於邑內. 某日監司結陣於客舍西南之山麓. 兩陣相竝而不相…”.

26)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卽移軍縣南栢田山…”.

27) 『白湖全書』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인 白湖 尹鑑: 1617~80)의 시문집으로 30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7년 진주에서 8세손 신환이 간행했다. 남인 정치세력을 주도하며 현실 정치를 적극 개혁하고자 했던 저자의 현실인식과 정치이념·개혁론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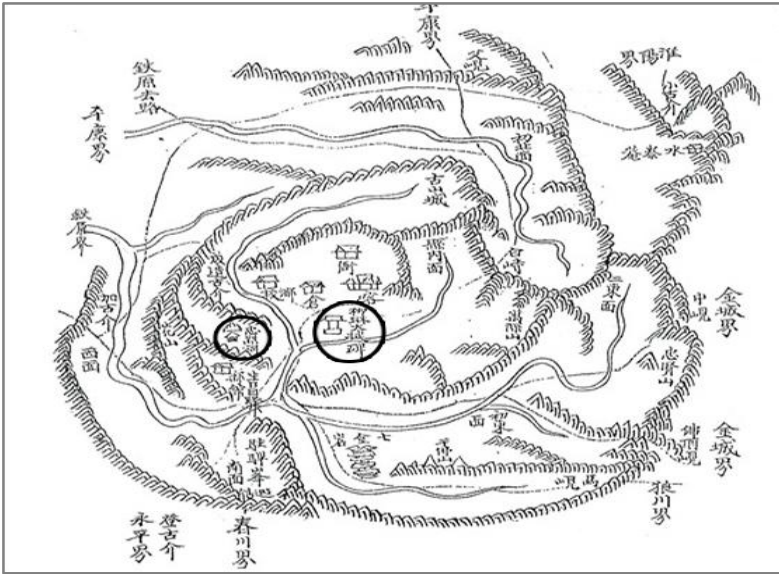
“金化를 향해 출발하여 오다가 시냇가에서 쉬고는 금화 고을을 지나는데 앞길에서 바라보니 아름답리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앞에 碑閣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홍명구가 殉義한 곳이라고 하였다. 말에서 내려 읽어 보니, “平安道巡察使洪命壽忠烈碑”라고 써어 있었다.”²⁸⁾라 하고 있는데, 윤희가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김화부근을 지나면서 아름답리 소나무 숲(栢田)과 홍명구 충렬비를 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조선후기에 편찬된 지방지도인 『海東地圖』 『廣輿圖』 『輿地圖』 등에도 김화현의 남쪽 인접한 곳에 忠烈祠²⁹⁾와 柳琳大捷碑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 3) 이외에 『練藜室記述』과 『金化縣邑誌』에 백전전투지의 위치가 현의 남쪽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렇듯 모든 기록에서 백전전투지 위치는 기존에 연구된 비무장지대내의 백동과 탑동이 아니 구김화현의 남쪽 일원으로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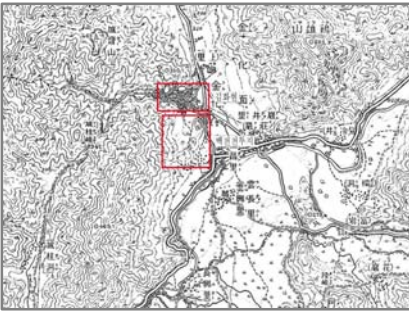
28) 尹鐸, 『白湖全書』 卷34, 雜著 「楓岳錄」.

29) 忠烈祠는 丙子胡亂 당시 김화에서 큰 전과를 올린 洪命壽와 柳琳 將軍을 모신 사당으로, 孝宗 1年(1650)에 건립하여 忠烈公 홍명구를 配享하였고, 孝宗 3年(1652)에 忠烈祠로 賜額되었다. 『江原道誌』에 의하면 그 후로 重修한 기록이 전하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940년에는 김화유림의 합의로 유림 장군을 같이 忠烈사에 配享하였다.

30) 『練藜室記述』 卷26, 仁祖條 고사본말에 邑治의 東南方 1리지점에 동그랗게 오뚝 솟은 栢樹峰이 있다. 백수봉이라는 이름의 由來는 客觀을 신축한 張廉의 아버지인 前江陵府使 張思俊이 “나무심기를 즐겨하여 일찍이 여기에 잣나무 수천그루를 심었는데, 그것이 무성해져 잣나무숲을 이루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金化縣邑誌』(全)山川條에도 “栢樹峰은 縣의 남쪽 1리 지점에 있는데 邑人인 前府使 張思俊이 나무심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잣나무 수천그루를 현의 남산에 심었는데 무성하여 잣나무 숲(栢林)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丙子에 평안병사 류림이 駐陣하여 勝捷한 곳이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도 3〉『海東地圖』에서의 김화현과 충렬사 / 유림대첩비 위치



〈지도 4〉 김화현과 백전전투지 위치
(일제시대 지형도)



〈사진 2〉 김화현과 백전전투지 위치
(출처: 구글어스)

한편, 백전전투지 위치를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도 문헌 기록에 보이는 유사한 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김화현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되는 곳에 해발 238m 높이의 봉우리가 솟아 있다. 이곳의 전체적인 지형을 살펴보면 이 봉우리 남쪽으로 능선이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능선의 중간 부분이 약간 완만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전투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 현재는 지형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그러나 『藥泉集』의 「統制使柳公神道碑銘」에 보이는 “스스로 그 왼쪽 栢田의 언덕에 진을 쳤다. 이 언덕은 삼면이 두절되고 한 면만 산과 연결되었으며 또한 가운데가 끊겨 벌의 허리와 같았다”³¹⁾라고 기술하고 있어 현재의 백수봉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형태와 설명 등이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다(사진 2, 3). 또한 백수봉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부의 폭은 계측결과 최소 80m에서 최대 100m 내외이며, 길이는 700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서쪽은 급경사와 완경사가 반복되면서 남쪽으로 이어지며, 동쪽도 급경사와 완경사가 반복되면서 남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백수봉은 능선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제외하고 三面은 人馬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며, 이러한 지형은 청의 강력한 기병전술에 대비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는 데는 더 없이 좋은 지형이다. 현재 능선 내부에는 서쪽면만 군 교통호와 참호가 조성되어 있고 백수봉 능선의 서쪽은 남대천이 천연의 垓字를 형성하고 있고 그 주변은 대부분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백수봉 능선의 동쪽은 ‘U’자 형태의 완만한 계곡을 이루고 있으며(사진 6), 이 계곡의 동서방향의 폭은 230~250m이며, 남북방향의 길이는 650~700m 가량이다. 계곡 내부는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그 맞은편에 홍명구가 진을 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선이 위치한다. 이 능선의 말단부는 서쪽 해발 400m 내외의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남동쪽으로 이어진 곳에 해당된다. 이 곳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사진2, 4). 즉, 『宋子大全』, 「記金化戰場事實」에 “客舍의

31)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自陣于其左栢田之阜阜三面陡絶一面連山亦中斷如蜂腰...”.

서남쪽 산기슭에 陣을 쳤는데 兩陣이 나란히 진을 치면서도 서로 連하지는 않았습니니다.”³²⁾라는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백수봉 능선 맞은편 현재 충렬사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능선 일원이 홍명구군의 방어진였을 가능성이 높다. 후술하겠지만, 전투가 끝난 후 홍명구의 시신을 수습한 곳도 현재의 충렬사인근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홍명구군이 방어진지를 편성한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방어배치를 고려해 볼 때 두 진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至近距離에서 서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 또한 기록상에 청군의 후방기습공격의 기동로로 추정되는 성주고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 고개는 鶴沙里에서 김화읍으로 가는 옛 고갯길로 가장 높은 곳이 해발 341m이다. 단순 수치상으로 기동이 불리한 險路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답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고개 정상부만 일부 경사가 급하며, 나머지는 모두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형도에도 城柱峴으로 도식되어 있으며, 읍내리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해당된다(지도 4, 사진2, 5). 이 성주고개 또한 기록에 전하는 청의 기병이 홍명구군의 진지 후방을 기습공격한 기동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기존의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와 현지 지형조건 등으로 볼 때 기존 비무장지대내 백동과 탐동은 문헌기록들과 위치상 맞지 않으며, 현재 충렬사가 위치한 능선 말단부와 동쪽의 백수봉 능선 및 현재 인삼밭과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계곡부, 읍내리 일원이 백전전투의 실제 전투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丙子胡亂史』에 적기된 ‘백동전투’와 ‘탐동전투’의 기록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이격되어 벌어진 전투가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전투가

32) 『宋子大全』 卷136, 雜著「記金化戰場事實」, “...某日監司結陣於客舍西南之山麓, 兩陣相竝而不相...”.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인해 전투명은 ‘김화 백전전투’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3〉 백수봉능선(유림진지)
전경(서→동)



〈사진 4〉 백수봉 서쪽 능선(홍명구 진지)
전경(남동→북서)



〈사진 5〉 성주고개 전경(북→남)



〈사진 6〉 백전 전투지 계곡부(남→북)

3. 金化 栢田 戰鬪의 戰鬪樣相과 意義

가. 김화 백전전투의 전개과정 전투전 상황

1) 전투전 상황

가)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부대이동과 집결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西北都元帥 金自點은 평안감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유림에게 傳令하여 군사를 이끌고 경기도의 迷原(지금의 양평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평양 인근 慈母山城에 있던 감사 홍명구는 먼저 군사를 이끌고 江東으로 이동하였고, 安州城을 방어 하던 병사 유림은 寧邊府使 李浚을 불러 安州兵營을 지키게 한 뒤 군병 5,000명³³⁾을 거느리고 강동에서 감사와 회합하였는데, 홍명구가 거느린 군사는 3,000명이라 전한다.³⁴⁾ 강동에서 회합한 홍명구와 유림군은 신계를 거쳐 1월 26일 김화에 도착하였다.³⁵⁾

근왕군이 도착한 김화는 계속되는 청군의 노략질로 마을 전체가 텅비어 있었고, 당시 현령이었던 李徽祚는 몇몇의 小吏와 함께 근남면 잠곡리 계곡속에 피신한 상황이었다.³⁶⁾ 이런 가운데 근왕군은 김화에 도착하면서 청군 수백명을 베고 포로가 된 남녀 수백 명과 가축 300여 마리를 빼앗았다고 한다.³⁷⁾

한편 근왕군이 김화에 입성하며 집결지를 편성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곧 홍명구의 군사는 鴛鴦陳³⁸⁾으로 행군하였고, 유림의 군사는

33) 李景奭, 『白軒集』 卷45, 『精忠碑銘』.

34) 『仁祖實錄』 卷34, 仁祖 15年 1月 28日.

35) 기록에 보이지는 않으나 홍명구와 유림군외에 인근의 김화현민들도 擧兵하여 이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36)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 “...隨縣監李徽祚. 入縣南幘頭山蠶谷以避兵...”.

37) 『清陰集』 卷 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斬數百級. 奪俘獲男婦數百人. 畜三百餘頭...” 그러나 南九萬 撰, 『統制使柳公神道碑文』에는 수십 명의 수급을 베고 사람과 가축을 빼앗아서 장졸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8) 원양진은 조선후기에 사용되었던 진법의 일종으로 중국 명나라 장수인 척계광이 왜구를 상대하기 위하여 발명해낸 진법이다. 구성은 대장 1명 등패수 2명, 낭선수 2명 장창수 4명당과 2명, 화병(취사병) 1명 도합 12명으로 구성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원양진은 만약 전투도중 12명의 부대원 중 단 한사람이라도 전사하고 패배를 할 경우 원양진 분대의 나머지 생존자들도 모조리 참수했다. 따라서 원양진을 이루고 있는 병사들은 죽기살기로 싸워야 했다. 병자호란시 청나라는 기병을 이용한 기동전술을 폈었고 인조는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해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원양진같은 전술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졌다. 특히 원양진은 단병접전에 능한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법이기 때문에 청의 기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인조반정 후 조정에서

이보다 많았는데 행군할 때 圓陣³⁹⁾을 취했지만 머물때는 防營을 만들었다. 두 군사는 현에 이르러 적과 조우하여 나아갈 수 없었다.⁴⁰⁾ 그러나 縣에는 저장된 곡식으로 군사를 먹일 수 있었고, 현의 남쪽 높은 언덕 아래에는 井川이 있어 가히 箭營할만하여 마침내 留陣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宋子大全』의 「記金化戰場事實」에도 “平安道の 監司와 兵使 두 군대가 읍내에 와서 묵었다.”⁴¹⁾는 기록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때 청군의 일부가 먼저 김화현에 도착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었으며, 이후 근왕군이 김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의 선발대 일부 병력과 소규모 교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헌기록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홍명구군과 유림군은 김화현에 도착전 몇차례 청군과 소규모 接戰이 있었으며, 집결지는 김화현 일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 5)

나) 청군의 부대이동과 집결지

한편 평안도 근왕병이 김화현에 도착할 무렵 청나라의 만주·몽고 팔기병⁴²⁾ 또한 김화현으로 진출하고 있었다.⁴³⁾ 청 태종은 1월 22일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훈련 자체를 못하게 하고 지휘관을 자주 교체하여 해당지역은 물론 지휘병력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임지를 옮겨야 했다.

39) 오행진(五行陣)의 하나로 둥글게 진을 배치하는 진법이다. 오행진에는 원진을 포함하여 방진(方陣), 곡진(曲陣), 직진(直陣), 예진(銳陣)이 있다.

40) 朴泰輔, 『定齋集』卷4, 「記金化栢田之戰」 “...洪監司軍可千餘。以鴛鴦陣行。柳兵使軍較多。行爲圓陣。止爲方營。兩軍至縣。遇賊不得進。縣有積穀可餽。縣南有高岡。下有井泉可以箭營。遂留壁...” 이 내용을 참고하면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최초 계획은 김화에서 지금의 43번도로나 47번도로를 이용하여 남한 산성으로 가려 하였으나, 청군과의 조우로 인해 백전전투 후 마현을 넘어 화천-춘천-가평방면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1) 『宋子大全』卷136, 雜著 「記金化戰場事實」.

42) 팔기는 중국 대륙을 점령한 마지막 기마민족인 만주족의 힘이자 자존심이었다. 팔기(정황가·정백가·정홍가·정랍가·양황가·양백가·양홍가·양랍가)의 위력은 당대 아시아 최강이었고, 청이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팔기는 만주족이 17세기 초부터 설치한 씨족제에 입각한 군사·행정체제로 여덟 종류의 기에 의하여 편성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

和碩睿親王 多爾袞이 강화도를 함락하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많은 군사를 남한산성에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청 태종은 함경도에 散居하고 있던 瓦爾喀⁴⁴⁾을 토벌하기 위하여 蒙古衙門承政 尼堪과 甲喇章京 季思哈(吉舍哈), 牛泉章京 葉克書로 하여금 每旗당 甲士 10명씩을 수하에 두어서 外藩 科爾沁, 扎魯特, 敖漢, 奈曼 등 몽고 諸 부락의 군사를 이끌고 가게 하였다.⁴⁵⁾ 이때에 蒙古軍 중 남한산성에서 돌아오던 군사가 함경도로 북상하려고 김화현 부근에 이르러 멈춰 현의 남쪽 30리 지점 土城⁴⁶⁾ 들판에 진을

다. 이 제도하에 있던 사람들을 旗人이라고 했다. 이들은 각 개인의 전투력과 무장이 뛰어났다. 특히 팔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마대는 화살은 물론 화승총의 탄환도 쫓겨내는 견고한 갑옷으로 중무장했다.

43) 앞선 기록에 의하면 조선군이 김화현이 진출하기전 청군의 전초부대는 이미 김화현과 그 일원에 미리 진출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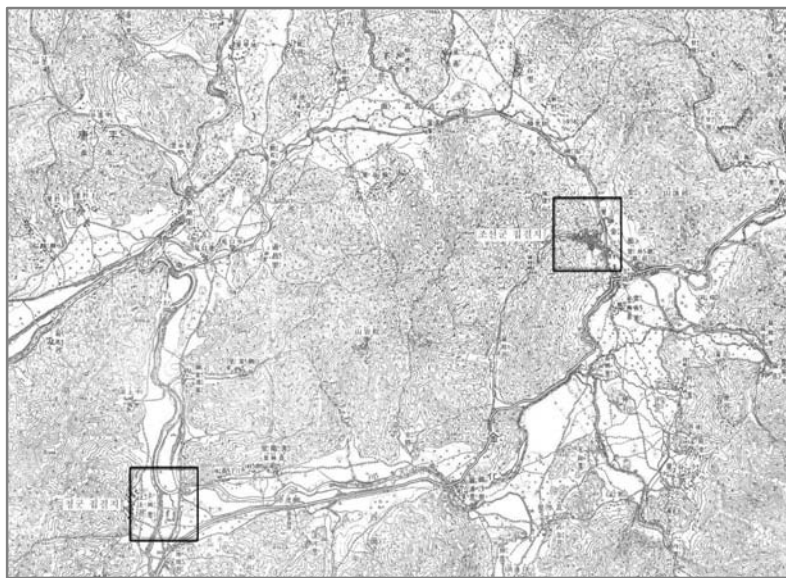
44) 瓦爾喀部는 동해여진(혹은 야인여진)의 일부를 이루었던 부족으로 우수리강 이동지역 즉, 지금의 연해주 지방에 거주하였는데, 이들의 거주지역은 함경도와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중 일부는 조선에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병자호란은 청태종이 명나라 본토로 진출하기에 앞서 후방의 반청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행위였다. 청태종이 반청세력으로 지목한 대상은 조선을 위시하여 東江鎮의 명나라 都督 심세괴군과 조선에 살고있는 와이객이었지만 압록강변의 읍민들도 평정할 대상으로 여겼다. 조선에 거주하는 와이객은 청나라에 항복하지 않는 오랑캐들이며, 압록강변의 읍민들은 청의 내부사정에 밝은데다 수시로 도강하여 사단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이에 청 태종은 이들 반청세력이 있는 한 명나라 정복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 태종은 조선의 항복을 받아 복속시키고 여세를 몰아 동강진의 명군과 조선내지의 오랑캐인 와이객을 토벌하려 하였으며, 조선 국경을 넘자마자 강변의 읍들로부터 평정할 심산이었다(柳承宙,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史叢』 55, 2002, 389~390쪽).

45) 『太宗文皇帝實錄』卷33, 崇德 2年 1月 癸亥(23日) “…癸亥遣外藩科爾沁扎魯特敖漢奈曼諸部落兵出咸鏡道往征瓦爾喀地方命蒙古衙門承政尼堪甲喇章京季思哈牛泉章京葉克書率每旗甲士十人導之以行…”

청태종은 강화도의 함락, 근왕군과 의병들의 연이은 패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많은 병력이 남한산성을 포위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에 위협이 되는 함경도 일대의 瓦爾喀에 대한 토벌을 지시하고 일부 병력을 함경도 방면으로 이동시켰다. 청군이 함경도로 이동하려면 김화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로 청군이 김화를 지나가기전 평안도 근왕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곳에서 평안도 근왕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46) 현재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일원에 해당되며, 초기국가단계에 토성이 잔존하

쳤는데 검은 갑옷들이 땅을 뒤덮었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⁴⁷⁾ 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수의 철기 병과 보병, 조선인 포로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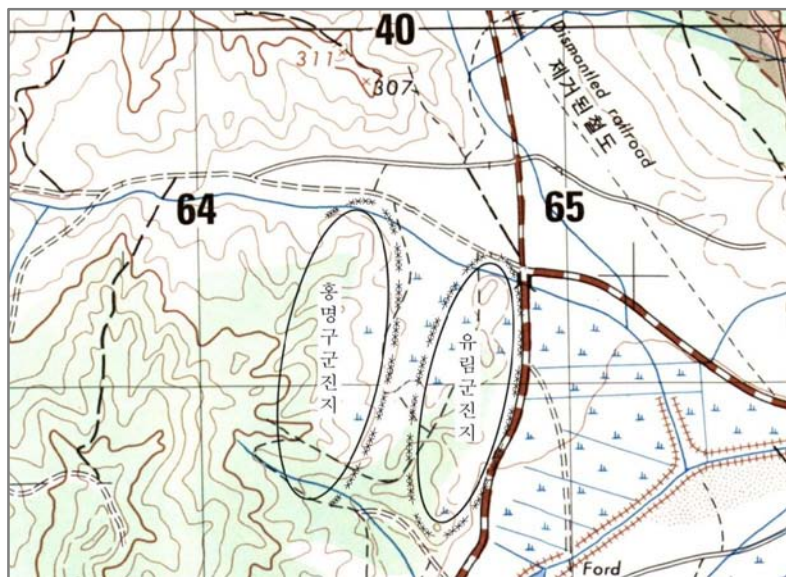
〈지도 5〉 조선군과 청군의 집결지(일제시대 지형도)

나.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방어배치

김화 백전전투는 전투자체에 대한 작전계획 또는 전투상황도 등이 없어 당시의 방어배치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명구와 유림은 모두 김화현의 남쪽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군의 기동전술을 감안한다면 邑治의 북쪽 城山城이나 人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진지를
고 있다.

47)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 “…時蒙古之自南漠歸者。將由咸鏡道渡江而北。至縣止。於縣南三十里 土城之野. 玄甲蔽地。不知其數…”.

편성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지도 6〉 홍명구와 유림군의 방어배치 모식도(출처: 군사지도 “오성산”)

집결지 편성 후 척후병으로부터 적이 십리밖에 진을 쳤다는 보고를 받자 홍명구와 방어계획을 의논하기를 현 북쪽의 산성에 함께 들어가 웅거하고자 하니, 홍명구는 옳지 않다고 하였다. 유림은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반드시 양군을 합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홍명구는 옳지 않다고 하고 자신의 병사를 이끌고 현 남쪽의 塔谷에 먼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에 유림이 지세가 낮아서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우니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으나 홍명구는 또한 옳지 않다고 하여 단지 진지의 후면이 영성한 것만을 걱정하니 유림이 휘하의 병사 200여 명을 나누어 주며 모자라는 곳을 보충하라고 하고 자신은 왼쪽의 栢田 언덕에 진지를 구축하였다.⁴⁸⁾ 이렇듯 홍명구는 邑治의 서남쪽 구릉에 방어진지를

48)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與洪公計欲同入據縣北山城。洪公不

구축함에 따라 유림은 그 좌편인 동남쪽 백수봉 즉, 栢田에 포진하였으며, 각기 전방으로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木柵을 설치하였다.⁴⁹⁾ 이때 兩陣간의 거리는 수백보라고 하기도 하고 10武도 안된다고도 하였다.⁵⁰⁾

한편 송시열의 「記金化戰場事實」에도 당시 홍명구과 유림군 양진이 나란히 진을 쳐서 서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전방에서의 공격만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후방으로부터 산을 통하여 급습해 오자 졸지에 한쪽 陣이 궤멸되게 된 것이다.⁵¹⁾ 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홍명구는 청의 전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리한 방어배치를 하였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제 군사운용에 있어서 유림이 홍명구보다 매우 노련한 무장이었다. 유림은 1603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사적 긴장이 팽팽히 감도는 17세기 초반에 지방의 수령·수사를 지낸 인물이다. 반면 홍명구는 문과출신으로 중앙의 淸要職을 두루 거쳐 관찰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러나 김화전투에서 홍명구가 김화현의 북쪽 성산성에서 방어를 하자는 유림의 제안을 물리친 것은 戰術에 어두워서라기보다는 이미 평안도에서 벌어진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즉, 산성에 入保할 경우 청군이 공격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나라 병력을 분산시킨다고하는 전략⁵²⁾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을

可。又曰賊衆我寡。必合兩軍。庶可當也。洪公又不可。引其兵先陣于縣南塔谷。公曰地勢夷下。易於受敵。不若移高。洪公又不可。但憂其陣後行疏。公分送麾下二百人。以補其缺。自陣于其左栢田之阜。阜三面陡絕。一面連山。亦中斷如蜂腰。依林木布兵設柵爲固……”。

49)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에 “…自山右布陣。首尾無隙。令兵使從山左對布如右…”라는 내용을 볼 때 양군은 방어간격을 상당히 조밀하게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50) 李景奭, 『白軒集』 卷45, (碑) 『精忠碑銘』.

51) 宋時烈, 『宋子大全』 卷136, 「記金化戰場事實」.

52) 金尙憲 『淸陰集』 卷25, 「議政府左議政月沙李文忠公神道碑銘」에 “더구나 우리 군사들이 이곳에 있으면 적들은 반드시 군사를 나누어 와서 싸울 것이므로 전적으로 남한산성을 향하여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역시 한가지 계책이다”

수도 있다. 또한 홍명구의 입장에서는 산성에 입보하여 수세적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決死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전투를 전개하여 청나라 군세를 분산시키려 하였다. 즉, 開戰初期 평안도 방어에서 입보농성의 경험은 이미 의미가 없음을 알고 능선을 등지고 결사항전의 방어배치를 함으로써 죽음으로써 전투에 임하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다.⁵³⁾ 유림 또한 성산성으로 입보하여 좀더 강력한 방어를 할 수 있었으나 홍명구의 결사항전의 전투의지에 부합하여 최대한 방어에 유리한 곳에 진지를 편성하고 지근거리에서 홍명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어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지도 6)

다. 전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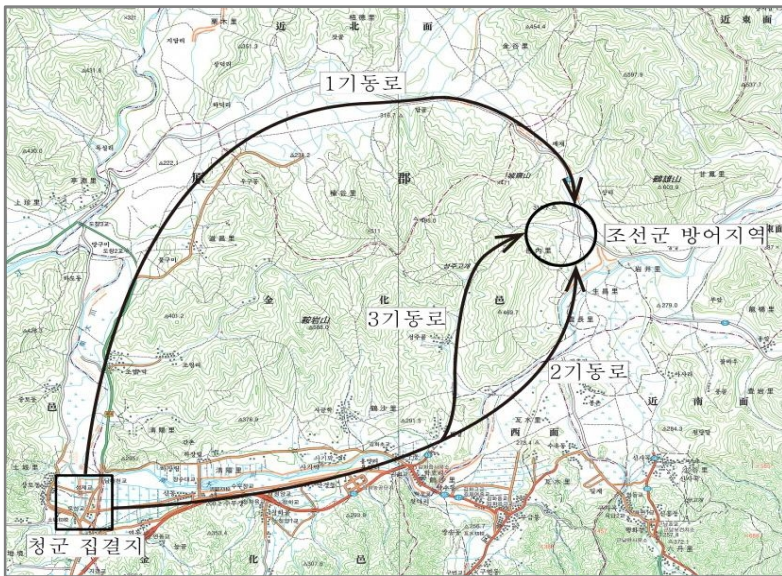
기록에 의하면 김화 백전전투는 1월 28일 하루동안 벌어진 전투였다. 청군의 공격에 대비해 백전일원에 방어배치를 완료한 조선군은 청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군은 김화현 읍치의 서남쪽 30여 리 떨어진 토성리에 주둔해 있다가 1월 28일 노약자와 포로들만 집결지에 남기고 조선군이 방어하는 백전일원으로 기동하였다. 기동간 청군은 모두 3개의 기동로를 이용하여 백전으로 접근하였는데,⁵⁴⁾ 한 갈래 길은 동쪽 산을 따라 내려왔고, 한 갈래 길은 대로를 따라 왔는데 나란히 전진하다가 앞 들판에 이르자 두 갈래의 적군이 서로 손을 잡으니 마치 옷깃을 여미는 듯 하였다. 또 한 갈래는 산의 서쪽을 따라 홍명구 진영의 뒤편으로 치달았다고 기록

라는 기록으로 볼 때 최초부터 근왕군의 임무는 남한산성에 집중되어 있는 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公奮曰。君父在難。分當效死。我志已決。更勿復言。況我軍在此。賊必分兵來戰。勿專向南漢。此亦一計也…”)。

53) 柳在春, 앞의 논문, 2001, 77~78쪽에서 재인용.

5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전전투가 일어난 시점은 1월 28일로 한겨울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동로상의 하천 등은 모두 얼어붙어서 청군이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었을 것이다.

하고 있다.⁵⁵⁾(지도 7)



〈지도 7〉 청군의 기동로(철원군지도)

또한 “어느 날(1월 28일) 해가 막 돋을 때 賊이 그 앞에다 진을 치고, 군사를 잠복시켜 兩陣의 뒷산으로 올라갔으나, 兩陣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직 앞쪽만을 수비하였습니다. 드디어 賊騎가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충돌하여 내려오더니, 한 부대는 우리 양진의 사이를 횡단하고, 한 부대는 우리 감사의 진을 곧바로 침범하였습니다.⁵⁶⁾ 흰 칼날이 번쩍거리며 잠깐 동안 접전이 벌어진 끝에

55) 朴泰輔, 『定齋集』卷4, 「記金化栢田之戰」, “… 三道發軍 一道由東山下 一道由大路並進 至前野 兩枝相拱 若合襟然 一道由山西 疾移洪監司陣後…” 이를 현재의 지명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 번째는 김화 북방 현 비무장지대를 이용한 기동로로 토성리→도창리→유곡리→금곡리→백전, 두 번째 기동로는 현재 43번도를 이용한 토성리→청양리→학소리→생창리→백전, 세 번째는 토성리→청양리→학사리→성주고개→백전으로 접근하는 기동로를 상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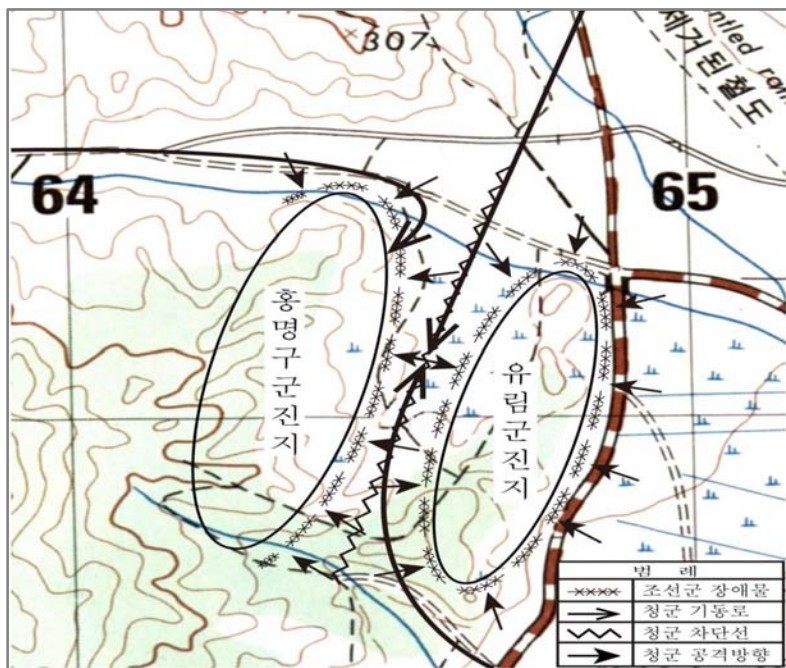
56) 朴泰輔의 『定齋集』, 「記金化栢田之戰」, “…山西伏兵 見賊猝至 急歸報 未及而賊已踰山 以鐵騎馳下峻坂掩我軍…” 이 기록들을 참고할 때 청군이 홍명군군을 기습한 기동로는 성주고개 기동로일 가능성이 높다.

아군은 크게 패하였고 賊은 아군을 뒤쫓아 가면서 창·칼로 마구 찍었는데 그리고 한참 만에 싸움이 끝났습니다. 유림은 먼저 이미 측백나무를 꺾어 꽃아 柵을 만들었는데 그 울 밖에 있는 前營은 이미 처음에 짓밟혔습니다. 감사의 남은 군대가 적과 서로 섞여서 울 밖에 이르자, 병사의 포와 화살이 난발하여 적과 아군이 함께 섬멸되었습니다. 이때 해는 벌써 未時(오후 1~3시)가 되었습니다. 적이 또 병사의 진을 향해 돌진하여 곧장 울 밖 10여 步 거리에 도달하자, 병사의 진에서 수많은 砲를 일제히 발사하니, 적은 일시에 비로 쓴 듯 하나도 남김없이 섬멸되었습니다.”⁵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전투양상의 핵심은 적절한 방어지형과 목적의 설치로 청이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적의 기병이 최대한 지근거리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일제사격을 가하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위급한 전장의 상황이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지휘관의 냉철함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다음날 날이 밝을 무렵에 적이 먼저 오른쪽 진영의 앞을 침범하여, 전진과 후퇴를 두세 차례 하였다. 얼마 후 수천 명의 오랑캐 기병이 뒷산에서 내려와 압도해서 폭풍우처럼 빠르게 두 진영의 사이를 차단하여 서로 구원해 주지 못하게 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오른쪽 진영이 이미 무너져서 홍공이 전사하였다.”⁵⁸⁾

57) 宋時烈, 『宋子大全』, 「記金化戰場事實」, “... 某日日出初。賊結陣於前。而潛師以登於兩陣之後嶽。兩陣不覺。而惟前是備。賊騎大呼衝突而下。一枝橫截兩陣之間。一枝直犯監司之陣。白刃閃鑠。揮擣須臾。而我軍大潰。賊追逐亂斫。食頃而盡。兵使先已斫倒柏樹以爲柵。其前營之在柵外者已躡於初。監司餘兵。與賊相雜。突至柵外。兵使之砲矢亂發。賊與我軍俱殲焉...”

58)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候吏報。西南塵起蔽天...”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홍명구군과 유림군은 주변의 고지에서 청에 대한 감시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홍명구와 유림은 성주고개 방향의 기동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방어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림이 홍명구군의 방어진지 보강을 위해 자기의 군졸 200여 명을 나누어 홍명구 진영에 보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다만 기습공격을 감행한 청의 철기병들의 수적 우세로 인해 후방이 돌파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도 8〉 김화 백전전투 모식도(출처: 군사지도 “오성산”)

적이 승세를 타고 공의 진영을 향해 달려오자 오른쪽 진영의 패잔병이 적과 함께 서로 밟히면서 들어왔다. 前營의 장수 具賢俊이 전사하였으며 진영 내부가 놀라고 소요하여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공이 높은 곳에다 말을 세우고 큰소리로 호령하기를 “내 이곳에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 하니, 장병들이 비로소 늘어서서 사력을 다해 싸웠다. 이곳은 지형이 아군은 굽어보고 저들은 우리러보며, 또 잣나무 숲이 뺄뺄하여 오랑캐 기병들이 돌격할 수가 없었고, 화살도 대부분 나무에 맞아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 군대가 이를 이용하여 틈을 타서 砲를 쏘았는데 탄환 한 발을 쏠 때마다 두세 명의 적을 관통하니 적이 조금 후퇴하였다. 공이 다시 부대를 정돈하고 진영을 가지런히 한 다음 軍衆에 명령하기를 “화살과 탄환이 많지 않으니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적이 우리 진영을 향해

수십 보 이내로 접근하면 내가 깃발을 휘두를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깃발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일제히 발사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참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적이 군대를 나누어 번갈아 진격하였으나 그때마다 모두 죽이니 시체가 城柵에 가득히 쌓였다. 해가 저물 무렵 적이 온 진영의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진격하였는데, 백마탄 장수가 상하로 달리면서 지휘하였다. 유림은 10여 명의 병졸을 뽑아서 몰래 목책 밖에 넘어가 있다가 일제히 포를 발사하게 하여 그를 죽이니, 그는 과연 신분이 높은 적의 장수였다. 그러나 종일토록 고전하여 병졸들이 매우 지쳤으므로 혹 후미에서도망가는 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유림은 명하여 풍악을 울려 승전을 알리는 소리를 내어 병졸들을 격려하니 사기가 다시 진작되었다. 적은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비로소 물러갔다.⁵⁹⁾

앞의 내용에서 보듯이 청군은 최초에는 두 개의 기동로를 이용하여 백전으로 공격하여 조선군의 양진을 차단하고 고착전제시킨 후 성주고개 기동로를 이용하여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청의 전면 접전과 후방 기습 전술의 사용은 경상 좌병사 허완의 雙嶺戰鬪, 忠淸監司 鄭世規와 兵使 李義培의 險川戰鬪, 原州營將 權正吉의 黔丹山戰鬪⁶⁰⁾ 등에서 사용되었던 전술이다. 위의 전투들은 조선 근왕군이 모두 청의 기습공격과 우회기동에 의해 패배한 전투인 점을

59)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翌日質明。賊先犯右陣之前。進退者數三。俄而數千騎自後山馳下而壓之。疾若風雨。衝截兩陣之間。使不得相救。一督之頃。右陣已潰。洪公死之。賊乘勝向公陣。右陣敗卒與賊相蹂躪而入。前營將具賢俊死之。陣中驚擾離次。公立馬高處。大呼曰我在此無動。將士始剋立致死力。地形既我俯彼仰。而柏林且密。虜騎不得突。矢亦多著樹不及人。我兵馮之。從其隙發砲。一丸輒貫數三人。賊少退。公復旋隊整陣。令軍中曰矢丸無多。不可浪費。賊到陣前數十步之近。我當颯旗。汝等觀我旗齊發。違者必斬。令既下。賊分兵迭進。輒盡斃之。積屍齊柵。日晡時賊傾陣而進。有白馬將馳上下指揮。公擇十卒使潛踰柵外。並發砲殺之。果貴將也。然終日苦戰。士卒疲極。或有從後亡去者。公命作樂。爲戰捷聲以激厲之。士氣復振。昏後賊始退…”。

60) 이들 전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민족전쟁통사』 참조.

상기해 볼 때 유리한 방어배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戰例라 할 수 있다.⁶¹⁾

라. 후퇴작전

여러 차례의 공방을 펼친 조선군은 홍명구의 장렬한 전사와 함께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유림은 치열한 전투 끝에 탄약과 화살이 거의 떨어지고 홍명구의 패배로 고립무원이 되어 오래 머물러서는 안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유림은 더 이상의 방어는 아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방어진지내에 산재한 나무를 이용하여 촛불 등을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고, 조총을 나무에 많이 묶되 火繩을 火門(耳藥桶)에 연결시켜 놓은 다음 마침내 목책을 버리고 야음을 틈타 퇴각하여 馬峴⁶²⁾을 넘어 狼川縣(지금의 화천)으로 부대이동을 실시하였다. 火繩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어 불이 火門에 미치는 데도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있어, 총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적은 끝내 그곳이 텅빈 진영임을 알지 못하여 다음날 군사를 정돈하여 다시 진격하였는데 유림은 이미 철수한

61) 한편 김화 백전전투에 앞서 1619년(광해군 11)에 발발한 深河전투가 있는데,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만주의 深河 富車에서 後金の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한 전투로 富車戰鬪라고도 한다. 이 심하전투 이후 조총위주의 단순전술에서 벗어나 야전에서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후금군은 조선 포수의 장점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병 돌격을 바로 하지 않고 일단 말에서 내려서 원거리에서 활을 쏘아 조선의 포수를 혼란시키고 이어 말에 올라 타고서 철퇴와 棍을 사용하여 돌격하여 조선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노영구, 「16~17세기 조총의 도입과 조선의 군사적 변화」, 『한국문화』 58, 2012, 125~126쪽에서 재인용)

홍명구와 유림은 모두 서북지역에서 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과거 심하전투의 대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방어시 조총병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연속적인 사격이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궁수도 사격이 단절되지 않게 적절히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유림 장군의 진영은 청군과 접전시 조총과 활을 이용한 적절한 사격통제를 하여 효과적으로 청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

62) 김화에서 화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뒤였다.⁶³⁾ 이른바 “임시조총자동사격장치”를 설치하여 소란스럽게 한 후 그 소음을 이용하여 야음을 틈타 완벽한 야간 후퇴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후 근왕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남한한성으로 이동중 청과 講和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명에 의해 다시 안주로 귀환하였다.

마. 전투결과 및 의의

한편 치열했던 전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定齋集』에 그 기록이 보이는데, “이 싸움에서 적병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적은 그 시체를 모두 거두어 태웠는데 3일이 걸린 뒤에야 끝내고 돌아갔다. 아군의 죽은 자 또한 온 들판에 뒤덮여 있었으며, 홍명구의 屍身은 시체더미 속에서 찾았다. 칼로 이마와 왼쪽 어깨가 찢려 井川 옆에서 죽었는데, 대개 將壇에서 100여 보 떨어진 곳이 었다”⁶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군이나 청군 공히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낸 대규모의 전투였다. 전투 후 김화현민들은 조선군의 시신을 한데 모아 장례를 치렀는데 이른바 지금의 전골총이다.⁶⁵⁾ 전골총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는 대형봉분을

63)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公曰今日之戰。幸而得勝。而矢丸已盡。不可復戰。不若乘勝勢移陣。間趨南漢。命收軍中破銃。藏藥繫繩。參差其長短而蕪其端。散挂柏林而去。砲聲續發竟夜。賊不敢逼。既明大舉而來。陣已空矣...”.

64)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 賊兵死者。不可勝紀。賊盡收其屍。燒之三日而後畢。乃去。我軍之死者。亦被原滿壟。得洪監司屍於積屍中。刃傷額及左眉。死於 井泉之傍。蓋去將壇百許步云。현재 충렬사가 세워진 곳이 홍명구의 시신이 수습된 곳이라 전한다. 즉, 홍명구는 將壇(지휘소)에서 불과 100여보 떨어진 곳에서 시신을 확인하였으니 충렬사 부근 일원이 홍명구가 방어진지를 편성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65) 김화 백전전투에서의 전사자는 당시 현감으로 있던 李徽祚가 고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수습해 전야에 6~7개의 분묘로 만들어 장사지냈는데 이것이 인멸되자 1645년(인조23년) 현감으로 있던 安應昌이 흙을 쌓아 다시 성분하였다고 한다.(『輿地圖書』 江原道 金化 古蹟條) 전골총이 조성된 이후 이

가진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그러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무덤 외에 김화 생창리 일원에 전골총으로 의심되는 무덤이 있다는 연구⁶⁷⁾결과에 따라 최근 이 두곳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결과 이 두곳은 무덤이 아닌 자연 상태의 구릉인 것으로 밝혀졌다.⁶⁸⁾

결론적으로 청의 기병은 비교적 기병의 공격에 유리한 홍명구의 진영을 기습공격으로 무력화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유림부대가 포진한 백수봉일원의 방어진지는 돌파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 청군의 우세한 철기병의 파상공세 기동을 좌절 시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방어진지의 편성이다. 둘째,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방어진지 주변으로 목책이라는 장애물을 이용하여 적 기병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것, 셋째, 鳥銃과 弓手를 적절히 배치하여 집중사격의 중단이 없게 한 적절한 사격통제, 넷째,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서 부하들을 독려한 지휘, 다섯째, 적을 기만하는 효과적인 철수작전 등이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백전전투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된다.

곳에서 매년 전사한 날인 정월 28일 고을민들이 제사를 지내 충혼을 위로하였다(『輿地圖書』江原道 金化縣). 최근 병자호란 전적지에 대한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던 중 최근까지 전골총이라 불리우던 곳의 지면을 파악해본 결과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702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6.
 陸軍士官學校·鐵原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2000.

이재·강성문·권순진, 앞의 책, 2006.

67) 柳在春, 앞의 논문, 2001, 85~91쪽.

68)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철원 김화 전골총 정비사업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14. 이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전골총이 당시의 전골총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하고 있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차후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한 전골총과 함께 전투전적지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를 기대해 본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병자호란시 김화 백전전투 전적지의 위치 및 전투양상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화 백전전투는 병자호란시 김화읍 남쪽의 백전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용인 광고산전투와 함께 병자호란 2대 승전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學界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그 전투사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투의 명칭에 관해서는 ‘백동전투’와 ‘탐동전투’ 또는 ‘김화전투’ 불려져 왔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결과 淸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 兩軍이 인접한 지역 즉, 백전 일원에서 치열하게 치러진 전투였음으로 앞으로는 “김화 백전전투”라 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투지역은 각종 고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비무장지대 내의 백동 / 탐동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구김화현의 남쪽 현재 읍내리 백수봉 일원 및 성주고개, 충렬사 일원을 백전전투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방어배치면에서 살펴보면 홍명구군은 산성에 입보하여 수세적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決死의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적극적인 전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유림군은 유리한 방어지지의 선점과 효과적인 장애물 설치 및 사격통제, 기만작전으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히 선행되어 향후 호국 및 국난극복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전적지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2015.7.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병자호란, 김화, 백전, 청, 홍명구, 유림, 성주고개, 충렬사, 백동전투, 탐동전투

<ABSTRACT>

A Consideration on Gimhwa Baekjeon(栢田) Combat during the Manchu Invasion of 1636 (Byeongjahoran, 丙子胡亂)

Kwon Soon-jin

This is a study on Gimhwa Baekjeon(栢田) combat during the Manchu Invasion to Choseon(Byeongjahoran, 丙子胡亂). As the Gimhwa Baekjeon combat was a battle that broke out in the whole area of Baekjeon to the south of the former Gimhwahyeon during Byeongjahoran(the Manchu war of 1636), it has been known as the top two combat sites with victory during Byeongjahoran together with the Mt. Gwanggyo combat of Yongin. However, it existed a point that the history of its combat failed to be properly illuminated due to the lack of an interest by both the military and the academic circl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 name of a battle has been called 'Baekdong combat', 'Tapdong combat', or 'Gimhwa combat.' However, it is thought to be likely good to call it as "Gimhwa Baekjeon combat" in the future because of having been the battle that both the armies fiercely fought in the adjacent area, namely, in the whole area of Baekjeon as for a mutual enemy named Cheong(淸). Also, seeing it through many ancient literature records, the battle area is judged to be more appropriate to regard the Baekjeon combat site as the whole area of Baeksubong in Eupnae-ri of the present to the south of the former Gimhwahyeon, and the whole area of Seongju gogae and Chungryeolsa temple, rather than clearly stating it as Baekdong / Tapdong within DMZ(de-militarized zone).

Second, examining it in the aspect of the defense deployment in the

Hong-myeong-gu army and the Yu-rim army, the Hong-myeong-gu army can be said to have been strong in a will to positively fight with burning the bridges with the desperate mind rather than taking the defensive attitude by entering to be protected by fortress. On the other hand, the Yu-rim army could steer this combat to victory with preoccupying the advantageous defensive position, with installing effective obstacle, with the fire control, and with the deception operation.

Finally, it is judged to be necessarily made a battlefield as a site of vivid history with patriotism and a conquest for a national crisis by being imminently preceded a detailed investigation on a battle zone.

Key Words : Byeongjahoran(丙子胡亂), Gimhwa, Baekjeon, Cheong(淸),
Hong-myeong-gu, Yu-rim, Seongju gogae, Chungryeolsa,
'Baekdong combat,' 'Tapdong combat,'

파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이 신 재*

1. 서론
2. 작전지휘권과 연합작전
3. 비전투부대 파병과 작전지휘권
4. 전투부대 파병과 작전지휘권
5. 결론

1. 서론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fact)이다.¹⁾ 이 말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군이나 남베트남군이 아닌 당시 한국군 최고지휘관인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논문 제2장을 참조할 것.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전쟁의 명칭은 베트남전쟁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당시 고유명사의 성격이 있는 용어들은 베트남 대신 월남(越南)이라는 용어로 표기한다. 이런 예로는 파월한국군,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한국군사령관, 주월한국대사관, 주월무관, 주월미군 등이다.

그동안 참전자들의 증언과 회고록 등에서 여러 차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파병단계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전투부대의 파병이었던 1·2차 파병 때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주월미군사령관에게 있었고, 전투부대 파병인 3차 파병 이후부터 주월한국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정확한 실상이 이러한데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파월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사령관이 행사했다는 주장이 널리 언급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1·2차 파병은 비전투부대로 전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철수시점까지 약 8년 7개월의 전체 파병기간 중 1·2차 비전투부대의 파병기간은 초기 1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1·2차 파병 당시 작전지휘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검토와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한·미·남베트남 3자간의 협상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었던 작전지휘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3차 전투부대 파병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권 획득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고찰은 1·2·3차 파병과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것은 침체된 국내 베트남전쟁 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자료접근의 한계와 군대의 작전권이라는 주제가 일반 연구자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사령관이 행사했다는 참전자들의 지속적인 증언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동기를 사장시킨 측면도 간과

할 수 없다. 그 결과 한국군 작전지휘권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전쟁 관련 논문 속에서 3차 전투부대 파병을 중심으로 매우 단편적으로 거론되는 정도였다.²⁾

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전투부대 파병이후를 주로 다루면서, 비전투부대 파병단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대개 참전자 회고록에서 언급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 내용을 더욱 공고화시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 내용이나 깊이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1·2차 파병당시 선발대장이었고, 3차 파병당시에는 연락장교단 일원으로 작전지휘권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이훈섭의 회고록은 확실한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고록은 생생한 경험과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당시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사안을 모두 보여주지 못했고, 미국측 문헌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연구서로는 일부 한계를 지니는 아쉬움이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문제를 참전자들의 회고록, 증언록 이외에 국방부와 외무부 등 당시 한국

2) 현재까지 이뤄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작전지휘권에 대한 연구로는 채명신, 「베트남 전쟁의 특성과 연합작전」,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양창식, 「베트남 파병정책 결정배경 및 과정」,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송재익, 「베트남전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권 행사와 채명신 사령관 역할 연구」, 『군사연구』, 제137집, 육군 군사연구소, 2014, 67~93쪽 등이며, 최윤희,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178~183쪽; 송재익,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70~75쪽; 정수용,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동맹체제의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230~238쪽 등에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3)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베트남 파병 선발대장의 회고』, 샘터, 1991.

정부의 관계자료, 그리고 미군의 베트남전쟁 문헌, 역사서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대상 시기를 전투부대 파병 이후뿐만 아니라 비전투부대 파병단계부터로 설정하고, 비전투부대 파병단계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비전투부대 파병 경험이 이후 전투부대 파병과정에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부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작전지휘권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군 파병과정에서 직면했던 작전지휘권에 대한 미국·남베트남과의 갈등,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대응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파병의 정치적 명분과 실리적 측면이 작전지휘권 결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관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작전지휘권의 개념과 일반적인 연합작전의 양상, 그리고 파병당시 국내에서 작전지휘권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비전투부대인 1·2차 파병당시 작전지휘권에 대한 검토과정과 베트남 현지에서의 협상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전투부대 파병인 3차 파병 당시 작전지휘권 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권 행사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제5장은 이 논의의 결론이다.

2. 작전지휘권과 연합작전

가. 용어의 개념 정의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지휘(Command)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⁴⁾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이란 이런 지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이를 베트남전쟁에 적용하면, 국방장관이 주월한국군사령관에 대해서, 주월한국군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이 지휘권인 것이다.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이란 “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⁵⁾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지휘권의 범위 중 작전에 한정된 것으로, 행정 지휘와는 상대적 개념이며, 행정 및 군수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작전지휘권과 유사한 용어로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 또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⁶⁾을 말한다. 여기에도 행정 및 군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0, 367쪽.

5)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편, 위의 책, 275쪽.

6) 위의 책, 275쪽.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작전과 관련된 권한이라는 점과 행정, 군수 등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일반적인 작전임무수행이 아닌 특정임무, 특정과업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작전지휘권과는 구별된다. 특히 작전지휘가 ‘정상적인 지휘계통하에서 작전에 관련된 지휘기능’인데 반해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를 위하여 지정된 지휘계통에 임무완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권한’이라는 점에서 작전지휘와 작전통제의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⁷⁾

그러나 일반용어가 그러하듯 군사용어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일부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점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투부대 파병준비가 본격화되던 1965년 8월 합참에서는 작전지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들 용어에 대한 해석 작업도 착수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합참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같은 용어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합참의 ‘군사술어 해석’에 대한 2쪽 짜리 문서에는 지휘권, 작전지휘, 작전통제 등 세 용어에 대해 뜻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작전지휘’는 “예하부대의 구성, 임무의 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위 있는 지시를 포함하는 지휘기능”을 말하며, “작전지휘는 배속된 통상적인 편성부대를 사용하여 행해지며, 행정군기 내부편성 및 부대의 교육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 ‘작전통제’에 대해서는 ‘작전지휘’와 동의어로 ‘작전지휘’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⁸⁾ 결국 당시 합참의 작전지휘 개념은 현재와 다르지

7) 송재익, 앞의 논문, 16쪽.

8) 합참 작전기획국, 「지휘권 관계 수립에 필요한 군사술어에 대한 해석(1965. 8. 2)」, 정책과, 『한월, 한미 군사실무약정 왕래문서-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89~90쪽.

않지만, 작전지휘와 작전통제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특징이 있다.

당시 한국에서 작전지휘와 작전통제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식문헌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당시 조약이나 의사록에는 영어적 표현은 ‘operational control’, 즉 작전통제임에도 한글표기는 ‘작전지휘’로 적고 있는 것이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1954년 11월 17일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에는 ‘작전지휘권’을 ‘operational control’로 표기하고 있고, 1961년 5·16사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모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귀속 시킨다’는 문헌에서는 작전통제권을 ‘operational control’로 적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을 앞두고 합참에서 작전통제와 작전지휘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한국군 내부의 작전지휘와 작전통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작전지휘권 결정과정에서도 작전지휘와 작전통제가 혼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연합작전 지휘체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연합군 편성 방식과 연합작전 지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s)이란 2개 국가 이상의 군대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작전을 말한다.⁹⁾ 연합군이란 2개 혹은 그 이상의 동맹국의 병력으로 구성된

9)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편, 위의 책, 226쪽.

군대를 말한다.¹⁰⁾

베트남전쟁의 경우 미국을 비롯해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이 참전했으며,¹¹⁾ 이들은 자유세계군(free world forces), 또는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s) 등으로 불리며 전쟁의 공동목표달성을 위해 연합작전을 시행했다.

연합작전시 연합군을 편성하는 방식에는 국가별 편성, 기능별 편성, 혼합편성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국가별 편성이란 연합군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최고사령관이 자국의 군대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고 연합작전을 위해서 각 국가의 최고사령관들이 협조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각 군은 국가별 장비, 전술로 작전을 수행한다. 기능별 편성은 국적에 관계없이 군의 기능별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연합전력의 최대 발휘가 가능하며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혼합편성은 일부는 국가별로, 일부는 기능별로 편성하는 것이다. 연합군의 임무가 다양하고 책임지역이 광범위하여 작전지역을 분할해야 할 경우 이 형태를 취하는데 NATO의 경우가 혼합편성 방식이다.¹²⁾

한편, 연합작전 지휘체제란 연합군에 참여하는 연합국의 각 수반-연합국의 국방장관-연합국 군사위원회-연합군 최고사령관에 이르는 계서적 체제를 의미한다. 연합작전시 기본적인 연합작전 지휘체제 유형에는 병립형, 국가별 / 기능별 통합형, 그리고 이들을 혼합한 혼합형 지휘체제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립형 지휘체제는 해당 국가가 자국의 전개부대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간단하면서도 국가적 민감성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통합형

10) 위의 책, 224쪽.

11) Stanley Robert Larsen·James Lawton Collins, Jr, 이주만 역, 『베트남참전동맹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41쪽.

12) 송제익, 위의 논문, 23쪽.

지휘체제는 연합작전시 지휘통일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휘체제로 한미연합작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혼합형 지휘체제는 병립형 지휘체제와 통합형 지휘체제가 혼합된 형태로 동맹국 이외 다른 참전국들이 있을 경우 동맹국의 지휘구조를 모체로 참전국의 규모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는 지휘체제이다.¹³⁾

다. 국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베트남 파병당시 국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었다. 이것은 6·25전쟁 개전 초기였던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이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기 때문이다.¹⁴⁾

이에 대해 맥아더 사령관은 무초(John J. Muccio) 대사를 통해 보낸 7월 16일자 회한(回翰)에서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위임한 이승만 대통령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표한다.¹⁵⁾ 이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전쟁이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전환되면서 전쟁 이후에도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후 1961년 5·16사건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고, 1970년 미 의회의 이른바 사이밍턴(Symington) 청문회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¹⁶⁾

13) 송제익, 앞의 논문, 21~22쪽.

14)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보낸 공한(公翰)에서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한다고 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1981, 629~631쪽. 팔호안의 영문은 영문조약상의 용어를 기술하였음.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629~631쪽.

1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편,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밍턴 위원회 청문록』, 1971, 94쪽.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음으로 인해 베트남 파병 당시 한국군은 비전투부대 파병 때부터 전투부대 파병 때까지 매번 유엔군사령관에게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게 된다.¹⁷⁾

국내에서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이후 파병 과정에서 미군이 파월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주월미군과 주한미군의 차이, 즉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이지만 주월미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작전지휘권은 한국군 파병의 정치적 명분과 관련됨을 주장하면서 작전지휘권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3. 비전투부대 파병과 작전지휘권

가. 1차 파병과 작전지휘권

1) 국내에서의 검토사항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비전투부대로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9월 이동외과병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 등 140명의 작은 규모였다.¹⁸⁾ 그러나 1차 파병은 한국정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이것이 건국 이후 첫

17) 1964년 7월 10일 김성은 국방장관은 하우스 대장에게 보낸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 파견동의요청서’에서 “이 부대를 귀하의 작전지휘하로부터 해제하여 월남에 파견하는데 대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 제1권』, 1967, 775쪽. 이후 2·3차 파병 때에도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

18) 이동외과병원 130명은 중령 1명을 포함 장교 34명, 부사관 33명, 병사 63명이었다. 태권도 교관단 10명은 소령 1, 위관장교 9명이었다.

해외파병이었기 때문이다. 파병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또한 원점(zero base)에서 검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국군의 공식파병은 외형상으로는 1964년 7월 15일 남베트남 수상 의 지원요청 공한을 받고, 같은 해 9월 11일 파병부대가 부산항을 출발하면서 이루어졌다.¹⁹⁾

그러나 한국군의 파병은 그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한국군은 1964년 5월 9일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자유우방 25개국에 대하여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파병 검토에 들어갔다. 5월 12일 국무총리는 국방부에 남베트남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주월무관을 통해 남베트남에 구체적인 파병 희망규모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파병 준비에 돌입했다.²⁰⁾ 파병 준비과정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병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합참 정책과는 1964년 7월 30일 남베트남 지원에 대한 내부 검토과제 중 하나로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통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당시 합참의 작전지휘에 대한 검토안은 3가지로 정리되었다. 제1안은 파병 한국군을 본국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고, 남베트남군이나 주월 외국군과의 관계는 대등한 횡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안이었다. 제2안은 남베트남군에 배속되어 작전통제를 받고, 군수지원은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부(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이하 MAC-V로 약칭)²¹⁾로부터 받고, 행정

19) 국방부, 『국방조약집 제1집』, 796쪽.

20) 「월남지원에 관한 연구(1964. 11. 3)」, 『월남관계 참고자료-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21) 미국은 1950년 6월 30일 군사원조고문단(MAAG: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이라는 이름으로 사이공에 처음 도착했고, 1962년 2월 8일 MAC-V가 설치되

통제는 주월한국대사관의 무관이 행하는 안이었다. 제3안은 MAC-V에 배속하는 방안이었다.

이 중에서 제2안, 즉 남베트남군에 배속 및 작전통제를 받는 안이 “지원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지원국에서 요망하는 지원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다.²²⁾

이에 반해 제1안, 즉 남베트남정부 및 주월미군 등 외국군대와 관계없이 한국정부가 직접 지휘통제하겠다는 안은 한국군의 자주성이 유지되나 베트남에서 지휘의 다원화로 인한 협조의 부진, 피지원국에 대한 지원효율 감소 초래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제1안은 한국군의 3차 전투부대 파병시에는 실제로 현실화된다. 제3안, 즉 MAC-V에 배속하는 안은 군수지원의 원활을 기할 수 있지만, 남베트남 지원의 자주성이 약화된다는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다.²³⁾

한국군의 제2안에 대한 검토는 당시 남베트남에 있던 외국군대 중 뉴질랜드의 경우와 같은 것이었다. 당시 뉴질랜드 공병부대는 남베트남군 총사령부의 작전통제와 MAC-V의 군수지원, 그리고 주월대사관 무관부의 행정통제를 받고 있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제2안, 즉 남베트남군에 배속 및 작전통제를 받는다는 계획이 그대로 결정되지는 못했다. 1964년 8월 7일 합참 작전기획국 주관하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새로운 안이 논의되었다.

었다. 이후 MAAG는 MAC-V에 통합된다.

22) 「대월지원(1964. 7. 30)」, 합참 정책과, 『월남관계철-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54~57쪽.

23) 위의 자료, 54~57쪽.

24) 위의 자료, 69쪽. 그러나 뉴질랜드와 달리 주월 호주군은 지휘관(훈련단장)이 MAC-V 사령관의 고문이었지만, 작전지휘권은 호주군에 귀속되어 있었다. 주월대사, 「외무부장관 보고전문(1964. 7. 17)」, 합참 정책과, 『월남관계철-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93~94쪽

정책과 안과는 다른 안이 제시된 것이다. 합참의 다른 안은 MAC-V의 작전통제와 군수지원을 받으며 본국에서 군사지원단의 지휘상편의를 위하여 주월대사가 현지부대를 감독한다는 것이었다. 남베트남군 및 주월 외국군과는 협조관계로서만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이전 합참의 제3안과 유사한 것이었다. 또 파견부대 통합지휘관은 파월부대 최선임자인 병원장이 겸임한다는 것이었다.²⁵⁾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던 1964년 7월 28일 주월무관이 국방장관에게 전문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MAC-V측에서 한국 이동외과병원이 남베트남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보다 MAC-V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주월무관은 이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 남베트남 3자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며, 여기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유사시 파병부대의 안전지대로 철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MAC-V 작전통제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²⁶⁾

결국 1차 비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국내에서의 작전지휘권 문제는 결말을 짓지 못했다. 그 대신 작전지휘권은 MAC-V 또는 남베트남군 예하에 두는 2개안을 갖고, 선발대가 현지에 가서 남베트남 및 주월미군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²⁷⁾

한편 당시 한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파월한국군을 한국정부에서는 누가 지휘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것은 외무부에서 제기했다. 외무부에서 1964년 7월 29일 국방부에 보낸 “파월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초안”에는 주월한국대사관과 남베트남 외무성간에 체결된 협정 초안상에서 “지원단은 현지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25) 「회의안건(1964.8)」, 『월남관계철-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16~19쪽.

26)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방부 파견 선발대장의 현지파견 결과보고 및 관련 참고자료(1964. 8. 26-9. 8 V.1)』(HB02644). 여기서 HB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서 관리번호임.

27) 『월남관계 참고자료-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받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었다.²⁸⁾ 결국 현지대사가 파병부대를 지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964년 8월 8일 합참은 정정의견을 내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파병부대를 주월대사가 직접 지휘 및 통제한다는 것은 군 통수 및 지휘체계상 불합리하며, 둘째, 정부조직상 재외 공관장은 외무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파병부대를 공관장이 지휘한다는 것은 결국 외무장관이 지휘하는 것이 되므로 정부조직 및 지휘체계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셋째, 실제 본국에서 동 부대를 지휘하는데 있어 국방장관은 외무장관을 경유하여 지시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²⁹⁾

결국 이 문제는 베트남 현지에 별도의 지휘 기구를 두지 않고, 파병부대의 최선임자인 병원장이 단장을 겸직하고, 이를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주월 한국대사관은 이동외과병원에 대한 지휘권 대신 현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³⁰⁾

2) 베트남 현지에서의 협상

작전지휘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검토 이후 이 문제는 선발대가 남베트남 현지에 가서 결정된다. 당시 선발대는 작전지휘권에 대해 확정된 안 대신 몇 가지 검토안을 가지고 간 상태였다.

한국은 1차 파병과 관련 이훈섭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남베트남에 보냈다. 당시 국방부가

28) 외무부, 「과월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초안(1964. 7. 29)」, 『월남관계철-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14쪽.

29) 「과월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초안에 대한 의견(1964. 8. 8)」, 합동참모본부, 『월남관계철-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28~29쪽.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 1권』, 112쪽.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주월한국대사관 무관이었던 이대용은 파병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본국에 보고하는 문서 등은 자신이 통합해서 보고했다고 증언하고 있음(2015. 6. 1).

선발대에게 부여한 임무는 총 50가지였는데, 이 중 작전분야에서 중요한 사항이 파견부대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파병부대와 남베트남군과의 관계, 파병부대와 MAC-V와의 관계, 태권도 지도요원에 대한 지휘권 문제, 파병부대와 주월한국대사관과의 관계가 포함되었다.³¹⁾

선발대의 베트남 도착 후 개최된 3국 회담에서 남베트남과 미국은 각각 자신들의 통제하에 한국군을 두고자 했다. 남베트남군은 행정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자기들의 운영 통제하에 두기를 희망했고, 미군은 다른 제3국 군대와 같이 미군의 통제하에 둘 것을 제의했다. 선발대는 남베트남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기능적인 면에서 후송수단과 상급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청되고 긴급시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미군측의 의견에 동의하였다.³²⁾

이 무렵 한국 합참에서도 9월 4일 유엔군사령부(UNC)에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통보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당시 UNC는 선발대에 의해 사전에 협조된 바와 같이 한국군 파병부대를 미측 MAC-V의 작전통제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한다.³³⁾

결국 선발대가 베트남 현지에서 검토한 결과 MAC-V의 작전통제를 받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1964년 9월 6일 남베트남 현지에서 체결된 ‘한미실무자급 합의서’ 제1항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1차 비전투부대 파병인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은 MAC-V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다.³⁴⁾ 이후 남베트남측도

31)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방부 파견 선발대장의 현지파견 결과보고 및 관련 참고자료(1964. 8. 26~9. 8 V.1)』(HB02644).

32) 이훈섭, 앞의 책, 107~108쪽.

33)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역사자료(1964. 9. 22)」,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방부 파견 선발대장의 현지파견 결과보고 및 관련 참고자료(1964. 8. 26~9. 6, V.2)』(HB02645).

34) 당시 이훈섭 준장과 MAC-V의 아담스(M. B. Adams) 소장, 오스만스키(F.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나. 2차 파병과 작전지휘권

1) 국내에서의 검토사항

한국은 1차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병이후 군사원조단을 증파하게 된다. 1965년 1월 2일 남베트남이 공병과 수송부대 등으로 구성된 국군의 파견을 공식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³⁵⁾ 한국은 이를 ‘비둘기 부대’로 명명하고 준장을 지휘관으로 총 2000명 규모의 부대를 파병하게 된다.

2차 비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작전지휘권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증파되는 부대가 주월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미군도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계속된 반대로 결국에는 한·미·남베트남 3자간의 정책협의기구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별도의 비밀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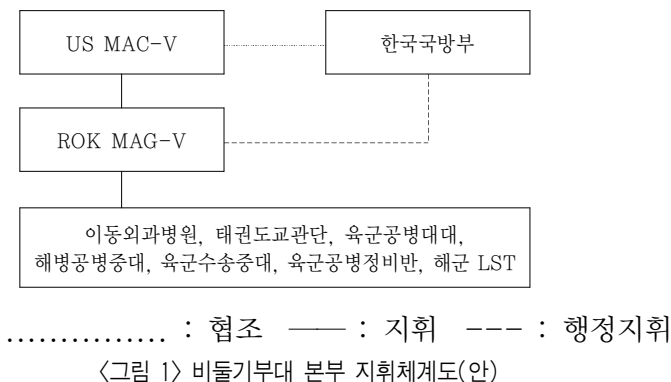
당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는 국내에서의 검토와 베트남 현지에서의 협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내에서의 검토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1964년 12월 27일 합참 작전기획국 주관으로 해외증파에 대한 각군 실무자 회의가

A. Osmanski) 준장 간에 합의된 실무자급 합의서 제1항에는 “주월한국군사지원단은 주월미군사지원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두게 된다”라고 명기되었다. 「한미실무자급 합의서」(HB02645).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 1권』, 771쪽. 당시 남베트남 정부가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을 요청한 것은 남베트남이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요청이었으며, 실제 2차 파병논의는 1964년 12월 18일 브라운(Winthrip G. Brown) 주한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 긴박한 베트남 사태와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훈섭, 앞의 책, 119쪽.

개최되었다. 회의 안건 중 ‘독립된 주월군사원조단 본부 설치’가 있었다. 당시 주월군사원조단 본부 설치 목적은 ‘남베트남에 파견되는 육·해군 및 해병대 각 부대를 통합지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 주월 군사원조단장은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아 주월 한국 육군, 해군 및 해병부대를 통합 지휘 감독한다. 둘째, 주월군사원조단장은 MAC-V 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³⁶⁾



즉 한국 국방부는 주월군사원조단을 행정지휘하고, MAC-V가 한국군사원조단을 지휘통제한다는 것이었다. MAC-V와 한국 국방부는 협조관계에 있다.

이 내용은 1964년 12월 31일 합참 작전기획국 주관 2차 회의에서 다시 확인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군사원조단 본부의 임무는 국방장관의 지시 및 MAC-V 사령관의 현지 작전통제를 받아 주월 한국 육·해군 및 해병대를 통합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³⁷⁾

36)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해외증파에 관한 각군 실무자 1차 회의 (1964. 12. 27)」, (HB02654).

37)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해외증파에 관한 각군 실무자 2차 회의 (1964. 12. 31)」(HB02654).

한국 국방부의 내부검토와 함께 주한미군과의 협조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한국정부는 베트남 증파문제가 제기되자 유엔군사령부와 여러 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던 중 1964년 12월 22일 오후 김종오 합참의장과 해밀턴 하우스(Hamilton H. Howze) 주한미군사령관이 만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공병대대, 수송중대 등 비전투부대 파병 후 이 부대를 MAC-V의 작전통제하에 둘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³⁸⁾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은 12월 29일 한측 합참의장에게 보낸 각서에서 ‘MAC-V 사령관이 2차 파병하게 되는 한국군 부대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고 알려졌다.³⁹⁾ 이는 한국군 작전지휘권에 대해 한·미간에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었다.

2) 베트남 현지에서의 협상

국내에서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검토가 끝난 무렵인 1965년 1월 2일,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의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공한을 이동원 외무장관 앞으로 보내왔다.⁴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선발대를 1965년 1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베트남에 파견한다.⁴¹⁾ 이때 선발대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훈섭 준장이었다. 당시 선발대에 부여된 임무는 20가지 정도였으며, 이 중 작전분야에서는 파병부대의 임무 및 배치 지역, 그리고 지휘권문제가 포함되었다.

38)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종오대장에게 보내는 각서((1964. 12. 25)」,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 1권』, 781쪽.

39) 이훈섭, 앞의 책, 122~123쪽.

40) 이훈섭, 앞의 책, 124쪽.

41) 「국방부 지령 제1호: 월남지원증강을 위한 선발대 파견(1965. 1. 7), 『월남공화국 지원증강을 위한 국방부 파견 선발대장의 현지파견 결과 보고 및 관련 참고자료(1965. 1. 8-1965. 2. 15, V1)』(HB02649).

국내에서 한·미간에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파병부대의 배치지역에 대해 국방부는 사이공(Saigon, 현 호치민시)에 위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한국대사관 및 이전에 파병되어 사이공 인근 봉따우(Vung Tau)에 주둔한 한국군 부대의 지휘를 위하여 가급적 MAC-V와 같이 위치하도록 고려한 것이었다.⁴²⁾ 실제로 2차 파병부대는 사이공 인근의 지안(Dian)지역에 주둔하게 된다.⁴³⁾

1월 13일 선발대는 MAC-V의 웨스트모얼랜드(William C. Westmoreland) 사령관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선발대장 이훈섭은 김종오 합참의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앞으로 증파될 한국군 부대의 지휘권은 주월한국군지휘관에게 있으나, 작전통제권은 MAC-V 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한국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웨스트모얼랜드 사령관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⁴⁴⁾

그러나 한국군 작전지휘권 문제가 순조롭게 타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남베트남측의 강경한 반대 때문이었다. 남베트남은 제3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부대가 배치되는 지역의 남베트남 군단장에게 줄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미 양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 문제는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월미군과 한국 선발대는 조정안으로 3자 대표로서 구성된 3자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에서 부대의 위치, 임무, 운영 등 기본 방침에 관해서 협의 결정토록 하고 해당 지역의 군단장과는

42) 「월남공화국 지원증강을 위한 국방부 파견 선발대장의 현지파견 결과 보고 및 관련 참고자료(1965. 1. 8~1965. 2. 15, V1)」(HB02649).

43) MAC-V의 웨스트모얼랜드 사령관은 비둘기 부대가 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다면 파병과 관련한 한국의 정치적 문제를 자극할지 모른다는 고려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지안을 선정했다고 적고 있다. 웨스트모얼랜드 저, 최중기 역, 『왜 월남은 패망했는가』, 광명출판사, 1976, 296쪽.

44) 이훈섭, 앞의 책, 160쪽.

다만 협조관계에 두도록 주장하며 이를 앞으로도 견지하겠다고 합의했다.

한국 선발대장 이훈섭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군측에 비밀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그 내용은 ‘MAC-V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며, 만약 베트남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든가 미군이 비상철수를 해야 할 경우 MAC-V는 한국군의 안전과 비상철수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⁴⁵⁾

그러나 이에 대해 MAC-V 참모장 스틸웰(R. G. Stillwell)은 비밀약정 문제는 MAC-V 사령관 권한 밖의 일로써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남베트남측의 의견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 논의사항이 베트남측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⁴⁶⁾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주월 미국대사 테일러(Maxwell D. Taylor)는 당시 남베트남의 권력자인 응우웬 칸(Nguyen Khanh) 장군을 직접 방문, 베트남측의 태도를 완화시켜주도록 건의하였고,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전망은 불투명하였다.⁴⁷⁾

작전통제권에 대해 3국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1월 26일 MAC-V 참모장인 스틸웰은 한국군 선발대장에게 미 태평양지구사령부에서 제3국군의 지휘, 통제, 협조에 관한 지침이 왔다고 하면서 이를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①제3국 군대의 지휘권은 해당 정부에서 임명한 군 지휘관에게 있고, ②제3국 군대의 각 구성부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제3국 군대를 위한 군사정책 회의를 개설하며, 이 회의는 3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⁴⁸⁾

45) 이훈섭, 앞의 책, 184~185쪽.

46) 이훈섭, 앞의 책, 187쪽.

47) 이훈섭, 앞의 책, 204쪽.

미 태평양지구 사령부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미군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남베트남 3국간 군사정책회의를 개설해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체제를 강구하겠다는 원칙이었다.

결국 1월 28일 이훈섭 장군은 이 내용을 토대로 남베트남측 수석대표와 만나 작전통제권 문제를 협의한다. 개별접촉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얘기하고, 결국 남베트남 수석대표도 한국측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었다.⁴⁹⁾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당초 한·미가 협의했던 미군에 의한 한국군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3국 협조회의, 즉 국제군사원조(IMA)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 7일 ‘한·월 군사실무자 약정서’를, 2월 8일에는 ‘한·미 군사실무자 약정서’를 각각 체결했다.⁵⁰⁾

그러나 한국은 한·미, 한·월 실무자 약정서 이외에 미국과 비밀협정을 추가했다. 이전부터 한·미간에 논의되던 한국군 작전지휘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 2월 9일 별도의 비밀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군사협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문서는 2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는 2월 8일 양국간 체결된 ‘일반군사협정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2항은 “월남공화국 내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상기 제1항에 명시된 한·미군사일반협정서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불가능케 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 MAC-V는 대한민국 군사지원단장(ROKMAG-V)과 그 예하부대에 대한

48) 이훈섭, 앞의 책, 205쪽.

49) 이훈섭, 앞의 책, 210쪽.

50) 「한·월 군사실무자 약정서」 제3항에는 ‘파병부대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한 군 지휘관에게 있으며, 이 부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체계를 보장키 위하여 이를 위한 국제군사원조(IMA) 방침회의를 설치한다. 이 회의는 남베트남군 참모총장(의장), USMAC-V 참모장 및 ROKMAG-V부대장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한·미 군사실무자 약정서」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⁵¹⁾

당시 미국 대표 스틸웰은 이 문제는 MAC-V 사령관에게는 이런 협정을 체결한 권한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훈섭의 끈질긴 요구에 ‘이 사실이 제3국에 누설되면 안 된다’는 조건부로 군사협정을 체결했고, 이 문서를 1급 비밀로 분류하였다.⁵²⁾

결국 2차 비전투부대 파병 당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는 외형상으로는 파병 한국군 지휘관이 행사하며, 작전통제에 관해서는 IMA 정책회의에서 3자 합의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비상철수 상황시 파병부대의 안전을 고려해 주월미군과 비밀협정을 체결하는 이중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한국군이 매우 실용적인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전투부대 파병과 작전지휘권

가. 국내에서의 검토사항

1965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투부대 파병 논의 후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후 1965년 6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남베트남 수상 명의의 한국군 1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하는 전문이 접수되었다.⁵³⁾

남베트남의 파병요청을 받은 한국정부는 3차 파병, 즉 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검토에

51) 이훈섭과 스틸웰간에 체결된 『군사협정』(1965. 12. 8).

52) 이훈섭, 앞의 책, 224쪽.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 1권』, 772~773쪽.

들어갔다. 3차 파병은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이전의 1·2차 비전투부대 파병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에 따라 3차 파병을 앞두고 작전지휘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2차 파병당시 한·미·남베트남 3자간 협의체제가 구성된 것을 계기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파병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월한국군사령부가 가져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3차 파병을 앞두고 연락장교단이 베트남 현지로 출발할 때 본국에서 내린 지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상하되 안 되면 본국 정부에 떠넘기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갖도록 관철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당한 대가로 타협하겠다는 뜻이었다.⁵⁴⁾

3차 파병을 앞두고 미군도 전투부대의 작전지휘권은 비둘기부대의 작전지휘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미군은 ‘주월한국군은 지휘의 일원화를 위해서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⁵⁵⁾

결국 3차 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파병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에 대한 논의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그렇고 이전 두 차례에 걸친 비전투부대 파병보다 더 큰 난항을 겪게 된다.

이 과정 중 먼저 국내에서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국방부는 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파월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한국 정부가 임명한 지휘관에게 준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파병규모에 걸맞은 통합사령부 설립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⁵⁶⁾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 44쪽.

55) 위의 책, 44쪽.

56) 「국방부 지령 제8호: 월남지원증강을 위한 증파부대편성지침(1965. 6. 28)」, 국방부, 『월남공화국에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국방부 연락장교단의 현지과건

당시 한국 국방부는 작전지휘권에 대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제1방안은 각국 군대로 구성된 연합군사령부를 만들고, 이 연합사령부 지휘하에 주월한국군사령부를 만드는 것이었다. 제2방안은 IMA를 상설화하고 IMA 작전통제하에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설치 운용한다는 것이었다. 제3방안은 주월한국군사령부를 MAC-V의 작전통제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던 3가지 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⁵⁷⁾

<표 1> 작전지휘권에 대한 한국의 3가지 검토안

방안	내 용	장 점	단 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제1 방안	주월 각국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사령부 지휘하에 주월한국군사원조사령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	• 지휘의 일원화 • 전쟁노력의 통합 • 전쟁기획의 참여 • 대외교섭의 용이	• 설치하는데 시일이 소요	• 연합사령부에 한국 군부지휘관 및 주요 참모부에 한국군참모요원 참가보장 • 남베트남 당국과 주월 각군과의 양해성립
제2 방안	IMA를 상설화하고 IMA 작전통제하에 주월한국군사원조사령부를 설치 운용	• 전쟁기획에 참여 • 군사적 협조 용이 • 제도에 숙달	• 지휘결심의 지연 • 전쟁노력의 비효율화	• IMA를 상설화하기 위하여 IMA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 비참여국의 추가 참여
제3 방안	주월한국군사원조사령부를 설치하여 MAC-V 작전통제하에 둔다	• 한미연합작전 숙달 • 효과적인 수수(授受) 기능	• 대의명분이 서지 않음 • 남베트남 측의 불원	• 남베트남측의 양해 • 군사사령부에 부지휘관 및 주요 참모부에 한국군 참모요원 참여

이 같은 내부 검토결과 한국 국방부가 내린 결론은 1방안, 즉 연합군사령부 설치하에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운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결과 보고 및 관련 참고자료(1965. 8-1965. 9, V.1)』(HB02646). 이러한 계획은 1965년 8월 13일 제52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파병이 동의된 이후 나온 국방부 지령 제10호(1965. 8. 16)에서도 확인된다.

57) 합동참모본부,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 『월남공화국에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국방부 연락장교단의 현지파견결과 보고 및 관련 참고자료 (1965. 8-1965. 9, V.1)』(HB02646), 13~17쪽 내용을 토대로 작성.

좋은 방안으로 결정했다. 이것이 지휘의 일원화 및 전쟁노력의 통합이 가능하고 국가적인 위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 남베트남과 협상시 주월연합군사령부 설치를 강력히 교섭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내부적인 논의와 달리 미국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주월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MAC-V 사령관이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작전통제 요구가 처음 확인된 것은 1965년 7월 6일자 주한미군사령부 공한에서다. 당시 공한은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데이비스(B.O Davis Jr) 공군 중장이 장창국 합참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자신들이 입수한 한국군의 베트남 주둔지역, 임무, 작전양상 등의 자료로 미국은 이것을 한국군 파병계획 수립에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한에는 “파월한국군 부대가 배치되면 전투부대는 대한민국의 지휘를 받을 것이나 작전통제는 MAC-V 사령관 또는 사령관이 설치하는 예하 전술사령부의 지시를 받게 될 것”⁵⁸⁾이라고 되어 있었다. 3일 뒤인 1965년 7월 9일 비치(Dwight E. Beach) 주한 미군사령관이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한에서도 작전권에 대한 미국의 같은 요구가 확인되었다.⁵⁹⁾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1965년 7월 (일자미상) 전문에는 현재 파월되어 있는 주월한국군 사원조단의 작전통제는 한·미·남베트남 3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제군사원조(IMA) 기구의 정책회의에서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증파하는 전투부대는 이전의 파견부대와 그 임무나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주월한국군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⁰⁾ 한국이 2차 파병 때에는 한·미간에

58) 「주한미군사령관 공한, 1965. 7. 9.」(HB02646).

59) 「주한미군사령관 공한, 1965. 7. 9.」(HB02646).

60) 「국군부대 월남증파를 위한 참고자료 배부(1965. 7. 21)」(HB02646).

비밀약정까지 체결하며 미국에게 작전통제를 요구했지만, 3차 전투 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결국 한·미간에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계속 이견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5년 7월 12일 한국 합참에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하여 한·미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작전지휘권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미측 대표 랭스톤(Langston) 대령은 비공식적인⁶¹⁾ 참모견해를 전제로 “MAC-V 사령관은 한국군 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 장악을 희망하며, 호주, 뉴질랜드군도 MAC-V 사령관 예하 제173공수여단에 작전상 배속되어 운용 중이고, 비전투 부대 운용은 IMA 통제하에 존속될 것”⁶²⁾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희선 합참 작전기획국장은 주월 한국무관이나 MAC-V 제이매드(Jmad) 대령으로부터 받은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휘권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한·남베트남 양국 정부 및 서울과 사이공 주재 미 대사간에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최종 결정은 정부급에서 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는 국무성에서 담당할 것이고, 다만, 자신들은 군사실무자로서 이를 연구 발전시키는데 불과하다고 대답하였다.⁶³⁾

이 자리에서 손희선 국장은 지휘권 관계는 대의명분과 실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군사면에서는 MAC-V의 작전지휘를 받는 것이 자신의 개인생각으로는 무방하리라고 보지만 대의명분으로 볼 때 남베트남 요청으로 남베트남을 도우러

61) 랭스톤 대령은 공식적인 견해는 데이비스(Davis) 장군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했다.

62) 합참 작전기획국, 「한·미연석회의 회의록(제1차, 1965. 7. 12, 10:45-12:20)」, 합참 작전기획국, 『월남공화국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국방부 연락장교단의 현지 파견결과보고 및 관련참고자료(1965. 8-1965. 9) V2-2』(HB02648).

63) 합참 작전기획국, 「한·미연석회의 회의록(제2차, 1965. 7. 12, 15:30-17:40)」(HB02648).

가는 만큼 남베트남측과 사전 협의 없이 미군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⁶⁴⁾

이에 대한 미국측의 답변은 자신들은 군사면에서 지휘권 관계를 고려할 뿐 정치적 면에서의 지휘권 관계는 대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베트남군측은 연합사령부 설치를 원치 않고 있다’고 했다.⁶⁵⁾ 결국 이날 한·미간의 파병과 작전지휘권에 대한 논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다.

국내에서 한·미간에 작전지휘권에 대한 의견이 대치되는 가운데 8월 2일 주월한국대사관에서 보낸 전문이 도착했다. 전문은 1965년 7월 30일 주월 대사대리가 웨스트모얼랜드 장군과 파병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해 면담한 결과였다. 그 내용은 지휘권과 작전권에 관한 것이었다. 웨스트모얼랜드 장군은 지휘권에 대해서 ‘전투부대 증파 이후 주월한국군사령부는 한국군 전투사단장이 겸직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로서는 한국군이 직접 자신의 지휘하에 들어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⁶⁶⁾ 그러나 작전권 측면에 대해서는 남베트남군과는 별도로 모든 파월외국군을 합쳐서 외국군사령부 설치를 구상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각 외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각국 군대의 지휘관에게 있으며, 미군은 이들 외국군대에 대해 작전권만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베트남군과는 독립된 위치에서 작전상 협조만을 하려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남베트남군과 절충 중이라 했다.⁶⁷⁾ 웨스트모얼랜드의 구상대로라면 한국군은 MAC-V 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남베트남군과는 별도로 작전을

64) 위의 문서(HB02648).

65) 위의 문서(HB02648).

66) 「주월대사 보고(1965. 7. 31)」, 합참정책과, 『월남관계철-2005년 외교부 공개문서』, 178~181쪽.

67) 위의 문서, 178~181쪽.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MAC-V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결국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 시도와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거부 양상은 계속되었고, 이 문제는 연락장교단이 베트남 현지에 파견되면서 현지에서 일단락 나게 된다.

나. 베트남 현지 협상과 작전지휘권 결정

한국 국방부는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 동의요청안이 8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인 8월 18일 연락장교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했다. 1·2차 파병 때에는 ‘선발대’라는 이름이었으나 3차 파병은 전투부대의 파병인 만큼 ‘파월연락장교단’으로 명칭도 바뀌었다. 또한 단장의 계급도 이전까지 준장이었지만 소장으로 격상되어 이세호 소장을 단장으로 6명의 한국군 장성과 미군 고문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⁶⁸⁾

당시 국방부가 1965년 8월 연락장교단에게 부여한 임무의 범위는 “순수한 군사관계사항에 한하여 규제할 것”⁶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부지침 중 지휘권에 대해서는 “주월한국군의 지휘권은 계속 한국정부에서 임명한 대한민국 군 지휘관에게 있으며 작전상의 통제도 동 지휘관을 통하야만 행사토록 할 것”⁷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작전상의 통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부여되었다. 첫째는 ‘주월 각국 군대로 구성되는 연합군사령부(NATO식)가 설치된다면 그 사령부에 지휘권을 둔다. 둘째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8) 연락장교단에는 1, 2차 선발대장이었던 이훈섭 장군도 포함되었다.

69) 「한미 및 한월간 군사실무자약정에 있어서 파월연락장교단장에게 주는 지침 (1965. 8. 16)」(HB02648), 1쪽.

70) 위의 문서, 3쪽.

국제군사원조(IMA) 정책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⁷¹⁾

그러나 국내에서 작전지휘권과 관련하여 한·미간에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이견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은 베트남 현지에서 연락장교단이 직면해야 할 문제였다.

그 시작은 8월 23일 주월미군이 한국군 연락장교단을 대상으로 한 현지 브리핑에서 처음 표출되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측은 한국군 전투부대는 MAC-V 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며, 한국군 부대를 실질적으로 작전지휘하는 것은 남베트남 주재 미 육군 야전사령관이라고 했다. 다만, 이것은 자신들의 ‘제안’에 불과하며 앞으로 연구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이라고 다소 완화된 입장을 피력했다.⁷²⁾

그러나 미국측은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갔다. 한미 군사실무약정 심의를 위한 3자 회의가 열렸던 9월 3일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군사원조 정책회의에서 주요사항에 대해 결정하자는 한국측 안에 대해 미국측 대표 쿡(Cook) 대령은 부정적인 태도로 나왔다. 그는 이 문제는 대사나 정부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되며, 웨스트모얼랜드 사령관에게 문의한 후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미국은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작전과 관련된 지휘기능이 아닌 ‘행정사령부’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⁷³⁾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국의 국내사정, 즉 파병에 대한 야당과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면 국내여론과 정치에 미치는

71) 위의 문서, 3쪽; 이훈섭, 앞의 책, 260쪽.

72) 이훈섭, 앞의 책, 274~275쪽.

73) 이훈섭, 앞의 책, 297쪽.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미·남베트남 3국의 군사대표로 정책회의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⁷⁴⁾

한국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미국측에서도 몇 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미측이 협상대표를 대령에서 준장으로 격상시켜 개최된 9월 5일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작전통제권은 MAC-V사령관에게 위임하되, 주월한국군사령관이 남베트남에 도착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군사원조 정책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대표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미간에 작전지휘권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을 찾기 못하자 한국군과 함께 간 합참 수석고문 블레웨트(Blewett) 대령은 한·미간 비밀각서 교환을 제안하였다. 즉, 작전통제문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양국군 대표가 비밀각서를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었다.⁷⁵⁾ 비밀 각서는 2차 파병당시 한국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한미간에 이루어진 선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다른 사안인 만큼 한국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한·미간에 작전지휘권에 대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는 연락장교단장 앞으로 전문을 보내 이 문제가 절충되지 않으면 미결상태로 귀국하라는 훈령을 내렸다.⁷⁶⁾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이 문제를 한국 현지로부터 넘겨받아 미국과 다른 문제를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작전지휘권 문제를 이용해 다른 협상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⁷⁷⁾ 김성은 국방장관은 ‘서울에서는 미국과 흥정할 일이 많이 있으니 여기서 결론짓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9월 5일 베트남 현지에서는 연락장교단장 이세호와 웨스트모얼랜드 사령관 간에 회담이 이루어졌다. 회담을 요구한 것은

74) 이훈섭, 앞의 책, 298~299쪽.

75) 이훈섭, 앞의 책, 321쪽.

76) 이훈섭, 앞의 책, 326~327쪽.

77) 이훈섭, 앞의 책, 341쪽.

미국이었다. 한국측 연락장교단장과 주월미군 최고지휘관이 만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웨스트모얼랜드는 이세호와 자신 간에 작전지휘권에 대한 비밀협정 체결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세호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거부했고, 이 문제는 신임 주월한국군사령관이 도착해 결론을 짓자며 버텼다. 결국 이 회담이후 웨스트모얼랜드는 주월미군사령관과 주월한국군사령관은 독립된 존재이며, 결코 예속되어 있지 않고, 이는 마치 주월미군사령관과 남베트남군 총참모장의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이 베트남 현지에 도착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⁷⁸⁾

한편 한·미간의 협상이 진행중이던 무렵 남베트남군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세호에 따르면 한·미간에 지휘권 문제가 타결되기 2, 3일전 남베트남군측 작전참모 탄(Than) 소장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측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미군에의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 진의라면 그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세호는 당시 주월미군이 남베트남군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적지 않게 압력을 가했고, 남베트남군을 주월미군의 통제하에 넣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서 한국군을 예속시키려고 애를 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군의 압력에 못 이겨 굴복했다더라면 남베트남군도 미군 지휘하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⁷⁹⁾

결국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한·미간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협상

78) 이훈섭, 앞의 책, 330~331쪽. 당시 이세호는 한국의 입장을 종이에 기구표를 그려가면 설명했는데, 후에 이세호는 이 종이를 ‘가보’로 남기겠다고 했다 한다. 전 주월무관 이대용 증언(2015. 6. 1)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 52쪽. 그러나 이세호와 탄 소장간에 논의된 이 내용에 대한 공식문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은 1965년 9월 6일 ‘한·미 군사실무약정서’로 정리되었다. 이 약정서 제3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파월한국군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한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제4항에는 ‘한국군, 남베트남군, 그리고 US MAC-V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한국군 예하 각 부대의 적절한 통제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국제군사원조기구를 계속 운영한다. (중략) 이 회의의 기본기능은 한국군 각 부대의 임무통제 및 작전지역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으며, 이 기구에서의 결정은 각 정부 대표에게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⁸⁰⁾ 이 4항의 내용은 같은 9월 6일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미군사실무 약정서가 체결되고, 1965년 10월 한국군의 전투 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주월한국군사령관에 임명된 채명신은 남베트남 도착 이후 MAC-V 사령관이 수차례에 걸쳐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본인한테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거부했고, 미군측을 설득해 전투부대 파병과 한국군 작전지휘권 문제는 결론이 나게 되었다.⁸¹⁾ 이후 주월한국군사령관은 1973년 3월 완전 철수시까지 한국군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권에 대한 평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미국측 자료에서도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제10집』, 1985, 672~673쪽.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 82~83쪽. 이에 대해 이훈섭은 채명신은 웨스트모얼랜드 사령관의 요구에 대해 지휘권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미룸으로써 결국 한국군 사령관이 독자적인 지휘를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위의 책, 47쪽.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인 한미간 협상과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미 육군의 베트남전쟁 당시 ‘지휘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에 대한 역사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도표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도표로 US MAC-V Commander와 주월한국군사령부는 협조(Co-ordination)관계이며, 주월한국군사령부와 예하 한국군 부대, 즉 수도사단, 9사단, 해병2여단은 지휘관계로 기술되어 있다.⁸²⁾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수용했을까? 또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과 이를 지원하는 우방국들의 파병이 본격화되는 1965년 4월 초 처음으로 연합지휘체제에 대한 구상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다.⁸³⁾ 이때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자유우방국의 더 많은 참전을 요청했던, 이른바 ‘More Flags’정책으로 전환했던 이후이자 1965년 7월 ‘베트남전쟁의 미국화’를 선언하기 직전이었다.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이었다. 결국 주월미군도 앞으로 우방국 군대의 참전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지휘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주월미군 사령부의 구상은 미군 장군이 지휘하고 남베트남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으로 구성된 미·남베트남군간 작은 연합본부(a small combined US-South Vietnamese headquarters)를 구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MAC-V의 웨스트모얼랜드 사령관은

82) George S. Eckhardt, *Command and Control 1950~1969*,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Army, 1991), p.76, p.83. MAC-V의 지휘에 관한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되어있다. *USMACV Command History*, 1968, Vol. I, p.438; *USMACV Command History*, 1969, Vol. I, p.IV-5.

83) *Ibid.*, p.59.

이것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극도로 민감(extreme sensitivity)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⁸⁴⁾

결국 이후 미군 야전지휘관들은 남베트남군 지휘관들과 전통적인 연합지휘가 아닌 공동작전 또는 대등한(co-operation and coordination) 기반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정보분야에서만 각국 군대간 연합(combined) 또는 통합된(integrated) 노력을 기울였다.⁸⁵⁾

이를 토대로 해 볼 때 주월미군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권 주장을 수용하게 된 것은 미국도 이 문제가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주월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로 참전했던 주한미군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국가들의 군대가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는데 그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파병반대에 대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간에 작전지휘권에 대한 협상은 한국측에 대미협상의 중요한 우위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수용한 배경은 이밖에도 베트남전쟁의 작전적 측면과 파병규모, 그리고 남베트남 당국의 강경한 입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전쟁은 한국전쟁과 같이 전선이 수시로 변화하는 기동전의 성격이 아니었다. 각 부대는 일정한 책임구역(TAOR: Tactical Area

84) *Ibid.*, p.59.

85) 그 결과 4개의 연합정보센터가 꾸려졌는데, 연합정보센터-베트남(CICV: the Combined Intelligence Center, Vietnam), 연합 군사심문센터(Combined Military Interrogation Center), 연합문서개발센터(Combined Document Exploitation Center), 연합장비개발센터(Combined Materiel Exploitation Center)이다. CICV는 정보보고서를 미국과 남베트남 지휘부에 함께 보고했다. George S. Eckhardt, *Op. cit.*, p.59.

Of Responsibility)을 부여받고, 해당지역의 평정(Pacification)작전을 통해 책임구역을 넓혀 나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작전통제의 측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 각 지역의 책임부대간에 작전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작전통제의 문제는 보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참전규모도 한 요인이 되었다. 당시 한국군은 제한적이긴 했지만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군단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초기에는 해병여단과 수도사단에 불과했지만, 이후 9사단과 해·공군부대, 그리고 이를 지원할 군수사령부 등이 추가되면서 파병 규모가 커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필수요소를 구비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의 자신감으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남베트남의 입장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전까지 남베트남과 미군은 각자 독립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과 남베트남이 각기 자신들의 작전통제 받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두 나라가 보였던 작전통제에 대한 견제와 대립은 한국군에게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유리한 구조가 조성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문서상으로 획득했던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실제 작전에서도 제대로 행사하였는가? 사실 전투부대 파병 초기에는 독자적 작전지휘권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한국군은 국내에서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고, 이전까지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다. 또한 1965년의 경우 파병 규모가 1개 사단과 1개 여단에 불과했고, 미군을 통해 각종 군수지원을 받으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미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목상은 작전협조일지라도 현실에서는 작전통제의

성격이 강했다.⁸⁶⁾

여기에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사이공에 위치해 있고, 실제 전투부대가 위치한 곳은 께년(Quy Nhon), 냐짱(Nha Trang) 등 중부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지휘통제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지역에 위치한 주월 미 야전사령부(IFFV)와 협조할 수 있는 한국군의 기구가 부재하였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수도사단은 미 야전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한·미간에 갈등도 표출되었다.⁸⁷⁾

이에 대해 한국군은 사이공에 주둔한 주월한국군사령부는 한·미·남베트남 3국과 정책적인 문제를 협조하게 하고, 전투부대 주둔지 중 한 곳인 냐짱에 1966년 8월 15일부로 야전지휘소를 설치하고, 이후 1968년 6월 1일부로 야전사령부로 증편하여 주월사 부사령관을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⁸⁸⁾ 이로써 작전지역에서 미군 야전사령부, 남베트남군 해당지역 제2군단과 동격의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해 나갔다.

86) 당시 주월사 작전참모였던 손장래에 따르면 전투부대의 파병초기에는 명목상 작전지휘권이 있었지 실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미군은 1966년 10월 추가로 파병되는 백마부대도 직접 장악해 운용하고자 했다고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111쪽.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위의 책, 111쪽.

88) 오홍국,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사령부·직할부대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75쪽.

5.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결정과정을 1·2차 비전투부대와 3차 전투부대 파병으로 구분하여 살펴해보았다.

한국군은 1차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병시에는 주월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았으며, 2차 비둘기부대 파병시에는 외형상으로는 한·미·남베트남이 각각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미국과 비밀협정을 체결해 주월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았다. 이것은 한국군 파병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비전투부대였기 때문에 원활한 임무수행 및 남베트남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파병부대의 안전을 고려한 실리적 차원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3차 파병이었던 전투부대 파병에서는 미국 및 남베트남의 계속된 작전통제 주장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 3차 파병시에는 1·2차 파병부대와 달리 전투부대에 대한 파병이었으며, 국내에서 제기되던 파병 반대라는 정치적 사안, 그리고 한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작전지휘권 획득은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끝까지 이 부분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은 파병 단계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작전지휘권을 주월미군에게 이양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참전의 명분과 더불어 참전의 실익을 극대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및 남베트남과 작전지휘권에 대한 협상을 거치며 작전지휘권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은 미국, 남베트남과 베트남 평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당시 연합군의 편성

방식은 하나의 통합된 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월미군과 남베트남이 각각 독립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병립형 지휘체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정보기능 등 일부부문에서는 연합군들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별 편성 방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한국군은 1차 파병시에는 주월미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기능별 편성방식을, 2차 파병시에는 한·미·남베트남 협정에 따라 파병국가들이 자국의 군대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국가별 편성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2차 파병 때에도 미국과의 작전통제에 대한 비밀협정 체결을 통해 실제로는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는 기능별 편성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3차 파병시에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국가별 편성방식을 따랐다.

이 논문은 기존에 불충분했던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을 파병단계별로 당시 한국정부의 관련자료와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참전자의 증언 및 회고록, 그리고 일부 미국자료를 통해 그 과정을 고찰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파병 당시 한국정부가 작전지휘권에 대한 국내적 논의와 베트남 현지에서 미국과 남베트남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처음 경험하는 해외파병과정에서 정치적, 작전적, 실리적 문제를 유리하게 관철시키고, 결과적으로 당시까지 일방적이었던 한미 동맹관계를 대등한 동맹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⁸⁹⁾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독자적 작전지휘권을 놓고 일부 미국문헌만으로는 당시 미국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시 MAC-V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었고, 그 위로는 미국 국방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파병부대의 작전지휘권이 파병부대의 국가 주권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89) 이 점에서 정수용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당시 작전지휘권에 대한 한·미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서 대해 동등한 동맹국으로서 관계로 변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수용, 앞의 논문, 129~160쪽.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었다는데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의 여지가 있다. 즉, 당시 MAC-V와 태평양사령부, 그리고 미 국방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한·미·남베트남 3국이 각자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베트남전쟁의 성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전쟁은 국군의 건국 이후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파병이었다. 당시 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문제는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군의 용병논란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군의 해외파병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충분한 연구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5.7.8,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베트남전쟁, 주월한국군, 작전지휘, 작전지휘권, 작전통제, 작전통제권,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주월미군, 남베트남, 한·미협상

<ABSTRACT>

A Study on the decision process of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f Korean Forces in Vietnam

Lee Sin-jae

It is well known fact that ROK forces in Vietnam exclusively have their ow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during the Vietnam War. But these rhetoric words are not accurate expression. A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f ROK forces is shown differently by each dispatch stage.

At the 1st and 2nd dispatch stage, 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MAC-V) commander have a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f the ROK forces. At that time, 1st and 2nd dispatch troops were non-combat units. And so the Korea government considered safety measures of the dispatch troops in case that emergent situations occurred in Vietnam.

But, the 3rd dispatch stage was different. In that case, the troops sent to Vietnam were combat ones. the Korea government ha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unlike the 1st and 2nd step. the Korea military HQ in Vietnam demanded its ow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to the United States aggressively.

As a result of continuous and active request, the Korean troops finally obtained their ow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And, the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made the ROK forces's war justification and combat ability improve since that time. Also it has reduced combat damage of them.

ROK forces'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has been changed 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e Vietnam War dispatch process. It can be said that operational authority of ROK forces have changed from unilateral relationship to equivalent relationship.

Key Words : Vietnam War, Korean Force in Vietnam, Operational Command,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perational Control,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MAC-V, US Force in Vietnam, South Vietnam, ROK-US Negotiation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 베트남전쟁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

도미엔*

1. 머리말
2. 베트남 소재 남·북한 자료 개관 및 구성
 - 가. 하노이 시 소재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 나. 호치민 시 소재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 다. 기타 자료
3. 대표적 자료 소개
 - 가. 1951년 호앙 꾸옥 비엣의 북한 방문 회고록
 - 나. 1957년 호치민의 북한 방문 연설 관련 자료
 - 다. 1955~1975년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상황 관련 자료
4. 맺음말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과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한국(대한민국)과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 수료

북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은 각각 수교를 시작하였다.¹⁾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는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1955년부터 형성되었고, 1956년 5월 외교관계가 확립되었다.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1950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확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부터 남베트남에 의료부대와 태권도 교관을 파견했으며, 뒤이어 1965년에 전투부대 파병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북한도 베트남전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즉, 남북한과 베트남의 정치적 연계는 1950년대부터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맺어졌던 것이다.

한반도와 베트남의 연관성은 이렇듯 ① 한국·남베트남 외교 관계수립 및 한국의 베트남 파병 ② 북한·북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2가지 문제들에 대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것이다.

우선, 베트남전쟁이 갖고 있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및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연구, 또한 베트남전쟁기의 한국과 남베트남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활발한 추세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의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시각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지닌다.²⁾ 즉 베트남을 제외한

1) 이하 대한민국은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베트남공화국은 남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북베트남으로 약칭하였다.

2)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한국·남베트남 외교관계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협상 과정-미국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6년 봄호(통권 74), 2006; 안정애,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 관련 국내 자료의 종류와 성격」, 『한국기록학연구』 제9호, 2004. 04; 한홍구, 「한국과 베트남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5호, 서해문집, 2000; 윤충로, 「20세기 한국의 대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7집, 2013 등. 해당 연구성과들은 주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베트남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국가형성 과정을 비교분석한 연구로는 윤충로의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

차원에서의 자료 및 시각으로 한국·남베트남의 관계, 또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살펴보는 접근 방법이란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전개과정, 또한 북한·북베트남 관계와 베트남전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베트남전쟁 당시 전장에서 실종된 한국군이 북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남북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베트남전쟁, 한국·남베트남관계, 특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북베트남 관계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전술했듯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근소한데, 이는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데다 북한과 베트남 자료의 부재로 자료접근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들에 관해 베트남 측 사료의 공개·발굴을 통한 미시적 접근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이 베트남전쟁기의 남북한·남북베트남 각각의 관계와 한국의 베트남 파병,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 관한 베트남 소재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본 연구는 1차 사료의 부재로 인한 한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구의 제한을 타개할 베트남 측 사료의 발굴을 위해 베트남 전쟁 시기(1954년~1975년)³⁾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서 발행된 남북한

사』가 있으나 해당 연구는 베트남 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트남에서 1975년 이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자료의 한계가 있다. 윤충로,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사』, 선인, 2005, 참조.

3)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전쟁기를 1954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정의하였다. 베트남전은 베트남사에서 ‘항미-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불리며, ‘통일전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분단과 통일을 기준으로 한다. 1954년 디엔비엔푸(Diễn Biên Phủ) 전투를 끝으로 프랑스가 물러난 뒤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베트남 지엠 정부는 통일선거를 거부하며 통일운동세력을 공산당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한편, 1954년부터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였고, 1955년부터 남베트남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보호는

관련자료를 포함, 베트남국립자료센터(National Archives Center) 소재 자료 및 기타 베트남 도서관의 자료들을 소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관찬사료는 주로 베트남정부의 내무부 직속 국가문서보관국(State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에서 관리 및 보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1, 2, 3, 4 국립자료센터가 있다. 해당 자료센터들은 2001년부터 자료 열람을 허용했으며 내·외국학자들, 특히 미국학자들이 소재 자료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⁴⁾

제1, 2, 3, 4 국립자료센터는 자료를 시기별·지역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 국립자료센터는 베트남의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의 자료를 보관하며,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북중부에 위치한 꽝 빙(Quảng Bình) 성부터 북쪽 구역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3 국립자료센터는 지리적으로는 제1 센터와 동일한 구역을 공유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식민지시기 이후, 즉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4 국립자료센터에는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의 자료, 또한 현재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의 자료,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꽝 빙(Quảng Bình)

베트남 남북 모두의 군사 동맹 가입을 제한한 제네바 협약을 위배한 것이며,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베트남인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네바 협정에 의거한 베트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비폭력투쟁 진행이 ‘항미-조국통일전쟁’의 시작이었다. 1973년 평화협정 이후에도 베트남은 통일되지 못했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공화국의 항복으로 비로소 전쟁이 종결되었다.

- 4)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자료를 활용한 베트남전쟁 관련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Pierre Asselin, *Hanoi's road to the Vietnam War, 1954~1965*(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Lien-Hang T.Nguyen, *Hanoi's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War for Peace in Vietnam, The New Cold War History Series*(Chapel Hill: UNC Press, 2012); Ku Su Jeong, 『Mỗi Quan hệ Việt-Hàn trong và sau chiến tranh của Mỹ tại Việt Nam(1955~2005), Đại học Quốc gia TP Hồ Chí Minh, Đại học KHXH và NV, Luận án Tiến sỹ Lịch sử, Hồ Chí Minh 2008 [구수정, 『베트남에서 일어난 미국의 전쟁과 그 이후 한·베 관계 (1955~2005), 박사학위논문, 호치민 국립 대학교 인문사회대 사학과, 2008.] 등.

성과 접경한 께 쩌(Quảng Trị)성부터 빙 투언(Bình Thuận)성까지, 그리고 테이 응우옌(Tây Nguyên)의 구역(주로 베트남의 중-남 중부구역)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 국립자료센터는 지리적으로 빙 투언(Bình Thuận)성과 테이 응우옌(Tây Nguyên)과 접경한 동 나이(Đồng Nai)성부터 남쪽 구역까지의 자료, 시기적으로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 베트남공화국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1, 2, 3, 4 국립자료센터 중 제2, 제3 자료센터는 베트남전쟁 시기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두 센터에서는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시기,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 또는 기관·조직들이 그 활동 과정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즉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발행한 베트남 자료 및 남북한정부 관련 문서들은 제2와 제3 자료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해당 자료센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남북베트남정부와 남북한정부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저장소이고, 때문에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⁵⁾

그 외에,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베트남 전쟁 시기 남·북 베트남정부가 발행한 신문 자료, 회고록, 저서 등을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베트남의 각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전쟁 시 북베트남 및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발행한 신문 자료, 회고록, 저서 등은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과 ‘베트남군대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

5) 베트남국립자료센터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료 열람을 위해서는 방문 시 신분증 혹은 여권을 제출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에 대한 승인 이후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단,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가 필요하며 학교 혹은 기관의 추천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베트남 국가문서보관국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archives.gov.vn>).

에서 보관되어 있다. 한편, 베트남전쟁시기 남베트남에서 발행된 신문자료 및 연구성과, 저서 등은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종합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에서 보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각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련 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2. 베트남 소재 남·북한 자료 개관 및 구성

가. 하노이 시 소재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하노이에 위치한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는 국가문서보관국(State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의 4개의 국립 자료 센터 중 하나로, 1995년에 세워진 베트남에서 가장 큰 자료 센터이다. 이곳에서는 개인 및 중앙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 과정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보관된 자료의 범위는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중부에 위치한 꽝 빙(Quảng Bình) 성부터 북쪽 구역까지이고, 시기적으로는 베트남민주공화국(1945~1975년),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들이다. 즉 베트남민주공화국(즉, 전시 북베트남정부)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바로 이 제3 센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센터는 1950~1970년대 북베트남정부와 북한정부의 관계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제3 국립자료센터에 보관된 자료들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창건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설립된 중앙기관, 정부 기관의 부서, 분과(지부),

각 조직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보관한 자료는 수십 년 동안 베트남국가의 창건, 건설, 독립 투쟁 과정에 대한 전체적·객관적·실질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3 국립 자료센터의 자료는 ① 행정 자료, ② 과학기술 자료, ③ 사진, 녹음, 비디오 자료, ④ 개인적 차원의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행정 자료의 수량은 총 246문서군이며, 제3 국립자료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자료들은 1차 사료이며, 호치민과 여러 지도자들의 자필원고나 필적이 있는 자료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행정 자료 중 제일 중요한 자료들은 베트남정부의 최고 기관인 국회가 발행한 자료이며, 이는 ‘국회 문서군(phông Quốc hội)’에 배치되었다. ‘국회 문서군(phông Quốc hội)’에는 1946년부터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제1차 국회 총선거에 대한 문서, 자료가 보관되어있으며, 그동안 열린 국회 회의에 대한 서류, 1975년 통일협상회의에 대한 서류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국회 문서군’의 자료는 전반적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가 법률을 작성하여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적 활동 자료들이 모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출처의 1945년부터 생산된 자료들은 제3 국립자료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며, 그 규모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총리관저 문서군(phông Phủ thủ tướng)’에 배치되었으며 이 문서군은 경제-교육-행정-문화 등과 같은 베트남의 모든 사회분야, 또한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정부수립 정책, 전쟁 시 정책까지 포함함으로써 그 분야와 내용 역시 다양하다. 이외에 제3 자료센터는 내무부, 공업(산업)부, 농림부, 교통부, 교육부 등의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행정 자료 구성은 문서군>폴더(Folder, 서류철)로 나누어 있다. 자료 열람 및 검색은 전자화되어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 검색 시스템이 2014년까지는 잘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자료목록책(Index Book)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문서군의 목록책 안에 기록된 폴더(Folder)의 제목으로 찾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직접 관련자료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또한, 제3 센터는 베트남 내무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 열람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 특히 당시 기밀정보자료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시기 북베트남 정부와 북한정부의 합작 및 북·베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자료들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약 500폴더가 있다. 폴더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각각 배치되었다.

1)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

제3 자료센터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총리관저에서 발행한 자료들이며, 베트남 전쟁 시기 북한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첫째로는 문화예술 부문으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교류 활동에 대한 문서들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부문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과학기술, 농·어업, 조선(造船)업 등과 같은 분야의 합작·협력 및 경험 교류에 대한 문서이다. 그리고 경제 부문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상품 교환 및 무역에 대한 계획서 및 체결 협정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기록 부문에서는 북한 주민의 베트남 체류자격 발급 및 그 연장 관련 문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지도, 양국의 단체 및 조직들의 상호 방문 및 시찰에 대한 문서 및 보고,

베트남전쟁 시기 북베트남에게 도움을 준 북한 전문가에 대한 공적(功績) 훈장 수여 제의 및 그 명령 관련 문서(1960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9년, 1970년, 1971년, 1974년)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관련 부문은 베트남에 북한이 지급한 지원금 및 상품 관련 보고서 등이다.

2) ‘국회(Quốc hội)’ 문서군

제3 자료센터의 ‘국회(Quốc hội)’ 문서군은 1945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국회(Quốc hội)가 발행한 자료들이며, 베트남전쟁기 북한 관련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과 북베트남 국회의원들의 상호 방문 및 시찰에 대한 문서 및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둘째, 북베트남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교환한 문서, 편지, 헌사(하장) 등이며 여기에는 북베트남 국회가 요청·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입장을 다룬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요청·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북베트남의 입장이 적힌 문서도 여기에 속하며,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관련된 자료의 비중이 비교적 많다. 해당 문서군의 몇몇 문서들은 한글로 작성되었다.⁶⁾

3)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

베트남 전쟁기 북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를 필요로 했으며, ‘전문가 관리국’은 주로 이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제3 자료센터의 ‘전문가 관리국

6)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베트남 국회에 발송한 한글 문서는 한국 학계에게 연구 활용성이 높은 자료이며 이 문서들 중 한 문서를 첨부하였다. 부록의 <그림 3> 참조.

(Cục Chuyên gia)’라는 문서군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라는 기관이 발행한 자료들이다. 베트남 전쟁 시기 북한 관련 자료들은 이렇듯 북한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활동과 생활에 대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파견된 북한전문가들에 대한 기록은 제3 자료센터의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에 남았고, 전문가들은 주로 북베트남의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파견되었다. 북베트남의 교통 및 운송부(조선소), 북베트남의 수리부, 북베트남의 라디오 방송국, 북베트남의 문화부, 북베트남의 공업(산업)부이었다.

4)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 문서군

제3 자료센터의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라는 문서군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라는 기관이 발행한 자료들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주로 정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해당 문서군에 포함된 자료들은 주로 1950년대부터 1975년까지의 과학기술, 농·어업 부문에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협력 및 활동에 대한 것들이었다.

나. 호치민 시 소재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는 호치민시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문서보관국 소속 4개의 국립 자료센터 중 하나인 제2 자료센터는, 앞서 소개한 제3 센터와 함께 베트남에서 가장 큰 자료 센터이다. 제2 자료센터는 각 개인 또는 기관,

조직 활동 과정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이다. 보관된 자료의 범위는 지리적으로는 베트남의 남부 입구(入口)에 위치한 동나이(Đông Nai) 성부터 남쪽 구역까지의 자료이고 시기적으로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 베트남공화국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까지의 자료이다. 제2 베트남 국립 자료센터는 베트남공화국(즉 전시 남베트남정부, 1955~1975년)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하는 데이터 센터로,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정부와 한국정부의 외교관계 및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장소이다.

제2 국립자료센터는 총 55문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행정 자료, ② 과학기술 자료, ③ 사진, 녹음, 비디오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자료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 베트남 공화국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 남부베트남의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 관찬자료이다. 다음은 행정자료의 대표적 문서군들이다.

- 남부 총독(Thống đốc Nam kỳ)⁷⁾
- 정부 대표기관(Toà đại biểu Chính phủ)⁸⁾
- 베트남공화국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Việt Nam Cộng hoà)
- 제1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Việt Nam Cộng hoà)
- 제2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ị Việt Nam Cộng hoà)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자료 구성은 문서군 > 폴더(Folder,

7) 식민지시기 남부의 총독

8) 제1 베트남공화국시기 남베트남은 4구역으로 나뉘었으며, ‘정부 대표기관’은 각 구역의 행정관리 기관이었다.

서류철)로 나누어져 있다.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은 전자검색으로 가능하며,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로 필요한 단어와 주제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폴더의 번호 및 문서군의 제목이 나온다.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특징은 특별한 자료를 제외할 경우 거의 모든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남베트남정부의 기밀정보자료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한 것이 주목된다.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베트남전쟁기 남베트남 정부와 한국정부의 외교-경제-군사 관계에 대한 대표적 문서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약 300폴더가 있다. 폴더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각각 배치되었다.

1) ‘베트남공화국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해당 문서군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의 남베트남의 총리 관저에서 발행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베트남의 행정, 경제, 국방, 외교, 정치 자료를 포함한다. 베트남전쟁기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1965~1973년 한국 군대의 파병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군과 한국군의 합동 전투에 대한 보고서 및 한국군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 제의 및 명령 관련 문서(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들이 있다. 둘째, 행정적 처리와 관련하여 1950년대 후반~1975년 한국인의 남베트남 체류자격 발급 및 연장 보고서가 포함된다. 셋째로 경제 교류 분야에는 1950년대 후반~1975년에 이르기까지 농업, 은행, 시설, 건설 분야 등에서 남베트남과 한국의 교류 보고서 및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기술 협력 조약문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외교 및 정치 부문에는 1950년대 후반~1975년까지의 남베트남과 한국의 개인, 단체, 조직들 간 방문 및 시찰 현황 보고서, 1964~1967년 한국과 남베트남이 참여한 아시아 반공연맹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2) ‘제1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해당 문서군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가 발행한 행정, 경제, 국방, 외교 자료를 포함한다. 베트남전쟁기 대한민국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1957년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êm) 대통령의 한국 방문 보고서,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 보고서,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남베트남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 교환한 문서, 편지, 헌사(하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1960년과 1961년에 발생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전후 동태에 대한 주한남베트남 대사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3) ‘국가지도위원회(Uỷ ban lãnh đạo Quốc gia)’ 문서군

1963년 남베트남 쿠데타 이후, 남베트남정부는 1967년까지 군사정부였다. 군사정부는 1965년에 국가지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이는 1967년까지 존속하였다.⁹⁾ 해당 문서군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국가지도위원회가 발행한 문서들을 포함한다. 베트남전쟁기 대한민국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65~1967년 사이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 군대 파병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의 군대와 한국군의 합동 전투에 대한 보고서, 한국군에 대한 훈장 수여 제의 및 명령 관련

9) 국가지도위원회는 총리와 같이 국가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서(1965년, 1966년, 1967년)이다. 둘째로 외교·정치 부문에서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에 대한 보고서, 1966년 한국 민중당 총재 박순천과 대변인 김대중의 남베트남 전선 방문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된다. 해당 문서군에는 1966~1967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군사-문화 조약에 대한 보고서 역시 포함되어 있다.

4) ‘제2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ị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해당 문서군은 1967년부터 1975년까지의 베트남공화국 대통령 관저에서 발행한 행정, 경제, 국방, 외교 자료를 포함한다. 베트남 전쟁기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외교·정치 부문에서는 1967~1975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교환한 문서, 편지, 헌사(하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1969년 남베트남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의 한국 방문 보고서가 주목된다.¹⁰⁾ 한편, 1968~1969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심리전위원회 설립에 대한 보고서, 1968~1974년 한국의 정치 상황 및 대외 정책에 대한 보고서(한국의 정치상황, 반정부시위, 한미관계 문제, 남북한 관계 문제 등)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1967~1973년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활동과 철수를 다룬 보고서 9편이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1967~1975년 농업, 은행, 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 문서 및 보고서가 포함된다.

10) 1969년 응우옌 반 티에우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문서들 중 하나를 첨부하였다. 부록의 <그림 4> 참조. 한편, 응우옌 반 티에우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서류철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 문서들 중 하나를 첨부하였다. 부록의 <그림 5> 참조.

다. 기타 자료

1) 신문 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남북한과 관련해 발행된 베트남의 신문 자료는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과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에서 발행된 신문을 포함한 것이다.

첫째,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베트남(1945~1975년)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1976년~현재)이 발행한 신문들 중 베트남전쟁 시기를 대표하는 『인민신문(Báo nhân dân)』이 있었다.¹¹⁾ 『인민신문(Báo nhân dân)』에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1964년부터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자 한국군에 대한 내용도 신문에 보도되었다. 한편,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 또한 북한과 관련된 내용 역시 신문에 보도되었다. 『인민신문(Báo nhân dân)』의 원본은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에 보관되어 있다. 베트남국립도서관은 베트남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며 베트남의 모든 분야의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이다. 이곳에는 신문 외에도 북베트남 및 현재 베트남이 발행한 저서, 회고록, 연구성과들이 보관되어 있다. 베트남국립도서관의 웹사이트(<http://nlv.gov.vn>)에서는 해당 문서들의 제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인민신문』의 신문목록 및 일부 연도의 원문들이 pdf파일로 보관되어 있다.(1951년, 1954년, 1961년, 1968년, 1971년, 1975년, 1979년)

그 외에,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방부가 출판한 신문으로는 베트남전쟁 시기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이 대표적이다.¹²⁾ 베트남전쟁 당시

11) 『인민신문(Báo nhân dân)』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nhandan.com.vn>)를 가지고 있으나 2000년 이전의 기사 및 신문목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12)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은 홈페이지(<http://www.qdnd.vn>)를 가지고 있으나 2005년 이전의 기사 및 신문목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은 북한인민군대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고, 한편으로, 1964년 한국의 베트남 파병 이후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내용도 보도하였다. 특히 남베트남에서의 전쟁상황 및 한국군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핵심내용이었으며, 한국군이 북한으로 이양된 사실도 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되었다.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의 원본은 ‘베트남군대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에 보관되어있다.¹³⁾

둘째,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이 발행한 신문은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 및 베트남전에 한국의 파병에 관한 자료이며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할 자료이다.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 종합 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이 그 대표적 장소이다.¹⁴⁾ 호치민 종합도서관의 소장자료들 중 베트남전쟁기 한국에 관한 대표적인 신문들은 『두억냐 남(Đuốc nhà nam)』, 『띤 상(Tin sáng)』, 『띤 히에우(Tim hiếu)』, 경제신문인 『쩐 흥 긴 떼(Chấn hưng kinh tế)』 등이 있다. 해당 신문들은 당시 한반도의 분단 상황, 한국의 경제·사회,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문제까지 다뤘다.

13) 베트남군대도서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방부의 도서관이며 국방부가 출간한 자료를 보관하는 도서관이다. 자료는 전자검색이 가능하지만,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로만 가능하다. 해당 장소에서 『인민군대신문』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베트남군대도서관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thuvienquandoi.vn>.

14) 호치민종합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은 1975년 이전 베트남공화국의 국립도서관이었으며 통일 이후 베트남공화국 시기와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호치민종합도서관의 웹사이트(<http://www.gslhcm.org.vn>)를 통해서 저서, 논문, 신문 등의 제목을 검색할 수 있으나, 베트남공화국(1955~1975년)이 발행한 자료인 경우에는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계획서가 필요하며, 학교 혹은 기관의 추천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회고록, 저서

베트남전쟁기 북베트남이 발행한 남북한 관련 자료들은 저서와 회고록들이 대부분이며, 그 양이 상당하다. 주로 북베트남과 북한의 공동연대, 한국전쟁, 또한 북한의 정치, 교육, 문학, 예술, 경제 부문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 북·베 공동연대의식 형성 과정에 관한 저서 및 회고록들은 1950년대부터 생산되었다. 이 저서들을 통해 당시 북베트남정부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로 나온 저서는 1952년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와 화이 타인(Hoài Thanh)의 회고록인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서의 한 달]』이었다.¹⁵⁾ 또한,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으로 하노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된 이후, 1955년 8월 7일 백남운¹⁶⁾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인민 대표단’과 인민 군대예술단이 처음으로 하노이를 방문하였고, 『Những ngày ở Hà nội của đoàn đại biểu Triều Tiên [조선대표단이 하노이에 체류하는 시간]』이 출판되었다. 이 사진첩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조선 인민 대표단’과 인민 군대예술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⁷⁾

15)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호앙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16) 북한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9월 교육상, 1952년 과학원 원장, 1956년 민주과학협회 위원장, 1961년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1969년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거쳐 1974년 조국전선 의장을 지냈으며, 1979년 사망하였다.

17) 『Những ngày ở Hà nội của đoàn đại biểu Triều Tiên』, Sở văn hoá Hà Nội, 1955. [저자 미상, 『조선대표단이 하노이에 체류한 시간』, 하노이: 하노

한편, 1950년대 아동문학과 조선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베트남의 문학가들은 작품을 발간하거나 북한의 문학작품을 번역하였다. 대표적으로, 1953년 출판된 『Phác Kim Tố, em thiếu nữ du kích Triều Tiên [팍 김 토, 조선의 유격 소녀]』가 있는데, 이는 응우옌 쑤언 싸인(Nguyễn Xuân Sanh) 시인이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꼬마 애국자”를 주제로 1953년에 발간한 아동 소설이다. 또한 1954년에 나온 『Triều Tiên chiến đấu : Thơ Triều Tiên [조선의 전투: 조선의 시]』라는 북한의 시집은 베트남의 유명한 시인 황 쯡 통(Hoàng Trung Thông)에 의해 번역된 것이다.¹⁸⁾ 문학과 예술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1960년대, 1970년대 전반까지 북한의 농업·공업의 발전 경험, 또한 북한의 교육 시스템 등에 관련한 많은 저서들이 출판되었다.¹⁹⁾ 특히 1960년대 중반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선을 확장하여 북베트남 폭격을 시작한 시점부터 북베트남은 미국

이 복지문화국, 1955년]. ‘저자 미상’이라는 의미는 저자를 알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책이기 때문에 저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18) Nguyễn Xuân Sanh, 『Phác Kim Tố, em thiếu nữ du kích Triều Tiên』, NXB Ngành văn nghệ trung ương, 1953(Sách kim đồng), số 5 [응우옌 쑤언 싸인, 『팍 김 토, 조선의 유격 소녀』, 하노이: 문예 출판사, 1953 (아동책), 제5호]; Triệu Cơ Thiên, Kim Thường Ngộ 『Triều Tiên chiến đấu : Thơ Triều Tiên』, Hoàng Trung Thông dịch. H. : Văn nghệ, 1954. [조시천(趙基天), 김상오(金尙午), 『조선의 전투: 조선의 시』, 황 쯡 통 옮김, 하노이: 문예 출판사, 1954.].
- 19) Trần Phong, 『Nông thôn Triều Tiên trên đường hợp tác hoá』, H. : Phổ thông, 1959 [전 풍, 『조선의 농업합작화』, 하노이: 보통 출판사, 1959]; Võ Thuần Nho, 『Một số kinh nghiệm giáo dục của Cộng hoà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H. : Giáo dục, 1962 [보 투언 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경험』, 하노이: 교육 출판사, 1962]; 『Hệ thống quản lý công nghiệp của Triều Tiên』, - H. : Sự thật, 1966 [저자 미상, 『조선의 공업관리시스템』, 하노이: 진실 출판사, 1966]; Nguyễn Ngọc Tuấn, 『Công cuộc công nghiệp hoá xã hội chủ nghĩa ở nước cộng hoà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H. : Khoa học xã hội, 1970. [응우옌 응옥 두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공업화』, 하노이: 사회과학 출판사, 1970.].

과의 전쟁을 이미 경험했던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북한이 겪었던 ‘항미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책들이 출판되었다.²⁰⁾

이 책들을 통해 당시 북베트남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시각을 가졌는지, 또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분위기와 그 인식의 배경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저서들은 현재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베트남군대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각 도서관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베트남 소재 자료들뿐 아니라 북한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해당 자료들은 주로 북한의 외문(外文) 출판사가 베트남어로 발행한 저서들이었으며, 내용은 주로 김일성의 인생과 사업, 북조선노동당 관련 자료 및 북한의 선전자료들이었다.²¹⁾

이렇듯,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회고록 및 저서들은 북베트남에서 활발히 출판되었으나, 베트남 전쟁기에 남베트남에서는 한국 관련 회고록이나 저서가 거의 집필되지 않았으며 그 비중이 비교적 적다. 북베트남과 북한 간에 활발한 문화 교류 활동, 자료의 수집 및 교환이 이루어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사회주의공동체의 보편적 특징에 기인한다. 실제로, 자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소련과 중공을 위시한 “형제국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도입하려는 북한의 대외 전략은 1955년에 개시되어 그 이후 본격적인

20) Viện nghiên cứu Lịch sử thuộc viện Hàn lâm khoa học nước CHDCND TT, 『Lịch sử cuộc chiến tranh chính nghĩa giải phóng tổ quốc của nhân dân TT』, Lê Anh - Hồ Phan - Võ Nam dịch, NXB Quân đội nhân dân, 19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연구원,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역사』, 레 아인, 호 판, 보 남 옮김, 하노이: 인민군대 출판사, 1965.].

21) Kim Nhật Thành, 『Báo cáo Tổng kết công tác của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Lao động Triều Tiên (tại Đại hội Đảng Lao động TT lần thứ 5 năm 1970)』, Bình Nhưỡng, Ngoại văn, 1971. [김일성,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활동 보고』, 외문(外文) 출판사, 평양, 1971.].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²²⁾

3) 연구 성과

베트남전쟁 시기 한반도 관련 베트남의 연구성과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서 발행된 연구성과 및 현재 베트남의 연구성과를 포함한 것이다. 우선, ‘호치민종합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의 DB에 보관된 베트남전쟁 시기 남북한에 관한 남베트남의 연구성과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1970년대에 나온 학사학위논문 2편이 있다. 한국의 대외정책 및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된 두 연구는 한국·남베트남의 관계, 또한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당시 남베트남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²³⁾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저서들은 북베트남에서 활발히 출판되었지만, 북베트남에서 한반도에 관해 발행한 연구논문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다. 실제로, 당시 북베트남의 중심부 하노이에까지 미국의 폭격이 미쳤을 정도로 전쟁이 치열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연구 현황이 미흡한 것은 당연하였다.

남북한 관련 현재 베트남의 연구성과는 최근까지 파악한 결과 총 18편이 있으며 주로 ① 한국·남베트남의 관계²⁴⁾, ② 한국의 베트

22) 송영, 『월남일기』,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53~254쪽, 윤대영, 「1950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제87집, 2013. 6, 199쪽에서 재인용.

23) Nguyễn Trung Quang, 「Tiến trình dân chủ tại Đại Hàn」, Sài Gòn : Học viện Quốc gia Hành chánh, 1972 [응우옌 중 광, 「대한에서의 민주주의 경과」, 학사학위논문, 국립행정연구원, 사이건, 1972]; Nguyễn Thị Ngọc Oanh, 「Chính sách đối ngoại của Đại Hàn」, Sài Gòn : Học Viện Quốc gia Hành chánh, 1974. [응우옌 티 응옥 와인, 「대한의 대외정책」, 학사학위논문, 국립행정연구원, 사이건, 1974.]

24)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Ku Su Jeong, 「Mối Quan hệ Việt-Hàn trong và sau chiến tranh của Mỹ tại Việt Nam (1955-2005)», Đại học Quốc gia TP Hồ Chí Minh, Đại học KHXH và NV, Luận án Tiến sĩ

남전 파병²⁵⁾, ③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공군 파견²⁶⁾, ④ 남북한 관계에 대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연구 저서들이다.²⁷⁾ 이 중 주목할 점은, 베트남 국방부의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북한의 공군 파견에 대한 주제를 살피는 연구성과가 존재했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해당 자료들은 베트남학계의 연구성과에 나타난 베트남 전쟁의 특징과 남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베트남학계 및 베트남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2차 자료들이다.²⁹⁾

Lịch sử, Hồ Chí Minh 2008 [구수정, 「베트남에서 일어난 미국의 전쟁과 그 이후 한·베 관계 (1955~2005)」, 박사학위논문, 호치민 국립 대학교 인문사회대 사학과, 2008] 등.

- 25)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Lê Đức Hạnh, 「Cuộc chiến đấu của quân và dân ta chống quân Hàn Quốc trên chiến trường Quân khu 5 (1965~1973)」, Luận án Tiến Sỹ Lịch sử, Viện Lịch sử Quân sự Việt Nam, 2014 [레 득 하인, 「제5군구전투장에서의 한국군과 전쟁 (1965~1973)」, 박사학위논문, 베트남군사역사연구원, 2014]; Bộ quốc phòng, Viện lịch sử Quân sự Việt Nam, 『Quân đồng minh Mỹ trên chiến trường miền nam Việt Nam (1964-1973)」, NXB Quân đội nhân dân, Hà Nội, 2009 [국방부, 베트남군사역사연구원, 『남베트남전투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군(1964~1973)」, 하노이: 인민군대 출판사, 2009] 등.
- 26)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Nguyễn Thị Mai Hoa, 『Các nước XHCN ủng hộ Việt Nam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NXB Chính trị QG, 2000 [응우옌 티 마이 화, 『사회주의국가들의 베트남항미전쟁 지원(1954~1975)」, 하노이: 베트남국가정출판사, 2000] 등.
- 27) 대표적 연구성과들로는 Nguyễn Thị Giang, 「Quan hệ CHCDND Triều Tiên và Hàn Quốc (từ năm 1948 đến nay)」, Luận văn Thạc sỹ khoa học Lịch sử, ĐH Sư phạm Hà Nội, 1999 [응우옌 티 장,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 1948년~현재」, 석사학위논문, 하노이 사범대학교 사학과, 1999] 등이 있다.
- 28) 베트남 국방부 자료보관센터의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은 군인에게만 주어지며, 일반인은 관람이 불가.
- 29) 베트남 전쟁 시기 남북한 관련 베트남의 연구성과의 구체적 내용 분석과 관련해서는 “도미엔, 「베트남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 베트남 전쟁 시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2015. 6.” 참조.

3. 대표적 자료 소개

본 연구는 베트남이 보유한 대표적 자료, 문서들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과 베트남 자료들의 부재로 인한 근본적 한계들로 인해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북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소한 상황이며,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베트남 소재 자료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하 소개하는 3가지 자료는 각각 북·베 관계의 형성 과정 및 그 양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반영하므로, 상당한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가. 1951년 호앙 꾸옥 비엣의 북한 방문 회고록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할 때부터 북한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의 원칙을 지켜 북베트남 측에 서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실제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감은 한국전쟁을 통해 1950년부터 형성되었으며, 이후 양국의 관계는 공고해졌다. 이렇게 형성된 1950년대의 연대의식은 1960년대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기초로 작용했기 때문에 북한·북베트남 관계, 또한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문제를 살펴볼 때는 북·베 공동연대의식 형성 과정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50년대에 생산된 베트남 자료들이 아주 중요하며, 이하 소개할 1951년 호앙 꾸옥 비엣의 북한 방문 회고록과 같은 자료가 대표적

30)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남기정 옮김, 창비, 2014, 155쪽;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亞細亞研究』 Vol.46 No.4, 2003, 230쪽.

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이 아직 치열했던 시기인 1951년 베트남중앙노동당 위원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³¹⁾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인민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방문 이후 회고록이 출판되었다. 현재 베트남국립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³²⁾은 주로 호앙 꾸옥 비엣과 화이 타인³³⁾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고, 한 달 동안 머물며 38선이 위치한 지역까지 시찰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북베트남인민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했고, 북베트남인민대표단은 북한정부, 군대, 인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한다.³⁴⁾

실제로 1950년대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전개된 정치상황은 시기적으로 첫째, 한국전쟁의 시작 및 종결, 둘째,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전개 및 종결, 마지막으로 베트남전쟁(즉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

31)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1905~1992)은 베트남의 정치가로서, 1951년 베트남중앙노동당 위원, 베트남중앙노동당의 정치부 위원(베트남노동당의 핵심위원), ‘인민 동원 및 선전 위원회(ban Dân vận)’ 의장, 베트남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주석, 1960년 베트남 대검찰청 검찰총장, 베·중 우호회 회장, 1977년 베트남조국전선(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포함) 중앙위원회 주석을 지냈다.

32)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호앙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33) 화이 타인(Hoài Thanh)(1909~1982)은 베트남의 유명한 문학 비평가이며, 1950~1956년 베트남중앙노동당 전선위원회 문예위원회(ban Văn nghệ Ban Tuyên huấn Trung ương) 의장을 지냈다.

34)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p.47. [호앙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47쪽.].

선에 있는 한 달』은 베트남에서 최초로 생산된 당시 북베트남정부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들의 회고를 통해 우리는 초기 북한·북베트남관계의 특성을 볼 수 있으며, 1950년대 초반 북베트남·북한관계의 시작은 공동연대의식에서 출발한 반(反)제국주의 의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에서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반(反)제국주의 공동연대의식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서술되어 있는데, 북한이 미군에 총격(銃擊)을 가한 것은 바로 베트남이 미군과 프랑스군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 같으며, 반대로 베트남이 미국과 프랑스군에 총격을 가한 것은 바로 북한이 미군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 같다는 내용이었다.³⁵⁾ 즉 양국은 모두 베트남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을 똑같이 “반침략제국 항쟁”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두 전쟁이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북베트남의 관심의 범주는 ‘한국전쟁이 베트남에 어떠한 경험으로 남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pp.5~7. [호앙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5~7쪽.].

나. 1957년 호치민의 북한 방문 연설 관련 자료

DIỄN VĂN CỦA HỒ CHỮ TỊCH
ĐỌC TRONG CUỘC MÍT TÌNH CHÀO MỪNG CỦA NHÂN DÂN
BÌNH NHUÔNG

Thưa đồng chí Ủy viên trưởng thân mến,
Thưa đồng chí Thủ tướng thân mến,
Thưa các đồng chí, các bạn, các anh em, chí em thân mến,

Chúng tôi rất sung sướng nhân lễ mới thân thiết của đồng chí Ủy viên trưởng, sang thăm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anh em và hết sức sung sướng được cùng anh chí em thu đồ Bình nhưỡng anh dũng, gặp mặt nơi chuyên o đây. Nơi vui sướng này thật không sao nói hết được.

Trước hết, tôi xin thay mặt nhân dân Việt-Nam - các đồng chí cùng đi với tôi, và nhân danh cá nhân tôi, chào mừng nhân dân thu đồ Bình nhưỡng, toàn thể nhân dân Triều tiên anh hùng, và các vị lãnh đạo của nhân dân Triều tiên thân mến.

Chúng tôi chân thành cảm ơn sự đón tiếp nồng ấm và nhiệt tình của các bạn.

Việt-Nam và Triều-tiên tuy cách xa nhau ngàn dặm, nhưng gần bó với nhau với mỗi tình anh em thân thiết trong đại gia đình xã hội chủ nghĩa chung đầu là Liên-xô và Trung-quốc; nhân dân hai nước Việt - Triều chung ta luôn luôn sát cánh với nhau trên con đường đấu tranh chống đế quốc xâm lược,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nước nhà, và xây dựng đời sống hòa bình hạnh phúc, tiến lên xã hội chủ nghĩa.

Nhân dân Việt-Nam lấy làm tự hào có một người bạn chí thân và anh dũng là nhân dân Triều tiên; nhân dân Việt-Nam rất kính mến và quý trọng nhân dân Triều-tiên anh em như ruột thịt.

Thưa các bạn, các anh em, chí em,

Dưới sự lãnh đạo sáng suốt của Đảng Lao động và Chính phủ cô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các bạn đã luôn luôn đoàn kết chặt chẽ trong Mặt trận dân chủ thống nhất Tổ quốc Triều tiên, kháng chiến anh dũng trong những hoàn cảnh hết sức khó khăn. Với sự giúp đỡ cao cả của Liên-Xô, Trung-Quốc, và các nước anh em khác, sự đóng

Bản sao
TTLTQG III

〈그림 1〉 1957년 호치민의 북한 방문 연설 관련 자료

1957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민주공화국 주석 호치민(Hồ Chí Minh)은 북한을 방문하였고, 평양 인민들의 환영회에서 연설하였다. 당시 호치민의 연설과 관련된 자료는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국회 문서군(Phòng Quốc hội), 폴더 649호’에 보관되어 있다.³⁶⁾ 해당 자료가 국회문서군에 배치된 것은 호치민이 북한

36) 자료 기호: TTLTQG III, Phòng Quốc hội, Hồ sơ 649, “Diễn văn của Chủ tịch Hồ Chí Minh đọc trong buổi mít tinh chào mừng nhân dân Bình Nhưỡng nhân dịp đoàn Việt Nam thăm nước CHDCND Triều Tiên 1957”.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국회 문서군, 폴더 649호, “1957년 베트남 대표단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시 호치민 주석이 평양인민들의 환영회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대를 받고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 연설에서 호치민은 북한·북베트남의 단결을 호소했다. “...미 제국은 조선 및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군사기지를 증가하며 긴장상태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미 제국의 전쟁도발 음모에 당면했기에, 선두에 선 소련과 중국, 그리고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은 인류의 평화문제와 사회주의 업적에 책임을 인식하여 단결심을 강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부터 형성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한국전쟁과 공식적인 외교관계 확립을 계기로 공고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깊어지게 된 양국의 유대감은 반제국주의 공동연대의식과 사회주의 공동연대의식으로 표출되었다.³⁷⁾ 한편, 1957년 호치민이 북한을 방문한 시기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경제 원조를 시작함과 동시에 남베트남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시기와 일치한다. 호치민은 해당 자료에서 북한과 대미항쟁에 힘쓰기 위해 북한·북베트남 연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으니, 이 자료는 당시 북한·북베트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후반 북베트남·북한 관계는 최고 지도자의 방문으로써 긴밀한 단계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1950년대 후반 북한·북베트남의 유대 관계는 ‘공동의 적’-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베트남 분단 이래로, 미국이 남베트남에 원조와 지원을 시작하고 난 이후의 북·베 공동

에서 연설”].

37) 윤대영, 「1950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 1956년 조선 문화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제87집, 2013. 6, 187쪽;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6, 98쪽.

연대의식은 1950년대 전반의 반제국주의의식에서 반미의식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다. 1955~1975년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상황 관련 자료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총리관저 문서군(Phòng Phủ thủ tướng), 폴더 9235호’는 2가지 문서를 포함하며 첫 번째는 “1955~1973년 베트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이라는 문서이고 두 번째는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보충”³⁸⁾이라는 문서이다.³⁹⁾ 즉 총리관저에서 1955년부터 1979년까지 양국의 경제,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상황을 종합한 것이며, 해당 자료들 역시 중요하다.

문서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북한과 북베트남의 ① 외상 관계, ② 과학기술 합작, ③ 경제 원조에 대한 것이다. 우선, 외상 관계에 관해 이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은 1958년부터 북한과 북베트남의 무역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958년 북한과 북베트남은 상호 상품 교환 협정을 맺었고, 이때부터 북베트남은 북한으로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1965년부터 전쟁이 확장됨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북한과 북베트남의 과학기술 합작 역시

38) 구체적으로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상황에 대한 보고.

39) 자료 기호: TTLTQG III, Phòng Phủ Thủ Tướng, Hồ sơ 9235, “Tình hình tổng quát về Quan hệ Kinh tế, Kỹ thuật-Khoa học giữa Việt Nam - CHDCND TT 1955~1973, Bổ xung Tình hình tổng quát về Quan hệ Kinh tế, Kỹ thuật-Khoa học giữa Việt Nam - CHDCND TT 1973~1979”.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총리관저 문서군, 폴더 9235호, “1955~1973년 베트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보충”].

마찬가지로 1958년부터 시작됐다고 언급되었는데, 양국의 전문가들이 서로 방문하여 과학 기술 연구 및 조사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경제 원조 보고에 대한 것인데, 이는 1950~1970년대 북·베 관계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문서의 내용에서 북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무상지원이 1965년부터 시작되었고, 1974년까지 총 41.8백만 루블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지원금액이 3천만 루블에 이르렀는데, 이는 높은 지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지원은 1969년부터 점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1970년대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베트남 총리관저는 해당 문서에서 1969~1972년의 지원금액과 1965~1968년의 지원 금액을 비교하였는데, 후자와 비교했을 때 지원금액은 3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1973년의 지원 금액 역시 1972년의 2백만 루블과 비교해 절반(50%)으로 줄어들었다. 무상 지원은 1974년부터 중단되었다. 한편 이 문서에서는 북한의 지원금 감소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는데, 결정적으로 당시 북베트남의 항미통일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관점이 달라진 것이 원조액 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북한의 베트남 무상지원금액과 관련한 자료이다.

(Liên hợp không hoàn 144)

- Năm 1965 :	12 triệu Rúp
- Năm 1966 :	7 "
- Năm 1967 :	5,3 "
- Năm 1968 :	5,7 "
Cộng 4 năm :	<u>30 triệu Rúp</u>
- Năm 1969 :	4,7 Triệu Rúp
- Năm 1970 :	1,9 "
- Năm 1971 :	2,1 "
- Năm 1972 :	2 "
Cộng 4 năm :	<u>10,7 Triệu Rúp.</u>
- Năm 1973 :	<u>1,1 triệu rúp</u>
Cộng chung từ 1965 đến 1973 : <u>41,8 triệu Rúp</u>	
So sánh : 1969 - 1972/1965 - 1968 = 39%	
1973/1972 = 50%	
từ 1973 đến 1964 : không có.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III
CHỨNG THỰC
Tài liệu được sao từ

Hàng.....*Phủ Thủ tướng*
 Mục lục số.....*9235* Hồ sơ số.....*9235*
 Tổ số.....*1-2*
 Hà Nội, ngày 30 tháng 7 năm 1975.

GIÁM ĐỐC


Đu Xuân Hoàng

〈그림 2〉 1965~1973년간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금액

다음은 ‘총리관저 문서군(Phông Phủ thủ tướng), 폴더 9235 호’의 “1955~1973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문서와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보충” 보고서를 바탕

으로 작성한 <1955~1975년간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금액> 표이다.

<표 1> 1955~1975년간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금액

단위 : 백만 루블

연 도	금 액	연 도	금 액
1955~1964	없음	1969	4.7
1965	12	1970	1.9
1966	7	1971	2.1
1967	5.3	1972	2
1968	5.7	4년의 합계	10.7
4년의 합계	30	1973	1.1
30		1974 이후	없음
		총계	41.8

비교: 1969~1972/1965~1968 = 35%

1973/1972 = 50%

출전: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총리관저 문서군, 폴더 9235호,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100쪽에서 재인용⁴⁰⁾

이처럼 베트남 소재 자료를 통해 당시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변화가 베트남 전쟁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표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베트남 전쟁의 상황에 따라 진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이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지원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는 1965년, 1969년, 1973년이였다. 해당 연도는 베트남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들이었는데, 1965년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이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1960년대 말은 한국 전투부대 추가 파병이 중단된 시기, 또한 베트남 평화협정이 시작된 시기였다. 마지막으로, 1973년은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40)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인용된 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해였다. 베트남 소재 자료를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북·베 관계의 연관성은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에 대한 배경 및 북·베 관계의 전개와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의 1차 사료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우선, 베트남 전쟁기 남북한 관련 베트남 소재 자료들 중 제일 중요한 자료를 보관한 베트남 국립 자료 센터의 제3 센터와 제2 센터의 자료들을 그 시작점으로 삼았다. 제3 센터와 제2 센터가 소장한 베트남의 각 부서, 기관이 발행한 문서고(庫)는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와 한국·남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구체적으로, 하노이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는 베트남민주공화국(즉, 전시 북베트남정부)의 각 기관, 부서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하는 데이터 센터로, 1950~1970년대 북베트남정부와 북한정부 간의 외교-경제-문화-과학기술 관계, 북·베 사회주의공동연대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약 500폴더가 포함된다. ①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 ② ‘국회(Quốc hội)’ 문서군, ③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 ④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 문서군이다. 호치민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는 베트남공화국(즉, 전시 남베

트남정부)의 각 기관, 부서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하는 데이터 센터로서,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정부와 한국의 외교-경제-문화-군사 관계, 한국·남베트남의 반공주의 공동체 및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약 300폴더가 포함된다.

① ‘베트남공화국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② ‘제1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③ ‘국가지도위원회(Uỷ ban lãnh đạo Quốc gia)’ 문서군, ④ ‘제2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ị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이다.

그 외에, 베트남 전쟁 시기 남북 베트남정부가 발행한 신문 자료, 회고록, 저서 등에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들을 찾아 소개하였다. 우선, 베트남전쟁기 북베트남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들은 『인민신문(Báo nhân dân)』과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이 있었으며 남베트남이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들은 『두억 나 남(Đuốc nhà nam)』, 『띤 상(Tin sáng)』, 『띤 히에 우(Tìm hiểu)』, 경제신문인 『쩐 흥 긴 떼 (Chấn hưng kinh tế)』이었다. 위 신문들은은 당시 한반도의 분단상황, 남북한의 경제-사회, 남북한·남북베트남의 관계,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북한 이양 사실까지 다뤘다.

한편, 베트남 전쟁기 북베트남이 발행한 남북한 관련 자료는 상당한 저서 및 회고록들을 포함하며, 이는 주로 북베트남과 북한의 공동연대, 한국전쟁, 북한의 정치, 교육, 문학, 예술, 경제 등을 다뤘다. 베트남 전쟁기에 남베트남에서는 남북한 관련 회고록이나 저서가 거의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의 비중은 비교적 적다.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회고록 및 저서들은 북베트남에서 활발히 출판되었으나, 한반도 관련 북베트남에서 발행된 연구논문은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없다. 그러나 남베트남이 발행한 남북한 관련 연구성과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1970년대에 나온 학사학위논문 2편이 있다. 이와 같이 편중된 자료상황은 ① 당시 북베트남에서의 전쟁이 치열해 연구가 활발할 수 없었던 환경 ②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가 당시 사회주의공동체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하여 단체와 조직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과 관련하여 현재 베트남의 연구성과는 주로 한국·남베트남의 관계,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 저서들이며, 이러한 2차 자료 발굴 과정에서는 베트남학계의 연구성과에 나타난 베트남전쟁의 특성과 남북한 문제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역사에서 1954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30년의 긴 역사였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베트남은 긴 나라였으며 분단, 전쟁, 통일을 모두 경험한 나라이다. 때문에 베트남전쟁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소재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한 과정은 30년의 역사에 대한 사료들을 발굴 및 수집한 것이며, 북베트남(사회주의체제)과 남베트남(자본주의체제), 그리고 현재 통일된 베트남에서 발행한 자료를 모두 조사해 소개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범위를 포괄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이 향후 학계 내에서 베트남전쟁과 한반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부록

하노이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회의 상무 위원회
위 원 장 장 정 등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1962년 6월 20~21일)는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때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습니다.

나는 등 회의에서 심의하고 만장 일치로 채택된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동지와 동지를 통하여 귀 인민회의 상무 위원회에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에 등 회의에서 제출된 보고문과 대한 민족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및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등봉합니다.

나는 동지와 귀 인민회의 상무 위원회가 상기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 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의 장 최 원 태

1962년 6월 22일

평 양

Bản sao
TTLTQG III

〈그림 3〉 1962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북베트남 국회에 발송 문서
출전: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국회 문서군, 폴더 999호.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티우" 대통령의 메시지—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은 다같이 공산침략에 직면하고 있는 자유
아세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나라는 공동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공동이념으로
뭉친 가장 긴밀한 우방입니다.

어떤나라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위협이란, 단지 이론적인 것에 지
나지 않거나 매우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위협은 바로 우리의 문턱에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국경을 넘겨다 보
고 우리의 방어력과 경계태세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월 양국민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파괴와 침략행위는 직
접적인 생존에 관계된 문제로서 끊임없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긴 안목으로 볼때 공산주의는 우리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 자유
세계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에 대처하는 공동투쟁에 있어서 우리와 어깨를 같이
하여 싸우고 있는 자유우방군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신의 상처가 거의
아물기도 전에 월남에 들쭉로 큰 군대를 꼭감히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증명함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며 또한 자유수호를
위한 한국 국민의 헌신적 노력의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우리 두나라 국민간의 긴밀한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
국 국민에 대한 월남국민의 깊은 감사와 형제적 우의의 정을 전하기
위해 이번 한국방문을 오래전 부터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4〉 1969년 남베트남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한국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

출전: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제2 베트남공화국 문서군, 폴더 1638호.

Madame Thieu and I have long looked forward with keen anticipation to this visit to strengthen even more the close bonds which unite our two countries and peoples, and to convey to the Korean people the deep appreciation and the brotherly attachment of the Vietnamese nation.

We firmly believe that freedom in Asia, and indeed anywhere on this Earth, can and must be safeguarded, to allow every nation to choose its own form of government, to shape its destiny in conformity with its traditions, aspirations and way of life, free from external interference and aggression.

We know that united, the free nations of Asia will be able to preserve freedom and build a durable Peace, toward greater prosperity and happiness for all our peoples.

In the pursuit of these common goals, let us increase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our countries in every field.

Toward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our nations, Madame Thieu and I hope in the course of our visit to bring Viet-Nam a little closer to you.

To all of you in the Republic of Korea, we convey the warmest greetings from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Viet-Nam.



박정희대통령 (좌로부터 세번째) 이 1966년 10월 21일 월남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국가지도위원 회 "우옌 반 티우" 의장 (박대통령의 우측) 과 다낭에서 회의를 가졌다.

President Park Chung Hee visited Viet Nam on October 21, 1966.

〈그림 5〉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

출전: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제2 베트남공화국 문서군, 폴더 1638호.

[원고투고일: 2015.7.8,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한국·남베트남 관계,
북한·북베트남 관계, 베트남전쟁, 베트남 자료, 북·베 반미 공동연대의식,
북·베 사회주의 공동의식

<ABSTRACT>

The Vietnamese Sources of Material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Vietnam War period(1954~1975)

Do Thanh-Thao-Mien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Vietnam War period from the side of Vietnam, in order to tackle the limitations resulted from the current shortage of primary sources. In the other words, it investigates and introduces the sources of materials that exist in Vietnam on the issues of 1)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and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the Vietnam War; and 2)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and North Korean assistance for the Vietnam War.

The Vietnam War in the history of Vietnam was defined as a history that lasted for 30 years from 1954 to the 30 of April of 1975. Geographically speaking, Vietnam has a long territory which experienced division, war and reunion. Thus,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introducing the sources of materials from within Vietnam, with the focus on the Vietnam War period, was synonymous with digging and collecting the materials of a long historical period of 30 years. It is also about investigating and introducing the material sources that North Vietnam (a socialist regime) and South Vietnam (a capitalist state) as well as the current united Vietnam have published.

The paper starts from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of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which are archived at the National Archive II and III. National Archive II and III reserve materials published by Vietnamese governmental offices and ministries. These precious materials show the very detail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troops in the war and North Korean assistance for North Vietnam. Interestingly, among official correspondences, exchanged letters between the governments, there even exist documents that were written in Korean language. These documents, as a result, are of great value for the Korean academia and research community.

The paper continues by investigating and introducing a various types of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memoirs, books, etc, published by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On the side of North Vietnam, the most popular newspapers published were *Nhan dan*, *Quan Doi Nhan dan*. Newspapers published by South Vietnam includes *Duoc nha Nam*, *Tin sang*, *Tim hieu*, *Chan hung Kinh te*. These newspapers had mentioned issues such as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socio-economic situat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troops in Vietnam and the fact that these South Korean troops were transferr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part from newspapers, material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published by Nor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include a large number of books and memoirs. These materials mentioned issues such as the “solidarity community spirit”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the Korean War, the politics, education, culture, art and economy of North Korea. Nevertheless, memoirs or book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in Southern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period were barely foun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hese materials is relatively small.

Although books and memoirs which had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were published widely in North Vietnam, academic research or dissertation related to Korean peninsula in North Vietnam is not found even until lately. Meanwhile,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s,

research achievement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published by South Vietnam includes two undergraduate dissertations, which were written in the 1970s.

Last but not least, research achievement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by Vietnam in the current period are mainly Master's and Ph.D. dissertations and books which 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troops, the assistance of North Korea to North Vietnam and th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se secondary sour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 War presented through researches among Vietnamese academia are clearly shown. Equally perceived is the standpoint of Vietnamese government regarding issue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Key Words :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Vietnam war, North Korean assistance for North Vietnam, South Korea -South Vietnam relations, North Korea - North Vietnam relations, Vietnam War, Vietnam's research materials, North Korea - North Vietnam Anti-American solidarity community spirit, North Korea - North Vietnam Socialist solidarity community spirit.

한·러 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獨島)

박종효*

1. 머리말
2. 올리부차 호의 독도 발견과 대한제국 동해안 지도제작 동기와 의의(意義)
3. 브리네르의 울릉도 벌목이권 도벌사건과 고종 칙령 41호
4. 독도 앞 러·일 해전도(海戰圖)
5. 러·일 평화조약(1905) 체결 이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독도 인식
6. 맺는 말

1. 머리말

러시아는 일찍이 1852년 청·일(淸·日)과 수교(修交) 교섭을 위한 특사로 해군(海軍) 제독(提督) 뿌썬틴(Путятин Ефим)¹⁾을 <팔라다>(Паллада)²⁾호로 극동에 파견하였다. 그 때 러시아 외무부는

* 박종효, 역사학 박사, 저자; 격변기의 한·러관계사, 2015, 선인출판사

1)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А.М.Прохоров,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21,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75. с.242.

2)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шкуны восток, корвета оливуча, и транспорта князь Меншков, министерст-

대한제국을 청국(淸國)과 특수 관계에 있다고 믿어 수교교섭을 하라는 훈령을 하지 않았으나 뿌짜틴은 앞으로 연해주, 즉 우수리 지방이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리라고 예상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수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³⁾

그래서 뿌짜틴은 거문도와 함경도에 기항하여 민간인과 지방관청을 통해 특명전권대사의 이름으로 수교요청서를 조선 중앙정부에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쇄국정책(鎖國政策)으로 회담을 하지 않았었다.

이 무렵에 <빨라다> 호의 지원선 올리부차(Оливуца)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에 대한 지형과 위치 등을 기록한 항해일지를 1854년에 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한 해군지(Морский журнал:주: Морский는 해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해군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는 해군이 맞다.)에 처음 발표하면서 독도는 일본보다는 조선에 근접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1855년에 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된 해군전집(Морской сборник)에서는 대한제국 동해안을 조사 측량할 때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를 불가분의 도서로 보고 두 섬을 함께 조사하였다고 하였다.⁵⁾ 그 후부터는 해군부에서 발행한 1856, 1857, 1858, 1859년의 해군전집에서도 울릉도 다음에 항상 독도에 대한

во ВМФ, СПб. 1856г. с. 132.(돛 세 개와 증기동력을 갖춘 고속군함).

3) И.А. Гончаро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 И писем в 20 томах, Том3, Москва 1957, с. 132. АВПРИ, Фонд, СПб, Главных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1-9, 18521856гг. Дело 17, Часть 11, Листы 256~257,

4) Обзор заграничных плаваний судов русского военного флота том 1. (с 1850 по 1868), Министерство ВМФ, СПб. 1871г. с.12.(올리부차는 지중해 시칠리아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인데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가 그 곳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 기념으로 메네라이(Менелай)호를 올리부차 호로 개명하였다. 메네라이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남신으로 흑해 함대 소속으로 있을 때의 호칭이었다.

5)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 19, № 1 Январь, СПб, 1855, с.34пб

조사기록을 기재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독도와 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독도를 사실상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 빨라다 호가 1854년에 조선동해안을 측량하면서 부산, 울산, 원산, 울릉도, 독도 등의 지형(地形), 수심(水深) 그리고 조류(潮流) 등에 관해 조사해 러시아 해군부에서 전지(全紙)에 1857년과 1858년에 각각 조선동해안(Восточный берег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이란 명칭으로 지도를 발행하고, 그 지도안에 독도도 위치시켰다. 이 지도는 국내외(國內外)를 통틀어 현대적인 측량술로 제작된 최초의 조선동해안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가 1860년에는 두만강 건너 청국의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있던 우수리(Уссури=烏蘇里)지방을 청국으로부터 할양(割讓)받아 조선과 이웃나라가 되면서 1884년에는 조·러양국이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수교하였다. 당시 청·일은 조선에서 서로 영향력 쟁탈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아산만에서 청·일전쟁(1894~1895)을 일으켜 청국으로부터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의 3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이 청국에서 빼앗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고, 조선내정에는 더욱 과도한 간섭을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내밀히 일본의 간섭을 막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에 보호교섭을 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불러들이려는 배후 조종자로 민왕후(閔王后)를 시해(弑害)하고 친일내각을 구성시켰다. 그러므로 고종(高宗)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주: 俄館播遷)하였다.

바로 그 시기에 1896년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브리네르(Бринер Юрий Ианович)⁶⁾가 조선정부로부터 압록강(鴨綠江), 두만강

6) Примо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бъединенный музей имени В.К. Арсеньева, Владивосток, Фаркон, 1996г. с.59-63. (브리네르는 스위스 출신으로 14살에 일본에 와 부유한 영국인에 의해 교육을 받고 상해(上海)에서

(豆滿江), 울릉도(鬱陵島) 벌목(伐木)이권을 획득하였다. 일본은 이를 시기하여 울릉도의 아릅드리 희귀목(稀貴木)을 도벌(盜伐)해 일본으로 운송해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대한제국정부에 도벌방지를 요청하였으나 속수무책으로 있어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관 쉬테인(Штейн) 서기관을 1899년 6월에 경북도(慶北道) 산림관 조성협(주: 원문에는 조씨 성만 나와있다)과 함께 울릉도에 출장 보냈다. 쉬테인은 일본인 140명이 도벌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⁷⁾

쉐테인의 보고서로 러시아 외무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 소속 까르닐로프 제독(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호를 1899년 10월 말일경에 울릉도로 출동해 일본인의 도벌을 방지하라고 지시하였다.⁸⁾ 까르닐로프 제독 호는 도벌을 목격하고도 대한제국 영토라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서울주재 러시아 공사관을 통해 대한제국정부에 도벌방지책을 세워 달라고 다시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런 러시아의 요청이 있는 후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勅令)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독도(獨島=石島), 죽도(竹島) 등을 울릉도(울도)에 포함하고 관리를 강화시켰던 것이다.⁹⁾

한편 일본은 러시아가 청국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1898년 조차(租借)한 이후부터는 대한제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와 만주개방문제와 압록강 벌목이권 문제로 또다시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1904년 2월 8일 인천에서 러시아 함대를 어뢰(魚雷)로

견직물 장사와 선박회사 지사를 운영하다가 1880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다. 왕년의 허리우드의 명배우 울부리너가 그의 손자다).

7) АВПРИ, Фонд 150,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 17.

8) АВПРИ, Фонд 150, 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 17~60.

9) 대한제국관보, 1900년 10월 27일자.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켜 2월 9일에는 서울을 점령해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던 전 러시아 외교관과 러시아인을 추방시켰다.¹⁰⁾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여순항을 1905년 1월 2일 함락하였다. 러시아는 발틱해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여순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제2함대와 3전투함대(주: 제3전투함대는 주로 철갑 순양함으로 구성되었다)를 구성해 보냈으나 여순항이 함락되어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가 러시아 함대 항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그 항로를 감시하고 방해하기 위해 1905년 2월 22일에 서둘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1905년 5월 27일 대마도 해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제2, 3함대(주: 일본은 발틱 함대라고 호칭)를 일본은 전 함대는 물론 상선까지 동원하여 포위해 러시아 함대를 거의 전멸시키고 독도 앞 해상에서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다.

그런데 그 해전에서 가장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던 러시아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호가 1905년 포츠머스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러시아 해군부에 제출한 보고서와 해전도(海戰圖)를 보면 놀랍게도 울릉도를 중심으로 독도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대한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어 러·일전(1904~1905) 당시 러시아 해군에서도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¹⁾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거쳐 소련 방 시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연합국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조약(주: 소련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을 체결한 다음인 1972년도에 발행한 소련정부의 동해(일본 해) 수로지(水路誌)에는 대한민국 표기대로 독도를 러시아어로 독도(Токто)라고 하고 다게시마

10)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 Корея(1904~1905),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1997, с.163.

11) ГАРФ, Фонд. 601, Опись. 1, Дело. 513, Лист № 33.

라는 호칭은 없었다. 그리고 현 러시아 연방정부 국방부에서 2001년에 발행한 한반도 수로지(水路誌)에서는 마침내 독도를 확실하게 한국영토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최초 독도를 1854년 제정 러시아 군함 올리부차 호가 발견한 이후부터 소련시대를 거쳐 러시아 연방에 이르기까지 한·러 관계사에 나타난 독도에 관련된 러시아 측의 여러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문서, 지도, 수로지 그리고 정치지도를 참고해 러시아와 독도관계를 밝혀보았다.

2. 올리부차 호의 독도 발견과 대한제국 동해안 지도 제작 동기와 의의(意義)

러시아가 일본 및 중국과 수교를하기 위해 뿌쨍틴(Путятин E. B.) 제독(提督)을 특사로 1852년에 “팔라다(Паллада)”호로 파견하게 되는 동기는 1852년 3월 4일(주: 러시아 舊曆 1852.2.20) 동부 시베리아 총독(總督) 무라비요프(Н.Н.Муравьев)가 “미국(美國) 정부는 2개 팀의 무장 탐험대를 아시아 연안에서 베링해협(Bering strait)까지 조사하고 일본(日本)을 개항시키기 위해 파견한다”고 해군부에 보낸 정보에서 발단하였다.

사실 미국(美國)은 당시 캄차트까(Камчатка)와 연해주 여러 지방에서 수백 척의 포경선(捕鯨船)이 작업을 하고 있어 포경선의 수리와 식료품 조달을 위해 일본의 개항(開港)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1837년과 1846년 두 차례 개항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다시 페리(Mathew G. Perry) 제독으로 하여금 10척의 전함(戰艦)과 2,000여 명의 병사를 보내 무력

개방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1세(Николай 1)는 페리에 의해 일본이 개방되어 미국과 서구열강이 먼저 일본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터키(Turkey)문제로 흑해(黑海)에서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영·불(英·佛)의 함대가 극동 러시아를 겨냥한 전초 기지로 일본 항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다.¹³⁾

러시아도 그동안 일본과 수차례 통상문제와 국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본도 폐쇄정책(閉鎖政策)을 실시하고 있어 실패하였는데,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미국에 뒤지지 않으려고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청·일 양국의 개항과 수교교섭을 위해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이며 세계 일주 여행에 경험이 있는 해군 중장 뿌썬틴을 1852년 5월 19일(러시아 舊曆 5월 7일) 극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

뿌썬틴은 대외교섭 임무에 갖추어야 할 유연하고 단호한 성품을 소유하고, 또 아직 조사단계에 있는 극동지역의 해로(海路=水路)와 지도를 작성하는 데도 세계 일주를 한 경험이 있어 적임자로 보았던 것이다.

뿌썬틴의 부관은 해군대위(大尉) 뽀시예트(К.Н. Посьет)였으며 비서로는 대외 통상국 계장이며 후에 유명한 소설가가 된 곤차로프(И.А. Гончаров)였다. 그리고 통역관으로는 외무부 고쉴레비치(О. А. Гошкевич)와 또 북경(北京)의 러시아 정교회(正教會) 선교(宣敎)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청국어(淸國語)에 능통한 뽀제르부르

12) А. Л. Нарочницкий,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осква, 1956г. с.27.

13) Файнберг Э.Я.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 гг. М.: Моск. гос. ин-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1960. 314 с. с.142~144.

14) Э.Я. Файн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гг, Москва. 1960, с.142~144.

그의 알렉산드르 뵈스끼 수도원(修道院) 승원관장(僧院管長) 아바쿰(Аввакум)이 선정되었다.¹⁵⁾

먼저 “빨라다(Паллада)”호는 “보스토끄(Восток)¹⁶⁾호와 함께 출발하여 러·미회사 소속(Рус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¹⁷⁾ 수송선(輸送船) 멘쉬코프 공후(Князь Меншиков)호와 1851년에 흑해 함대 소속에서 극동에 파견되어 러시아 포경선(捕鯨船)을 보호하며 극동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포함(砲艦) 올리부차(Оливуца)호를 현지에서 합류시키기로 하여 3척이 빨라다 호를 호위하도록 하였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에서 뿌썈틴에게 준 훈령을 보면;

- 1) 미·일(美·日)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조약조건을 보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보장받을 것.
- 2) 러시아는 청국과 까흐타(Кяхта)¹⁸⁾에서 육상무역권을 보유하면서 영·불·미에 개항(開港)한 5개 항구에서도 동등한 통상권을 획득할 것 등이었다.¹⁹⁾ 그러나 조선과는 청국의 특수 보호국임을 고려해 수교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⁰⁾

뿌썈틴은 1852년 10월 19일(러시아 구역 10월 7일) 뻬쩨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²¹⁾의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 해군항(海軍港)을

15) Б.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осква, 2004, с.58.

16) Восток호는 뿌썈틴이 극동출발에 앞서 영국에서 구입한 증기선으로 쾌속정이다

17) Рус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러·미 회사는 러시아가 1802년에 극동에 식민지 개척과 세금징수 및 포경사업을 위해 반관(半官) 반민회사로 설립하였다.)

18) Кяхта(부라티야 공화국과 몽골의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로 1727년에 러·청 조약으로 러·청간에 유일하게 육로무역을 허용한 지방이다).

19) А.Л. Нарочницкий,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Москва, 1956, с.134.

20) И.А. Гончаро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 И писем в 20 томах, Том3, М. 1957, с.132

21) 우리나라 외국어 표기법은 영어를 중심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문자에 적용하면 엉뚱한 음이 된다.

뻬쩨르부르크를 표기법을 따르면 페테스부르크라고 써야 한다. 그러므

떠나²²⁾ 1853년 6월에 청국)에 도착해 이미 영·불·미에 개방한 5개 항(港)을 러시아에도 개방시켜 줄 것을 교섭하였으나 청국은 러시아에 까흐타(Кяхта)에서 육로통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해(上海) 등 5개 항의 개항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뿌썬틴은 바로 조선의 남해안(南海岸)을 돌아 1853년 8월 22일에 일본 나가사끼(長崎)에 도착하였다.²³⁾ 일본도 쇄국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3~4년 후에나 통상과 꾸릴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등을 포함한 국경문제를 해결하자고 대답해 통상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뿌썬틴은 통상교섭을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남해를 거쳐 청·일을 번갈아 왕래하면서 통상 기회를 엿보고 열강의 통상교섭 진척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러시아와 터키(Turkey)가 흑해(黑海)연안에서 패권 다툼으로 터키가 1853년 10월 16일 러시아에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였다. 그러나 터키가 패전을 거듭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남진정책(南進政策)에 불안을 느껴 터키에 가담하여 크림전쟁(Crimean War, 1854~1856)이 발생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터키를 지원하기 위해 1854년 1월 4일 흑해에 출현해 러시아도 2월 21일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²⁴⁾ 그런 상황에서 뿌썬틴은 크림전쟁 상태를 알아보고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홍콩과 마카오에 극동 해군사령부를 두고 있어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1854년 2월 5일 나가사끼 항을 출항해 “빨라다”호를 포함한

로 가급적 러시아어 원음을 따라 썼다.

22)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отчет оплавания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шкуны восток, корвета оливуца, и транспорта князь Меш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ВМФ, СПб. 1856г. с.133.

23)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отчет оплавания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шкуны восток, корвета оливуца, и транспорта князь Меш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ВМФ, СПб. 1856г. с.150.

24) Рахматуллин М.А., Война России в Крымской кампани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72, No.8, с.104.

호위선 3척이 모두 스페인 지배하의 중립국이었던 필리핀(Philippine) 마닐라로 떠났다. 하지만 스페인 필리핀 총독 파비아(Pavia)는 영·불 편을 들어 빨라다 호에 기항을 거부하고 출항하라고 하였다.²⁵⁾ 때문에 뿌짜틴은 3월에 마닐나(Manila)를 출항해 영·불 연합함대와 직접 적인 충돌을 피해 블라디보스토크의 해협(海峽)으로 항로를 잡고 3척의 지원선에 각각 다른 임무를 지시하고 집결지로 청·일을 왕래하는데 편리한 조선 남해의 거문도(巨文島)로 정하였던 것이다.²⁶⁾

멘쉬코프 호는 상해(上海)에 들러 그곳 우체국에서 “빨라다” 호에 온 편지를 수거한 후 거문도(Hamilton)에서 “빨라다”호와 합류하고, “보스토끄” 호는 유구(琉球列島)에 있는 미국 함정의 저탄장(貯炭場)에 들러 당시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미국의 페리(Matthew G. Perry) 제독의 통상교섭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거문도로 오라고 했다.²⁷⁾

그러나 올리부차 호는 타타르(Татар) 해안으로 직행하여 아무르(Амур=흑룡강) 탐험대장과 연락을 취하고 영(英)·불(佛) 연합 함대로부터 감차트까의 방위를 위해 페트로파블롭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로 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러시아 함대의 집결지로 거문도(巨文島)를 선택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홍콩과 마카오에 기지를 두고 있는 이들 동양함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일본과 청국을 왕래하는 항로인 대한해협(大韓海峽)의 관문(關門)에 위치해 있어 식수와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1854년 4월 2일 거문도 해안에 빨라다 호를

25) Рахматуллин М.А., Война России в Крымской кампани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72, No.8, с.105.

26)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Январь, СПб, 1856г. с.160.

27) ВМФ, обзор заграничных плаваний судов русского военного флота(1850~1868), СПб, 1871, с.49.

위시한 “멘쉬코프” 호와 “보스토끄” 호가 집결하여 7일까지 2일과 4일 두 번에 걸쳐 승무원이 상륙하여 거문도를 측량하였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로 떠나 부활절(復活節)을 보낸 후 빨라다 호는 동부 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의 요청으로 4월 20일~5월 11일까지 21일간 조선 동해안을 부산에서 두만강 하구(河口)까지 실측(實測)하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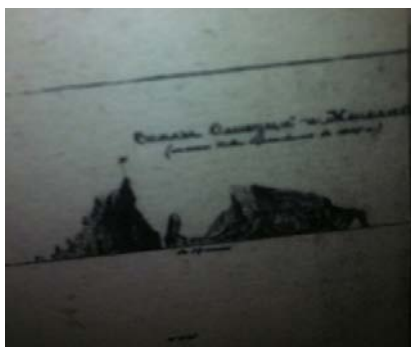
★ 1854년에 그린 최초의 러시아 거문도 지도²⁹⁾

한편 “올리부차” 호는 뿌썬틴의 지시에 따라 타타르 해협으로 향하던 중에 1854년 4월 18일 유럽국가들의 지도에 없는 독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서해안(西海岸)보다 독도가 대한제국 동해안(東海岸)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올리부차” 호의 함장(艦長) 해군대위(海軍大尉) 나지모프(Назимов)가 항해 일지에 발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남겨 러시아에서는 독도가 대한제국영토라는 관념(觀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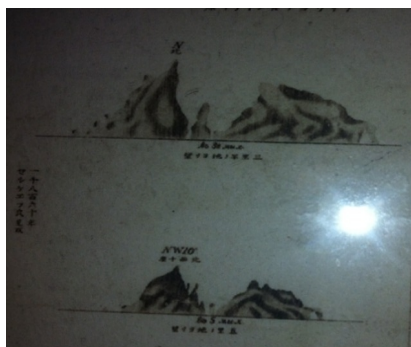
28)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Январь, СПб, 1856г. с.161.

29) РГАДВ, Фонд. 192, Опись. 3, Дело 440.

빨라다 호는 그 당시 가장 좋은 지도로 알려진 아담 크루젠슈테른(Иван.Ф.Крузенштерн) 지도와 영국해군에서 사용하는 조선반도(The peninsula of Korea) 지도를 비교해가며 오류를 수정하고 특히 연안의 경도의 오차를 정정하고 있었다. 그 때 올리부차 호로부터 독도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은 뿌썬틴 제독은 빨라다 호의 조타실에 근무하던 세르게예프(Сергеев) 중령을 불러 독도 현지에 다시 파견해 정오(正午) 12시에 독도가 가장 잘 보이는 시간에 제도하라고 지시하였다. 세르게예프는 독도의 높이와 형태 및 면적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는데 이 지도는 단독으로 1855년 1월호 러시아 해군지에 소개되었다.



★ 1855년 러시아 해군지에 발표된 독도³²⁾



★ 좌(左)측 지도를 일본이 1876년에 복사한 독도³³⁾

러시아는 독도를 “올리부차” 호가 발견하기에 앞서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Liancourt)” 호가 1849년 발견하고 바위섬(roks) “리앙쿠르”라고 작명하였다는 사실을 그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32) морской журнал, 1855, Номер 1, СПб.

33) 1875년에 일본해군에서 복사한 지도 뽀쨌르부르크 아카데미 도서관 지도와 소장, 모스크바 레닌 도서관 소장, РГАМФ, РГВИА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출판물에서 1854년 러시아 “빨라다” 호(주: 올리부차 호가 발견하였으나 “빨라다” 호가 사령선이므로 빨라다 호가 발견하였다고도 한다)가 발견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동도(東島)를 “올리부차”라고 호칭하고 서도(西島)를 “메넬라이”라고 불러 “올리부차” 호의 발견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1856년 재차 조사한 독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올리부차” 호가 처음 향해 일지에 기록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1차 발견시(1854년) 자료:

위도: 북위 37도 13분

경도: 동경 131도 55분

2차 조사시(1856년) 자료:

위도: 북위 37도 17분 9초,

경도: 동경 131도 54분 23초

고도: 해발 410피트

길이: 1609미터. 수심: 깊다.

다년 생 식물은 없으나 풀이 자라고 있으며 상봉은 물세의 배설물로 하얗고 바위로 형성되어 있다. 섬에 접근은 안개 낀 날이나 밤에는 위험하다.

러시아는 재차 조사할 때 영국군함 호넷 (Hornet)의 다음과 같은 조사기록도 함께 수록하였다.

영국군함 호넷이 조사한 자료:

위도: 북위 37도 1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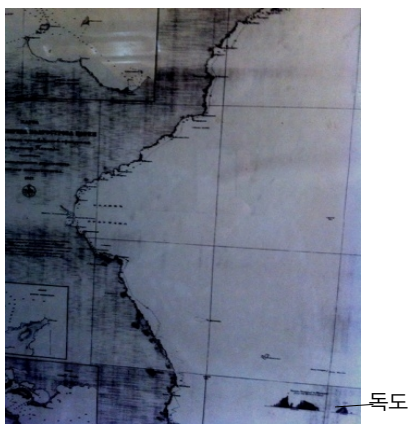
경도: 동경 131도 55분

고도: 해발 410피트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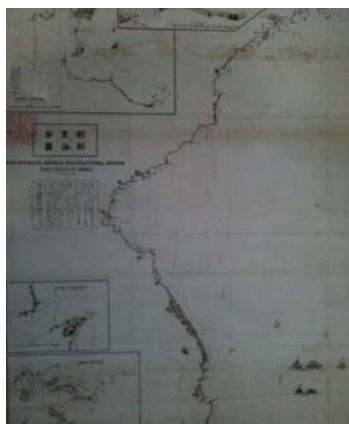
34)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21 № 4, СПб, 1856г. с.30~31, Лощия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чи восточного океана, часть 1, СПб, 1901, с.31.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미수교상태였으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일본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도를 관찰하고 측량해 제도(製圖)하였던 것이다.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일본에서 그 때까지 목적(目測)으로 제작한 지도를 참고하지 않았으나 측량술이 발달한 영·불·러 등에서 제작한 지도가 세계 지리학계를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곧 표준적인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태평양 진출항로를 개척하면서 항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를 여러 차례 조사하였으나 항상 조선 영토로 잘 알려진 울릉도 다음에 지형과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독도 발견 당시 지리적으로 대한제국에 가깝게 위치한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조선동해안지도”라는 명칭으로 전지(全紙)에 제도해 처음 1857년에 러시아 해군부가 발행하였던 것이다.



★ 1857 러시아가 발행한 조선 동해안지도와 독도



★ 이(좌) 지도를 일본에서 1876년에 복사한 지도³⁵⁾

35) 러시아 해군부에서 1857년도 발행한 지도를 일본이 1876년도에 복사한 지도.

일본이 이 대한제국동해안과 독도가 그려진 러시아 지도를 복사하게 된 동기는 1875년 러·일 뻘췌르부르크의 조약에서 러시아에 쿠릴열도와 교환으로 남 사할린을 양보한 후 극동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조선의 동해안과 또 동해상의 중심부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주: 울릉도는 수심과 조류 등은 물론 지도를 별도로 그려 이 지도안에 넣었다)의 전략적인 위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프랑스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하고도 지도를 바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에 그린 러시아의 조선동해안과 독도지도는 서양에서 제작한 최초의 지도가 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도 동해안 연안 국가가 되면서 동해가 주로 조선, 일본 그리고 러시아 3국이 활동하는 해상무대였으므로 러시아 측의 조선동해안 지도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한 일본 서해안 지도에도 독도를 위치시키고 있어 이 지도 하나만으로는 독도에 대한 러시아 측의 명백한 답이 담겨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브리네르의 울릉도 벌목이권 도벌사건과 고종 칙령 41호

두만강, 울릉도, 압록강 벌목이권(伐木利權)은 스위스 태생으로 조선에서 쌀을 수입해 블라디보스토크에 공급하면서 1868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민(移民)간 상인(商人) 브리네르(Ю.И. Бринер)가 1896년 9월 10일 1만 5천 루블의 담보금을 조선정부에 예치하고 20년간 두만강, 울릉도 그리고 압록강 벌목이권을 취득

했다. 그는 전에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청국과 거래하는 선박회사에 근무했던 관계로 태평양지역의 상업현황을 자기 손금 보듯 알고 있어 대한제국의 울창한 원시림에 욕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침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는 기회를 활용해 대리공사 뱌베르를 통해 벌목 이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96년 8월 28일 브리네르는 서울에서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 대신 조병식(趙秉式)과 협정을 체결하고 1897년 초에 두만강 좌안(左岸)부터 벌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벌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수 없어서 이 벌목이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남우수리 지방 국경행정관 마튜닌(Н.Г.Матюнин)³⁶⁾이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브리네르의 벌목이권(利權)은 정치 및 군사 목적과 연결해 대규모 사업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뻬제르부르크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 그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벌목기간 동안 한·만국경(韓滿國境)에서 독점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⁷⁾

그는 만약 대한제국산림회사의 이권을 브리네르가 다른 외국인이거나 일본인에게 넘길 경우 러시아는 극동에서 국방과 상업에 큰 피해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런 마튜닌의 설득에 공감한 인사들에 의해 브리네르의 벌목이권은 몇 사람의 특권층과 러시아 황실청(皇室廳)이 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니콜라이Ⅱ세(НиколайⅡ)도 만주에 야욕을 갖고 있어 외국의 개입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결국 니콜라이Ⅱ세는 한·만국경의 이권이 다른 외국인의 손에 양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하고 1898년 5월

36) 마튜닌은 전에 우수리 국경행정관을 역임하면서 북한지방 영사를 겸임하여 대한제국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서울대리공사로 1898년 3월 27일 부임해, 동년 12월 31일 독일 메르본 영사로 전임).

37) 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493,дело. 53, лист.81.

18일 황실청에서 7만 루블을 지출하고 베조브라조프(А.М.Безобразов)³⁸⁾를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벌목이권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³⁹⁾

베조부라조프는 대한제국산림회사를 기반으로 러시아가 대한제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타국에 이권을 양보하지 않고 경제확장을 해야 한다는 야심 찬 논리로 대한제국산림회사의 상호도 변경해 동아시아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가 대외활동을 하는 민간회사로 러시아 국가이익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베조부라조프의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만주문제 등으로 야기된 극동의 정세를 수세(守勢)에서 방어(防禦)로 전환을 위해 불가피 몇 가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1898년 5월 12일(러시아 구역 4월 30일)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대공(大公)과 바론초프-다쉬코프(И. И. Воронцов-Дашков)백작이 니콜라이 II 세에게 상주(上奏)하였다. 이 상주서에 니콜라이 II 세는 공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 1) 브리네르의 산림이권의 인수가 바람직하다.
- 2) 대한제국의 산림실태는 물론 그 북부지방에 대해서도의 전면적인 연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제국의 북부지역의 지배를 시도한다.
- 3) 대한제국정부와의 관계를 강화시킨 다음 러시아 내각재산 관리국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와 특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4) 만일 조사단이 현지에서 앞서 언급한 목적에 필요하다고 확신하면 황실청과 협의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⁴⁰⁾

38) 베조부라조프는 귀족출신으로 근위대 대령으로 제대한 모험주의자로 20세기 러시아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니콜라이 II 세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만주에서 철군을 반대하고 극동에 총독부를 설치하게 하고 비페(С.Ю. Витте) 재무상을 파면케 하기도 하였다. 1893년에 상서(尙書)의 칭호를 받았으나 대일 강경책으로 전쟁을 유발시켰다. 파리에서 사망했다.

39) АВГ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5, лист 50-51.

40) РГВИА, Фонд.846, опись 6, д.1, с.97-98, 216-217.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 Корея(1904-1905гг. МГУ-Москва, 1997г, с.80-81.

이래서 직접 러시아 황실이 개입하게 되었다. 마튜닌은 서울주재 대리 공사(1897. 12. 6(발령받았으나 부임은 다음해 3월에 부임하였다)~1898. 12. 31)로 있다가 독일 멜보른(Melborne)주재 영사로 전임되었으나 1899년에 다시 장기간 휴가를 얻어 귀국해 브리네르에게서 20만 루블에 벌목이권을 양도받고 대한제국정부와 1901년 4월에 압록강 벌목이권도 재계약에 성공하였다.⁴¹⁾

그러나 그 사이에 울릉도의 벌목이권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오랜 숙원이던 대륙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벌목이권으로 울릉도에 등지를 틀고 발을 붙여 러시아 군함의 저탄장(貯炭場) 등으로 사용할 것을 두려워해 처음에는 서울에 사는 일본 민간인 하사마(狹間)를 내세워 울릉도 벌목이권의 양도를 요구하다가 러시아 측의 대답이 없자 전통적인 왜구(倭寇)의 습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울릉도에서 25평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일본이 아름드리 원시림(原始林)인 희귀목(稀貴木)을 도벌(盜伐)해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소문에 서울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수차 대한제국정부에 러시아인에게 준 이권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태로 있었다.⁴²⁾

그러므로 러시아 공사관은 이 벌목이권을 만주의 방어선 구축에(주: 여순항 항만공사와 철도건설에 목재가 필요했고 한·만국경에 도로를 개성해 일본의 침략을 대비한 방어선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필요한 국방과 관련된 이권으로 생각하고, 1899년 6월에 경북도청의 산림감리 조성협의를 안내를 받아 공사관 서기 쉬테인(Штейн)을 울릉도에 출장 보내 일본의 도벌실정을 파악하도록 했다. 쉬테인이 울릉도를 답사한 후 러시아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울릉도에는 140명의 일본인

41) 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0, лист.173.180.

42) ВПРИ, Фонд.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1-7.

도벌(盜伐)꾼이 23명의 일본 여성과 함께 생활하며 도벌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⁴³⁾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로젠(Розен Р.Р.)으로 하여금 일본 외무부에 러시아가 취득한 벌목이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도벌한 목재를 독도를 중간 거점으로 이용해 일본으로 수송해가고 있으니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외상은 말로는, 도벌을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사실상 동해의 전략적 요지인 울릉도의 벌목이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데 대해 양심을 품고 배후에서 도벌을 권장하였던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러시아 서울 공사관에서는 대한제국정부에 항의를 하는 한편 러시아 외무부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함대를 파견해 도벌을 못하게 방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1899년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함대에 지시하여 순양함 까르닐로프 제독(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호를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까르닐로프 제독 호는 울릉도 해안에 도착해 육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해상에 은폐하고 있으면서 넓이가 약 340미터의 좁은 만에 일본 목재수송선이 들어와 목재를 싣고 일본으로 수송해 가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울릉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므로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대한제국정부에 도벌방지책을 세워줄 것만을 강력히 요청하였던 것이다.⁴⁵⁾

마침내 이런 일본 측의 도벌행위는 고종으로 하여금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반포(頒布)하게 한 동기가 되어 울도(鬱島=울릉도), 죽도(竹島=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 석도(石島⁴⁶⁾=독도

43) АВПРИ, Фонд.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1-7.

АВПРИ, Фонд.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43, лист.10.

44)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0, Лист.173.180.

45)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0, Лист.174.

46) 독도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전라도 지방에서는 돌다리를 독 다리, 장과 된장 담은 그릇은 독이라고 부른다. 즉 독도는 돌섬이라는 뜻으로 전라도 해녀

(獨島)를 포함해 울릉군으로 격상시키고 도벌방지는 물론 방위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⁴⁷⁾

4. 독도 앞 러·일 해전도(海戰圖)

한편 러시아는 러·일전쟁이 육지에서 불리해지자 전세를 만회하고자 발틱함대(Балтфлот)를 위시해 흑해(黑海)함대 등으로 태평양 제2함대와 제3 전투함대를 구성해 여순항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이 러시아 함대의 스웨즈 운하 통과를 방해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게 되어 때를 놓쳤던 것이다.

여순항이 1905년 1월에 일본에 함락 당하자, 태평양 제2함대 사령관 라제스트벤스끼(Рождественский З.П.) 해군중장은 3전투함대까지 통솔하고 항로를 블라디보스토크로 변경하여야 했다. 러시아 함대는 대한해협(大韓海峽)에 1905년 5월 27밤에 진입하였다. 함대는 전함, 철갑순양함, 순양함, 어뢰정을 비롯해 병원선 2척, 수송선 6척도 포함 38척이 있는데 그 중에 는 까레야(Корея=시대별로 조선, 대한제국, 한국으로 번역한다.)라고 호칭한 석탄수송선도 있었다.

오래 전부터 마산(馬山)에 앉아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수시로 보고 받고 있던 일본 도고(東郷) 해군제독에게 러시아 함대가 남해에 출현했다는 타전을 받고 즉시 러시아 함대에 비해 3배가 많은 121척(주: 어선(漁船)까지 무장)을 동원해 대마도 근해에서 대기하도록

들이 그곳에서 작업하면서 석도(石島)라고 부르지 않고 독도라고 부른대서 유래된 지명이나 독자를 한문으로는 석(石)인데 독이라는 음(音)을 내는 글자가 없어 독(獨)자를 쓰면서부터 독도(獨島)가 되었다고 한다.)

47) 대한제국 관보: 1900년 10월 25일자.

하였다.

이 대마도 해전에서 라제스트벤스끼 사령관이 승선한 사령선(司令船) 수보로프 호는 침몰되고 라제스트벤스끼는 구출되었으나 중상을 입어 러시아 함대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19시경에야 라제스트벤스끼는 지휘권을 3함대 사령관 네바가토프(Н.И.Небогатов) 소장(少將)에게 인계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진하라고 지시하였다. 러시아 함대는 5월 27일 낮의 전투에서 기함(旗艦) 수보로프를 비롯한 전함 4척이 침몰되고 다른 군함에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 해전에서 러시아는 전함 8척과 장갑 순양함 1척, 해안 방어용 장갑순양함 1척, 순양함 4척, 보조 순양함 1척, 5척의 어뢰정과 수척의 수송선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5월 28일 독도(獨島) 앞 해상에서 일본 해군에 포위되자 지휘권을 인수받은 3함대 사령관 네바가토프는 겹겹이 일본군함이 포위하고 있어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였다. 뒤따르던 라제스트벤스끼가 승선한 어뢰정도 항복하고 말았다.⁴⁸⁾

이에 대해 혁명가 레닌은 <러시아 함대가 그렇게 무참히 전멸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러시아는 패전뿐만 아니라 전제군주국가의 종말을 맞이하였던 것이다>라고 후에 술회하였다.⁴⁹⁾

그러나 그 중에 순양함 돈스꼬이 호는 항복을 거부하고 독도 앞에서 일본함대의 포위망을 돌파할 때 맞대응을 하다가 집중포화를 받아 선체가 파괴된 상태에서 겨우 울릉도까지 해질 무렵에 당도해 함장과 선원들은 상륙하고 돈스꼬이 호는 새벽에 수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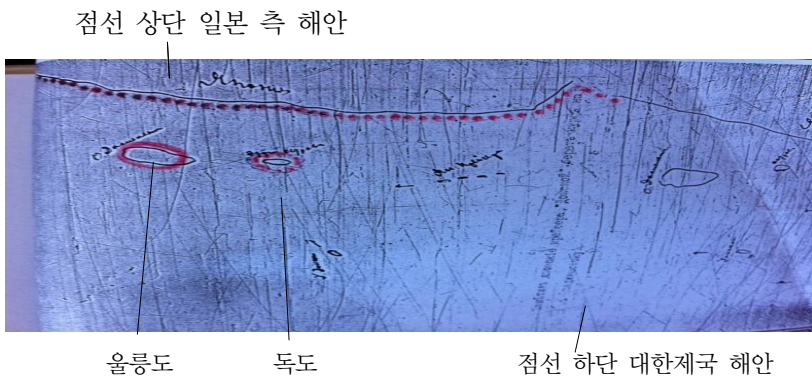
그리고 특히 “돈스꼬이” 호는 1905년 포츠머스 평화조약(강화조약)을

48)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80г. т. 8. с.437~438.

49) В.И. Ленин, Полн. Собр. Соч. т. 10. Москва, 1948г. с.252, Грибовский В.Ю., Познахирев В.П..Знаменитые адмиралы, кн.2, СПб. 1999.с.259.

체결한 이후에 일본의 포로로 있다가 석방되어 제출한 대마도 해전의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해전도까지 첨부하였다.

그 해전도에 울릉도와 리앙쿠르(독도)를 점선으로 분류해 대한제국 측 해상에 배치하였다. 도서 명칭은 “리앙쿠르”로 표시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러시아 해군에서는 널리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이다. 즉 동해를 대한제국 측 영해, 일본 측 영해 이렇게 점선으로 양분하여 대한제국 측 영해에 독도를 배치시켰던 것이다.



★ 드미트리 돈스꼬이 호의 해전 회상기에 있는 지도⁵⁰⁾

(필자: 붉은 점 안에 울릉도(필자: 붉은 원표시)와 독도(필자: 작은 붉은 원 표시)를 위치시켰다. 그리고 일본 순양함 부대와 돈스꼬이 호라는 글자가 보인다. 붉은 점을 기점으로, 하단과 상단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울릉도, 독도를 위치시켰다. 즉 동해를 양분하여 상단은 일본해안, 하단은 대한제국해안으로 표시한 것이며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함대를 포위한 지역은 대한제국해안 쪽이다(하단.)

50) GARF, Фонд. 601, опись.1, дело. 513.

5. 러·일 평화조약(1905) 체결 이후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의 독도 인식

러·일 포츠머스 평화조약(1905. 9. 5)을 체결한 다음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 다시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약탈한 후부터는 사실상 한·러 외교관계는 1990년 한·소(韓·蘇)가 수교를 체결할 때까지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로 있게 되어 독도에 대한 자료도 제정 러시아 대외정책 문서 보관소, 해군성 문서보관소, 구소련(蘇聯)시대에 발행된 정치지도(政治地圖), 수로지(水路誌) 그리고 해군전집 등에서 찾아 볼 수밖에 없었다.

제정 러시아 시대는 수로지를 해군부에서 발행하였으나 정치지도는 교통성의 주관하에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독도의 도서명은 최초 올리부차 호가 1854년 발견할 당시부터 19세기 말까지는 독도의 동도(東島)를 “올리부차”, 서도(西島)를 “메네라이”라고 호칭하였으나 해군부 수로국에서 1859년에 발행한 해군전집에서는 독도를 또 영국군함 “호닛(Hornet)” 호가 1855년 발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⁵¹⁾ 그러나 1901년에 해군전집이 아닌 “동해수로지”에는 독도를 “리양쿠르”라고만 단독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무인도는 최초 발견자의 명칭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 지리학회의 권고에 따랐던 것으로 보여진다.

프랑스 포경선 “리양쿠르(Liancourt)” 호가 앞서 1849년에 발견해 독도를 “리양쿠르 바위”라고 호칭하였으나 러시아 측에 리양쿠르 호가 조사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다만 러시아 “올리부차” 호가 발견한 다음해인 1855년에는 영국함 “호닛(Hornet)” 호가

51)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ипография Морской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б, 1959 г., с.27.

발견한 자료는 있었다.⁵²⁾

일제강점기에는 소련의 독도에 대한 표기는 혼란스러웠다. 수로지와 정치지도는 독도에 대한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지도는 1900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라고 표기한 지도가 있는가 하면, 1910~1930년에는 독도를 발견한 연도순에 따라 여러 발견 선박의 명칭을 사용하고 맨 밑에 다케시마(竹島)를 4번째로 기록해 놓았다. 즉 4번째로 일본이 발견했다는 의미이다.

일본도 일본해군(海軍) 수로국(水路局)에서 1886년 수로지의 발행을 시작하면서 독도를 1886~1894년까지 리앙쿠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897년이 되어서야 수로지 제4권에서 다케시마(竹島)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였다.⁵³⁾ 이것으로 볼 때 일본도 국제적으로는 리앙쿠르 호가 서양지도상에 없는 독도를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이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이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일본의 도서명 다케시마를 맨 끝에 4번째로 발견한 것처럼 기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치지도에서는 발견연도 순서에 따라 독도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1) 리앙쿠르
- 2) 올리부차, 메네라이
- 3) 호닛
- 4) 다케시마

앞서 보았듯이 이런 독도의 표기는 러시아에서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다. 맨 처음 1854~1890년까지는 올리부차, 메네라이, 그리고 1901년부터는 리앙쿠르로만 호칭하다가 다음에는 리앙쿠르,

52) Лочия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восточного океана, части 1 типограф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МБ, 1901г., с.31.

53) 水路誌, 日本海軍 水路局, 1886, 1894, 1897年, 영남대학교, 독도 자료실.

올리부차, 호닛으로 불렸으나, 1910년 전후부터 발행된 지도에는 명칭 하나를 더 넣어 다께시마를 맨 밑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발행된 소련 정치지도에는 독도를 리앙쿠르 혹은 산호초로만 표기하다가 1962년에 소련해군 수로국에서 발행한 동해수로지(주: 원명 일본해 수로지)는 한글의 음을 따 러시아어 표기로 죽도(Чукто)라고 호칭하고 일본어 표기 다께시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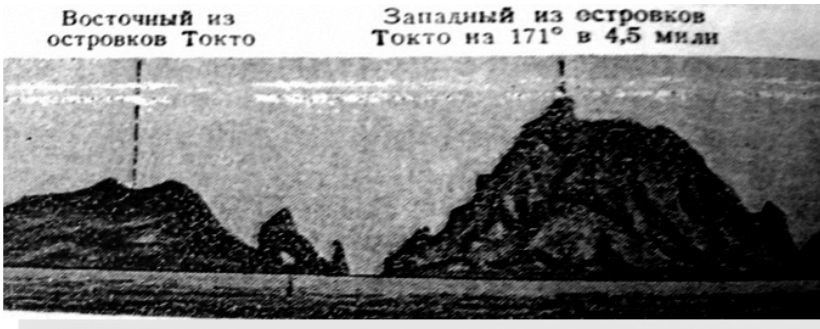
그리고 이 수로지 <제3장 동해안(東海岸)에서 부산까지>라는 제목에서 바로 울릉도 다음에 독도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⁵⁴⁾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에서 동남동 방향으로 48마일 떨어져 있으며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해 있다. 서도(西島)의 고도(高度)는 156m로 두 작은 섬은 바위로 형성되어 식물은 자라지 않고 있으나 동도(東島)의 일부 지역에서 풀이 자란다. 가파른 절벽 밑에 있는 수면 위의 바위에서는 강치가 서식하고 있으며 어둡거나 저녁에는 수심이 깊어 섬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섬에는 담수(淡水)가 있으나 수질(水質)이 좋지 않다. 상주 거주민은 없으나 여름이면 어민이 와서 강치를 포획한다.⁵⁵⁾ 그리고 동도에 등대(燈臺)가 설치되어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1970년에 소련 국방부 수로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에는 도서명칭을 독도(Токто) 혹은 죽도(Чукто)라고만 표기했으나 독도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전부 한국어 호칭을 따라 독도(Токто)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주 거주민은 없으며 담수는 있으나 수질이 나쁘다고 하였다. 1962년 발행한 수로지와 내용은 같으나 독도의 지명을 죽도(竹島)에서 독도라고 개칭하였다는 것이 다르다.

54) Лочия японского моря, управление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й службы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1962г. с.194.

55) 상계서(上掲書) с.195.



★ 1962년 독도의 동도(東島)로 호칭 ★ 독도의 서도(西島)로 호칭⁵⁶⁾

또 독도를 울릉도 다음 장에 배치하고 독도 다음 장에서는 영일만과 울산만에 대한 기록을 하였다.⁵⁷⁾

그 당시는 소련시대였으나 독도의 실제 지명을 옳게 사용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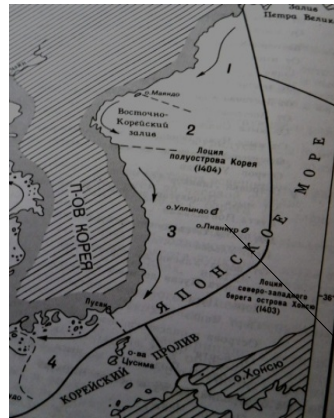
좌측(左側)섬을 러시아어로 독도(Токто)의 동(동도) 우측(右側)은 독도의 서(서도)라고 호칭하여 이때부터 독도의 지명을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탄생한 러시아 연방공화국에서는 2001년에 처음으로 소련시대에 일본해 명칭의 수로지 전통을 깨고 수로지를 한반도(韓半島) 수로지(水路誌)로 개칭해 별책으로 발행하였다.

이 책에서 독도의 지명은 리양쿠르라고 하였으나 이 리양쿠르를 한국영토로 표시한 것이다. 리양크르(독도)를 한반도 수로지에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토로 경계선을 그은 것이다.

56) 상계서, c.178.

57) Люция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а СССР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1970г. c.177~178.



★ 2001년 한반도 수로지의 표지 ★ 이 수로지에서 독도 밖으로 선을 그어 독도를 2001년도 러시아연방 국방부 발행⁵⁸⁾ 한반도 영토에 포함시켰다.

독도의 위치는 역시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고 울릉도 동남동(東南東) 방향 48마일 거리에 있다고 하고 작은 두 섬은 서로 1가벨트 (Кабельтов=185.2m) 간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였다.

두 작은 섬 중에 서도(西島)가 더 높아 고도가 157m로 상봉은 멀리서 보면 원통형의 모습이며 수직선의 절벽으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동도(東島)는 서도에 비해 낮은 편이나 상봉은 평평하다고 했다. 해수면의 많은 바위에 강치 무리가 살고 있다. 담수는 있으나 수질이 좋지 못하며 상주 거주자는 없다. 여름에 강치를 포획하려 어민들이 온다.⁵⁹⁾ 그리고 섬에 상륙하는 부두(埠頭)시설이 없다고 쓰여있다.(주: 현재는 설치되어 있다)

비록 이 수로지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울릉도를 거리 측정의 기점으로 삼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보았다는 점이다.

58) Лочия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я,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вигации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Мин. обороны РФ, 2001г. с. переплёт и схема района.

59) Лочия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я,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вигации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Мин. обороны РФ, 2001г. с.218.

6. 맺는 말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의 고문서와 그리고 여러 출판물을 참고해 제정러시아시대부터 소련시대 그리고 현 러시아 연방까지 독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이미 19세기 중엽에 청국 및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파견한 특사 뿌짜틴의 빨라다 호의 호위선 올리부차가 1854년 독도를 발견하면서 러시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러시아는 독도가 서양지도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1857년에 제정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한 조선동해안지도 안에 독도를 별도로 제도해 함께 발행하면서 독도는 조선해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조선영토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 조선동해안 지도의 발행에 즈음해 러시아는 극동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항로(航路)를 개척하면서 여러 차례 독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정러시아의 해군전집, 해군수로지, 소련 국방부의 “동해(일본해) 수로지”에서 독도의 위치를 항상 울릉도를 기점으로 측량해 독도를 울릉도에 인접해 있는 도서로 보았다.

그러나 독도의 호칭은 혁명 이후 정치 체제에 따라, 또 서양 여러 발견국가의 발견 순서에 따라 올리부차, 리앙쿠르, 죽도, 다께시마, 독도 등 혼란스러웠으나 1972년도에 소련 국방부가 발행한 동해(일본 해) 수로지에서는 대한민국과 미수교국으로 적대적인 냉전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를 한글 발음대로 러시아어로 독도(Токто)라고 호칭하여 미국의 입장과 차별화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로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그 후 현 러시아 연방정부의 국방부에서는 종래의 “동해 수로지”(일본 해 수로지) 대신에 한반도 수로지로 명칭을 바꾸고, 또 정치 지도에서는 영토표시를 분명하게 리앙쿠르(독도) 밖으로 선을 그어

리앙쿠르를 한국영토 안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사진은 물론 지리자료도 이 한반도 수로지에 수록하였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처음 1854년 발견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한국영토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5.6.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독도와 러시아, 울리부차와 리앙쿠르, 독도와 러시아 군함 울리부차, 빨라다 호의 조선 동해안 지도, 조선 동해안 지도와 독도, 한러 관계사로 본 러시아와 독도

< ABSTRACT >

Russia and Island 'Dokdo' based o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Korea-Russia

Park Chong-hyo

Russia found Island 'Dokdo' in 1854, which was not on the Western map and in 1857, ministry of Navy of Imperial Russia had published a sea map of Korea confirming that Dokdo island is a territory of Korean own Isle near Ulrungdo, one of Korean inhabited island on the south-eastern sea. In publishing Korean sea map, Russian had surveyed 'Dokdo' while developing sea route to Pacific Ocean from Far East and then Russia came to know that Dokdo was is a subsidiary Island of Ulrungdo while they surveyed the island based on the point of Ulrungdo. However, Name of Dokdo has been named as OLibucha, Liancourt, Hornet, Dakkesima, etc by Imperial Russia, USSR and Federation of Russia.

And surprisingly, in 1972, in spite of during Cold War, Defence Department of USSR published sailing directions of East Sea described the Isle named as Dokdo as pronounced as Korean and confirmed Island Dokdo is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differentiating from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then, Defence Department of Federation of Russia has changed name as sailing directions of Korean peninsula from the name of Sea of Japan and have Liancourt(Dokdo) included in Korean territory lining outside of Dokdo Island. Accordingly, since foundation of Dokdo by Russia in 1854, Dokdo has been recognized as Korean own territory.

Key Words : Russia and island Dokdo, Ulrungdo and Dokdo, Dokdo is a territory of Korean own isle, Ulrungdo and Dokdo, East sea and Dokdo, map of Korea in 1857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기 석 호*

1. 들어가는 말
2.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의 시대적 변천 과정
3. 핵무기시대 정당한 전쟁론(Jus ad bellum, Jus in bello)
4. 북한의 핵위협과 선제공격의 정당성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은 본질적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수단이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의 가치들도 파괴돼 왔다.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여러 잔학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모든 전쟁은 죄악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해 버릴 수 없다. 그러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해석과 적용은 마땅한 구별(discrimination)과 차별(distinction)을 하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 정당한 전쟁의 윤리와 도덕은 이러한 구별과 차별을 철저히 요구한다. 이러한 구별과 관련하여 정당한 전쟁론은 특정의 유사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중 대부분은 그 구조가 무엇이며, 그것을 구상하는 원칙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이론의 구조는 대체로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상의 정당성(Jus in bello)’으로 구분된다.¹⁾

‘전쟁의 정당성’과 ‘전쟁수행상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은 정지(靜止)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 전쟁에 적용되는 원칙들은 그 시대의 군사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실성과 타당성을 상실해 쓸모가 없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현대 무기성능의 놀라운 향상과 전 달 수단의 경이로운 발전은 이러한 원칙의 변화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불량국가(Rogue state)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규제조치와 제재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 핵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한반도의 전쟁을 고려하였었다. 당시 1만 명의 미군병력을 한국에 추가 투입시키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계획되었으며, 미 합동참모본부는 모든 지역사령관과 4성 장군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하여 백악관에서 한반도 전쟁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럭(Gary Luck) 장군은 제2의 한국전쟁에 소요되는 예산을 1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미군 8~10만 명과 한국군 30만여 명의 희생을 예견하였다. 6월 16일 미국 상원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저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격퇴”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1) Nicholas Fotion, “Reaction to War: Pacifism, Realism, and Just War Theory”, In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 ed. Andrew Valls(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pp.21~22.

야 한다는 내용을 승인하였다. 이 내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언과 하버드대학교에서 발간한 미·북한 핵협상의 진실에 대한 리포트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²⁾

만약, 이 시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강행하였다면 이 전쟁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을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개념은 킬체인(Kill Chain)에 의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³⁾ 최근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 성공과 관련 북한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⁴⁾ 주변국 일본마저도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 자위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최근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북 군사전략으로 ‘적극적 능동억제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기본 개념은 북한의 핵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도발 이전에 압도적 우위의 공격수단을 이용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지도시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선제적 자위권에 근거한 능동 억제전략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에게는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제공격이

2)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서재경 역(서울: 김영사, 1998), 20~26쪽.

3)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공격 체제로 도발 징후포착과 동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Kill Chain(신속타격순환체계)은 미 공군에서 이동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역동적 표적선정과정으로 네트워크 중심전의 주요개념의 하나로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타격체계이다. 강진석, 『크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서울: 동인, 2013), 422쪽.

4) “일본 방위상 북한기지 공격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5. 5. 19. 1면).

5) ‘Anticipatory Self-Defense’는 국내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선제적 자위’와

마치 ‘기습공격’ 혹은 ‘선공(先攻)’으로 인식돼서 거부감을 유발시키면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하여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개념은 천안함 사태 이후 기존의 수동적 또는 반응적 대응에서 적극적 능동대응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정부의 대북 대응전략이 고차원의 ‘선제적 자위’를 지향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제적 자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시키고 오늘날 한반도에 직면한 당면 문제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강구되는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선제적 자위의 역사성을 고찰하여 보고,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충족조건을 논의 후 북한의 핵위협 상황과 연계하여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과 자세를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2.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의 시대적 변천 과정

가. 초기 개념화 및 정당화 과정

정당한 전쟁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켈젠(Hans

‘예방적 자위’ 또는 ‘선행적 자위’ ‘예상적 자위’ 등으로 다양하게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자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Kelsen)은 그 기원을 오랜 원시사회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비록, 원시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에 대한 관념이 소박한 형태이긴 하나 전쟁의 근본은 어떤 이익 침해나 불법에 대한 반동(反動)으로서의 보복행위였으며, 그러한 보복행위로서의 전쟁은 불법에 대한 제재(sanction)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한 그 전쟁은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은 원시사회에도 용인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⁶⁾ 켈젠의 견해와는 다르게 베인톤(R. H. Bainton)은 정당한 전쟁론은 평화와 관계되어 이해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에 대한 첫 출발점은 고대 세계의 평화의 개념과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이와 같이 전쟁의 정당성은 아주 오랜 역사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제적 자위에 대한 개념은 언제부터 정립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쉽지 않다. 켈젠의 견해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러한 개념 또한 오랜 원시사회에서부터 용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선제적 자위에 대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상당하겠으나 이러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기에 그 기원을 가늠할 수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근세에 와서 국제법상의 선제적 자위에 관한 고전적 선례로써 자주 인용되는 매우 특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그 사건을 ‘캐롤라인 호 사건’이라 칭하고 있다.

이 사건은 1837년 발생한 미국과 영국의 분쟁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 반군은 독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반군 지지자들이 미국 영토로 유입해 들어왔고, 미국인들과 섞여 캐나다를 침공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캐롤라인 호는 반란의

6) Hans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New York: Rinehart & Company · Inc, 1959), p.34.

7) R.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 a Historical and Critical Survey and Evaluation*(Nashville: Abingdon Press, 1960), p.17.

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령과 동제도간에 인원과 물자의 수송을 담당하였던 미국의 선박이다. 1837년 12월 29일 밤, 영국은 강 건너 미국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캐롤라인 호를 나포하여 방화한 후 나이야가라 폭포 아래로 유기시켰다. 이 과정 중에 미국인 선원 뒤프레(Durfrey)를 포함 2명이 영국군으로부터 살해되었고, 영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 침공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하였다.⁸⁾

미국 정부는 영국의 무력공격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영국은 ‘자위와 자기보존의 필요(necessity of self-defence and self-preservation)’ 등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수년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가 국무장관 웹스터(Daniel Webster)가 영국에 편지를 보내어 자위(self-defence)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위의 필요(necessity)가 절박(instant)하고 압도적(overwhelming)인 것으로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유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다(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for deliberation)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그 때문에 ‘자위의 필요에 보장된 행위가 그 필요에 한정되어 명확하게 그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것’ 등도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영국은 미국이 주장한 조건에 동의를 표시하고 양국은 자위가 무력행사의 정당화 사유로서 인정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그 후 웹스터 공식은 자위권과 관련하여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 수락되었으며 실정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정식화됨으로써 자위의 고전적 사례가 되었다.¹⁰⁾ 이 사건은 오늘날의 선제적 자위개념의 정당화 조건인 급박성과 필요의 한도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관습법상 자위권에 선제적 자위의 개념을 포괄시키고 있다는

8) 김광권 외 공저, 『국제법 주요판례집』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126~127쪽.

9) Ibid., 127쪽.

10) 김대순, 『국제법론 제9판』 (서울: 삼영사, 2004), 239쪽.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웹스터 공식의 성립요건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이후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발전하게 된다. 1940년 4월 9일 새벽,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였다. 그 이전까지 서부전선은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Phoney war(가짜전쟁)’ 기간이었다.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하기 전에 독일이 먼저 점령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위권을 주장하며 침공하였다.¹¹⁾ 이 사건은 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enberg)의 판례로서 유명하다. 판례는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은 방어적인 자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웹스터 공식에 기초하여 독일이 주장했던 공격의 ‘임박함(imminence)’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급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침공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큰 의미는 국제 관습법상에서 웹스터가 형성한 기초이론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판례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과 국제 관습법상에서 성립되고 있는 ‘선제적 자위권’의 구체적 성립 요건으로서 공격의 임박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¹²⁾

현대 전쟁에서 공격의 ‘임박함’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요 선례는 제3차 중동전쟁이다. 1964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과 이웃 중동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6일 전쟁(Six day's war)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정치적 마찰로 시작되었다. 제3차 중동전쟁으로 불리는 6일 전쟁은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의 대결, 아랍민족과 이스라엘의 대결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전쟁이다. 1967년 5월 14일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시리아를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대규모 병력을 시나이 반도에 투입하였으며, 5월 22일

11) 버나드로 몽고메리, 『전쟁의 역사』, 승영조 역 (서울 : 책세상, 1995), 844쪽.

12) 남승현,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26쪽.

에는 이스라엘 무역로인 티란(Tiran)해역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였다.¹³⁾ 5월 30일에는 요르단과 이라크는 이집트와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강도 높은 수준의 공포가 이스라엘 전역을 엄습했다.¹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공격이 임박했으며 선제공격 외에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6월 5일에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개전과 동시 170분에 걸친 선제공격은 이집트 전투기 300대를 파괴하였고 6월 6일에는 시리아와 요르단, 이라크 전투기 416대를 파괴시켜 아랍 측 공군력을 모두 괴멸시켰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당한 논리와 입장을 인정하였다.¹⁵⁾ 마이클 월저에 의하면 ‘6일 전쟁’은 20세기의 ‘선제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하였다. 그는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6일 전쟁의 사례와 함께 논의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합법적인 형태의 정당한 전쟁으로 결론지었다.¹⁶⁾

나. ‘Anticipatory Self-Defense’로부터 파생된 두 견해(선제, 예방)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은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건설 초기단계에 불과하였던 이라크의 오시락(Osiraq) 발전소를 ‘바빌론’이라는 작전명으로 공격하였으며, 이 사건은 그 당시 대표적인 예방공격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이라크 오시락 원자로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화 목적의 발전소였다. 그럼에도

13) 주시후, 『전쟁사』 (서울: 홍익재단, 2006), 256~257쪽.

14) 마이클 월저, 『마르스의 두 얼굴』 권영근외 공역(서울: 연경문화사, 2007), p.205.; 해역봉쇄는 UN에서 명확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티란 해역을 봉쇄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더틀라스 P. 래키, 최유신 옮김, 『전쟁과 평화의 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89~90쪽.

15) 정상수, 「한국의 선제공격 능력 강화 방안」 (국방대학원, 2010), 34~36쪽; 박휘락, 『북한 핵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서울: 한반도 선진화 재단, 2013), 149쪽.

16) 마이클 월저, *op.cit.*, pp.198~207.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작전은 급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공격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협,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이자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선제적 자위권’의 개념을 벗어나는 비합법적 형태의 행위로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식되었다.

오시락 원자로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6일 전쟁과는 반대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이 사건은 웨스터 방식에 의하여 급박한 무력공격의 위협, 압도적인 자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으며, 선제조치가 불가피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국제사회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40회의 비난 연설과 더불어 7개 항목의 강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부당한 예방공격으로 인정되어 UN안전보장 이사회는 ‘UN현장의 국제적인 행위규범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¹⁷⁾

이 사건을 전후하여 선제적 자위와 관련하여 파생된 여러 용어 및 수식어가 등장하면서 ‘선제성’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또한,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오늘날 다른 학자들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제성’을 묘사하는 용어의 수식어들(Preemptive, Preventive, Anticipatory 등)은 모두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기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때 적을 먼저 공격하는

17) Shai Feldman, “The Bombing fo Osiraq-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Vol.7, No.2(Fall 1982), p.136(남승현, *op.cit.*, 14쪽에서 재인용).

무력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즉, 군사적으로 적의 공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을 공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선차적, 선제적, 선행적, 사전적, 예방적 무력 행위를 서술한 것이다. 이들 용어들은 무력행사의 시간이 적보다 사전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용어가 탄생된 전략 환경의 배경과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게 될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오늘날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¹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위(Self-Defense)’에 대한 두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하나는 급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선제적 자위’ 개념을 벗어난 예방전쟁(Preventive war) 개념으로, 이는 부당한 것이며 결코 자위권이 ‘예상 자위’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견해이다. 또 하나는 급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곧 발생할 위협에 대하여서는 관습 국제법상의 자위에 ‘선제적 자위’ 개념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권에 ‘선제’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써 자위권이 ‘예상 자위’ 개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⁹⁾ 이러한 논쟁은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개념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선제적 자위’ 개념의 확대(선제공격 독트린)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제 관습법상 자위는 주권국가의 고유권리이므로 UN 헌장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제 관습법은 ‘선제적

18) 권태영·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전략연구 통권 51호, 2011), 13쪽.

19) 김석현,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론』(국제법학회논총 130호, 2013), 139~141쪽.

자위’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서 UN 현장의 자위권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UN은 개별 국가의 자위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⁰⁾

미국은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 지지를 배경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²¹⁾을 치르고 난 뒤, 이라크 전쟁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2002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이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무력사용의 범위를 기존의 ‘선제적 자위’의 개념을 뛰어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 변경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선제적 자위의 필수 요건인 급박성을 다른 각도에서 확대해 적용한 것이다.²²⁾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국가 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 불사,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필요시 단독행동을 불사하며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미는 급진주의와 기술력이 결합된 긴박한 위협이 있을 때에는 적의 공격 시간과 장소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위를 위해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불사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이 되어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불리게 되었다.²³⁾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한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워 동맹국인 영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2003년 3월 17일

20) 심우찬, 『전쟁법 해설서』 (서울: 국방부, 2013), 63쪽.

21)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테러를 직접적인 무력공격(Armed attack)으로 간주하여 순수한 UN 현장상의 자위권의 발동으로 볼 수 있다.

22) 심우찬, *op.cit.*, pp.65~66.

23) 남궁곤, 『네오콘프로젝트』 (서울: 사회평론, 2005), 181쪽.; 권혁철, 『선제공격의 전략적 적용에 관한 연구』 (국방대 연구논문, 2009), 67쪽.

48시간의 최후통첩을 보낸 뒤,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였으며 개전 27일 만에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승리로 이끌게 된다.

이라크 전쟁은 2000년대 발생한 전형적인 예방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부당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급박한 위협이나 급박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결정적으로 전쟁 이후 미국은 가장 큰 전쟁 원인으로 제시하였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라크가 테러집단을 지원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²⁴⁾

지금까지 캐롤라인 사건으로부터 이라크 전쟁까지의 과정과 선례를 통하여 ‘선제적 자위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국제 관습법상의 선제적 자위권은 1837년 발생한 캐롤라인 사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동 사건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웹스터는 자위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충족조건(웹스터 공식)을 제기하였고 이를 당시 영국이 수용함으로써 국제 관습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실정 국제법의 원칙으로써 정식화되었고 자위의 고전적 사례가 되었다. 이후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을 계기로 국제 군사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웹스터 공식의 구체적 성립 요건인 공격의 임박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국제 관습법상의 자위권은 자위권 이외의 다른 수단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로 인정되어 왔다.

국제 관습법상의 선제적 자위권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및 충족여건에서 알 수 있듯이 UN헌장이 정의한 유일한 합법적 조건과는 상이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 관습법의 선제적 자위는 공격의

24) 정상수, *op.cit.*, 57쪽.

임박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지만, UN헌장 제51 조의 자위권은 직접적인 무력공격(armed attack)을 그 성립요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조건에 대한 논쟁은 9.11테러 이전까지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국제 관습법상의 선제적 자위권을 UN헌장 51조 안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²⁵⁾ 그 이유는 UN헌장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과 상충될 경우 그 결과 무력 사용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일부 국가들이 이 관습법을 재해석하면서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이 커지면서 UN헌장이 규정하는 ‘무력공격’을 기준으로 하는 자위권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국제 관습법상의 선행적 자위권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²⁶⁾ 이러한 경향과 함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국제 관습법상의 공격의 임박성과 UN헌장 51조의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대한 재해석을 주장하였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선제공격 독트린’ 및 이라크 전쟁의 논리가 UN헌장 51조의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 포함될 수도 없으며 이보다는 훨씬 무력사용 권한의 폭이 넓은 국제 관습법상의 선제적 자위 개념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실시할 징후가 없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새롭게 정의된 불량국가들(rogue state)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 즉, 이러한 위협을 UN헌장 51조와 국제 관습법상의

25) Christine Gray,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Second Ed. (Oxford, New York : Oxford Univ. Press, 2004), p.130(남승현, *op.cit.*, 27쪽에서 재인용).

26) Ibid.

선제적 자위권의 충족요건과 연계시켜 작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듯 전혀 연관시킬 수 없는 내용을 법적체계 안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공격의 임박성과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대한 재해석화 과정을 통하여서 무력공격의 정당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선제적 자위의 재개념화

선제공격 독트린을 지지하는 역사학자, 국제 정치학자, 정책 결정자들은 UN헌장상의 자위권의 해석이 현재의 위협을 감당해 낼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관습법적 해석으로 회귀(Pivot)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다 본질적이면서 어려운 부분은 과연 기존에 유지되었던 임박성의 해석을 어떻게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가의 측면이다. 예컨대 위협이 국가에서 테러리스트 개인으로 바뀌었으니 임박성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UN헌장상에 자위의 성립요건인 ‘무력공격’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²⁷⁾

선제적 자위의 확대해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차이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은 용어 사용으로부터 많은 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선제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anticipatory’이고 또 다른 하나는 ‘preemptive’이다. 이러한 용어는 ‘선제적(또는 예방적)자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설상 전통적으로 ‘선제적(또는 예방적) 자위권’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anticipatory self defense’가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국가

27) 남승현, *op.cit.*, 85쪽.; 무력공격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찬규, “무력공격의 개념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인도법 논총 29호, 2010).

안보전략의 영향으로 ‘preemptive self defense’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²⁸⁾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을 견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서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일’로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선제공격의 의미는 ‘적대국가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이를 억지하거나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예방전쟁은 ‘적대국의 공격이 계획되어 있거나 그러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미래의 가능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²⁹⁾

요약 정리하면, 선제공격은 상대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거나 임박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상대에 앞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곧 악행을 저지를(will) 대상에 대해서 사용되는 무력을 말한다. 반면에 선제공격과 혼동해서 사용하는 예방전쟁은 장차 침략해 올 가능성(might)이 있는 인접국가 또는 가상적국의 전쟁수행능력이 자국에 비해 우위에 설 위험이 있을 때,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쟁이다.³⁰⁾

그러므로 선제공격은 근본적으로 예방전쟁과 구별된다. 무력공격이 개시되진 않았지만 임박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발동되는 자위수단이 전자임에 대해 후자는 당장 무력공격이 개시될 징후는 없으나 위협이 임박한 것으로 되기 전에 가능성을 잘라버리기 위해 발동되는 자위의 경우이다. 현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는 인정되지

28) 전순신, “국제법상 선제적 무력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법학논고 제30권, 2009), 461쪽.

29) 박휘락, 『북한 핵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서울: 한반도 선진화 재단, 2013), 142~143쪽.

30) 임은성, “선제전쟁의 시작과 종말, 제한된 보상”(전략연구 통권 제50호, 2010), 183~184쪽; 더글라스 P. 래키, 최유신 옮김, 『전쟁과 평화의 윤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288쪽.

않는다. 그렇다면 선제공격은 어떠한가? 엄격한 제한이 있지만 무력공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선제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관습 국제법상의 자위권은 선제적 자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관습 국제법상의 자위권이 현장상의 자위권과 별도로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면 현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³¹⁾

오늘날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법학자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부정론)이다. 부정론의 대표적 학자는 한스 켈젠, 란텔조프, 그레이 등으로서, 그들은 무력공격이 발생할 때까지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통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예비적 자위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둘째, 급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무력의 사용이 인정된다는 주장(급박한 위협론)과 셋째, 선제공격은 인정된다는 주장(위협완화론) 등이 있는데 대표적 학자로서는 월독, 보웨트, 오펜하임, 히긴즈 그 린우드가 예비적 또는 선제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논거를 이용해 주장하고 있다.³²⁾

UN헌장 제51조에는 자위권의 발동 요건으로서 한 국가가 “무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무력공격 없이는 자위권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절박한 ‘평화의 위협’이 있다고 결정을 내릴 때 이 사회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³³⁾ 그러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국가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선제적 무력을

31) 김찬규, *op.cit.*, 7쪽.

32) 전순신, *op.cit.*, 458~466쪽; 권태영·신범철, *op.cit.*, 25쪽.

33) Leo Van de hole, “Anticipatory Self-Defence Under International Law.”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9, No. 1(2003), p.95.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국제법은 유엔헌장보다 더 엄격하다. 즉 국제법은 절박한 위협이 분명할 경우에만 개개의 국가들이 선제적 무력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엔헌장도 국제법도 더 이상의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예방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예방전쟁을 인정하지 않지만 선제공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선제공격 허용 논리를 제한이론과 확장이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한이론은 자위로서의 선제적 무력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이론은 유엔헌장 51조와 국제 관습법에 의하여 철저히 제한받는다라는 주장이다. 무력공격이 없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것과 유엔헌장 제51조는 선제공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평화의 위협이 있다는 결정을 내릴 때)”로 국한시킨다. 이것은 유엔헌장에 의해 선제공격이 매우 분명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제법학자들은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여 자위권의 관행적인 권리가 특정상황에서 예상되는 적의 공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확장이론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확장이론은 선제공격의 관행적인 권리를 유엔헌장 51조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³⁴⁾

현재의 국제법적 상황은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지 않는 UN헌장 제 51조의 자위권과 그것이 인정되는 관습 국제법상의 자위권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 개념의 변화에 의해 헌장상의 자위권도 실질적으로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UN헌장 제51조에는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재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무력공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34) Ibid., pp.80~82, 98.

언제 무력공격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출현한 이론이 ‘누적적 사건론(accumulation of events theory)’이다. 개개의 단순한 사건을 떼어 놓고 보면 하찮은 것일 지라도 그 전체를 집합적으로 보면 UN헌장 제51조에서 규정한 그 이상의 무력공격이 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의해 빈번히 원용돼 왔다. 게릴라 공격 또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이스라엘이 정형화된 사건들을 한데 모아 한 번의 대반격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이론으로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에서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잡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³⁵⁾

선제적 자위에 관한 재해석은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전쟁 수단의 등장 및 그 운반 수단의 혁신으로 필요하다.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상공에서 폭발할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時期)가 아님이 확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발사버튼을 눌렀을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인가?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급박한 위협, 무력공격의 시기에 대한 개념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3. 핵무기시대 정당한 전쟁론(Jus ad bellum, Jus in bello)

현대의 정전문자들은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경우’를 단순한 논리나, 합당한 이유, 혹은 학자들의 사변 논리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진 두 가지의 기본적인

35) 김찬규, *op.cit.*, 7~10쪽.

규범을 가지고 논의한다. 첫 번째 규범은 정의로운 명분에 대한 해명으로써 전쟁에 호소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위한 규범이다. 후대에 와서 전쟁론자들은 이것을 ‘전쟁의 정당성(라틴어로 Jus ad bellum)’이라 표현한다. 또 한 가지의 규범이 있는데, 이는 전쟁 중의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규범이다. 이는 ‘전쟁수행에 있어서의 정당성(라틴어로 Jus in bello)’이라고 말한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원들에게 올바른 전투 수단의 사용을 위한 안내서이다. 군인들에게 이 안내서는 전쟁에 이르는 길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일이 전쟁 중에 옳은지를 구체화시켜 주고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쟁규약은 정당한 교전국이 군사적 무기를 통제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결국 현대의 정당한 전쟁은 제한전쟁 정책과 제한능력이 없이는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유일하게 기본이 되는 요건은 그러한 전쟁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다.³⁶⁾ 이런 의미에서 “정당한 전쟁을 제한된 덕성(Grenzmoral)”³⁷⁾이라고 하였으며, “정당한 전쟁은 제한전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듯이 본래 정당한 전쟁은 전통적으로 제한전쟁이었다.³⁸⁾

전통적으로 정당한 전쟁의 기본사상은 자연법사상이면서 차별 전쟁관이다. 차별 전쟁관하에 수행되는 전쟁방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제1·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의 종말적 비극은 무차별 전쟁관의 결과였다. 당시의 정당한 전쟁의 기본사상은 실정국제법사상하에서 무차별 전쟁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무차별 전쟁관하에 수행되는 전쟁방식은 무제한적

36) William O'Brien,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War*(New York: Praeger, 1981), p.38, 327.

37) John Courtney Murray, “Theology and Modern War”, in *Morality and Modern Warfare*, ed. William J.Nagle(Baltimore: Helicon, 1960), p.82.

38) 마이클 월저, *op.cit.*, 47쪽.

이며 총력전일 수밖에 없었다.³⁹⁾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화생방무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 냉전시대 유산물인 대량살상무기 등은 인류생존과 공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주장들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전통적 정당전쟁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현대적 상황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전쟁은 제한전쟁만으로 국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 이론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날 ‘정당한 전쟁’의 기준으로는 학자들에게 일곱 가지 원칙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의 일곱 가지 원칙은 제시하는 기준 순서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조금씩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기도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의 기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화될 수 있는 원인(justificable cause) 둘째, 적법한 권위

39) 정당한 전쟁론은 어거스틴, 아퀴나스, 비토리아, 수아레즈 등을 거쳐 휴고 그로티우스에게 계승된다. 그로티우스가 발전시킨 정전론은 웨스트팔리아조약에 의하여 마련된 근대유럽체제하에서 근대국 제법의 효시가 되었으며 그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더욱 발전되어 갔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국가주권 평등의 사상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실정국제법의 등장으로 국가주권의 상위에 서서 합법적 교전자와 불법적 교전자를 구별하는 자연법적 차별 전쟁관인 정당한 전쟁론은 그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주권평등의 사상이 고조되자 다른 한쪽에 서는 자연법적 정전론을 부인하고 전쟁개시에 있어 교전자의 평등을 내세우는 실정법학과의 무차별 전쟁관이 서서히 태동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학자로서 Bynkershoek (1673~1743)을 들 수 있다. 그는 국제법에 관한 초기 학자들 중에서 그로티우스 다음으로 주요한 법적 사고를 가진 자로서 실정법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자연법사상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전쟁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원인의 정당성 여부는 자국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17, 18세기에 있어서 실정법적 무차별 전쟁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차별 전쟁관은 18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 이론의 지배적 견해가 되었다. 임덕규, 「국제법상의 정전론」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5), 42~62쪽.

(legitimate authority) 셋째, 최후의 수단(last resort) 넷째, 전쟁목적의 선포(declaration of war aims) 다섯째, 비례성(proportionality) 여섯째, 합리적인 성공의 희망(reasonable hope of success) 일곱째, 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이다.⁴⁰⁾

그러나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의 원칙들이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 순서가 매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론 안에는 우리에게 특정한 한 원칙이 다른 원칙보다 더 핵심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지거나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해 주는 표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원인(justificable cause)과 최후의 수단(last resort), 비례성(proportionality)은 다른 원칙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이다.⁴¹⁾ 본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 원칙 가운데 선제적 자위와 연관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고자 한다.⁴²⁾

1) 정당화될 수 있는 원인(justificable cause)

아퀴나스는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정당한 이유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위반 때문에 공격을 당한 자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도 “한 민족이나 국가가 비행을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해악을 당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처리될 것을 회복하려고 어떤 비리에 대해 보복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³⁾ 여러 해에 걸쳐서 이 간결하고 모호한 정의는

40) Joseph L.Allen, *War: a Primer for Christians*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2001). pp.36~43.; 권기봉, “전쟁의 일반이론과 정당한 전쟁론”,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48~49쪽.

41) Fotion, *op.cit.*, pp.27~28.

42)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기석호, 『정당한 전쟁과 핵무기시대의 한반도 평화』 (서울: 좋은땅, 2014), 177~210쪽.

43)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secunda secundae*, Q. 40 (Art. 1) in *D’Entrevues, Aquinas*, p.159.(O’Brien, *op.cit.*, p.20에서 재인용).

확대, 수정되면서 당국에 따라 내용이 다양해졌지만 정당한 이유의 실체, 정당한 이유를 추구하는 형식,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대응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평화적 처방의 철저한 사용,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⁴⁴⁾

이러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원인은 정당한 명분(just cause), 공정한 명분(right cause), 정당화(justification), 매우 충분한 이유(very good reasons)라고도 일컬어진다. 예를 들면, 무고하게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이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 동맹국이거나 우방국이 공격을 당한다면 직접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 인도적인 근거에서 정당하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이것은 NATO가 1999년 코소보 사태로 인해 세르비아를 공격하였을 때 호소했던 기준이다.⁴⁵⁾

핵무기시대인 오늘날 정당화될 수 있는 원인은 UN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의 개념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무력공격에 대한 개념 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선제적 자위와 예방적 자위의 논쟁을 유발시킨다.

2) 최후의 수단(last resort)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오직 전쟁에 대한 모든 평화적인 대안이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만일 정부가 보다 덜 파괴적인 수단에 의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전쟁으로 인한 파괴적인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즉 모든 대책을 다 시도해 본 다음에 최후의 방편으로

44) O'Brien, *op.cit.*, pp.19~20.

45) Fotion, *op.cit.*, pp.22~23.

일으키는 전쟁이어야 한다.

이처럼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은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어떤 이들은 이 기준이 온갖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만 전쟁으로 나아가기를 재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모든 선택사항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말 그대로 끝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충고라기보다는 과장된 면이 있다. 총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상 수단, 제재, 정치적 공작, 보이콧 등이 항상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은 아마도 최후의 합리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것은 격분하였거나 전쟁을 개시할 정당한 명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조성될 경우 대단히 호전적인 반응을 단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열정보다 냉정을 선호한다.⁴⁶⁾

3) 비례성(proportional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은 전쟁을 통하여 얻는 이득이 전쟁을 통해 입는 손실보다도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전쟁의 결과로 예상되는 악이 전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악보다 적지 않다면 그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의 벨기에의 입장을 살펴보면, 1914년 8월 2일 벨기에 주재 독일 공사(公使)가 앨버트(Albert) 왕에게 독일군이 프랑스로 진격하는 데 벨기에를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건넸다. 앨버트 왕은 즉시 그것을 거절했고 벨기에에는 단지 6개 사단 병력으로 독일의 수십 개 사단에 저항하였다. 벨기에에는 용감하게 싸웠고, 특히 리게(Liege)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어를 하였지만, 이러한 벨기에의 군사적 방어는 독일군 수십 개 사단의 진격을 불과 이틀

46) Ibid., pp.24~25.

자연시킨 것뿐이고 벨기에가 입은 손실은 엄청난 것이었다. 벨기에의 군사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 원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었지만 비례성의 기준에 의하면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그 결정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⁴⁷⁾ 이 원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방법들은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하며,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이 공의와 평화의 회복이지 적을 괴멸시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 혹은 제 삼자에게 가해진 손실이 원래 치료하려던 악보다도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⁸⁾

나.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 이론

인류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수 세기에 걸쳐서 싸우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과 관습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다. 이른바 ‘전시법’ 또는 ‘전쟁법’들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주요 국가들이 서명하고 인준한 일련의 조약, 협정, 그리고 의정서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조약과 협정,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은 자국의 군대에 적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위반할 경우에 국제법은 당사국의 위반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로 되어있다.⁴⁹⁾

정당한 전쟁이론의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늦게 등장한 정당한 전쟁수행은 두 가지 제약이 규정되었다. 한 가지는 정치적 및 군사적 목적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비례적 대응성을 요구하는 비례적 대응 원칙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비전투원과 비군사적 목표에 대한

47) 래키, *op.cit.*, pp.99~102.

48) Jerram Barrs, *Who are the peacemakers?: The Christian Case for Nuclear Deterrence*(New York: permission of InterVarsity Press. 1983), p.42.

49) 강진석, 『현대전쟁의 논리와 철학』 (서울: 동인, 2012), 346쪽.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을 금하는 분별적 보복 원칙이었다.⁵⁰⁾

정전론 사상가들이 제시한 기준에 충족되는 올바른 전쟁이라든가 국가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비록 그 전쟁이 방어를 위한 것일지라도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없다. 램시는 전쟁에 있어서 정당성의 개념을 고려할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떤 실제적 혹은 추정된 선을 위해서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⁵¹⁾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전쟁 도덕의 주요 내용인 반면, 전쟁에 있어서의 정당성 논의는 전시 도덕의 주요 내용이 된다. 이에 대한 숙고(熟考)는 전쟁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규범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원들에게 올바른 전투 수단의 사용을 위한 안내서이다. 전투에 임하는 전투원들에게 이 안내서는 정전론적 가르침으로써 전쟁에 이르는 길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일이 전쟁 중에 옳은지를 구체화시켜 주고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장래에 야기되어질 인간의 고통을 제한하는 것이고 비전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²⁾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규범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 첫째는 차별의 원칙, 둘째는 비례의 원칙이다.⁵³⁾

1) 차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차별의 원칙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공격목표와 위법한 공격목표를 구분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위한 통상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지위로서 분류하고, 오직 전투원들만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

50) O'Brien, *op.cit.*, p.37.

51) Paul Ramsey, *The Just War*(Boston: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p.142.

52) Malham M. Wakin (ed.),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Colorado: Westview Press, 1986), pp.240~241.

53) Allen, *op.cit.*, p.43.

하는 것이다.⁵⁴⁾ 따라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확신에서 생긴 것이다.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치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공격의 의도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⁵⁵⁾

이 기준은 전쟁의 정당성 일곱 번째 기준인 올바른 의도와 전쟁의 수단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차별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한 편의 진정한 목적이 보다 나은 평화에 있는지 아니면 단지 살상과 파괴의 여부를 밝혀 주는 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차별의 원칙은, 우리가 적국의 국민 모두를 자기 자신과 혹은 자신의 자녀로 여기는지, 아니면 단지 파괴시켜야 할 악이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지의 여부를 적시해 준다.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표물과 허용될 수 없는 목표물 사이의 차별은 전쟁 윤리의 아주 중요한 표시이다.⁵⁶⁾

그렇다면 무엇을 차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비전투원을 배제해야 하고, 두 번째, 제한된 목표물에 대한 공격과 공격 수단의 제한이다. 차별의 원칙은 전쟁 중에 비전투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금하고 공격 수단을 제한시키면서 그 대상을 비전투원뿐만 아니라 일반시설, 건물 그리고 자연까지도 포함한다. 비전투원이라 함은 전투 중에 억제되어야 하는 군사 행위에 긴밀히 가담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비전투원은 그 역할이 군사행위의 필요성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요구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⁵⁷⁾

54) Andrew Valls, *op.cit.*, p.75.

55) Jerram Barrs, *op.cit.*, p.59.

56) Allen, *op.cit.*, pp.43~44.

57) James F. Childress, “Just-War Criteria”, *Moral Responsibility in Conflicts*

‘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가 정의로운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할 때 그 나라가 평화를 회복하고, 단기간에 전쟁 이전 상태로 복구되도록 목표물에 대하여 철저히 제한을 두어야 한다. 즉, 사회간접자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는 현대전에 있어서 비전투원의 배제, 제한된 목표물 공격에 대한 보다 더 효과적 차별을 위하여 공격 수단의 제한을 요구한다. 오늘날 국제법상 이러한 규제에 관한 것을 일견하면 생물학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저장의 금지와 그 파괴에 관한 협정과 1993년 화학무기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 검증규정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규정됨으로써 화학무기를 사용한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이론상 추방되게 되었다.

2)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차별의 원칙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만일 한 국가가 부당한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때 사용될 수단은 부당한 침략을 제압할 목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의 폭력이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⁵⁸⁾

마린(Albert Marrin)은 경찰력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이 원칙을 설명한다. 군중 속에 있는 형사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군중에게 발포(發砲)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정부도 만약 추구되는 목적 그 자체의 가치가 그것을 획득하려는 과정에 빚어지는 해악에 비교하여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쟁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⁵⁹⁾

(Baton Rouge :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2), p.80.

58) Wakin, *op.cit.*, p.241.

59) Albert Marrin(ed), *War and the Christian Conscience : From Augustine to Martin Luther King, Jr*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71.), p.9.

이 원칙의 핵심은 공격무기를 무한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이 한 마을을 공격했다고 할 때 그 공격자 나라 전체를 파괴시킬 정도의 반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공격수단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사용하되, 공격에 동원하는 무기도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해야 한다.⁶⁰⁾

그러나 비례성은 차별의 원칙에 의해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비례성의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차별의 원칙은 어떤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차별의 원칙이 전쟁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는 원(circle)을 구성하고 있으며 비례성은 오직 그 원 안에서만 작용한다.⁶¹⁾ 이것을 이중효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례성과 전투원과 비전투원 사이에 공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이중효과의 원칙은 전쟁의 십자포화에 걸린 전투원과 비전투원 모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효과의 원칙상 군사적인 목표 중에 가장 많은 비전투원들을 동시에 죽이거나 해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피해는 비례성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⁶²⁾

비례성이 이중효과의 원칙을 벗어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무력공격을 구성하는 행동과 이에 대항하는 행동사이에 비례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저지하고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일어난 행동의 규모와 방위 행동에 의해

60) 신원하, 『전쟁과 정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09쪽.

61) Allen, *op.cit.*, p.47.

62) Frances V. Harbour, The Just War Tradition and the Use of Nonlethal Chemical Weapons during the Vietnam War, In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 ed. Andrew Valls(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pp.50~51.

달성되어야 할 결과에 비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였던 인도 출신 국제법 학자 Nagendra Singh은 재래식 무기로서 침략자의 침략을 저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³⁾

이 논의와 함께 야기되는 질문으로서 과학 기술 무기류의 시대에 앞으로도 전쟁이 비례성의 조건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정당한 목적보다 파괴가 불가피하게 심해질 것은 아닌가? 더욱이 과학 기술 무기를 갖고 비전투원과 전투요원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다. 걸프 전쟁에 대해 특기할 만한 것은 컴퓨터와 레이저 유도 발사체의 정밀성이었다. 그 발사기는 상당히 먼 장거리로부터 과거의 어느 전쟁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확도를 가지고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 점진적이고 미래 창조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은 차별과 비례성을 더욱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⁶⁴⁾ 전쟁수행에 있어서의 정당성(jus in bello ; justice in war)은 결과적으로 제한전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전쟁수행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규범적 처방으로서의 제한전쟁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유일하게 기본이 되는 요건은 그러한 전쟁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제한전쟁 양상은 현대전에 있어서 핵무기시대의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연관성과 이해를 요구하게 한다.

63) Nagendra Singh, “The Right of Self-Defence in Relation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5 *In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Affairs*(1956), pp.32~34.(김찬규, *op.cit.*, 13쪽에서 재인용).

64) Allen, *op.cit.*, p.50.

65) O’Brien, *op.cit.*, p.38.

다. 핵무기시대의 정당한 전쟁론

오늘날 인류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 중에서 핵무기에 의한 파멸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 ‘재래식’ 무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제와 제한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전쟁은 양군 사이에 일정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핵시대의 도래는 대부분의 군사적 전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핵 개발의 선구자이며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인류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을 했다. “원자력의 해방(핵분열)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외한 무릇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파멸을 향해 밀려가고 있다. 만일 우리 인류가 이 파멸의 상황으로부터 살아나고자 원한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의 방법 전환이 필요하다.”⁶⁶⁾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핵무기시대 정당한 전쟁이 주장되어 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재래식 전쟁은 ‘전쟁의 정당성’이나 ‘전쟁 수행에 있어서의 정당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러한 기준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컨대 핵전쟁을 통해 승리가 있을 수 있으며 핵무기는 비례성을 유지하거나 차별과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의문시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일부 견해는 모든 핵무기가 무분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소형화와 정확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핵무기도 점차 구분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폴 램지라든지 존슨과 같은 대표적인 정당한 전쟁론 지지들은 미국이 정교한 전략적 방어체계, 즉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적인 곳에 배치함으로써

66) 존 스타트,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109쪽.

핵전쟁과 무기사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만약의 경우 방어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대한 정교한 공격으로 최대한 정당한 전쟁의 균형주의와 차별주의의 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⁶⁷⁾

핵무기시대의 정당한 전쟁을 논의함에 있어서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시간과의 싸움 즉, ‘선제성’을 요구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무기체계 대결구도는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대 우리의 네트워크 중심 전력체계(NCW)의 경쟁력으로 귀착되며, 시간적 경쟁양상을 띤다.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체계와 대량살상무기는 성격 및 용도 등이 확연히 다르다. 전력 운용의 선제성은 모두 필요한 공통성을 지닌다. 대량살상무기는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제적 사용을 추구하게 된다. 네트워크 전력(NCW) 측도 대량살상무기 전력 측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초기에 제거 또는 차단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먼저 적의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선제공격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선제성’을 가지고 있다.⁶⁸⁾

핵무기시대의 정당한 전쟁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사안이 선제적 자위에 대한 문제이다. 핵무기시대의 안정적인 핵 균형 유지를 위해서 현재의 핵보유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추가적 확산을 철저히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불량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비교적 안정적인 핵 대응전략은

67) James Turner Johnson, *Can Modern War Be Just?*(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26~27.

68) 권태영·신범철, *op.cit.*, 38쪽; 오늘날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라 칭한다. NCW(네트워크중심전)은 Network Centric Warfare의 약자이다.

붕괴될 것이며 결국은 지구촌 전체가 핵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초래할 지역과 장소에 예방 차원의 무력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지구촌은 핵 확산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을 포함하여 ‘악의 축’으로 불리는 불량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위반할 경우에는 선제적 자위에 위한 무력행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질 수밖에 없다.⁶⁹⁾

그러므로 핵무기시대의 정당한 전쟁 논의 가운데 하나인 선제적 자위에 대하여 한반도에 직면한 북한의 핵위협과 연계하여 이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능동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 도발 징후포착과 동시 30분 이내 ‘Kill Chain System’으로 사전 위협을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곧, 자위적 선제공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변곡점(變曲點)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선제적 자위를 명분으로 선제공격이 북한 지역에서 직면될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교한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 차별과 비례성을 가지고 제한 공격을 시도할지라도 이는 한반도 전체가 전면 전쟁으로 확산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핵무기와 관련된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이에 따른 제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 억지력 구축을 위한 대응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논의가 위정자의 정책판단에 유용되어지길 기대한다.

69) 전순신, *op.cit.*, 457쪽.

4. 북한의 핵위협과 선제공격의 정당성

가. 자위적 선제공격의 정당성 논의

본질적으로 선제하려는 충동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즉 그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전쟁의 기대로 바꾸어 버리며 그로 인해 전쟁이 촉진되게 된다. 선제공격의 이점(利點) 때문에 전쟁의 기미가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된다. 만약 선제공격을 유발시키는 행동이나 잘못된 정보, 우발적 사건 및 오인 가능한 사태들이 상호협정이나 군비제한 등으로 극소화되고 약화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⁷⁰⁾

선제공격에 대한 의견대립은 ‘급박한 위협’에 대한 견해의 차이만큼 심각하다. 본 연구자는 이 문제를 시제(時制)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급박한 위협’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imminence’를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혹은 곧 닥칠 위급한 상황으로 제한시키는 견해는 시제를 현재형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급박한 위협을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어떤 특정상황으로 본다면 미래형이 될 것이다. 예방적 무력과 선제적 무력을 차이 없이 지지하는 입장은 ‘급박한 위협’의 시제를 미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문제는 선제적 무력을 예방적 무력과 함께 같은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만약 급박한 위협을 미래형으로 볼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국의 티란해협 봉쇄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급박한 위협을 미래형으로 확대할 경우 전쟁의 정당성과 부당성의 기준은 더욱 모호해진다. 그러나 선제공격을 침략에 대한 정당한 방어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즉, 현재형(곧 닥칠 급박한 위협을 포함)으로 이해될 경우

70) 최병갑 외 4명, 『현대 군사전략 대강 IV』 (서울: 도서출판 을지, 1988), 213쪽.

국제법과 유엔헌장 51조안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 사건이 1967년 6월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아랍연합국 선제공격이었다. 지중해 유일한 통로인 티란해협을 봉쇄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그 행위는 예방적 무력이 아닌 침략에 대한 자기방위였다.⁷¹⁾ 선제공격에 대한 찬, 반 입장은 오늘날도 현재와 미래 예방이라는 확대논리로 충돌하고 있다. 결국 미래 예방이라는 확대논리는 부당한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자기방위의 정당한 형태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행위는 국제법에 준한 규약에 의하여 철저히 제한을 받아야 한다. 선제적 무력은 관습 국제법상 다섯 가지 선제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합리적인 노력과 조치, 그리고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의 자위권(선제적 자위를 포함)을 안보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는 유엔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그리고 당사국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선제적 자위를 행할 수 있도록 무력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의 조치가 차단되거나 지연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그리고 무력공격이 일촉즉발의 상황인 경우 유엔의 제 기능이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된다. 두 번째로 국제법은 국가가 그들의 자위권(선제적 자위를 포함)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위법한 침략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로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 무력은 국제법에 위반(違反)한 어떤 침략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 필요성(necessity)이다. 즉, 최후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명백해야 하고 일촉즉발의 공격상황과 같은 현재의 위험성이다. 사실,

71) 래키, *op.cit.*, 89~90쪽.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핵미사일이 방어의 기능을 파괴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많은 사람에게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필요성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본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도발징후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 감시자산을 중첩되게 활용하여 도발 징후를 정확히 식별하고 감시 공백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공격에 비례하는 비례성이다. 이는 과잉조치를 금지하는 목적이다. 다섯 번째는 선제공격은 전쟁이 전역(戰域)으로 확장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직접성이라고 한다.⁷²⁾ 이를 위해서는 Kill Chain System이 완전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위 다섯 가지 조건은 ‘전쟁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례성은 ‘전쟁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관점이다. 본 연구자는 선제적 자위를 부정한다거나 그렇다고 선제적 자위의 확대 논리는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전쟁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첫째는 행동주의(Activism)로서 정부가 명령하는 모든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 내지는 평화주의(Pacifism)이다. 셋째는 선별주의(Selectivism)로서 선별주의는 오직 정당한 전쟁에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³⁾

선제적 자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경향은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와 반전주의 입장이다. 반면에 예방과 선제적 자위를 구분하지 않고 확대 적용하는 논리는 전쟁의 태도 가운데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행동주의는 맹목적인

72) Leo Van de hole, *op.cit.*, p.95.

73) Norman L. Geisler, *Christian Ethics : Contemporary Issues & Options* (GrandRapids, Michigan : Baker Academic, 1989), p.220.

복종이 되기 쉽고 지나친 평화주의와 반전주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되기 쉽다. 모든 전쟁이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선별주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구별하는 것은 선별주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선별주의 입장은 선제적 무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조명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필요조건은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기준은 ‘전쟁의 정당성’ 일곱 가지 기준과 ‘전쟁수행에 있어서 정당성’ 세 가지 기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

이른바 부시행정부에 의하여 ‘악의 축’으로 지명된 국가들을 상대로 선포된 선제 독트린은 상당기간 미국을 유혹할 것이다. 그 같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는 선제전쟁이다.⁷⁴⁾ 본 연구자는 북한에 대하여 자위로서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선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도되는 무력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⁷⁵⁾

74) Flynn, J. Matthew, 『선제전쟁』, 임은성 역(서울: 북코리아, 2011), 311쪽.

75) Leo Van de hole의 5가지 주장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5가지 조건이 선제공격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님을 전제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에서 미국 변호사협회 Leo Van de hole의 5가지 주장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기준 안에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의에 대한 다각적인 비평을 예견하며 이러한 비평의 소리가 선제공격에 대한 연구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백한 판단과 결정을 먼저 선포하여야 한다.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적대국의 무력공격을 저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비 무력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까지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침략국의 무력공격을 저지 격퇴하기 위한 대응행위(선제공격)를 하기에 앞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한다. 이는 정치와 외교적 측면에서의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유엔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게 핵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제재나 위반 선포는 북한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앞으로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과 함께 유엔의 조치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핵 포기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미사일 실험을 금지시키는 노력과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은 자신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미국과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내세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을 갖추라며 부추긴 것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⁷⁶⁾

우리는 지금까지 외교를 통한 협상과 원칙에 의한 압박을 병행하면서 핵개발 포기 및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실전배치를 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상은 1996년 이래 오늘날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것은 입장 차이를 근본적으로

76) 강진석, *op.cit.*, 289쪽.

줄일 수 없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6자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진부한 상태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포할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 테이블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실마리를 풀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나단 폴락은 북한과 핵무기, 그리고 국제안보와의 관계에서 ‘출구가 없다’라고 하였다.⁷⁷⁾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포하게 된다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촌 유일의 핵위협 접경 국가인 한반도에 국제 감시기관을 설치하여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명백한 위협판단의 수준을 24시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선제공격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違反)하는 침략 행위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미국을 상대로 침략을 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제한되며 또한, 정치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무모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강경 발언은 체제고수를 위한 허위선동일 가능성이 크다. 불량국가들이 자주 일삼는 거짓 협박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초동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쟁지속력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현실적으로 미국영토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예견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을 침략하는 경우란 없다는 의미인가? 그것은 한미동맹에 의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나 도발도 똑같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침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77) 조나단 폴락, 『출구가 없다』, 이화여대 통역번역소 역(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2), 228~234쪽.

침략은 새로운 개념의 현대전쟁과 무기의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침략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역을 봉쇄하는 것은 자국의 영토를 침공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⁷⁸⁾ 침략(무력공격)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미사일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레이더 유도 미사일의 경우는 레이더에 의한 조준이 끝나 발사 상태에 들어가면(locked on ready to fire) 발사 전이라도 침략(무력공격)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⁷⁹⁾ 이와 같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무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침략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하여 선제적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불가피함)을 분명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명백한 현재의 위협성을 가지고 입증되어야 한다. 미래의 위협성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을 경우 A(구상단계), B(준비단계), C(결정과 의도단계), D(실제적인 단계)의 악한 의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B(준비단계)를 D(실제적인 단계)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과 혹은 걸프전과 같이 상사가 바라는 생각(wisful thinking)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가정(假定), 현재의 위협성을 과장, 확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역시 우려가 된다.⁸⁰⁾

선제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불가피성, 즉 북한의 악한 의도가 D단계(실제적 단계)임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78) 레키, *op.cit.*, pp.89~90.

79) Christine Gray,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3rd ed., 2008), p.128.(김찬규, *op.cit.*, 16쪽에서 재인용).

80) 제2차 걸프전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발생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실제 대량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까지 충족이 되어야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한국은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국제연합과 함께 협의하고, 이러한 절차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협의 및 시행절차를 사전에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선제적 자위를 필요로 하는 당사국은 선제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필요성을 다 방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년 12월 29일 ‘한·미·일 정보약정’ 체결은 실시간 최신 정보공유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앞으로 ‘Kill Chain System’ 구축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불가피성을 입증시키는 것이라면 세 번째 조건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급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을 국제사회에 입증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획득 능력과 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이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논의하였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평화적 대안들이 모두 실패하고 다른 대안이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전쟁의 정당성’ 세 번째 기준인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선제공격이 실패할 경우 핵 공격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시켜야 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선제공격의 정당성은 자연스럽게 비례의 조건으로 유도시킨다. 비례성은 화력과 피해의 비례성으로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공격수단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사용되되, 공격에 동원하는 무기도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도는 모든 당사자에게 가능한 최소의 파괴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대하여 자위적 수단으로서 선제적 무력을 시도할 경우에 비례성은 도발 장소에 국한하여 정밀 유도무기에 의한 정밀타격, 동종 방법의 미사일 요격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은 2020년대 중반에 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은 이에 대한 요격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실제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다. 실제적 위협은 핵무기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비행능력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하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1톤 미만의 소형 핵탄두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 발사될 모든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고 정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준비된 상태에서 요격시킬 수 있다. 미국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응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진되기 전 전투기와 요격기에 의한 과잉 공격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제한된 정밀 타격 개념을 벗어나는 과잉조치로써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전투기와 요격기에 의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전면전이라는 부작용을 유발시키게 된다.⁸¹⁾ 따라서 예기치 못한 전술과 정밀 유도무기를 활용한 정교한 제한적 공격으로 최대한 비례의 원리와 차별의 원리를 확보하는 전술적 기습과 같은 새로운

81) 미사일 발진에 있어서 비례의 기준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핵미사일 발진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통적 기준의 비례성은 요격이 실패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조치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선제공격을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의 충동은 결국 전쟁의 가능성을 전쟁의 기대로 바꾸어 버리고 전쟁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핵방어전략을 상쇄전략에서 전략적 방어와 한정적 억제로 전환시켰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핵무기를 먼저 쏜 후에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사일에 대한 비례성은 핵억제차원에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다층 공격무기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군사역량 구비가 요구된다.⁸²⁾

다섯째, 무력공격에 대한 선제적 자위는 직접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직접성은 시·공간적 제한 범위를 의미한다. 시기를 상실하면 할수록 직접성은 결여된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시도할 시기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더라도 1994년에 북한의 핵 위협시설을 제거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미국이 영변 핵시설 타격 계획을 수립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1994년에는 북한의 핵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한 번의 타격으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집적(集積)성이 충족되었지만, 오늘날은 북한 전역에 흩어져 분산 배치되었다. 특히 중국기술로 제조한 이동식 발사차량 등을 이용해 핵무기를 이곳저곳으로 실시간 운반할 수 있어 사전에 정밀 타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사일 발사 원점을 사전에 포착해서 도발 이전 정밀타격하기란 사실상 제한된다.⁸³⁾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은 직접성이라는 전쟁규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부정확한 표적과 예상표적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시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 전역을 타격해야 하는 전면전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한반도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다. 더욱 우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2차 공격 능력이다. 선제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100% 파괴하지

82)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한 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CPGS(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를 2013년부터 개발 중이며 2회에 걸쳐 시험비행을 마쳤다. 이 무기는 극초음속 무인기로서 고도 만8천 미터 상공에서 마하 5.1까지 속력을 내며 5000km를 한 시간 내에 정밀 타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선제공격 시 매우 효과적인 타격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다.

<http://missilethreat.com/conventional-prompt-global-strike-and-long-range-ballistic-missiles-background-and-issues/>(2015. 5. 21. 열람)

83) 박회락, *op.cit.*, 130쪽.

못하면 북한은 잔존하는 핵무기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산 배치된 핵시설이 정확한 표적으로 100% 식별되고 국가적 수준의 지휘통제체계나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북한의 2차 공격 능력까지 완전하게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작전계획과 기술적 기습 작전수행 능력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선제공격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더라도 선제공격은 인간이 계획하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선제공격이 한반도의 핵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바이블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제공격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시키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열어둔 대응전략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핵 평화를 유지시키고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압박시키는 억지전략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자세

본 연구자는 다섯 가지 조건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더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제렘바라스는 직면한 핵문제에 대하여 최종 견해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큰 모험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원칙을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을 취소하는 것은 권총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아닌, 민간인에게 험악한 보복을 하는 중무장한 갱을 대했을 때 경찰력이 해제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의와 정부를 위한 원칙들을 내려 주셨다. 우리의 책임은 이 소명이 우리 시대에 수행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며, 또한 모든

심판을 의롭게 시행하시는 그 분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⁸⁴⁾ 제렘바라스의 주장과 같이 한반도에 직면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은 능동적 억제력을 갖추고 기다리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기대가 정당성에 부합되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더 이상 타자(他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을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군사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군과 공군의 전력강화가 시급하다. 하루빨리 ‘공해전’에 대한 독자적인 전구(戰區)작전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합동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나는 북한 군사력을 우월하게 능가하는 선진 강군 육성으로 북한의 군사적 억제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역은 군사과학시대 상호 억제의 환경을 제공한다. 북한의 군사력을 우월하게 능가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 안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진 전에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하고, 북한의 2차 핵공격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확보한다면 한국전역에서는 남북한 상호 전쟁억제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로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선제공격을 시도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선제공격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탐지 및 타격전력을 증강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Kill Chain(신속순환체계)’이 북한 핵에 대한 억제체계로써 능력을 발휘하려면, 눈의 역할을 하는 ISR(정밀표적탐지)자산 확충, TEL과 같은 이동표적, SLBM(잠수함발사

84) Jerram Barrs, *op.cit.*, p.50.

탄도미사일) 공격능력 확보 등이 급선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무인 및 정찰기, 인공위성, 그리고 고성능의 레이더망을 다각도로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공격기 개발, 통합위성체계의 확립, 맞춤형 확장억제의 연장선으로 현재의 공군을 ‘항공 우주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공군’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북억제 전략이라 할 수 있다.⁸⁵⁾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축한다는 계획은 선진 강군육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확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한·미 안보동맹이 구축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한·미 군사동맹을 넘어 한·미·일 3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미래지향적 군사동맹단계로 발전시켜 대북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⁸⁶⁾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의 주장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북한은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솔한 핵무기 사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시나리오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기반시설에 가하는 오시락 유형의 선제 기습공격이 될 것이다.⁸⁷⁾ 비록 때때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과격하고 강경한 발언들을 표명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협박의 표현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에 의하여 보복공격을 당할 것이고 결국

85) 강진석,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 (서울: 동인, 2012), 423쪽; 박휘락, 『평화와 국방』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129~131쪽.

86)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기고문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략적 접근준비와 한반도 평화”를 참고할 것.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ukho62&logNo=220326686688&parentCategoryNo=&categoryNo=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2015년 5월 12일 열람).

87) Peter R. Lavay, 외 2명, 『상상할 수 없는 전장계획』, 정현성 역(서울: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2010), 328쪽.

북한의 정치체제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 즉,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북한의 정치 지도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와 예측은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즉, 북한은 핵을 가운데 놓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시도하였던 방법과 같이 제한적인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기습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도발능력을 가지고 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과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북한의 국지도발 능력은 1급 경제대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막강한 비대칭 전력⁸⁸⁾으로 협박을 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철저한 응징태세를 갖추고 어떠한 국지도발도 허용해서는 안 될 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핵무기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정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을 것을 예측하여야 한다. 당분간은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이용하여 한반도 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당면한 북한의 위기극복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해상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들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시기가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언젠가는 서해 5도를 기습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휴전 후 지난 60년간은 비무장 지대를 중심

88) 비대칭전력이란 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취약점을 최대한 공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 또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10만 병력의 특수전 수행능력, 북한의 잠수함, 대량살상 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은 비대칭 전력에 해당된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 공격유형이다.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대전: 육군본부, 2012), 239쪽.

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때가 되면 서해 5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것이다. 서해 5도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 지역은 NLL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장소이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전 일촉즉발의 최고의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이 지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NLL 안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북한은 NLL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제한적인 국지전을 감행할 수 있다.⁸⁹⁾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최고의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고자 서해 5도를 침범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서해 5도를 제한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결국 한반도의 어느 제한적인 장소에서 국지전 발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예견한 바와 같이 북한이 제한적인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는 선제적 억제가 아니라 응징 보복적 억제로 대처해야 한다. 다만, 그 응정보복은 수세적,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면서 공세적이고 압도적이어야 도발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억제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여야 한다.

89) 1953년 북방한계선 설정이후 1973년까지 북한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 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12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의 연장선 이북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도에 향해하는 선박은 북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합의하고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NLL은 북한과의 합의 없이 선정된 선이다. 그러나 NLL은 1999년 연평해전 발생 전까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상현, 『중북세력의 비판』 (서울: 넥센메디아, 2013), 230~232쪽.

5. 나가는 말

한반도는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핵보유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은 지구상의 전 인간의 생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또한 유도탄에 의하여 일순간에 목적물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공존(共存)이나, 무존(無存)이나?’ 하는 말은 이제 단순한 재담(才談)에 그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대안(代案)이 우리 앞에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전쟁지지자나 평화주의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노력을 연합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과 신념을 가지고, 전쟁 방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참여의 모순에 직면하여야 된다면, 우리는 선별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능동적 억제전략안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열려있는 선제공격은 부시독트린(선제 독트린)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차원이 아니다.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상황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극히 제한된 공격이다. 위협의 급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무력사용의 제한성을 가지고 ‘선제적 자위’의 개념 내에서 선제공격의 정당성이 발전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핵전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방안이다. 도발 가능성에 있는 침략국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확실한 손실위험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그 위협은 충분한 핵전쟁 잠재력과 만약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위협은 수행할 의도와 의지를 지닌 적과의 통첩(通牒)으로 구성된다.⁹⁰⁾ 그러므로 핵무기에

90) O'Brien, *op.cit.*, p.127.

의한 전쟁 억제력의 핵심은 그가 적을 파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적이 그의 폭정을 확산시키려 한다면 파멸의 위협을 감수하라는 것이다.⁹¹⁾ 따라서 대북 억제력은 북한의 위협과 침략에 대하여 철저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소명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에 의한 전쟁 억제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선제공격을 시도하여야 한다면,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제한된 목표와 제한된 범위에 대하여 정교한 첨단무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해야 한다. 즉, 핵상황과 비핵상황을 구분하여 균형과 차별의 원리가 확보된 조건하에 오폭이나 과도한 파괴력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첨단화되고 정밀화된 공격수단으로 시도되는 선제공격만이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있다.

[원고투고일: 2015.5.29,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선제적 자위, 정당한 전쟁, 제한전쟁, 핵 억제, 선제공격, 예방적 전쟁, 선제 닥트린, 무력공격, 전쟁의 정당성, 전쟁수행의 정당성

91) Jerram Barrs, *op.cit.*, pp.45~46.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the Justification of a Preemptive Attack against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Ki Seok-h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the proper understanding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as being the present and critical issue at the Korean Peninsular, to seek the Justice of a 'Preemptive Attack' as the correspondence concept of response to a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as adopted 'Active-Positive Deterrence Strategy' which is a military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o overcome a practical nuclear threat itself of North Korea. The basic concept of this strategy, when being acquired the indications of provocation of a attack of nuclear by North Korea, is of Positive Deterrence Strategy based Anticipatory Self-Defense which eliminate nuclear threats and the facilities of conduct of a war on North Korea in advance by preemptive attacks which have the method of attack with dominant power.

It is not the concept of Preventive war of Bush Doctrine(Anticipatory Doctrine) to lay out a preemptive attack to the probability of provocation of North Korea. But it is very limited way of attack which can be only applied to a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under such conditions of urgent situation. This attack should be planned and developed in the concep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which should be built on the urgency of risk and the limited use of armed force.

It is a compelling deterrence to North Korea that is necessary the best way to prevent nuclear war, because it is based on the sure the threat of loss to which a aggressor with the probability of provocation

can not accept. But this threat, when it is happen at an unexpected situation and the sufficient protection of nuclear war, is composed by a notice to enemy country against which this threat can be carried out by its intention and will. Therefore, the focus of deterrence of war by nuclear weapon has not an intention to destroy enemy, but if the enemy set his face to tyranny they should be undergone to the threat of perishment.

Therefore a deterrence to North Korea should be thoroughly to keep a balance against threat and invasion of North Korea. On this wise, it is suggested to emphasize that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is the deterrence of war by building up stronger deterrence to North Korea rather than now. Even though, if it should be inevitably needed to launch a preemptive attack, as it was previously stated, it must be an attack which is against limited objectives and limited areas the by sophisticated the cutting edge of weapons. That is, it can be only justified to launch a preemptive attack by the methods of attack of which is modernized and being precise, being distinguished the situation of nuclear from the situation of non-nuclear under such conditions that are met by the principle of balance and distinction, so that it does not incur civilian damage.

Key Words : Anticipatory Self-Defense, just war, limited war, nuclear deterrent, preemptive attack, Preventive war, Anticipatory Doctrine, Armed attack, Jus ad bellum, Jus in bello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2015년 국방 기관평가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일시/장소 : '15. 7. 9.(목) 13:30~15:30 / 연구소 회의실
 - 방문자 : 기관평가 평가위원(공주대 김창봉 교수 등 4명)
 - 내용 : 연구소장 면담, 일반현황 보고 및 시설견학, 자문 및 토의
- 2015년 군사 연구기관 '17년~'21년 중기계획 조정회의
 - 일시/장소 : '15. 7. 15.(수) 15:00~17:00 / 연구소 회의실
 - 주관 : 연구소장
 - 대상 : 육·해·공군 및 해병대 기관장, 연구소 전 직원
 - 내용 : 기관별 중기계획 발표 및 업무조정, 공동사업 추진방안 등
- 2015년 국제군사사학회 연례총회 참석
 - 기간/장소 : '15. 8. 29.(토)~ 9. 5.(토) / 중국
 - 참석인원 : 연구소장, 심헌용 선임연구원
 - 내용 : 총회 및 학술회의, 주요기관 방문(군사과학원, 주요박물관), 전사적지 견학(노구교, 항일전쟁기념관, 만리장성 등)
- 국외 공무출장(국외 자료수집)
 - 기간/장소 : '15. 9. 8.(화)~9. 16.(수) / 일본(도쿄, 히로시마 등)
 - 출장인원 : 군사사부장, 전호수 연구원
 - 내용 : 자료수집(일제 침략사, 한·일 군사관계사, 임진왜란사 등), 전사적지 견학(히로시마 대본영, 일청강화 기념관 등)
- 2015년 을지연습
 - 기간 : '15. 8. 17.(월)~8. 20.(목)
 - 대상 : 연구소 전 직원
 - 내용 : 전시 연구소 임무수행절차 숙달 및 발전방안 연구

- 제15주년 연구소 창설기념 행사
 - 일시 : '15. 9. 18(금) 08:00~13:00
 - 대상 : 연구소 전 직원
 - 내용 : 기념행사(유공자 표창수여, 다과), 등산(청계산), 오찬 등
- 학술정보통합서비스 업체에서 「군사」지 논문 제공

업 체	DBpia(누리미디어)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일 정	2015. 9. 20.부	2015. 9. 30.부
비 고	계약서 체결(2015. 8. 20.)	신청서 제출(2015. 8. 25.)
	기관 및 개인 모두 군사지 논문을 무료로 사용 가능	

- 「군사」지 계속평가 및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활용

구 분	학술지 계속평가	온라인 논문투고 / 심사시스템 활용
기 간	2015. 4~6월	2015. 10월~ 2016. 9월(구축 : 9월)
주 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비 고	결과 : 등재학술지 유지	예규 보완 후 공고 예정

2. 인사이동

- 제15대 연구소장 취임
 - 군무관리관 김철수 : 2015. 7. 1.
- 명예진급 및 전역
 - 육군대령 최윤철(국제분쟁사) : 2015. 6. 30.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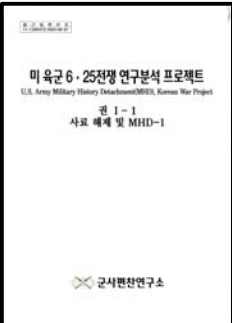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물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안정화작전 • 신승원 (국제분쟁사부) • 신국관 • 2015. 6. 30. 	본 책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안정화 작전』은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주요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분석했고, 이와 연관해서 21세기의 첫 전쟁인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이어서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작전 및 국가건설 지원’, 그리고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 정리한 세계전쟁사 책자이다. 본 책이 국제분쟁 및 해외파병 연구, 주요 정책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미 육군 6·25전쟁 연구분석 프로젝트 • 남보람(정보자료실) • 신국관 • 2015. 6. 23. 	본 책은 6·25전쟁시 미 육군 군사파견대에 의해 기록된 『6·25전쟁 연구분석 프로젝트』를 해제식으로 발간한 책자이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6·25전쟁 연구분석 프로젝트』 자료를 전량 획득하여 각 권별 세부목차를 제시하고, 간략한 내용소개, 내용에 대한 해제를 연구하여 제시하였음. 본 책이 6·25전쟁사 연구시 연구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당시 전쟁의 현장에서 실시간 기록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새로운 연구관점이 도출되는 등 연구의 봄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함.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정정보)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종수(군산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명환(前공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김용달(독립기념관)

김태국(연변대학교)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재범(경기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편집간사

정정모(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5/9(第96號)

2015년 9월 8일 印刷

2015년 9월 16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  _M15090719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96. 2015. 9

Park Tae-gyun	Korea' 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from the US Perspective,
Kim Ji-hoon	The Chinese National Party Government's Scheme of Korean Peninsula and Korea Before and After 1945 Korea' s Liberation
Kee Kwang-seo	Th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rmy in Anti-Japanese War and Russia's Views on the Liberation of Korea
Choi Woon-do	Korean Independence and 70 Years Thereaft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Post-War Settlement
Hwangbo Kyung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ree kingdoms and the significance of Danghang-fortress battle in the early 7 th C
Kim Myeong-jin	The Battle of Unju led by King Wang Geon of Koryo dynasty and Geungjun' s Role
Choi Jae-ho	The implication of general of the Righteous Armies, <i>Kwak Jae-Woo's</i> Raising Righteous Army in <i>Ui-Ryeong</i>
Kwon Soon-jin	A Consideration on Gimhwa Baekjeon(栢田) Combat during the Manchu Invasion of 1636(Byeongjahoran, 丙子胡亂)
Lee Sin-jae	A Study on the decision process of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f Korean Forces in Vietnam
Do Thanh-Thao-Mien	The Vietnamese Sources of Material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Vietnam War period(1954~1975)
Park Chong-hyo	Russia and Island 'Dokdo' based o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Korea-Russia
Ki Seok-ho	A Study on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the Justification of a Preemptive Attack against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

광복 70주년 특집 :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광복 70년의 의의와 평가